



영유아 교육 · 보육비용 추정 연구(V)

최효미 김나영 김태우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28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최효미 김나영 김태우

머 리 말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은 여전히 자녀 양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육·보육 지원 정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교육·보육비용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2013년을 전후하여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보육·유아교육 지원 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연간 8조원 이상의 비용이 영유아 가구의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이 여전히 문제 등 무상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무상 보육·유아교육 정책 도입 이후 영아의 기관 이용 급증, 맞벌이 부모의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가중, 지방 재정 부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지 못한 한계 등으로 인한 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시점이다.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 및 비용 지원 정책의 변화가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출 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를 숙고한 연구이다. 특히 5개년 연속과제의 마지막 연차 연구로서, 그 간의 연구를 갈무리하고 향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 부담 적정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유추해 보는 등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논의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질 제고를 위해 따끔한 충고와 자문을 아끼지 않은 전문가, 실태조사와 심층 면담에 응해주신 응답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 지난 5년간 연구 수행을 위해 애쓰신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차 례

요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4
3. 용어정의	19
II. 연구 배경	24
1. 선행 연구 고찰	24
2. 국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개관	38
3. 국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58
III.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72
1. 실태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72
2.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83
3.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108
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	114
5. 소결	119
IV.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121
1. 조사 설계의 차수 간 변동	121
2.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130
3.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139
4. 소결	142
V.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44
1.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영유아 가구의 유보가격	144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학부모 의견	155
3.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159
4. 소결	168

VI.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171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172
2.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176
3.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184
4. 소결	193
VII. 정책 제언	196
1. 기본 방향	196
2. 국가 지원 시간 설정 및 지원 방안	198
3. 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비용지원 체계 다양화	202
4.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205
5.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다각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206
6. 세제 지원 확대	210
7. 제도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한 후속 과제	211
참고문헌	215
Abstract	224
보론	227
보론 1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분석 방법	229
보론 2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여 방법	232
부록	237
부록 1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 설문지	239
부록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255
부록 3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 질문지	267
부록 4 심층 면담자 특성	271
부록 5 기타 부표	272

표 차례

〈표 I-2-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V) 주요 연구내용	15
〈표 I-2- 2〉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18
〈표 I-2- 3〉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개최 현황	19
〈표 I-2- 4〉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19
〈표 II-1- 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31
〈표 II-1- 2〉 유아학비·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37
〈표 II-2- 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	40
〈표 II-2- 2〉 유아학비·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추이	42
〈표 II-2- 3〉 보육료 수납액 및 민간어린이집 수납 한도액	44
〈표 II-2- 4〉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원칙 및 수납 한도액	46
〈표 II-2- 5〉 유치원 필요 경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47
〈표 II-2- 6〉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 비용 지원(2017년 기준)	48
〈표 II-2- 7〉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일반가구기준)	49
〈표 II-2- 8〉 가정 양육 수당 대상별 차등 지원 금액 현황(2017년 기준)	50
〈표 II-2- 9〉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2017년 기준)	51
〈표 II-2-10〉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비용(2017년 기준)	52
〈표 II-2-11〉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비용(2017년 기준)	53
〈표 II-2-12〉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지원	57
〈표 II-2-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과 지원 정책 연계(2017년 기준)	58
〈표 II-3- 1〉 네덜란드의 양육수당(2017년 기준)	59
〈표 II-3- 2〉 호주의 인가보육 지원액(2016-2017년 기준)	62
〈표 II-3- 3〉 호주의 등록보육 지원액(2016-2017년 기준)	63
〈표 II-3- 4〉 호주의 보육환급 분기별 지급 기간(2016-2017년 기준)	63
〈표 II-3- 4〉 핀란드의 아동수당(Lapsilisa) : 2017년 기준	64
〈표 II-3- 5〉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hoitotuki) : 2017년 기준	65
〈표 II-3- 6〉 프랑스의 연간 가구 소득 한도액(2015년 기준)	66
〈표 II-3- 7〉 네덜란드의 아동수당(2017)	67
〈표 II-3- 8〉 스웨덴의 아동수당(2017)	68

〈표 II-3- 9〉 노르웨이의 아동수당(2017년 기준)	68
〈표 II-3-10〉 노르웨이의 현금양육수당 지원 비율	69
〈표 III-1- 1〉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	74
〈표 III-1- 2〉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76
〈표 III-1- 3〉 모 특성에 따른 아동 특성	77
〈표 III-1- 4〉 아동 연령별 및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응답자	78
〈표 III-1- 5〉 응답 가구 특성	79
〈표 III-1- 6〉 응답 가구 자녀 수	79
〈표 III-1- 7〉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	80
〈표 III-1- 8〉 모 특성에 따른 평균 자녀 수	81
〈표 III-1- 9〉 가중치 적용 전후 아동 특성별 응답자	82
〈표 III-1-10〉 가중치 적용 전후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응답자	83
〈표 III-2- 1〉 아동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84
〈표 III-2- 2〉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85
〈표 III-2- 3〉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아동당 월평균비용) ...	86
〈표 III-2- 4〉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87
〈표 III-2- 5〉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89
〈표 III-2- 6〉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비용	90
〈표 III-2- 7〉 특별활동 개수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90
〈표 III-2- 8〉 아동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91
〈표 III-2- 9〉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91
〈표 III-2-10〉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비율 및 비용	92
〈표 III-2-11〉 아동 연령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이용비용	93
〈표 III-2-12〉 가구 특성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이용비용	94
〈표 III-2-13〉 유치원 설립유형별 이용 비율 및 이용비용	95
〈표 III-2-14〉 특성화프로그램 개수별 이용 비율 및 비용	96
〈표 III-2-15〉 아동연령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	97
〈표 III-2-16〉 가구특성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	97
〈표 III-2-17〉 유치원 설립유형별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	98
〈표 III-2-18〉 아동 특성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99
〈표 III-2-19〉 기관 특성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100

〈표 III-2-20〉	특별활동 개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100
〈표 III-2-21〉	아동 특성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101
〈표 III-2-22〉	사교육(시간제) 개수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102
〈표 III-2-23〉	가구 특성별 사교육(시간제)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102
〈표 III-2-24〉	기관 유형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 및 이용 비용	103
〈표 III-2-25〉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104
〈표 III-2-26〉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실태 및 이용 비용	105
〈표 III-2-27〉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실태 및 이용 비용	105
〈표 III-2-28〉	교구활동 이용 실태 및 이용 비용	106
〈표 III-2-29〉	아동 연령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106
〈표 III-2-30〉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비용 부담(아동별조사)	107
〈표 III-3- 1〉	자녀수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09
〈표 III-3- 2〉	맞벌이 여부 및 가구원 수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09
〈표 III-3- 3〉	가구 소득 및 지역규모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110
〈표 III-3- 4〉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 비용 (가구당비용)	112
〈표 III-3- 5〉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 비용 (가구당 비용)	113
〈표 III-4- 1〉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및 분포	115
〈표 III-4- 2〉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월평균)	115
〈표 III-4- 3〉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규모	117
〈표 III-4- 4〉	영유아 총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117
〈표 III-4- 5〉	영유아 총 시간제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118
〈표 IV-1- 1〉	조사별 표본 설계상의 특징	122
〈표 IV-1- 2〉	일반특성 설문항목	124
〈표 IV-1- 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관련 설문항목	124
〈표 IV-1- 4〉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관련 설문항목	125
〈표 IV-1- 5〉	사교육 이용관련 설문항목	126
〈표 IV-1- 6〉	개별돌봄서비스 이용관련 설문항목	126
〈표 IV-1- 7〉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관련 설문항목	127
〈표 IV-1- 8〉	연도별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128
〈표 IV-1- 9〉	연도별 응답 가구 특성	128
〈표 IV-1-10〉	연도별 응답 가구의 모 특성	129

〈표 IV-2- 1〉 연도별 아동 연령별 총 교육·보육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	131
〈표 IV-2- 2〉 어린이집 이용비율 변화	132
〈표 IV-2- 3〉 어린이집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132
〈표 IV-2- 4〉 유치원 이용 비율의 변화	134
〈표 IV-2- 5〉 유치원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134
〈표 IV-2- 6〉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비율 변화	136
〈표 IV-2- 7〉 반일제 이상 학원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	136
〈표 IV-2- 8〉 시간제 사교육별 이용비율 변화	137
〈표 IV-2- 9〉 시간제 사교육별 월평균 총 평균 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	137
〈표 IV-2-10〉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율 변화	138
〈표 IV-2-11〉 개별돌봄서비스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139
〈표 IV-3- 1〉 자녀수별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월평균)	140
〈표 IV-3- 2〉 가구소득별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월평균)	140
〈표 IV-3- 3〉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 변화(월평균) ...	141
〈표 V-1- 1〉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별 조사) ...	145
〈표 V-1- 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조사)	146
〈표 V-1- 3〉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동별 조사) ..	148
〈표 V-1- 4〉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동별 조사) ..	148
〈표 V-1- 5〉 이용기관 및 이용비용별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	149
〈표 V-1- 6〉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150
〈표 V-1- 7〉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151
〈표 V-1- 8〉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조사)	152
〈표 V-1- 9〉 가구 특성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조사) ...	153
〈표 V-1-10〉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아동별조사) ..	154
〈표 V-1-11〉 지불 금액 증가에도 이용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아동별조사) ..	155
〈표 V-2- 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아동별조사)	156
〈표 V-2- 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모 의견(아동조사) ...	157
〈표 V-2- 3〉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아동 조사)	158
〈표 V-2- 4〉 양육수당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모 의견(아동 조사) ...	159
〈표 V-3- 1〉 가구 특성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가구조사) ..	161
〈표 V-3- 2〉 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조정 방식에 대한 의견(가구조사) ..	163

〈표 V-3-3〉 비용 지원 필요 대상 연령	164
〈표 V-3-4〉 비용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1+2순위)	164
〈표 V-3-5〉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165
〈표 V-3-6〉 아동연령별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	166
〈표 V-3-7〉 가구 특성별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	167
〈표 V-3-8〉 아동 연령별 양육수당 상향 조정 시 부모 직접 양육 의향이 없는 이유 ..	168
〈표 VI-1-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172
〈표 VI-1-2〉 AHP 모델1 : 정책목표별 하위 지원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174
〈표 VI-1-3〉 전문가 전공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	175
〈표 VI-1-4〉 전문가 직업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	176
〈표 VI-2-1〉 AHP 모델2 : 정책과제별 하위 관련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179
〈표 VI-2-2〉 전문가 전공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	181
〈표 VI-2-3〉 전문가 직업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	182
〈표 VI-2-4〉 전문가 조사 주관식 문항에 자주 언급된 단어	183
〈표 VI-3-1〉 어린이집 세입 구성 : 정부 지원금 및 부모 부담금 구분	185
〈표 VI-3-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 자부담 차이	189

그림 차례

[그림 I-3-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범주(2017년 실태조사 기준)	21
[그림 III-3-1]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비용) ...	113
[그림 III-4-1]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분포	116
[그림 IV-2-1] 어린이집 이용비용 변화 추이 비교(2012-2017)	133
[그림 IV-2-2] 유치원 이용비용 변화 추이 비교(2012-2017)	135
[그림 V-1-1]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147
[그림 V-3-1]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160
[그림 V-3-2]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 순위	162
[그림 VI-1-1] AHP 모델 1: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모형 ...	173
[그림 VI-1-2] AHP 모델 1 :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도	173
[그림 VI-1-3]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	175
[그림 VI-2-1] AHP 모델2 :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모형 ...	177
[그림 VI-2-2] AHP 모델 2 :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	178
[그림 VI-2-3]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	180
[그림 VII-2-1] 어린이집 국가지원시간 및 추가보육시간 예시	199
[그림 VII-7-1]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	213

보론 표 차례

〈보표 2-1〉 0-5세의 16개 지역별 분포	232
〈보표 2-2〉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남) 분포	233
〈보표 2-3〉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여) 분포	233
〈보표 2-4〉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	234
〈보표 2-5〉 국가기초구역 표본 수	234
〈보표 2-6〉 110개 표본 국가기초구역 분포	235

보론 그림 차례

[보론 그림 1-1] AHP 모델 1: 계층구조	230
[보론 그림 1-2] AHP 모델 2: 계층구조	231

부록 표 차례

〈부표 5-1〉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항목별 이용비용	272
〈부표 5-2〉 아동 특성별 유치원 항목별 이용비용	272
〈부표 5-3〉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금 및 입학 시 물품(중복응답) ...	273
〈부표 5-4〉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금 및 입학 시 물품(계속) ..	273
〈부표 5-5〉 유치원 종일제 혹은 에듀케어 과정 참여이유 및 개선점(아동조사) ...	274
〈부표 5-6〉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이유(아동조사)	274
〈부표 5-7〉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동의서 작성(아동조사)	275
〈부표 5-8〉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개선사항(1+2순위)(아동조사)	275
〈부표 5-9〉 아동연령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이유(아동조사)	275
〈부표 5-10〉 아동연령별 시간제 학원 이용 이유(아동조사)	276
〈부표 5-11〉 아동연령별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아동조사)	276
〈부표 5-12〉 아동연령별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이유(아동조사)	276
〈부표 5-13〉 아동연령별 교구활동 이용 이유(아동조사)	277
〈부표 5-14〉 아동연령별 통신 교육 이용 이유(아동조사)	277
〈부표 5-15〉 아동연령별 개별돌봄서비스와 보육·교육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아동조사) ..	277
〈부표 5-16〉 가구 특성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아동조사)	278
〈부표 5-17〉 가구 특성별 소비에 대한 인식	279
〈부표 5-18〉 가구 특성별 소비에 대한 인식	280

요 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교육·보육비용은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은 무상 보육·교육이라는 취지하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등의 지원을 위해 2016년 기준 8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 한편,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과 같은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세제를 통한 지원 혜택과 유아학비·보육료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 대체적 서비스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이 병행되어 실시되고 있음.
 - 방과후 과정비 지원, 특별활동 가이드라인, 필요경비 상한제, 보육료 상한제, 원비 상한율,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 지원 등을 통한 다각적 노력이 추진 중임.
- ☐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로, 5개년도 연속과제의 마지막 차수인 5차년도 연구임.

나.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국내외 지원 정책의 체계를 면밀히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유추해 봄.

- 2017년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이용행태 및 이용비용 실태를 파악하고,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용을 추정함.
 - 지난 5년 동안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 가계동향조사 등 통계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회 등을 수행함.
-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는 전국(제주 제외) 1,119가구의 1,505명의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됨.
 - 전문가 조사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과 포괄적 의미의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40명(설문 종류에 따라 다소 상이)이 응답함.
 -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주요 공급자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총 7회에 걸쳐 17명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함.

2.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가.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19만8천원이었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만을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25만5천원임.
- 총 교육·보육비용은 아동의 연령의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약 10만원가량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응답자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43.3%이며, 어린이집 이용비용 총액은 월평균 6만9천원임.
 - 설립 유형별 이용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평균 4만6천원인데 반해 민간어린이집 9만3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거나, 가정 어린이집(4만9천원)이나 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4만7천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35.2%이며, 이용비용은 월평균 19만8천원임.
 - 유치원의 이용비용은 주로 정규 교육비 중 수업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이용비용 평균은 4만2천원이고, 사립 유치원은 6만4천원으로 차이를 보임.
-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하나, 이용비용은 평균 73만5천원으로,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도 높은 비용 수준을 보임.
-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총액 평균 11만4천원으로,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학습지의 이용 빈도가 가장 많으며, 시간제 학원의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임.
 - 시간제 학원 이용자는 17.0%로 평균 12만1천원의 비용을 지출하며, 학습지는 25.4%가 이용하고 평균 6만1천원을 지출함.
 -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낮은 개인 및 그룹지도는 2.8%가 이용하고 평균 11만원, 교구활동은 3.0%가 이용하고 평균 9만7천원, 통신교육은 1.2%가 이용하고 평균 3만9천원을 지출함.
-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일 평균 5.6시간, 주당 평균 4.8일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비용은 53만7천원임.
 -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혈연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2.5점을 응답해, 다른 교육·보육서비스에 비해 비용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나.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 ☐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28만9천원으로, 0~10만원 미만 구간에 28.7%가 밀집됨.
- ☐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1.8%였으며,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 가구 지출 대비 비중은 8.5%임.

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

- ☐ 2017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비용은 26만2천원이며,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11만6천원, 시간제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5만4천원임.
 - 연간 총액을 계산해보면, 총 교육·보육비용은 8조 4,172억 9,128만원에 이르며, 총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3조 7,397억 2,618만원으로 총 교육·보육비용 대비 총 사교육비 비율은 44.4%에 달함.
 -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을 제외한 시간제 사교육비의 연간 총액 추정비용은 1조 7,225억 9,858만원으로,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의 20.5% 수준임.

3.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추이

- ☐ 본 연구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표집 방법과 조사 방식 등이 변화하는 횡단면 조사 자료로서,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표본 특성과 조사 방식 등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3차년도(2015년) 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년도의 교육·보육비용을 비교함.

가.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추이

- ☐ 아동별 총 교육·보육비용은 2013년 18만2천원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0세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매해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임.
- ☐ 이용 서비스 종류별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3년 이후 감소세가 발견되는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기관 이용비용도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2013년 8만3천원에서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5%미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이용비용은 가장 비싼 교육·보육서비스임.
-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은 통상 10%대의 이용 비중을 보였으며,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학습지 이용 비중이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개별 돌봄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13년과 2014년에는 5%미만이었으나, 2016년에는 10.0%, 2017년에는 12.1%로 큰 차이를 보임.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해마다 월평균 50만원대로, 지난 5년간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음.

나.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추이

- 가구당 영유아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난 5년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20만원대를 보임.
-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인 경우보다 2명인 경우에 총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은 것이 대체적인 경향임.
-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당 교육·보육비용의 지출이 증가하는 양상도 매해 공통된 현상임.
-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대체로 6% 전후이고, 가구 지출 대비 비중은 7~8%로, 해마다 이러한 비중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4.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 의사

- 현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들은 대체로 5~8시간 가량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8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은 어린이집의 경우 23.8%, 유치원의 경우 37.8%로 유치원이 오히려 장시간 이용자 비중이 높음.

- 가구특성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51.6%가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과 크게 차이를 보임.
- 현재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많이 늘림+조금 늘림)는 의견은 16.7%였으며, 80.8%가 현행 이용 시간 정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함.
- 현재보다 기관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라는 응답(58.0%)이 가장 많음.
- 향후 기관 이용비용이 증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임.
- 최대 추가 지불의사인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이 18.5%, 5~10만원 미만이 18.4%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유보가격을 초과하여 이용비용이 상승할 경우 교육·보육서비스의 변경 계획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용 시간을 줄이겠다고 27.5%임.

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학부모 의견

-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 찬성 32.6%, 찬성 53.1%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임.
- 보육료·유아학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65.3%, 인상 필요가 32.3%로 현재보다 지원 수준이 높아지기를 희망함.
- 가정 양육 수당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31.9%, 찬성 51.8%로 높은 지지를 보임.
- 가정 양육 수당의 비용 적정성에 대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9%, 현행 유지가 56.1%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다.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과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7점 만점에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줌.

- 전문가들은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6.4점을 주어 영유아 부모들과 같은 의견이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에는 6.0점을 주어 영유아 부모에 비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함.
-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해서는 6.4점을 주어 높은 지지도를 보임.
-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모두 보육료·유아학비 인상과 가정 양육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줌.
- 정책의 필요성과 달리 정책들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 결과(단일 항목 응답)에서는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가장 우선해야한다고 응답함.
 - 영유아 부모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다음으로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9.5%) > 일가정 양립 지원(10.2%)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9.1%) > 가정 양육수당 인상(6.0%) 순으로 응답.
 - 전문가들은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우선한다는 의견이 25.0%, 일가정 양립 지원은 20.0%로 영유아 부모 조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임.
- 정책 지원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은 현행과 같이 전 계층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취약계층만 지원(24.1%), 특정 연령만 지원(14.1%) 순임.
 - 반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현행처럼 전 계층에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32.5%임.
- 지원 금액을 조정할 경우 방식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우 현행대로 차등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6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이 14.6%이나, 전문가들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이 46.2%로 가장 높음.
 -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모두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영유아 부모는 장애 영유아를, 전문가들은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을 꼽음.
- 가정 양육수당이 인상되더라도 현행처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6.2%로, 그 이유는 또래 경험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5.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전문가 조사 결과(AHP 분석 결과)

- ☐ AHP 모델1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정책으로 통합이 가장 적합하다(0.2513)고 응답함.
 - 다음으로 가정 양육수당 인상(0.2220),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0.1808), 보육료·유아학비(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0.1798),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0.1661) 순임.
- ☐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한 AHP 모델2에서는 총 14개의 정책 중에서 전문가들은 교사 처우 개선(0.2695)를 가장 우선하며,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0.1776)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0.3902), 공공 교육·보육인프라 확충(0.3378), 수요자 맞춤형 보육강화(0.1633),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0.1087) 순으로 평가함.
 - AHP 모델2에 제시된 정책과제 중에서 전문가들은 부모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고 보았으며, 이에 속한 정책들 예를 들어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등이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정책이라고 평가됨.

나.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 주요 내용

- ☐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에서는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 기관과 사설 기관(민간 어린이집 혹은 사립 유치원 등)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함.
 - 국공립 기관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에서 사설 기관과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체계가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임.
 - 반면, 사설 기관은 국가가 부족한 국공립 시설을 대신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설 기관을 통해 영유아 가구에 교육·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만큼 지원의 수준이 국공립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함.
- ☐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임.

-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수업료 부과가 가능한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모 부담금 부과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큼.
-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지원금의 포괄 시간이 하루 12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교사의 처우 및 원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곤혹스러움을 표현함.
- 영유아 가구에 대한 자부담 부과에 대해서는 국공립 기관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사립 유치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민간 어린이집 등은 부정적 입장이 다수임.
-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전문가들도 학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함.
- 저소득층 다음으로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6. 정책 제언

- 어린이집의 경우 8시간을 전후한 시간¹⁾을 국가 지원 시간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국가 지원 시간을 설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국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방과후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요구됨.
-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보육비 단가의 합리적 산정과 실질적으로 기관의 세입이 교육·보육비 단가에 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공공형 어린이집 혹은 자율형 유치원과 같은 형태의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므로,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요구됨.

1) '적정한 국가지원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시 안을 제안하는 것임.

- ☐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임.
- ☐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 방안은 기존과 같은 장시간의 보육서비스의 제공보다는 부모권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
- ☐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우선권을 보장하고, 비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높음.
- ☐ 추가 보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에 추가하는 등으로 영유아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향후 후속과제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수행이 요구됨.
 - 영유아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 및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등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요구되며, 아동수당 제도 도입 시 기존의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금의 수준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식으로 비용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총 5개년 연구로 진행 중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의 5차년도 연구로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 및 이용비용 실태를 파악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번 2017년도 연구는 총 5개년 연구의 마지막 차수 연구라는 점에서 그 간 진행된 연구를 갈무리하고, 향후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보다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중에서 교육·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보육비용의 부담이 커짐을 알 수 있다(서문희 외, 2010: 105; 권미경 외, 2016: 123 등). 권미경 외(2016: 123)는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용 중 돌봄 및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영아 자녀의 경우 18.9%, 유아 자녀의 경우 26.8%에 달하며, 사교육비가 양육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영아 5.1%, 유아 10.6%에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양육비용에서 교육·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어떤 지원보다도 교육·보육비용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보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11: 59; 보건복지부, 2013b: 8). 2008년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되던 보육료 지원은 지원 대상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2012년 만5세 누리과정 및 0~2세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됨으로써(보건복지부, 2013b: 8)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3년에는 영유아가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지면서(교육과학기술부, 2013: 3; 보건복지부, 2013b: 9), 현행 무상 유아교육·보육의 체계가 정립되었다. 이와 함께,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 24개월 미

만 차상위 계층 영아 자녀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시작하여(보건복지부, 2013b: 8),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는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84개월 미만 미취학아동²⁾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3a: 302).

2013년 이후 영유아 전 연령 전 계층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 또한 크게 증가해 2016년에는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40,382억원(통계청 국가지표체계, 2017.2.17. 인출³⁾), 0-2세 보육료 지원을 위해 31,066억원,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12,192억원이 소요되었다(보건복지부, 2016: 241). 2015년 영유아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총액은 82,899억원으로, 2015년 누리과정 및 보육재정인 138,414억원(통계청 국가지표체계, 2017.2.17. 인출⁴⁾)의 59.9%에 달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을 위해 지원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대한민국정부, 2011: 59). 이를 통해 정부는 출산율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출발선 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13b).

하지만,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전 연령 전 계층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⁵⁾,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및 교육·보육비의 부담이 여전히 문제 등(보건복지부, 2013b: 15) 정부의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모의 취업 등 실수요와 무관하게 영아의 기관 보육 의존을 심화시키고 맞벌이 부모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보건복지부, 2013b: 15; 민연경·장한나, 2015: 111), 지방 재정 부족 문제를 야기하고(보건복지부, 2013b: 15),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다양한 보육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

2)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혹은 아이돌보미 비용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해당 비용은 유아학비 지원금 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비 지원 등 누리과정 지원에 소요된 전체 예산을 의미하며, 교육부의 확정 교부액 기준으로 시·도 교육청의 실제 누리과정 예산 편성액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통계청 국가지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및 예산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6 (2017. 2. 17. 인출).

4) 보건복지부의 보육예산(국비+지방비)과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최종예산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 사업과 지자체 특수시책사업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임.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GDP 대비 보육재정 비중,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0 (2017. 2. 17. 인출).

5) 2015년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17.2.17. 인출).

기된 바 있다(대한민국정부, 2016: 79). 최효미 외(2016)에 따르면, 0~2세와 5세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실시된 2012년에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 연령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이 시행된 2013년 이후로는 교육·보육비용이 다시 상승하여,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최효미 외, 2016: 75~82). 이때,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를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들은 2013년을 전후하여 부모의 직접 돌봄이 현저히 감소하고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한 반면, 유아기 자녀의 경우 사교육 이용이 크게 줄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최효미 외, 2016: 67~74). 반면, 교육·보육비용 지출 분위별로 비용 지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다른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분위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은 소득 계층별 아동의 교육·보육비용의 분산 차이를 줄이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최효미 외, 2016: 82~92). 요컨대,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시행은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절감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영유아 가구들 사이의 형평성 제고(동등한 출발선 보장)에 있어서는 긍정적 효과가 발견되었으며, 사교육 이용을 일부 감소시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 계층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을 지속하되, 방과후 과정비 지원(교육부, 2016: 6), 과도한 특별활동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건복지부, 2014a), 부모 부담 추가 경비에 대한 규제 추진(보건복지부, 2013b: 24), 서비스 이용 시간을 고려한 보육료 지원(대한민국정부, 2016: 80), 다양한 보육수요를 고려한 시간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 보육반 확대(대한민국정부, 2016: 82),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한 적정 양육수당 지원(대한민국정부, 2016: 82),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책무성이 높은 기관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대한민국정부, 2016: 82),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대한민국정부, 2016: 82)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 및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정책 대안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성 및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 이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과 함께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와 연관된 다양한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 등을 망라하여, 정책 목표에 보다 부합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유추해보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1) V차년도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내외 지원 정책의 체계를 면밀히 고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유추해본다. 둘째, 2017년도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이용 행태 및 이용비용을 조사하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요인 등을 알아보고, 2017년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용을 추정한다. 셋째, 2013년 이후 5년간 지속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현행 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한다. 넷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I 차~IV차년도 주요 연구 내용

한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V)』의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표 I-2-1>과 같다. 1차년도 연구는 2013년도 교육·보육 서비스별 월평균 지출 수준과 가구 소득 및 지출에 대해 알아보고 영유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추출했으며, 2차년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대비 2014년도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별 이용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양미선 외, 2014). 3차년도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사교육비 개념을 재정비하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2015년 5월 기준으로 조사하여 연간화 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차이가 있었다(최효미 외, 2016: 14). 4차년도 연구에서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양육비 추정방식을 응용하여 2016년 총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을 추정하는 등 분석모형을 정교화 하였다.

〈표 1-2-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Ⅰ)~(Ⅳ) 주요 연구내용

구분	연구내용
I 차 연구 (양미선 외, 2013)	·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정리 · 2013년도 아동 1인당 및 가구 단위 총 교육·보육서비스 비용과 사교육비 산출 · 선행연구 대비 2013년도 교육·보육서비스별 이용비용 및 총 교육·보육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분석 · 영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지출 결정 요인 추출 · 정책 방안 제시
II 차 연구 (양미선 외, 2014)	·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정리 · 2014년도 아동 1인당 교육·보육 서비스별 월평균 비용 산출, 아동 1인당 및 가구 당 총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과 사교육비 산출 · 교육·보육 서비스별 이용비용 및 총 비용,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분석 · 영유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지출 결정 요인 추출 · 정책 방안 제시
III 차 연구 (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	· 선행연구 및 관련 법령 정리 · 국외 교육·보육비용 지출 현황 정리 · 2015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를 항목별로 제시 · 2015년 가구소득별·영유아 연령별 비용 지출 결정 요인 분석 · 2015년 사교육비용 추정 · 정부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의견 조사 결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IV 차 연구 (최효미 외, 2016)	· 선행연구 및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정리 ·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교육·보육비용 지출 행태 분석 및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분석 · 2016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분석 · 2016년 총 교육·보육비용 및 사교육비 추정 · 교육·보육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이용 의사 등 부모 의견 조사 결과 분석 · 정책 방안 제시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4~15.

나.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기존 1~4차년도 추정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3~2016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이용비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나아가 선행연구를 통한 분석 결과는 2017년 교육·보육비용 조사(본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특징적인 변화를 고찰해본다.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 및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한다. 한편, 국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 등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살펴보고, OECD국가의 교육·보육 지원 정책을 개관한다. 이를 통해 각 국가가 가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체계의 고유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2)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 조사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는 전년도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1~4차년도 설문과 유사하게 구성한다. 단, 2016년도(4차년도) 설문에 포함된 맞춤형 관련 문항 및 기관 이용 시간에 관한 문항들은 2017년도에 상당부분 삭제 혹은 축소된 형태로 조정되었다. 반면, 2017년도에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비용에 대한 인식 문항을 포함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2017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는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문항과 영유아 가구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으로 구분된다.

2017년 5차년도 연구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 조사는 전국(제주 제외)의 1,100개 내외의 영유아 가구를 목표 표본으로 하여, 가구 내 영유아 자녀 모두에 대한 교육·보육 이용 및 이용비용을 방문 면접 조사로 실시하였다. 이때, 사교육 기관인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이용자 비중이 적어 표본의 수가 매우 적고 조사 과정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아 가중 표집을 실시하되, 총 교육·보육비용이 과대추정 되지 않도록 가중치를 통해 보정하는 등의 통계적 보완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자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자, 통신 교육 이용자 등의 경우에는 기관 이용자 중 해당 서비스 이용

비중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서비스 이용자가 매우 적어, 소수 이용자의 비용을 기준으로 전체 비용을 추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단, 이 경우에도 법적 증거 및 기존 연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이상치가 발견되지 않도록 실사 과정상에서 실사감독관의 검수와 편치 과정에서의 더블 체크, 해당 가구에 대한 제조사 등을 통한 보완을 통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실태조사 표본 및 응답자 특성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I장 1절의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3) 통계 자료 분석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V)와 (V)연구의 실태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만 해당 자료는 매해 횡단조사로 이뤄짐에 따라 표본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원자료 활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단,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전반의 소비 실태를 보기 위한 조사로서, 영유아 가구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고⁶⁾ 상세한 교육·보육비용이 보고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출된 교육·보육비용이 다른 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 추세의 안정성을 보이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활용하였음을 밝혀둔다.

4) 전문가 조사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5차년도 연구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및 사회복지 등 유관 분야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향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숙고해보았다. 기존 4차년도 연구까지는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영유아 가구 부모들의 의견 조사에 보다 중점을 두어 진행되었으나, 이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이 과소평가되고 수요자의 만족도와 요구 등에 치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계 및 정책 연구자, 현장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 등 각계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보다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6) 영유아 가구의 대표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실효성 제고 방안을 다시금 진단하고자 한다.

전문가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선행 연구 및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 풀(내부 자료)을 이용해 응답자를 추출하고 사전 전화 연락을 통해 조사에 동의한 총 80명에게 웹을 통해 조사하였다. 전문가 조사 설문은 크게 두 개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영유아 부모 설문조사와 문항을 일치시켜 질문한 일반설문(정책 방향에 관한 주관식 의견조사 포함)과 정책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로 구분된다. AHP 설문은 다시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과 관련된 모델1과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에 관한 모델2로 나뉘었다. AHP 설문 문항 및 조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보론과 부록에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전문가 조사 실시 결과, 최종적으로 일반설문 문항에 응답한 응답자는 40명이었으며, AHP 조사는 응답 내용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뢰성이 낮은 자료를 제외하고 모델1 응답자가 29명, 모델2 응답자가 28명이었다.

〈표 1-2-2〉 전문가 조사 응답자 특성

단위: 명

		일반설문	AHP 모델1	AHP 모델2
학계	유아교육	9	6	6
	보육	10	9	8
	사회복지, 경제	10	8	8
	현장 전문가	11	6	6
전체		40	29	28

5) 현장전문가 심층면담

앞서 전문가 조사 대상자 중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현장전문가(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위주)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애초 전문가 조사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AHP조사가 현장 전문가들이 이해하기에 난해한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웹 조사를 통해 진행됨에 따라 응답 내용의 구체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심층 면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은 어린이집 연합회 등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전문가 조사 응답 대상 중 AHP 조사 미응답자와 전문가 집단의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17명에 대해 총 7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 1-2-3〉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개최 현황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계
국공립	4명 (2회차)	병설 : 2명 (4~5회차) 단설 : 2명 (7회차)	8명, 4회
민간 혹은 사립	2명 (1회차) 3명 (6회차)	4명 (3회차)	9명, 3회
계	9명, 3회	8명, 4회	17명, 7회

6)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연구의 방향 설정, 실태조사 설문 문항 검토, 보고서 검토 및 분석 방법론 등 연구 전반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표 1-2-4〉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회차	자문 분야	자문 위원 특성	자문 방법
1차	영유아 부모 설문지 검토	유아교육 1인, 보육 1인	서면 검토
2차	연구보고서(중간) 검토	경제 1인, 사회복지 1인	자문 회의
3차	AHP 방법론 검토	경영 1인, 통계 1인 (외부 연구 협력진으로 참여)	자문 회의
4차	전문가 조사 모델 개발	보육 3인, 사회 2인, 경제 3인, 통계학 1인 총 9인	자문 회의
5차	전문가 조사 설문 검토	보육 1인	서면 검토
6차	연구보고서(최종) 검토	유아교육 1인, 경제 1인	자문 회의
7차	정책 제언 자문	보육 1인, 경제 1인, 통계 1인	자문 회의
8차	정책 제언 자문	보육 1인	자문 회의

3.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1~4차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1~4차년도 보고서의 용어 정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만, 차수를 거듭하면서 일부 비용의 포괄 범위가 변경되거나 용어의 정의가 달라진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정의를 준용하였다는 점을 밝혀둔다. 따라서, 용어의 정의 및 기준 변경에 따라 연도별 교육·보육비용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선행연구와 관련된 용어는 원 저작의 연구 내용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용어 사용 및 표기를 대부분 그대로

로 원용하였다. 5차년도 연구에 사용된 용어는 4차년도 연구와 모두 동일하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기한다.

가. 총 교육·보육비용

본 연구에서 총 교육·보육비용은 아동당 월평균 이용비용과 가구당 월평균 이용비용으로 구분된다. 먼저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은 영유아 1인을 교육·보육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언급된 교육·보육 서비스별 이용비용은 모두 영유아 1인당 이용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용, 영어학원이나 놀이학원 등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 시간제 학원이나 학습지와 같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출되는 개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총 교육·보육비용(가구당 월평균비용)은 가구 내 영유아 자녀가 지출하는 모든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을 합산한 것이다. 이때 가구 내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의 교육·보육비용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을 벗어나므로, 포함되지 않았음에 주의가 요구된다.

나. 세부항목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구성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의 세부항목별로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으로 보육비와 기타비용(교재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등), 시간연장형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지불하는 비용, 특별활동 이용비용 등이 있다. 유치원 이용비용도 어린이집과 유사하게 수업료와 기타 비용,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용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어린이집의 경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해당하는 지원 시간이 7:30~19:30로(보건복지부, 2016: 67) 방과후 과정에 대한 추가 비용이 없는 반면, 야간 돌봄 등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시간연장형보육 이용비용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상한제로 인해 보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인데 반해, 유치원의 경우 원비 상한제에 따라 인상률에 제한이 생기긴 했으나(유아교육법 제25조) 인상 상한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반일 이상 서비스 이용 기관			개인 양육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정규 교육·보육비	보육비 기타비용	수업료 기타비용		
	선택적 교육·보육비	시간연장형보육 특별활동	방과후과정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사교육 이용비용	반일제이상 학원 이용비용				수업료 및 기타비용 방과후과정, 특별활동
	시간제 사교육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시간제 학원(문화센터 등 포함), 학습지, 개인·그룹지도, 통신교육 등			
		개인 양육 서비스(혈연, 비혈연 돌봄 포함)			

주: 1) 정규 교육·보육서비스에 포함된 기타 비용은 교재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등으로 구성됨.

2) 시간제 사교육 서비스와 개별돌봄서비스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자의 중복 이용을 고려한 도식임.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20를 일부 수정.

[그림 1-3-1]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범주(2017년 실태조사 기준)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선택적 교육·보육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 이용하긴 하나 정규 교육·보육 과정에 속하지 않은 추가적인 교육·보육 활동에 대해 수익자(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여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미한다. 선택적 교육비는 어린이집의 경우 야간 돌봄이나 주말 돌봄과 같은 시간연장형보육,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 같이 정규 교육·보육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주로 학습에 목적을 두고 오후 시간 중에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교육서비스인 특별활동비(어린이집의 경우)와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비(유치원의 경우) 등을 포괄한다(최효미 외, 2016: 20).

이 외에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은 기관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과 방과후 과정, 특별 활동 이용비용 등으로 구성되며, 시간제 사교육비는 시간제 학원(문화센터 포함) 이용비용과 학습지, 개인·그룹지도 이용비용, 통신교육 이용비용 등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는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혈연 도우미에게 지출

되는 비용과 아이돌보미 등 비혈연 도우미에게 지출되는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유아 교육·보육 이용비용의 구성 내용을 도식화 하면, [그림 I-3-1]과 같다.

다. 영유아 사교육비 및 시간제 사교육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중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정부의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단, 가정 내 양육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은 교육보다는 돌봄에 비중을 둔 비용으로 사교육비에서 제외한다(최효미 외, 2016: 21).

이때, 사교육에서 반일 이상 이용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제공되는 사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간제 사교육비’로 구분하였다. 시간제 사교육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학습지 및 교재 교구 활용 교육 이용비용,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 통신교육 이용비용 등이다. 이러한 시간제 사교육비를 별도로 구분한 이유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한 후 오후 시간에 시간제 사교육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반일 이상 학원 이용비용을 시간제로 이용하는 사교육과 분리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최효미 외, 2016: 21).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지만 부모의 선택에 의해 비용이 지출되는 특별활동비 또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비를 사교육비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러한 구분 방식은 3차년도 연구인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의 기준을 준용한 것이다. 4차년도 연구에서는 보육료 및 누리과정 지원금의 적용을 받는 기관, 즉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지만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교육·보육서비스를 선택적 교육·보육비로 명명하였으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또는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선택적 교육·보육비의 일부로 분류된다.

라.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 지원 정책

본 연구에서 ‘전 계층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은 4차년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 이후 정부의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통칭하는 것이다(최효미 외, 2016: 22). 본 연구는 최근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보육”은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 및 양육수당지원이 가구소득에 상관

없이 전 계층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2012년 이후의 정책 변화를 “전 계층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으로 명명하였다(최효미 외, 2016: 22). 한편, 2013년도 이후 모든 연령에 대해 지원이 확대된 정책 변화는 “전 계층 전 연령 무상 유아교육·보육 지원 정책”으로 표기하였다(최효미 외, 2016: 22). 또한, 가구의 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정책, 즉 가정 양육수당 등을 제외하고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비용 지원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등의 용어를 병행하여 사용하였다(최효미 외, 2016: 23).

II. 연구 배경

1. 선행 연구 고찰

가. 영유아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영유아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지원은 2000년대 들어 그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금액이 점차 확대되어 오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0~2세와 5세에 한해 가구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2013년도에는 전 연령 전 계층에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함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되면서, 영유아를 위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논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이에 영유아 무상 유아교육·보육 정책 효과성에 관한 논의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 목표와 연관된 연구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적 최근의 정책의 변화에 대한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의 효과성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교육·보육비용 경감 효과 및 형평성 제고 효과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정책이 영유아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미경·조민호(2014)는 한국복지패널 1차~7차(2006년~2012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5세 이하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구 중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는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정책이 자녀 보육비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들은 분석 결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과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정책이 자녀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전 연령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이 실시되기 전인 2013년도 이전 자료만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대상을 차등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기의 수혜 대상 가구만으로 한정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반면, 윤희숙(2014)에 따르면, 2004년과 2012년 기간 동안 취업모와 미취업모

의 보육비용 차이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예 공적 지원을 포기하고 사보육 시장을 이용하거나 공적지원과 사보육을 병행해 사적부담이 증가하는 취업모 가구가 광범위하게 발견된다고 하였다. 특히 사적 부담의 증가나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비용의 차이는 고학력 여성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윤희숙(2014)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 지원 정책이 취업 여부를 고려하여 이루어져 취업 여성의 보육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할 뿐 아니라,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횡단면 자료인 2004년 전국보육실태와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 2013년에 전면 시행된 전 계층 무상 교육·보육의 효과를 관측하기에는 관측시점이 짧고, 표본 특성의 차이에 의한 효과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동일한 자료인 201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를 활용하여 DID 분석을 수행한 연구인 김은정·이혜숙(2016: 94)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 효과는 자녀의 연령, 즉 영아기와 유아기에 따라 다른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영아기의 보육료 지원 확대는 직접적인 가계지출에서 시설 이용 및 교육 비용의 감소효과를 가져온 반면, 유아기의 지원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도 유아기의 보육료 지원은 비취업모 가구에서 정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 또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이 일부 연령(0-2세, 5세)의 전 소득 계층으로 확대된 2012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3)은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 지출 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11년과 2012년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2012년 누리과정 이용 가구의 기관 이용비용 절감과 절감액에 대한 만족도, 절감액의 주요 사용처 등에 관해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누리과정 도입 후 기본 교육·보육비와 기관 이용비용 총액은 절감 되었으며, 대도시지역, 고소득 계층, 2011년에는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에서 절감액 수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절감액 수준이 더 낮은 저소득층이나 중소도시·읍면 지역 거주자, 2011년도 교육·보육비 지원 대상 가구가 오히려 가계 경제에 더 도움이 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3)은 정책 방향과 달리 누리과정 교육·보육비 지원은 소득 계층에 따른 차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안현미·박애리·남은이(2013: 77~115)는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는 보육료를 지출하지 않는 등 효과가 있었으나, 특별활동비 및 기타 경비로 인해 무상 보육정책의 효과성이 상쇄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특별활동은 학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일률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유아 가구의 25%는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분석 자료로 2014년 자료까지를 분석한 최효미 외(2016: 76)는 일부 연령(0-2세, 5세) 전 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2012년에는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감소가 관찰되지만, 이후 전 연령 전 소득 계층으로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 내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된 2013년도에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효미 외(2016: 76~82)에 따르면, 2012년도에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유지되던 연령, 즉 3세와 4세의 경우에도 교육·보육비용의 평균값이 감소하는 등 정책 지원의 효과가 크게 관측되었지만, 정작 모든 연령으로 지원이 확대된 2013년에는 영유아 모든 연령에서 이러한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러한 교육·보육비용의 증가는 사교육 이용의 증가라기보다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의 급증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효미 외(2016: 88)는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가계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 계층별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분산의 차이를 줄이는 데에는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교육·보육비용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유아 가구들 사이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이용비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다소 제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영유아 가구의 정책 요구 및 만족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은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영유아 가구의 부모들은 현행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김은설 외(2016: 394~398)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3~5세 누리과정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43.7%, '0~2세 보육료 지원'이 24.1%, '가정 양육수당'이 16.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2.5%가 만족한다(만족+매우 만족)고 응답

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는 47.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에게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보육·교육비 지원을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19.5%,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해야한다는 응답이 8.0%였다. 비교되는 정책이나 비교 집단이 애매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치를 절대적인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영유아 대상 무상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영유아 가구의 만족도는 낮지는 않은 수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최효미 외(2016: 173~180)에서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3.4%,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4.9%로, 영유아 가구 부모들의 교육·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높은 지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영유아 가구 부모들은 지금과 같은 전 계층에 대한 동일한 지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61.6%가 찬성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긴 했으나, 취약 계층에만 지원해도 괜찮다는 의견 24.7%, 특정 연령만 지원해도 괜찮다는 의견 13.7%로, 지원 대상이나 금액의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현미·박애리·남은이(2013: 93~96)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평균 3.94점/ 5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유아에 비해 영아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취업모에 비해 비취업모의 만족도가 높았고,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자가 다른 유형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재무·송영선(2012: 387~389)은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보내고 있는 부모들은 대체로 보육료 지원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또 다른 주요 정책 관계자인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료 지원 정책에 불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무·송영선(2012: 389)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78.5%가 보육료 지원 정책에 만족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의 4.9%만이 보육료 지원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무·송영선(2012: 390)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보육료 지원 정책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금전적 지원으로 인해 부모들이 무분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아동의 정서적 측면은 물론 영아 전담 교사를 고용해야 하는 등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가장

7) 전체 응답자는 부모 550명, 원장 41명이었다.

크다고 지적하였다. 즉, 보육료 지원 확대는 영유아 부모들의 만족도 제고에는 긍정적 기여를 하였으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의 만족도는 오히려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3) 시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효과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돌봄 시간과 일가정 양립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사현·주은선·홍경준(2013: 215)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및 일가족 양립의 가능성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실제 변금선·허용창(2014)은 2004년과 200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가 미취학 자녀가 있는 중하위 소득 가구 여성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고, 돌봄과 가사시간은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육료 지원 확대는 미취학 자녀가 있는 전체 여성의 노동시간에는 여전히 음의 효과가, 돌봄과 가사 시간에는 양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공급구조와 서비스 품질관리,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 정책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 전국보육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김정호·홍석철(2012: 13)도 보육료 지원은 영아모와 유아모의 경제활동참여율을 각각 25.5%p와 11.1%p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 소득 계층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났는데 고소득층에서 더욱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안현미·박애리·남은이(2013: 118)는 서울시 영유아 가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보육료 지원 확대 실시 이후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1.7%가 일을 그만두거나(2.2%), 일을 시작(9.5%)한 경우였으며, 계속 일하는 경우 29.3%, 계속 일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59.0%라고 보고하였다. 모의 취업여부 변화는 유아를 둔 경우(8.5%)에 비해 영아를 둔 경우(10.7%)에 일을 시작한 경우가 많았으며, 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시작한 비중이 높다고 하였다. 안현미·박애리·남은이(2013: 119)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취업중단 혹은 재취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55.6%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으며, 전체 응답자 중 11.7%가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취업상태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할 때, 전체 응답자의 약 6.5%가량이 보육료 지원으로 취업상태가 변화했다고 보았다. 이는 보육료 지원이 여성 취업을 일부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김은정·이혜숙(2016: 97~105)은 모의 취업유무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영유아기 정책지원 확대가 모의 취업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모의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영유아기 정책지원 확대는 모의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모의 취업에 미친 영향은 소득 구간에 따라 약간씩 다른 효과를 보여, 영아기의 경우 상위소득 계층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이, 유아기의 경우에는 하위소득에서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석진(2014: 44) 또한 보육지원이 취업모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형태로 지원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하였다.

4) 출산을 제고 효과

김정호·홍석철(2012: 14~16)은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추가 자녀 출산 의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료 지원은 추가 자녀 출산 의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특히 보육료를 전액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도 추가 자녀 출산의사가 낮았으며, 소득 계층 간의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과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인 김은정·이혜숙(2016: 106~126)에 따르면, 영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료 지원 정책의 변화는 추가 출산 계획과 보육료 전액지원 시 추가 출산 의향을 각각 0.2%p와 2.6%p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유아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정책의 변화는 향후 자녀 출산 계획과 출산의향을 각각 0.3%p, 7.7%p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정·이혜숙(2016: 106~126)은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효과는 자녀의 연령 및 소득 구간 등에 따라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하였는데, 영아기 자녀가 있는 상위소득 계층은 추가 출산 계획에 양의 효과가, 유아기 자녀가 있는 상위소득 계층은 음의 효과가 있었다. 한편, 추가 출산 의향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가진 집단은 영아기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집단과 유아기 자녀가 있는 하위소득 집단이었다.

우석진(2014: 38)도 보육료 지원 정책이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보이며, 보육료 지원이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우석진(2014)은 특히 소득 효과의 대리변수인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 총생산과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통계변수인 조혼인율을 통제한 추정모형으로부터, 보육료 예산이 1,000억원 증가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0.0432만큼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분석 기간(2001년~2012년) 동안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평균 보육료 예산 추정치(1,483억원)를 적용하면, 동기간 동안 보육료 지원으로 합계출산율은 평균 5.1% 증가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우석진(2014: 39)은 보육료 지원 정책이 출생아 수의 증가에도 의미 있는 증가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5) 그 외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따른 영향

이 외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무상 교육·보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보편적 복지로의 확대가 타당한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김사현·주은선·홍경준(2013)은 전 연령 전 소득 계층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인해, 모든 영유아 가구가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대기자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하락이 촉발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민연경·장한나(2015: 111)도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은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영아 부모의 이용이 증가하는 등 영유아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윤정(2014)은 비용 측면이 아닌 탈가족화, 성별화 측면에서 볼 때 무상 보육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정부는 현재와 같은 보육비 지원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육지원과 보육시설 공급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와 아동수당 제도의 수정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신하영(2013)은 영유아 무상 교육·보육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면 무상 교육·보육을 실시하기 이전에 교육 시스템의 정비 및 교육 인프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지원 대상을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 최성은(2011)도 보육료 지원 정책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보육지원을 통한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여성 노동공급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적 지향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을 고려하여 잘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6) 종합 및 시사점

이상의 선행연구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II-1-1>과 같다. 이에 따르면, 분석 자료와 분석 방법 등에 따라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는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다만 전반적인 경향성에서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높은 만족도와 지지에 비해, 가계부담 완화 효과는 제도 시행 초기에 국한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모 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견되었다. 이 외에 출산율에 대한 효과도 모호하여, 최근 출산율의 소폭 증가가 보육료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른 것인지 입증하기 어렵고, 후속 출산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현행 전 계층 전 연령에 대한 무상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실행 단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유아학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등으로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지원이 확립되면서,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가계 부담 절감 효과가 커지거나 맞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의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와는 달리, 실제로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활동 증가 혹은 유치원 수업료 부담이 여전하여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용비용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 문제 등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이용비용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의 모색이 시급히 요구된다.

〈표 II-1-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명(연도)	분석 내용	분석 자료	주요 분석 결과
김사현·주은선·홍경준(2013)	-여성경제활동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전문가조사	-여성경제활동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대기자 증가 및 질적 하락 발생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음
김은설 외(2016)	-정책 만족도 및 지지도	2015전국보육실태조사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지가 높음
김은정·이혜숙(2016)	-가계부담경감 -여성경제활동 -출산율 제고	2009 및 2012전국보육실태조사	-영아기 보육료지원 확대는 시설 이용 및 가계지출 감소효과가 발견되나, 유아기 보육료 지원은 제한적 효과가 발견됨

(표 II-1-1 계속)

저자명(연도)	분석 내용	분석 자료	주요 분석 결과
			-영유아기 지원 확대는 모 취업 및 근로시간에 유의한 영향이 없으나, 소득 구간에 따라 약간 다른 효과가 관측됨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계획 및 추가 출산 의향을 증가시킴 -2012년 이전 자료 활용한 연구
김정호·홍석철 (2012)	-여성경제활동 -출산율제고	2009 전국보육 실태조사	-영유아를 둔 모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며, 특히 고소득층에서 큰 효과가 있음 -자녀의 추가출산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2012년 이전 자료 활용한 연구
민연경·장한나 (2015)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신문 보도 자료에 대한 사회연결망 분석	-기관 이용 필요성이 낮은 영아 부모의 기관 이용률이 증가, 맞벌이가구의 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부작용 발생
박미경·조민호 (2014)	-가계부담경감	한국복지패널	-보육비용 경감에 긍정적 효과 -2012년 이전 자료 활용한 연구
변금선·허용창 (2014)	-일가정 양립 지원	2004 및 2009 생활시간자료	-보육료 확대가 여성의 노동시간에는 음의 효과, 돌봄과 가사시간에는 양의 효과를 보임
신하영 (2013)	-보편적복지의 당위성	법령 및 예산 분석	-무상 교육·보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사전에 교육시스템 정비 및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선별적 복지를 유지하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봄
안현미·박애리·남은이(2013)	-만족도 -가계부담경감	실태조사 (서울시 거주 부모에 국한)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 -보육료 지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특별활동비 및 기타경비로 인한 효과 상쇄 -보육료 지원은 여성의 취업을 일부 지원하는 효과가 있음
우석진 (2014)	-여성경제활동 -출산율제고	취업률,출산율 등 거시 지표 자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

(표 II-1-1 계속)

저자명(연도)	분석 내용	분석 자료	주요 분석 결과
윤희숙 (2014)	-모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 비용	2004 및 2012 전국 보육실태조사	-모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비용은 소폭 감소 -취업모의 사보육 이용이 증가하는 부작용 발생 -2012년 이전 자료 활용한 연구
이윤진·이정원· 김문정(2013)	-교육·보육 지출비용의 변화	실태조사	-기관이용 총액은 절감되었으나, 고소득층에서 절감효과가 큼 -2012년 이전 자료 활용한 연구
이재무·송영선 (2012)	-만족도	실태조사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함 -2012년 이전 자료 활용한 연구
전윤정 (2014)	-탈가족화 및 성별화	담론분석	-탈가족화 및 성별화를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최성은 (2011)	-여성경제활동	노동패널조사 (10차년도)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을 유인하지 못하지만, 자녀 양육부담 완화 및 여성 노동공급 활성화에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는 있음 -2012년 이전 자료 활용한 연구
최효미 외 (2016)	-정책 지지도 -가계부담완화 -형평성제고	-실태조사 -노동패널조사 (5-17차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지원에 대한 높은 찬성도를 보임 -가계부담완화효과는 2012년도에 국한됨 -소득에 따른 지출비용의 편차는 감소, 형평성은 제고됨

주: 제1저자의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였음.

나.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 지출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 총 교육·보육비 지출 결정 요인

지금부터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가구의 특성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김지경(2005)은 노동패널조사 5차년도(2002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 비용 결정 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육시설 이용률에는 자녀수,

거주 지역, 가구원 수, 가구소득과 모의 교육수준과 취업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지출 총액에는 자녀수, 거주 지역, 가구소득, 모의 교육수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가구의 지출 금액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기준 시점인 2002년도에는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이용률이 낮기 때문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시설을 통한 자녀보육보다는 가정 내 직접 보육 가능성이 높음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김지경(2005)과 유사한 연구로, 3년 후인 노동패널조사 8차년도(2005년) 자료를 활용한 연구인 박선옥(2008)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 보육비는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가 취업자인 경우,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고, 3세대가구보다 2세대이하 가구일수록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모이거나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가구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비교적 저렴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였다. 즉, 김지경(2005)과는 달리 박선옥(2008)은 동일한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이지만 시점의 차이로 인해, 가구 내 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육서비스 이용 지출 비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⁸⁾.

몇 년 후 별도의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박선옥(2011)에서도 자녀의 연령과 성별, 모의 연령과 학력, 모의 고용형태, 가구소득, 주택 유형, 거주 지역, 가구 형태 등이 미취학 자녀의 보육서비스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녀 당 평균 보육 비용은 37만4천원으로 가구소득의 약 9%수준⁹⁾인데, 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모의 학력, 모의 고용형태, 미취학 자녀의 수, 가구 소득, 거주 지역, 가구 형태,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 등이었다.

한편,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5)에 따르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발생하는 비용(누리과정 지원금 제외)은 기관 설립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2014년 동일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8) 물론 두 연구 사이에는 분석 방법의 차이도 있으며, 분석 대상 또한 김지경(2005)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반면, 박선옥(2008)은 미취학 영유아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도 있다.

9)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시점은 2009년도 봄이었음.

이용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 따르면, 기본비용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모두 사립 유치원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으며, 국공립 유치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해당 자녀의 사교육비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인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은 영유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가구 단위로 지출하는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았다. 한편, 4차년도 연구인 최효미 외(2016: 140)는 교육·보육비용 추정을 위한 선단계로 수행된 토빗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아동의 연령, 출생순위, 일부 소득계층 구간, 지역규모 등에 따라 총 교육·보육비용이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2) 선택적 교육비 및 사교육비 지출 결정 요인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이 아닌 일부 비용, 특히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정규 교육·보육과정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교육·보육비용의 지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양미선 외(2013)와 양미선 외(2014)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아닌 선택적 교육비 중 어린이집 특별활동 비용과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비용 지불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미선 외(2014: 98)에 따르면,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확률과 특별활동비를 10만원이상 지불할 확률은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혹은 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확률은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4세 유아인 경우, 취업모인 경우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을 10만원이상 지불할 확률은 모가 취업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양미선 외, 2014: 121). 이러한 결과는 기관 유형에 따라 방과후 특성화 활동 참여 여부 및 참여 비용 결정 요인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로는 비교적 최근 연구인 이경선·김주후(2010)와 백학영·안서연(2012), 최효미 외(2016)의 결과를 주목해 볼 만하다.

이경선·김주후(2010)는 2007년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6세 이하의 유아에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을 살펴본 연구이다. 이경선·김주후(2010: 29)는 유아의 연령이 높고 가구내 유아 수가 적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규모가 높으며, 가구 특성 중에서는 가구주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 실시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백학영·안서연(2012: 23~36)은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지출 사이의 보다 정교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분석 결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중산층과 상층 가구에 비해 적지만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소비비목을 살펴본 결과,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른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 항목에 제약이 있어,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 제약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빈곤층 가구에서 사교육비의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실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이 연구는 분석 대상이 영유아 가구에 국한하지 않고 대학교 재학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 영유아 가구만의 특이한 현상을 포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가장 최근 연구인 최효미 외(2016: 142)에 따르면, 영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은 아동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며, 오히려 취업모의 경우에는 5%유의수준에서 미취업모에 비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간제 사교육비 지출이 줄었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영유아 1인당 사교육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도 연구인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의 분석 결과에서는 영유아의 사교육비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가 높아지며, 특히 영아에 비해 유아의 경우 사교육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 종합 및 시사점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지출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략히 요약하면, 대체로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보육비 뿐 아니라 사교육비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보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유아 1인당 지출하게 되는 교

육·보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혹은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가구에 비해 교육·보육비에 대한 부담이 큼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편적 복지로서의 무상 유아교육·보육 혹은 가정양육수당 지원과 별개로 취약 집단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1-2〉 유아학비·보육비용 지출 결정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저자명(연도)	분석 대상 및 분석 내용	분석 자료	주요 분석 결과
김지경 (2005)	-초등학교 3학 년이하 자녀 -보육시설 이용 률 및 지출비 용결정요인	5차(2002년) 한국노동패널	-보육시설 이용률에는 자녀수, 거주지 역, 가구원 수, 가구소득과 모의 교 육수준, 모 취업여부가 영향을 미침 -이용비용에는 자녀수, 거주지역, 가구소득, 모의 교육수준이 영향 을 미침
박선욱 (2008)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보육비용지출	8차(2005년) 한국노동패널	-보육비용은 어머니 연령이 증가할 수록, 취업모, 자녀수가 많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서울 및 경기도 거주자, 2세대 이하 가구일수 로 높아짐
박선욱 (2011)	-영유아 가구 -보육비용지출	실태조사	-자녀의 연령과 성별, 모의 연령과 학력, 모의 고용형태, 가구소득, 주택유형, 거주지역, 가구형태 등 이 영향을 미침.
백학영·안서연 (2012)	-대학이하자녀 -가구소비지출 에서 사교육비 지출	3차(2007년), 4차(2008년) 한국복지패널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중산층과 상층가구에 비해 적지만,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큼 -사교육비 비중의 증감에 따라 조 정되는 소비 비목은 빈곤층의 경 우 비탄력적인 특징을 보임
양미선 외 (2014)	-영유아 가구 -어린이집 특별 활동과 유치 원 특성화 프 로그램 참여 여부 및 참여 비용	실태조사	-어린이집 특별활동 참여 여부와 특별활동 이용비용이 10만원 이상 일 확률은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민간어린이집 혹은 가정어린이집 에 다니는 경우에 높음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 참여확률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4세 유 아인 경우, 취업모와 중소도시에 거 주하는 경우에 높으며, 비용은 모의 취업여부만 유의한 차이가 있음

(표 II-1-2 계속)

저자명(연도)	분석 대상 및 분석 내용	분석 자료	주요 분석 결과
이경선·김주후 (2010)	-6세 이하 유아 -사교육비 지출	3차(2007년) 한국복지패널	-연령이 높고 유아수가 적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 모가 큼 -가구주의 학력과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유아의 사교육 실시 비율이 높음
이 윤 진 · 이 규 림 · 조 아 라 (2015)	-영유아 가구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비용의 변화	실태조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서 소요되는 기본비용과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은 모두 사립 유치원에서 상승폭이 컸음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감소한 비용 은 사교육비로 많이 사용되었으 며,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증 가폭이 컸음
이 진 화 · 박 진 아 · 박 기 원 (2015)	-영유아 가구 -총 교육·보육 비용 결정요인 -사교육 비용 결정요인	실태조사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역 규모가 클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함 -사교육비는 아동의 연령이 많을수 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함
최효미 외 (2016)	-영유아 가구 -총 교육·보육 비용 결정요인 -사교육 비용 결정요인	실태조사	-아동의 연령, 모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시간제 사교 육비용이 증가, 취업모와 모의 학력 이 높은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시간제 사교육비가 감소

주: 제1저자의 성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 연도순으로 제시하였음.

2. 국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개관

이 절에서는 국내의 영유아 가구 대상 교육·보육비용 정책에 대해 개관한다. 영유아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는 연구자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앞서 용어 정의에서 제시한 범주의 교육·보육비용과 직접적 상관이 있는 비용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은 논의의 편의상 2017년 기준 정책 현황을 제시하였으나, 무상 유아교육·보육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가정 내 양육수당은 그

간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향후의 영유아 가구 대상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을 중심으로 정책 변화 추이를 정리하였다.

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 비용 지원

1) 0-5세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정책

영유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제도 및 법령의 변화는 지난 차수 연구인 최효미 외(2016: 37~47)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의 변화 등 지원 체계의 변화를 간략히 개관함으로써, 그 간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기초와 방향성에 대해 유추해보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해 차등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취학 1년 전인 5세의 경우에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해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즉, 4세이하의 영유아에 비해 5세에 대한 지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좀 더 큰 폭으로 이뤄져왔다.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점차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매해 조금씩 확대되었다. 2009년 7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에서 영유아 가구소득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2011년에는 영유아 가구소득 기준 소득 100%이하에 대해 100%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이 확대되었다. 2012년에는 0-2세와 5세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가구의 소득 수준에 무관하게 모두 지원되었으며, 2013년에는 3-4세까지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보편적 복지로서의 유아교육·보육이 완성되었다.

〈표 II-2-1〉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03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 100% 지원 ·차상위계층은 40% 지원					·저소득층 무상
2004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 100% 지원 ·차상위계층은 60% 지원 ·소득50%이하는 40%지원					
2005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 100% 지원 ·차상위계층은 80% 지원 ·소득50%이하는 60% 지원 ·소득60%이하는 30% 지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 80% 무 상
2006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소득50%이하는 70% 지원 ·소득70%이하 40% 지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 90% 무상 ·농어촌은 100% 무상
2007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소득50%이하는 80% 지원 ·소득70%이하는 50% 지원 ·소득100%는 20% 지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기준 100% 무상
2008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법정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소득50%이하는 80% 지원 ·소득70%이하는 60% 지원 ·소득100%는 30% 지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2009.7	·영유아가구소득 기준 ·소득하위50%이하 100%지원 ·소득60%이하 60% 지원 ·소득100%이하는 30% 지원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및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인정액 기준 상이 ·2010년은 맞벌이가구에 대한 지원 신설					·영유아가구소득 기준 100% 무상

(표 II-2-1 계속)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11	·영유아가구소득기준 소득하위 100%이하는 100%지원			·영유아가구소득기준 소득100%이하는 100% 지원		·영유아가구소득 기준 100% 무상
2012	·소득 무관 100% 지원					·소득 무관 100% 지원
2013~ 2017	·소득 무관 100% 지원					

- 주: 1) 2010년 이전은 보육료 지원 기준이지만 원칙적으로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 기준에 차이가 없음. 소득 기준이 금액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월로 환산함.
 2) 아동의 연령은 보육연령을 기준으로 하며, 0-4세는 교육·보육료 차등 지원 기준, 5세는 무상 교육·보육 지원 기준임.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기준이며, 기본 보육료 지원은 제외함.
 3) 2009년 6월까지의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기준, 2009년 7월부터는 영유아 가구 소득 기준임.
 4) 모든 연도에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이뤄졌으므로, 표에는 이를 별도 표기하지 않음.

자료: 표 작성에 활용된 참고 문헌은 지면 관계상 각주로 처리¹⁰⁾.

지원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유아학비·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는 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원 금액도 조금씩 증액되는 양상을 보였다. 유아학비·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의 인상은 연령에 따라 해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였는데, 0세와 1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준 중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지원 단가는 고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3세와 4세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지원이 시행된 시기인 2013년도를 기점으로 지원 단가가 22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2017년까지 지원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정부 지원 단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 지원 단가를 보이는 반

10)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아학비 지원계획. p.7~12 /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아학비 지원계획. p.1~13.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학비 지원계획. p.1~7 / 교육부(2014). 유아학비 지원계획. p.1~7 / 교육부(2015). 유아학비 지원계획. p.1~7 / 교육부(2016). 유아학비 지원계획. p.1~7 / 교육부(2017). 유아학비 지원계획. p.1~7 / 보건복지부(2003). 보육사업안내. p.94~99 / 보건복지부(2004). 보육사업안내. p.103~111 / 고용노동부(2005). 2005년에 달라지는 보육정책(영유아보육료 지원). 홈페이지 자료 / 보건복지부(2006). 보육사업안내. p.179~185 / 보건복지부(2007). 보육사업안내. p.295~303 / 보건복지부(2008). 보육사업안내. p.257~266 /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228~232 /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p.249~257 / 보건복지부(2011). 보육사업안내. p.253~258 /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p.295~299 / 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 p.283~294 / 보건복지부(2014b). 보육사업안내. p.307~310 /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p.269~272 /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p.285~288 /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p.307~315.

면, 국공립 유치원은 유치원 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액을 감안하여, 영유아 가구 대상 지원 단가는 6만원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영유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 제도임과 동시에 누리과정(즉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표 II-2-2〉 유아학비·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추이

단위: 천원

년도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만3세	만4세	만5세
2011			298	197	177	177	59		
2012						200	59(30)*	59	59
2013	394	347	286						
2014									
2015	406	357	295						
2016	430	378	313	220	220	220	60	60	60
2017*	430 (344)	378 (302)	313 (250)						

주: 1) 보육료 지원 금액은 정부지원시설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12년 5세 누리과정 실시, 2013년부터 3-5세 누리과정 실시.

2) 2012년에는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지원 단가가 달랐으며, ()는 공립 유치원 지원금 기준임.

3) 2017년 어린이집 영아반의 맞춤형 도입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 단가가 달라, 종일반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는 맞춤형 지원 단가.

자료: 1)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아학비 지원계획. p.7.

2)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아학비 지원계획. p.2.

3)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학비 지원계획. p.2.

4)교육부(2014).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5)교육부(2015).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6)교육부(2016).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7)교육부(2017). 유아학비 지원계획. p.1.

8)보건복지부(2011). 보육사업안내. p.257~258.

9)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p.299.

10)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 p.286.

11)보건복지부(2014b). 보육사업안내. p.310.

12)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p.272.

13)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p.288.

14)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p.308.

2017년 기준 어린이집 종일반 및 사립 유치원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 43만원, 1세 37만8천원, 2세 31만3천원이며, 3-5세는 22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2017년에는 2세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어, 맞춤반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는 0세 34만4천원, 1세 30만2천원, 2세 25만원이 지원된다. 맞춤반은 종일반에 비해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원 단가도 적은 것으로, 대신 월 15시간의 긴급보육 바우처를 부여하여 어린이집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2) 보육료 상한제 및 원비 상한제

정부는 영유아 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 근거하여, 매년 보육료 수납 한도액 범위 안에서 어린이집 보육료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78). 이는 뒤집어 얘기하자면, 정부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보육료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상한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영유아 가구 및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이외에도 어린이집이 추가적인 비용을 영유아 가구에 부과함으로써 가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 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문·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해당하는데(보건복지부, 2017: 78), 현행 보육료 지원 기준상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차액 보육료를 수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 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지만(보건복지부, 2017: 81),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보육료 상한제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최성은, 2016: 25). 특히,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라 할지라도, 영아(만0~2세아)에게는 차액부담이 없으며, 유아(만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보건복지부, 2017: 81),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 부과에 있어 실질적으로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매년 1월까지 결정하여 시달하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부모 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상 수납한도액이 동일하다(<표 II-2-3> 참조). 2017년 기준 민간 어린이집의 3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최저 27만원(경북, 제주)에서 최대 30만3천원(서울)이며, 4-5세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최소 25만3천원(경북)에서 최대 28만8천원(서울)이다¹¹⁾.

11) 각 시도별(2017). '2017년도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수납한도액 공고'를 참조하여 작성함. 가정 어린이집의 수납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민간 어린이집 수납한도액과 다른 지역이 있으나, 가정 어린이집 이용 유아의 수가 극히 적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제시하지 않음.

〈표 II-2-3〉 보육료 수납액 및 민간어린이집 수납 한도액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부모 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민간어린이집 수납한도액	
	종일반	맞춤반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최저	최대
만0세	430	344	-	-	연령별 정부지원 보육료와 동일 (추가수납불가)	270
만1세	378	302	-	-		
만2세	313	250	-	-		
만3세	220	-	-	시도지시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만4세	220	-	-	차액수납가능		
만5세	220	-	-	-	253	288
장애아보육료	438	-	-	-	-	-

- 주: 1) 부모 부담 보육료는 보육료 지원금 이외의 금액의 수납 기준을 의미하며, ‘-’는 수납이 불가함을 의미함.
 2) 민간 어린이집 유아반의 수납한도액은 정부지원 부모 보육료와 각 시도별 차액보육료 수납한도액을 더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각 지역별 수납한도액을 비교하여 최저액과 최대액을 표기함.
 3) 장애아 보육료는 연령에 따른 보육료 차등 없이 모든 연령의 장애아에게 438천원을 지원함.
 4)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는 부모 지원이 아닌 기관 지원으로 제시하지 않음.
 자료: 1)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p.81.
 2) 각 시도별(2017). ‘2017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를 취합한 후 참조하여 작성함.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는 달리 1986년부터 원비 자율화를 통해 유치원 원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최근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이 전 계층 전 연령에 시행됨에 따라 유치원 원비의 지나친 인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치원 원비 인상을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지만(최성은, 2016: 25), 실질적으로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비해 수업료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가 용이한 편이기는 하다. 유치원의 원비는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원비)에 대한 규정에 의거,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원비를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7년 유치원에서 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법정기준은 1.0%로,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한 인상률 수준이다(교육부, 2016. 11. 2 보도자료¹²⁾).

12) 교육부(2016. 11. 2 보도자료), 2017년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 고시.

3)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어린이집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료 상한제가 적용되는데다 운영시간이 7:00~19:00로 되어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어린이집에서 운영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보육료 외의 기타 비용을 부풀리거나, 특별활동의 실시를 통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는(최성은, 2016: 29; 서수정, 2012: 4)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필요경비에 대한 가이드를 통해, 과도한 비용 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는 일정 범위 내에서 필요 경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현물 구입비용 및 특별활동·현장학습 등 실비 성격의 비용을 영유아 부모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않은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84).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상해보험료, 피복류구입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등 총 7개 항목으로, 각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상해보험료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 의사에 따라 수납하도록 하여, 어린이집의 일괄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입소료 및 재원료 등을 원칙적으로 수납 금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82). 또한, 차량 운행비의 경우에는 인건비 혹은 인건비 외 차량 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하는 것을 권고하여 학부모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 소모품비의 경우에도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83).

한편, 특별활동 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영유아보육법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 30조의 2를 통해, 과도한 특별활동 실시를 규제하고 있다. 먼저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하며,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원칙적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87).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87). 또한,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서 특별활동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활동으로 수납하는 비용은 다

른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87). 또한, 어린이집의 필요 경비 및 특별활동 비용은 시도별로 수납 한도액을 정해서 해당 비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별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은 <표 II-2-4>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II-2-4〉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 원칙 및 수납 한도액

단위: 천원

구분	수납 주기	수납 원칙	시도별 수납 한도액	
			최저	최대
입학 준비금	연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55	100
상해보험료	연	부모가 선택한 항목 비용만 수납		
특별활동비	월	아이행복카드로 수납, 부모 동의서, 대체 프로그램 마련, 걱정 관리방안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국공립:44 그 외:49	90
현장학습비	분기	-	30	60
차량운행비	월	기사 인건비, 인건비 외 차량 관리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15	40
행사비	연	-	60	150
아침·저녁 급식비	월	-	1식	34.9
기타 시도특성화비용	시도지사 자체결정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규정을 준용	10	38
개인용 소모품비	-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

주: 1) 서울은 각 자치구별로 기준이 각기 달라 제외하고 비교함.

자료: 1)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p.82~87.

2) 각 시도별(2017). '2017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를 취합한 후 참조하여 작성함.

유치원의 경우에는 입학금, 급식비 및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이 유아학비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다(교육부, 2017: 6). 따라서, 유치원의 필요경비(기타경비)는 원비 상한제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이후에 진행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비용을 유아학비에 포함시켜 수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교육부, 2017: 6).

한편,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방과후 과정 중에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17: 6).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학부모 부담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가급적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도록 하고 비용은 정부 지원금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17: 7).

또한, 1일 가능한 특성화 활동을 유아 1인당 1개 1시간 이내(주 5개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코딩교육'은 실시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17: 24). 또한,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비는 프로그램별로 반드시 유아 1인당 비용(강사비, 교재비)을 책정해야하며, 학부모 동의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정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지(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17: 26). 이와 함께 유치원의 경우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부담금 정산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경상남도교육청, 2017: 28).

〈표 II-2-5〉 유치원 필요 경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구분	수납 원칙
입학금	유아학비에 포함되어, 원비 상한 적용
특성화 프로그램	1일 가능한 유아 1인당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제한 아이행복카드로 수납, 부모 동의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정산 내역 학부모 공지, 대체 프로그램 마련, 적정 관리방안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유아학비에 포함되어, 원비 상한 적용

자료: 경상남도교육청(2017). 201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4)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

영유아 가구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시간 연장형 보육,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 지원, 휴일보육 지원, 맞춤형 긴급 보육 바우처 등이 있다. 이러한 비용 지원은 돌봄 취약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수혜자가 소수에 국한되는 지원 정책들이다.

먼저, 시간 연장형 보육은 월 18만원(장애 영유아 24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 영유아 기준 시간당 3천원, 장애 영유아의 경우 시간당 4천원을 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시간 연장형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한해 0-5세 보육료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4시간 보육료 지원은 야간 근무, 한부모 등 24시간 보육을 불가피하게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으로 2017년 기준 0세아는 64만5천원을 지원한다. 이는 종일반 0세아에 비해 21만5천원이 많은 금액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1세는 56만7천원, 2세는 46만9천5백원, 3-5세 유아는 33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휴일보육은 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지원 일 보육료의 150%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맞춤반 이용자의 경우에는 종일반에 비해 이용시간이 짧은 만큼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이 적은 편인데, 대신 맞춤반 이용 아동이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긴급 보육바우처를 월 15시간까지 지원하여,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이후의 방과후 과정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 원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 5만원,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월 7만원을 지원한다.

〈표 II-2-6〉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 비용 지원(2017년 기준)

기관유형	서비스 내용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	·일반 3천원, 장애 4천원 지원 ·일반18만원(장애24만원)지원 한도액 ·기준액×100% 지원 ·월 60시간 한도
	야간보육료	·0-5세보육료 단가 ·주간어린이집을 이용안하는 경우 한함
	24시간 보육	· 0세 645천원, 1세 567천원, 2세 469.5천원 지원 · 3-5세는 330천원 지원 ·야간근무, 한부모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아동에 한함
	휴일보육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 ·휴일어린이집지정 기관인 경우 일보육료×100%
	맞춤반 (긴급보육바우처)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지원 ·맞춤반 이용 아동이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9:00~15:00)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국공립 유치원 월 5만원 ·사립 유치원 월 7만원 ·유치원 원아가 방과후 과정을 이용하고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

자료: 1) 교육부(2017). 유아학비 지원계획. p.1~8.

2)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p.307~326.

나. 가정 내 양육에 대한 비용 지원

1)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표준보육과정 혹은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 지원 체계로 인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일어나면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가정 양육수당이 2009년 7월 도입되었으며, 이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2-7〉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변화 과정(일반가구기준)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 24개월미만	24개월 ~ 36개월미만	36개월이상 ~ 84개월미만
2009.7	·차상위 계층 이하 ·월 10만원 지원			
2010				
2011	·차상위계층이하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이하 ·월 15만원	·차상위계층이하 ·월 10만원	
2012				
2013 ~ 2017	·소득무관 ·월 20만원	·소득무관 ·월 15만원	·소득무관 ·월 10만원	

주: 84개월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은 제외.

자료: 1)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245. 2)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p.269.
3)보건복지부(2011). 보육사업안내. p.271. 4)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p.313.
5)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p.301~302. 6)보건복지부(2014b). 보육사업안내. p.325.
7)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p.284. 8)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p.300.
9)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p.327.

유아학비·보육료와는 달리 가정 양육수당은 영유아의 월령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가정 양육수당이 처음 도입된 것은 2009년으로, 도입 초기에는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가정에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11~2012년에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대상은 36개월 미만 영유아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다만, 소득 기준은 차상위 계층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차등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후 0-2세와 5세의 유아학비·보육료의 전 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 2012년도

에도 가정 양육수당은 여전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후 전 연령 전 계층으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이뤄진 2013년에는 가정 양육수당도 전 연령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이후 가정 양육 수당의 지원 수준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은 월 10만원으로, 이전의 지원 금액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정 양육 수당 대상별 지원 금액은 월령과 아동 특성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데, 2017년 기준 일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 10만원이다. 지원 대상에 따라 농어촌의 경우에는 12개월 미만은 20만원으로 동일하나, 12~24개월 미만은 17만7천원으로 일반 영유아에 비해 2만7천원이 많으며, 24~36개월 미만은 15만6천원, 36~48개월 12만9천원, 48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월령에 따라 차등이 있다. 한편, 장애 아동 수당은 36개월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20만원으로 월령에 따라 차등이 없으며 일반 아동에 비해 지원 금액이 큰 반면, 36개월 이상은 10만원으로 일반 유아와 동일한 수준이다.

〈표 II-2-8〉 가정 양육 수당 대상별 차등 지원 금액 현황(2017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12개월 미만	12개월~ 24개월미만	24개월~ 36개월미만	36개월~ 48개월미만	48개월~ 84개월미만
양육수당	200	150	100		
농어촌양육수당		177	156	129	100
장애아동양육수당	200			100	

주: 84개월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p.327.

2) 개별돌봄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여성가족부는 영유아 가구의 가정 내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아이돌봄 지원법 제1조), 맞벌이 등의 사유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줄이고 기관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7.6.14. 인출¹³⁾). 아이돌봄 사업은 크게 영아 종일제 돌봄과 시간제 돌봄으로 구분되며, 시간제는 다시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된다.

1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dif/cs_dif_f003.do (2017. 6. 14. 인출)

먼저,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며, 임시 보육, 놀이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의 돌봄을 제공한다. 종합형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비용은 시간당 6,500원이며, 종합형 서비스는 8,450원으로 일반형에 비해 1,950원이 많다.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비용 지원은 일반형과 종합형 모두 연 480시간, 1회 이용 시 2시간 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생후 0~36개월의 영아에게 종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아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등 종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아종일제 지원 서비스는 월 200시간 1일 최소 4시간 이상을 이용해야하며, 일반적인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월 130만원,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보육교사형 서비스는 월 143만원이다.

〈표 II-2-9〉 아이돌봄 지원 사업 개요(2017년 기준)

구분	시간제(일반형)	시간제(종합형)	영아 종일제
이용 대상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	만3개월이상~ 만12세이하 아동	생후~36개월 영아대상
이용 요금	·시간당 6,500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시간당 8,450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보육교사형 월 143만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
정부 지원시간	연 480시간 (1회 2시간이상 신청)	시간제(일반형) 지원 시간 한도내에서 차감 (1회 2시간이상 신청)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보육교사형 월 200시간 (1일 최소 4시간이상)
서비스 제공 범위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시간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 ·안전 신변처리 등	·시간제 서비스 외 돌 봄과 관련된 가사서 비스 제공 -세탁, 놀이공간정리 -청소, -식사 및 간식 조리	·영아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 제공 ·보육교사형은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아이돌보미 가 돌봄 제공

주: 84개월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취학한 아동은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맞춤형서비스 http://www.mogef.go.kr/cs/dif/cs_dif_f003.do (2017.6.15. 인출)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비용은 가구소득수준에 따라 다른데,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268만원)이하를 '가'형, 85%이하 '나'형, 120%이하 '다'형, 120%초과 '라'형으로 구분한다. 일반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형은 시간당 이용비용 6,500의 75%에 해당하는 4,875원을 정부가 지원

하며, '나'형은 2,925원(45%), '다'형은 1,625원(25%)을 지원하고, '라'형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이 없이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종합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일반형 돌봄 서비스에 비해 시간당 이용비용이 1,950원이 비싼데, 정부 지원금은 일반형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이 1,950원씩 증액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때, 가구 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경우에는 총 금액의 25%를 할인하며, 3명 이상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33.3%를 할인해 준다. 또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 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있다.

〈표 II-2-10〉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비용(2017년 기준)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일반형)		시간제(종합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이하 (2,680천원)	4,875원(75%)	1,625원(25%)	4,875원	3,575원
나형	85%이하 (3,797천원)	2,925원(45%)	3,575원(55%)	2,925원	5,525원
다형	120%이하 (5,361천원)	1,625원(25%)	4,875원(75%)	1,625원	6,825원
라형	120%초과 (5,361천원)	-	6,500원(100%)	-	8,450원
특기 사항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 시 총 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이 3명 시 총 금액의 33.3%할인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주: 1) 표에 제시된 기준은 A형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B형은 초등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 범주를 벗어나므로 제시하지 않음.

2)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use/part3.go>. (2017.6.15. 인출).

한편,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월 이용비용이 130만원인데, 이 중 '가'형 가구의 경우 이용비용의 70%에 해당하는 91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39만원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표 II-2-11 참조). '나'형의 경우에는 65만원(50%)을 지원하며, '다'형은 39만원(30%)을 정부가 지원한다. '라'형의 경우에

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금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영아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되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돌보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 보육교사형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비용이 월 143만원으로 일반형 영아 종일제에 비해 13만원이 많은데, 이 비용 또한 전부 영유아 가구에서 추가로 부담하여 지불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은 불가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수익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2-11〉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비용(2017년 기준)

유형	소득기준 (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200시간)		보육교사형 (월 143만원, 200시간)	
		정부지원	수익자부담	정부지원	수익자부담
가형	60%이하 (2,680천원)	91만원(70%)	39만원(30%)	91만원	52만원
나형	85%이하 (3,797천원)	65만원(50%)	65만원(50%)	65만원	78만원
다형	120%이하 (5,361천원)	39만원(30%)	91만원(70%)	39만원	104만원
라형	120%초과 (5,361천원)	-	130만원(100%)	-	143만원
특기사항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다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은 가능				

주: 1) 표에 제시된 기준은 A형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B형은 초등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 범주를 벗어나므로 제시하지 않음.

2)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자료: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맞춤형서비스, http://www.mogef.go.kr/cs/dif/cs_dif_f003.do (2017.6.15. 인출)

3)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272).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보육료는 시간당 4,000원인데 기본형의 경우 정부가 50%의 비용을 부담하고

부모가 50%를 부담하며,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75%, 부모 부담금이 25%이다(보건복지부, 2017: 274). 단, 유아학비 혹은 보육료를 받는 경우에는 비용 전체를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영유아 가구에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더하여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여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274).

다.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이 항에서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직접적 비용 지원은 아니지만, 세금 공제 및 감면 등을 통한 간접적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단, 영유아 부모에 대한 모든 세제 혜택 지원 제도가 아닌 교육·보육비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에 국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피부양자 공통혜택에 속하는 기본 소득공제, 자녀보험료 소득공제, 자녀의료비 소득공제 등은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보았다.

1) 자녀세액공제¹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공제 금액은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2항).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는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공제 금액은 출산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이다.

14)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_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4&cnpClsNo=1&menuType=cnpcds (2017. 10. 18 인출).

2) 자녀장려세제¹⁵⁾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로 규정에 과세기간 중 대상자가 신청하면 규정에 의거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31). 부양자녀가 있고,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근로소득 거주자가 대상자이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때 부양자녀의 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자녀장려금으로 환급받는다. 총 급여액이 해당 기준보다 높고 4천만원 미만일 때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지급액에서 점감된 금액을 받는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단, 위의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의 기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다.

3) 자녀교육비 소득공제¹⁶⁾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이 때 공제 대상 교육비는 아래와 같다.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②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지급한 교육비, ③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등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제1항에서는 교육비의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공제 대상 교육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
- 15) 석숙자·서희열(2015)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2017. 10. 18 인출).
- 16)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4&cnpClsNo=1&menuType=cnpcls> (2017. 10. 18 인출).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¹⁷⁾에 지급한 급식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이다.

공제 금액은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를 모두 합산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녀 1인당 연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맞벌이 부부인 경우, 한 배우자가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중복 공제는 불가하다.

4)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비과세¹⁸⁾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제73조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5)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¹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즉 출산·보육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당에 대해 월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10만원에서 초과 금액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관련 예시는 아래와 같다²⁰⁾.

17) 해당 법령에서 제시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함.

18) 최보람·문예영(2012) 참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소득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2017.10.18 인출).

19)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4&cnpClsNo=1&menuType=cnpcls> (2017. 10. 18 인출).

〈표 II-2-12〉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지원

구분	비과세 한도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 경우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소급해서 수개월 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 (예시) 한꺼번에 3달치인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라. 종합 및 시사점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비용과 정부 지원 정책을 연계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과 보육료 상한제를 통한 지원, 입학금 등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수납원칙을 통한 지원, 특별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가이드라인, 시간연장형보육 비용은 시간연장보육, 야간 보육료, 24시간보육, 휴일보육, 맞춤반 지원 등이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과 원비 상한제, 방과후 과정비 지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 등의 지원이 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거나 시간제 학원, 학습지 등을 이용하는 사교육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개별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보육비용 지원을 위해 서비스별로 촘촘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상 유아교육·보육을 위해 유아학비·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전 계층에 대해 지원되는데 반해, 그 외 비용들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및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한국의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체계는 유아학비·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돌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병행하여 지원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20)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자녀 관련 소득공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3&cciNo=3&cnpClsNo=1> (2017. 10. 18 인출).

〈표 II-2-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과 지원 정책 연계(2017년 기준)

이용 비용 종류		가구 대상 비용 지원 정책
어린이집 이용비용	보육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상한제
	기타비용	필요경비 수납원칙 및 수납상한액
	특별활동	특별활동 가이드라인
	시간연장형보육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맞춤반 지원
유치원 이용비용	수업료	유아학비, 원비 상한제
	기타비용	원비 상한제
	방과후 과정	방과후 과정비 지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
사교육 이용비용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미이용자의 경우 양육수당
	시간제 사교육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미이용자의 경우 양육수당

3. 국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역할 혹은 책임이 중요해짐에 따라 각 국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영유아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각 국의 다양한 양육 비용지원 정책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기관 이용 비용, 아동수당(양육수당 포함), 세제혜택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가.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사례

1)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면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아동돌봄수당(Childcare allowance, kinderopvangtoeslag)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비용 지원액은 어린이집 등록비용은 물론, 방과후 혹은 가정양육사(gastouder) 등의 육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강은진, 2016: 44). 정부에 등록된 기관에 다니는 아동에 대해서는 한 명당 최대 월 230시간을 지원하는데²¹⁾, 아래 <표 II-3-1>에서 보면, 기관이용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자녀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원해 주되,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줄어들도록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소득이 0~18,485유로 구간인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가 정부에 등록된 유치원에 다니면, 해당 유치원 비용의 94%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둘째 자녀는 95%를 지원해준다. 저소득층이고 자녀가 많을 경우 정부가 더 많은 비율로 지원해 준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 한 명당 월 최대 230시간까지(2017년 기준) 가능하다.

〈표 II-3-1〉 네덜란드의 양육수당(2017년 기준)

단위: 유로, %

소득기준		첫째 자녀 아동양육수당 비율 (Percentage of child care allowance 1st child)	둘째 자녀 아동양육수당 비율 (Percentage of child care allowance subsequent child)
최저	최대		
0	18,485	94.0	95.0
18,486	19,716	94.0	95.0
19,717	20,945	94.0	95.0
20,946	22,177	94.0	95.0
22,178	23,408	94.0	95.0
23,409	24,638	93.8	94.9
...	...	...	...
174,462	177,440	33.3	65.6
177,441	180,418	33.3	65.0
180,419	그 이상	33.3	64.0

자료: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kinderopvangtoeslag/vraag-en-antwoord/hoeveel-kinderopvangtoeslag-krijg-ik> (2017. 6. 9 인출).

2015년 기준, 아동돌봄수당을 통하여 어린이집(day nurseries)에는 시간당 최대 6.84유로, 학교 밖 돌봄에는 6.38유로, 등록된 가정양육사 서비스에는 5.48유로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육아서비스 비용의 일부분은 가구에서 부담해야 한다(강은진, 2016: 44 재인용22)).

21) 네덜란드 국세청,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prive/toeslagen/kinderopvangtoeslag/kinderopvangtoeslag-2017/>(2017. 5. 23 인출).

22) 네덜란드 국세청 Toeslagen Belastingdienst(2016). (<http://www.belastingdienst.nl/>(2016. 10. 10 인출), 강은진(2016).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9).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재인용.

2)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는 물론 취업 중인 부모의 자녀교육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forskola)은 부모의 근로 및 학업시간을 고려하여 대부분 연중무휴, 전일제(6:30~18:30)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최윤경·김운환·이혜민, 2015: 6 재인용²³⁾).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의 이용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부모, 세 부분의 부담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모 부담 보육료 상한제(Maxatas)를 도입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없도록 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 이러한 보육료 상한제는 지방정부마다 서로 다른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로 가구소득, 자녀연령, 자녀수,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여 가구소득의 3% 이내, 전체 비용의 약 10~1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월 최대 SEK 1,287(한화 약 18만원)수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의 80%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최윤경·김운환·이혜민, 2015: 6 재인용²⁴⁾).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은 2002년부터 시행되어 모든 3~6세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연간 525시간) 제공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부모가 취업/학업 중인 경우 유치원(preschool) 이용시간을 주당 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나, 미취업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의 경우 주당 15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다(이혜민, 2013: 80).

한편 스웨덴에서는 2009년 7월부터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선택한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교육 및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우처를 이용한 지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지방분권화와 함께 진행된 정책변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해당 지원은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별 서비스 비용, 세율 등을 자치적으

23) Europa(2015). Sweden: Successful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life. Retrieved from http://europa.eu/epic/countries/sweden/index_en.htm. (2017. 4. 30 인출), 최윤경·김운환·이혜민(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 II: 교사정책을 중심으로(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재인용.

24) Swed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2015). Preschool: Fees. Retrieved from <http://www.skolverket.se/om-skolverket/andra-sprak-och-lattlast/in-english/the-swedish-education-system/preschool/fees-1.72241>. (2017. 4. 30 인출), 최윤경·김운환·이혜민(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 II: 교사정책을 중심으로(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재인용.

로 결정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즉, 바우처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정부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서비스 질의 수준 또한 유지하는 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게 되어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수요자(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바우처를 통하여 균등한 가정보호수당이 책정되고 부모가 개별적으로 선택한 (정식 훈련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가정보호모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최윤경·김윤환·이혜민, 2015: 16~17 재인용25)).

3)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2013년 현재 GDP의 2%에 해당하는 국가 재원을 유아교육에 투입하여 OECD 평균 0.8%를 크게 초과하여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가재원을 투입하고 있다²⁶⁾. 2004년 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2013년 현재 공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부담이 총비용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월 최대 보육료 부담액은 NOK2,326이다.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 2011년 현재 평균 이용료는 0~만2세가 월 NOK15,572이고, 만3~5세가 월 NOK11,800으로 조사되어 공보육 시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다. 하지만 정부는 국공립과 사립 보육시설에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립 보육시설의 경우도 정부의 지원으로 부모부담은 20% 내외가 되도록 하고 있다(이혜원, 2013: 89).

4) 호주

호주의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은 취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제외하고는 자율화되어 있다. 무상교육의 경우도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Tasmania 주(州)와 Northern Territories 주(州)는 전면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이외 지역은 자녀의 부모가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한다(서문희·이혜민, 2013: 63).

호주는 2000년 7월부터 보육급여(Child Care Benefits)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자

25) 한유미·오연주·권정윤·강기숙·백석인(2005) 스웨덴의 아동보육제도, 서문희·최윤경·최혜선·성혜영(2010) 보육시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지원체계 개편 방안, 최윤경·김윤환·이혜민(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Ⅱ:교사정책을 중심으로(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육아정책연구소 재인용.

26) OECD (2016), "Norway", in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eag-2016-73-en> (2017. 3. 15 인출).

산조사를 통하여 중산층 이하의 아동에게 제공되던 보육보조제도(Child Care Assistance)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족에게 적용되던 보육료 환불제도(Child Care Cash Rebate)를 통합한 제도이다. 이러한 보육급여는 소득계층별 보육료 지원제도로써 시설중심의 인가보육(Approved Care) 또는 개인에 의한 등록보육(Registered Care)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연간 소득, 보육의 유형 및 시간, 보호자의 취업여부, 보육에 대한 필요성 등의 기준을 통하여 지원수준을 결정하였고,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보육급여 비율을 보다 세분화해 오고 있다²⁷⁾.

〈표 II-3-2〉 호주의 인가보육 지원액(2016~2017년 기준)

구분	시간당 최대	주당 최대(50시간)	단위: 호주달러
			소득상한
첫째 자녀	4.24	212.00	154,697
둘째 자녀	4.43	443.03	160,308
셋째 자녀	4.60	691.31	181,024
자녀 1명 증가 시	4.60	230.43	34,237 증가

자료: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2017. 5. 19 인출).

호주의 보육서비스는 인가보육과 등록보육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지방정부로부터의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 중심의 서비스이고, 후자는 등록된 개인에 의한 서비스이다(서문화·이혜민, 2013: 28). 2016~2017년 현재 인가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4만 4,457달러 이하이면 최고 비율인 100%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 소득 1,000달러 단위로 지원 비율이 적용되어 15만 4,697달러에 근접하면 최소비율(16.7%)을 지원받게 되고, 그 이상의 소득수준의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²⁸⁾. 동일 소득에서 자녀수가 증가하면 지원 비율도 증가하고, 조손가족이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최대 비율이 적용된다. 최대 지원 수준은 인가보육은 시간당 4.24달러, 주당 50시간이면 212.00달러이고, 등록보육은 시간당 0.708달러, 주당 50시간이면 35.40달러이다²⁹⁾. 인가보육에 대한 지원수준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지만 등록보육(Registered

27)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의 내용 참조 (2017. 5. 19 인출).

28)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 (2017. 5. 19 인출).

29)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의 내용 참조 (2017. 5. 19 인출).

care)에 대해서는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인가보육의 최소 지원액인 시간당 0.708달러가 적용된다³⁰⁾.

〈표 II-3-3〉 호주의 등록보육 지원액(2016-2017년 기준)

단위: 호주달러

구분	시간당 최대	주당 최대(50시간)
아동 1인당	0.708	35.40

자료: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 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2017. 5. 19 인출).

〈표 II-3-4〉 호주의 보육환급 분기별 지급 기간(2016-2017년 기준)

분기	분기별 기간(2016-17)	보육환급 지급기간(2016-17)
1	2016. 7. 1. - 2016. 10. 2.	2016. 10. 19. - 2016. 11. 1.
2	2016. 10. 3. - 2017. 1. 1.	2017. 1. 18. - 2017. 1. 31.
3	2017. 1. 2. - 2017. 4. 2.	2017. 4. 19. - 2017. 5. 2.
4	2017. 4. 3. - 2017. 7. 2.	2017. 7. 24. 이후

자료: 호주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final_fact_sheet_10_-_what_is_the_child_care_rebate_1.pdf p.3. (2017. 5. 19 인출).

보육환급(Child Care Rebate) 제도는 자녀양육과 근로 및 학업을 병행하는 가구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보육조세 환급(Child Care Tax Rebate)으로 세제혜택 제도이던 것을 보육환급으로 개칭하고 실제로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체에 대하여 가족지원의 범주에 포함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지원 대상에 대한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육급여를 받을 수 없는 소득한도액 이상의 가구도 보육료 환급은 받을 수 있다(서문희·이혜민, 2013: 69). 지원액은 부모가 인가보육서비스에 지불한 실제비용의 50%인데, 2017년 현재 연간 상한액은 아동당 7,500달러이다. 환급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에 직접 환급(2주 주기)하거나 은행계좌 환급(2주 주기, 분기별, 연1회)하는 방법이 있다.

30) 호주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final_fact_sheet_2_-_what_is_child_care_benefit_0_0.pdf (2017. 5. 19 인출).

나. 아동수당(양육수당 포함) 지원 사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선진국에서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별개로 영유아 가구에 아동수당 혹은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2017년 기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가구에 국한하여 가정 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별개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지원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사례를 포함하여 양육수당 지원 정책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즉, 본 항에서는 국가별로 child benefit, child allowance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되고 있는 관련 정책들을 아동수당(양육수당 포함)으로 포괄하여 정리하였다.

1) 핀란드

핀란드의 아동수당(Lapsilisa)은 17세 이하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부모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액에 있어서의 특징은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월 94.88 유로가 지원되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104.84유로가 지원된다. 또한 자녀가 한 명에서 두 명으로 증가한 경우의 증가액보다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증가한 경우의 추가 지원 금액이 더 높은 수준인 것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에 역점(力點)을 두고자하는 정책 취지를 알 수 있다. 또한 편부모 가정에는 자녀 한 명당 월 48.55유로의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차등 없는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핀란드 사회보장국, 2017. 5. 19 인출)³¹⁾.

〈표 II-3-4〉 핀란드의 아동수당(Lapsilisa) : 2017년 기준

단위: 유로/월					
구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자녀	다섯째 이상 자녀
지급액	94.88	104.84	133.79	153.24	172.69

자료: 핀란드 사회보장국 <http://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2017. 5. 19 인출).

31) 핀란드 사회보장국 <http://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2017. 5. 19 인출).

〈표 II-3-5〉 핀란드의 가정양육수당(hoitotuki) : 2017년 기준

단위: 유로/월

구분	지급액
3세 미만 한 자녀	338.34
3세 미만 두 자녀 이상	101.29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	65.09

자료: 핀란드 사회보장국, <http://www.kela.fi/web/en/home-care-allowance-amount-and-payment> (2017. 5. 19 인출).

아울러 아동양육수당(hoitotuki)³²⁾은 3세 미만의 자녀를 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지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지급하고 있다.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출산수당과 부모수당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 아동양육수당을 지급받아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또는 기관에 맡길 수 있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부(父) 또는 모(母)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은 <표 II-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세 미만의 한 자녀 가구에는 월 338.34유로, 3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월 101.29유로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3세 미만의 한 자녀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94.88유로)과 아동양육수당(338.34유로)을 합쳐서 433.22유로를 지원받게 된다.

2) 프랑스

프랑스의 영아육아수당(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은 영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수당으로, 각 가구의 첫 번째 자녀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출생 및 입양수당(La prime a la naissance ou a l'adoption)의 경우, 임신 7개월부터 889.72유로가 지급되는 수당으로, 임신한 부부가 14개월 이내에 해당 가족수당지급처(Caisse d'allocations familiales, CAF)나 의료보험공단(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PAM)에 알리면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1,779.43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당 지급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녀수에 따른 부모의 소득한도액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정미라·조희연·안재진, 2009: 36).

32) 이윤진·송신영(2009). 핀란드의 육아정책(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7).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hoitotuki를 아동양육수당이라 칭함.

〈표 II-3-6〉 프랑스의 연간 가구 소득 한도액(2015년 기준)

단위: 유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수 (출산예정포함)	부모 중 한 쪽만 소득이 있는 경우	편부모 또는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	35,872	45,575
2	42,341	52,044
3	48,810	58,513
자녀 1인당 추가	6,469	6,469

주: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지급처, <http://www.caf.fr/aides-et-services/s-informer-sur-les-aides/petite-enfance/l-allocation-de-base> (2017. 5. 23 인출).

해당 소득한도액은 <표 II-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현재 자녀가 한 명인 외벌이 가구의 경우 연 35,872유로,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연 42,341유로로, 자녀 한 명이 증가함에 따라 한도액은 6,469유로 증가한다. 가구소득원의 구성이 달라질 경우 한도액에는 변화가 있으나 자녀 한 명 증가에 따른 한도액 증가액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³³⁾.

3)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아동수당(child benefit)은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데³⁴⁾ 네덜란드에 거주하거나 네덜란드에서 근무하는 부모는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지원액은 지원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는데, 1세별 차등지급이 아닌 연령구간별 차등지급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 구간은 0~5세, 6~11세, 그리고 12~17세로 나누어진다³⁵⁾.

이러한 아동수당은 부모가 해당 아동과 동거상태가 아니더라도 아동의 부모가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기준을 보면, 해당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매 분기별로 최소한 416유로를 지출하는 경우이거나 아동이 매 분기별로 1,265유로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³⁶⁾ 부모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비동거 상태 중

33) 프랑스 가족수당지급처, <http://www.caf.fr/aides-et-services/s-informer-sur-les-aides/petite-enfance/l-allocation-de-base> (2017. 5. 23 인출).

34) 네덜란드 사회보험 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kinderbijslag_voor_kind/kunt_u_kinderbijslag_krijgen/index.jsp (2017. 5. 18 인출).

35) 네덜란드 사회보험 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levensloop/uw_kind_wor_dt_6_of_12_jaar/index.jsp (2017. 5. 18 인출).

36) 다만 아동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동 소득에 대한 제한은 없음.

에서도 해당 아동이 질환, 장애, 교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나, 부모가 해당 아동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1,103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하며, 해당 아동이 매 분기별로 1,265유로 이하의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가 지급받는 수당금액은 기본급의 두 배가 될 수 있다³⁷⁾.

〈표 II-3-7〉 네덜란드의 아동수당(2017)

단위: 유로

구분	0~5세	6~11세	12~17세
자녀당	198.38	240.89	283.40

자료: 네덜란드 사회보험 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betaling/hoeveel_kinderbijslag_krijgt_u/index.jsp(2017. 5. 18 인출).

이러한 네덜란드의 아동수당은 <표 II-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0~5세 198.38유로, 6~11세 240.89유로, 그리고 12~17세 283.40유로가 분기마다 부모의 계좌로 입금된다.

4) 스웨덴

스웨덴은 16세까지의 아동 1인당 월 SEK³⁸⁾ 1,050을 아동수당으로 지원하고 있다 (표 II-3-8 참조). 특히 자녀수에 비례하여 두 자녀 이상의 가구에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 영유아의 교육·보육시설인 피르스콜라(Forskola)³⁹⁾에 자녀를 보내기 시작한 이후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등록비가 아동수당 지원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된다⁴⁰⁾.

37) 네덜란드 사회보험 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veranderingen_in_gezin/uw_kind_gaat_uit_huis/index.jsp (2017. 5. 18 인출).

38) 스웨덴 크로나. 2017년 5월 22일 기준 환율은 1SEK=128.03원, 1050 SEK = 134,431.5원.

39) 스웨덴 forskola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된 기관 명칭으로, 교육부 산하이나 종일제 보육교육시설의 특징을 가짐. 영유아 통합 ECEC 기관으로서 preschool(유치원, 또는 유아학교, 종일제 기관)로 표기함.

40) 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adoptera_barn/barnbidrag/!ut/p/z1/04_Sj9CPyKssy0xPLMnMz0vMAfjjo8ziTTxcnA3dnQ28DVz9XQwcfY08A83NQ4wNnM30w8EKDHAARwP9KEL6o1CV-JsGA5WYeQYahgW7GrmZGuBX4OpkhK7Awt3Y1MAxMMDQ2MTfyMsrGGYCHkcW5EYYZHqmKwIAVm0wQA!/dz/d5/L0lDUmlTUSEhL3dHa0FKRnNBLzROV3FpQSEhL2Vu/?keepNavState=true (2017. 5. 18 인출).

〈표 II-3-8〉 스웨덴의 아동수당(2017)

단위: SEK

구분	월 총 아동수당	다자녀가구추가수당	합계
자녀 1명	1,050	-	1,050
자녀 2명	2,100	150	2,250
자녀 3명	3,150	604	3,754
자녀 4명	4,200	1,614	5,814
자녀 5명	5,250	2,864	10,414

자료: 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adoptera_barn/barnbidrag!/ut/p/z1/04_Sj9CPykssy0xPLMnMz0vMAfIjo8ziTTxcnA3dnQ28DVz9XQwcfY08A83NQ4wNnMB0w8EKDHAARwP9KEL6o1CV-JsGA5WYeQYahgW7GrmZGuBX4OpkhK7Aw3Y1MAxMMDQ2MIIfyMsrGGYCHkcW5EYYZHqmKwIAVm0wQA!/dz/d5/L0IDUmlTUSEhL3dHa0FKRnNBLzROV3FpQSEhL2Vu/?keepNavState=true (2017. 5. 18 인출).

5) 노르웨이

노르웨이에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자녀 한 명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받을 수 있고, 한부모 가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아 보조금(infant supplement)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영유아 자녀가 한 명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그 외에 입양 부모, 영유아 돌보미 이용, 돌봄기관 이용 등의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⁴¹⁾.

〈표 II-3-9〉 노르웨이의 아동수당(2017년 기준)

단위: NOK, 영유아 1인

구분	월지급액
일반가구	970
한부모가구	970
영유아 추가	660

주: 수당은 비과세이며 매달 지급됨.

자료: 노르웨이 고용노동복지부, <https://www.nav.no/no/NAV+og+samfunn/Kontakt+NAV/Utbetaling/Snarveier/satser-380089?kap=380093> (2017. 5. 19 인출)

양육수당(Cash-for-care benefit)은 1998년 1세 영아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이후 1999년에 2세까지 확장되었다. 해당 수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41) 노르웨이 고용노동복지부, <https://www.nav.no/no/NAV+og+samfunn/Kontakt+NAV/Utbetaling/Snarveier/satser-380089?kap=380093> (2017. 5. 19 인출)

매월 정액 지급되는데,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된다(Engel et al, 2015: 17). 자녀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100% 현금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반일제 (유치원 이용시간 20시간 미만)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50%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OECD, 2016). 이에 대한 현금 양육수당은 아래 <표 II-3-9>과 같은데,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경우, 2017년 8월 1일 이후부터 유아 1인당 7,500NOK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표 II-3-10> 노르웨이의 현금양육수당 지원 비율

단위: %, NOK.

유치원 입학여부 및 주당 이용시간	현금양육수당 지원 비율	현금양육수당(유아 당) 2017년 7월 31일까지 적용	현금양육수당(유아 당) 2017년 8월 1일부터 적용
유치원에 가지 않는 경우	100	6,000	7,500
20시간 미만	50	3,000	3,750
20시간 이상	지원 없음	지원 없음	지원 없음

자료: 노르웨이 고용노동복지부, Cash benefit for parents of infants. <https://www.nav.no/no/NAV/togtsanfunn/Kontakt+NAV/Utbetalinger/Snarveier/satser-380089?kap=380105> (2017. 5. 18 인출).

다. 국외 세제혜택 지원 사례

아동수당, 교육 및 보육비용 지원 등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세제혜택을 통한 양육지원을 하는 사례들이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비과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핀란드의 경우 아동수당은 17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세금의 대상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이운진·정도상, 2015: 32), 노르웨이에서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이정원·이세원, 2013: 28).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세제혜택으로 별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시스템은 없으나 자녀수당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이삼식, 2012: 5).

네덜란드에서 자녀양육과 취업 혹은 학업을 병행하는 부모들 중 자녀를 정부에 등록된 보육기관에 보내는 경우 '아동돌봄세금혜택(childcar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강은진, 2016: 45).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 등 아동을 양육하여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받는 부모는 직접 청구할 필요 없이 세무서(Belastingdienst)로부터 자녀예산(child budget)을 추가적으로 매월 받을 수 있다. 자녀예산은 2013년 1월부터 가족소득과 자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⁴²⁾.

42) 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kinderbijslag_voor_kind/kindgebonden_budget/index.jsp (2017. 5. 18 인출).

독일의 경우, 1996년 이전에는 아동수당과 세제상의 아동부양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이중시스템'을 채택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양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게 하는 '단일시스템'이 실시되고 있다. 즉, 세제상의 아동부양공제와 아동수당의 유리한 쪽을 정책 수요자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아동수당제도는 조세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점이라 하겠다. 또한 2004년부터는 조세체계 내의 세금환급형태로 지급되며, 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다. 아울러 아동수당은 아동을 위한 기본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위한 소득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최영진, 2014: 217).

라. 종합 및 시사점

본 절에서는 각 국의 다양한 양육 비용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유아교육 또는 보육을 목적으로 기관을 이용하거나, 유아교육 혹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자에 대한 각 국의 비용 지원의 경우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프랑스의 경우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함은 물론 기업체의 유자녀 여성노동자 고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띄었다.

아울러 해당 국가들의 경우 '차등지원'의 형태인 국가가 많았으며, 특히 호주와 같은 경우는 취학 전 1년의 무상교육을 제외하고는 자율화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국가에서는 부모 부담을 고려한 보육료 상한제 개념의 정책을 시행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은 부모가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자녀양육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부모 부담이 총비용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별 가구의 선택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녀양육 부담 완화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교육 또는 보육 비용지원 체계 및 형태를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수당 (혹은 양육수당)은 국가별로 상당히 다양한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지급하지만 출생순위를 적용하는 국가, 연령구간별 차등지급하는 국가, 두 자녀 이상에게는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국가 등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문화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게 될 아동수당의 경우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동수당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제혜택 지원의 경우, 네덜란드나 독일의 경우를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네덜란드는 ‘아동돌봄세금혜택’을 받는 부모가 이를 별도로 청구할 필요 없이 세무서로부터 자녀예산을 추가적으로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수당과 세제상의 아동부양공제 가운데 자녀양육가구에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이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를 살펴본다. 이 장의 내용은 크게 실태조사의 개요와 관련된 부분과 영유아 가구의 실제 비용 지출 실태, 이를 활용한 전국 단위 연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치로 구분되며, 지출 비용 실태는 다시 아동별 비용과 가구당 비용으로 구분된다. 아동별 지출 실태는 항목별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 반일 이상 이용 기관에 대한 지출 비용, 사교육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으로 구분되며, 세부 항목별 비용 구분 기준은 [그림 I-3-1]을 참조하기 바란다.

1. 실태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2017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를 방문하여 면대면 조사로 진행되었다.

가. 표본 설계 및 설문 구성

1) 표본 설계 및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총 1,100가구(가구 내 모든 영유아 자녀 포함)를 목표로 실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119가구(영유아 기준 1,505명)가 조사에 성공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은 국가기초구역 주소 요도를 활용하여, 최종표집 블록수를 100개로 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동, 읍, 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단, 조사 과정에서 지역, 아동의 연령, 모의 취업여부, 이용 기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 이상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표본을 일부 조정하였다. 이는 전국 영유아 가구에 대한 표본 틀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모 취업률이나 이용기관을 사전에 고려하여 표집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접촉

이 쉬운 가구를 위주로 조사함에 따라 가구 및 아동 특성을 반영한 비용 지출 자료에 편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최효미 외, 2016: 94). 그러나, 표집 시 고려하는 변인을 처음부터 강제 할당하여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특정 연령이나 미취업모가 지나치게 많이 조사되지 않도록 최종 조사 가구 수에 폭넓은 범주의 상하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4차년도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의 조사방식과 동일한 방식이다.

본 연구과제는 연구 예산의 감축으로 인해 해마다 가구 표본 수가 축소되고 있으며, 5차년도 연구에서는 전년도 조사에 비해 200가구 가량이 줄어든 총 1,119가구를 조사하였다. 이로 인해 특정 서비스의 이용자가 조사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관측치가 작아 평균값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를 가중 표집하여 조사 값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여기서 주지하는 바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이러한 과다 표집을 감안하여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반일제 학원 이용 비중과 비용이 다른 비용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점이다. 한편, 통신 교육, 교재 및 교구 활용 교육 같은 사교육의 경우 혹은 어린이집 시간연장형보육 이용자 등의 경우에도 관측치가 매우 작은 한계가 있으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임의할당이나 가중 표집을 실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과 병행 이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국한한 임의 할당 혹은 가중 표집이 오히려 자료의 왜곡을 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 비중이 매우 낮은 몇몇 서비스는 개별 서비스 이용비용을 보고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비용과 묶어서 보고하는 등 해당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지양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제시하였다.

2)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내용은 전년도 연구인 4차년도의 설문 내용과 큰 차이가 없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영유아 자녀 당 항목별 교육·보육비용 조사 부분은 문항을 동일하게 유지하여, 전년 대비 변화를 고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만, 4차년도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추가된 맞춤형 및 기관 이용 시간 등에 관한 설문은 5차년도에는 상당 부분 삭제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은 기본적으로 아동별 교육·보육비용을 묻는 아동 조사와 가

구 단위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가구 조사 2종으로 구분된다. 응답 대상 가구는 1명 이상의 영유아가 있는 가구이므로, 기본적으로 아동별 설문과 가구별 설문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아동+가구 조사’ 1종의 설문에 모두 응답해야 하며, 가구 내 다른 영유아 자녀가 또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아동 조사 설문’⁴³⁾에 응답해야 한다.

설문 내용은 크게 가구 및 응답자 특성, 아동 단위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가구 단위의 정부 재정 지원 정책 및 교육·보육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의 주요 부분인 아동 단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는 자녀별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얼마인지, 이러한 비용 지출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유치원 중 일제 이용 시 개선점,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 및 개선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최대 지불의사 및 이용시간 조정의사, 보육료·교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및 비용 지원 적정성에 대한 의견은 서비스 이용자 혹은 정책 대상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문항이므로 아동 단위로 질문하였다(최효미 외, 2016 : 95). 반면, 전반적인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은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단위로 질문하였다.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은 <표 III-1-1>에 제시하였다.

〈표 III-1-1〉 실태조사 설문 문항의 구성

조사 구분		설문 내용
가구 및 응답자 특성	가구 특성	· 가구원 수, 가구 형태, 거주 지역, 가구소득, 가구 총지출 규모 등
	자녀 특성	· 자녀의 수, 자녀별 연령, 성별, 출생 순위 등
	부모 특성	· 부/모 연령, 학력, 취업 상태 등
교육·보육 비용지출 실태 조사 (아동 단위 조사)	기관 이용 비용	· 기관 이용 현황, 이용 시간 및 조정 의사 · 입학 전 사전 비용 조사 등 · 기관 이용자의 보육·교육비 지출 : 보육료, 교육비, 교재 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행사 비 등 · 선택적 교육비1: 어린이집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추가 보육서비스 이용비용 및 만족도, 부담 정도 등 · 선택적 교육비2: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및 만족도, 부담 정도 등

43) 아동조사 설문은 주로 영유아 자녀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및 지출 실태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가구조사’의 아동별 조사에 해당하는 설문과 완전히 일치함.

(표 III-1-1 계속)

조사 구분		설문 내용
교육·보육 비용지출 실태 조사 (아동 단위 조사)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 : 입학금, 교육비, 교재 교구비, 통학차량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행사비, 추가 보육 서비스이용 비용 등 · 반일제 이상 학원의 특별활동 이용비용 및 부담도 등
	시간제 사교육 비용	· 시간제학원 이용비용: 참여프로그램, 월교육비 등 · 학습지, 개별과외, 교구활동, 인터넷 통신교육 등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 등
	개별돌봄 서비스 비용	· 개별돌봄서비스 : 개별 보육 이용 형태, 서비스 제공자, 이용시간, 비용 등
	기타 비용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경험 및 비용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호 및 의견	아동 단위 조사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한 의견 · 어린이집 특별활동 혹은 유치원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 사유 및 개선점 ·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최대 지불 의사 및 이용 시간 조정 의사 · 사교육 이용 사유 ·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사유 및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선호 등
교육·보육 비용에 대한 학부모 인식	아동 단위 조사	· 교육·보육서비스 비용 중 부담스러운 항목 및 사유 ·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가구 단위 조사	· 보육·교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우선 순위 · 보육료·교육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 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일반 인식에 대한 의견

자료: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 추정연구(IV), p.95~96, <표 IV-1-1>의 내용에 본 연
구의 ‘2017년도 실태조사 설문지’ 내용을 추가하여 재작성.

나. 응답자 특성

1) 아동 특성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표 III-1-2>와 같다. 전체 응답 가구의 아동은 남아 51.3%, 여아 48.7%로 성비는 비교적 균등하였다. 출생순위에서는 첫째아 42.4%, 둘째아 45.5%, 셋째아 10.8%로 대부분 응답 가구의 아동이 첫째 또는 둘째였다. 연령별로 보면, 0세에서 5세까지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며, 연령별 성별과 출생순위의 분포는 전체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분포와 유사한 가운데 0-1세 아동의 경우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의 비중이 다소 높았다. 응답자 아동은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많이 분포하였다. 각 지역규모에서 성별

과 출생순위 분포는 전체특성과 유사하여, 성별은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첫째아와 둘째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출생순위의 경우 셋째아의 비중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1-2〉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성별		출생순위				계(수)
	남	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전체	51.3	48.7	42.4	45.5	10.8	1.3	100.0(1,505)
아동연령(보육연령)							
0세	59.5	40.5	28.9	58.4	11.2	1.5	100.0(234)
1세	46.5	53.5	34.9	51.7	12.5	1.0	100.0(241)
2세	47.8	52.2	45.3	42.2	11.2	1.3	100.0(250)
3세	55.7	44.3	46.7	43.7	7.6	2.1	100.0(248)
4세	50.8	49.2	49.7	37.9	10.9	1.5	100.0(264)
5세	48.1	51.9	47.5	41.0	11.3	0.3	100.0(268)
지역규모							
대도시	50.5	49.5	43.9	46.8	7.9	1.4	100.0(637)
중소도시	51.9	48.1	42.1	45.3	11.7	0.9	100.0(692)
읍·면지역	51.9	48.1	38.6	41.7	17.3	2.4	100.0(176)

모의 특성에 따라 아동 특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III-1-3>과 같다. 먼저, 모 학력분포에 따라, 4년제대졸,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학원이상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이고, 모의 취업상태에서는 전업주부(육아 및 가사), 취업, 육아휴직·일시휴직, 학업 및 취업준비 순으로 분포하였다. 모 학력에 따라 아동의 성별분포는 남아, 여아 균등하게 분포했다. 모의 학력별 아동의 출생순위의 경우도 전체 응답가구 아동의 출생순위 분포와 유사하여 대부분 첫째아, 둘째아가 다수를 차지했다. 다만, 출생순위가 셋째인 아동 분포의 경우 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일 때, 16.7%인 반면, 4년제 대졸일 때 7.9%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모 취업상태에 따른 응답아동의 성별,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가구의 아동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띠는 가운데, 모의 취업상태가 학업 및 취업준비 상태인 경우 아동의 출생순위가 첫째아가 40.1%로 많이 분포하지만, 둘째아보다는 셋째 아동이 28.6%로 다소 많은 편이었다. 넷째 이상도 13.5%로 다른 경우(취업, 전업주부 등)의 넷째 이상 아동의 분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1-3〉 모 특성에 따른 아동 특성

단위: %(명)

구분	성별		출생순위				계(수)
	남	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전체	51.3	48.7	42.4	45.5	10.8	1.3	100.0(1,505)
학력							
고졸이하	48.4	51.6	39.3	41.1	16.7	2.9	100.0(313)
전문대졸	44.9	55.1	38.3	46.6	13.7	1.4	100.0(247)
4년제대졸	53.9	46.1	44.4	46.9	7.9	0.7	100.0(875)
대학원이상	52.7	47.3	43.5	46.3	10.3	-	100.0(68)
기타	72.7	27.3	100.0	-	-	-	100.0(3)
취업상태							
취업	52.3	47.7	41.1	46.7	11.2	1.0	100.0(594)
육아휴직,일시휴직	48.1	51.9	38.9	52.2	9.0	-	100.0(95)
학업 및 취업준비	63.0	37.0	40.1	17.8	28.6	13.5	100.0(10)
전업주부(육아및가사)	50.7	49.3	43.6	44.4	10.5	1.5	100.0(803)
기타	72.7	27.3	100.0	-	-	*	100.0(3)

아동 연령에 따른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교육·보육서비스의 조합방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0세에는 71.9%가 전적으로 부모가 양육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세 이후로는 단일서비스 중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아동의 분포가 1세 62.3%로 증가하였으며, 2세 60.8%였다. 이러한 응답 아동 연령별 서비스 이용특성은 3세 이후로 다시 한 번 달라지는데, 3세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의 분포를 보면 어린이집만 이용하는 비중이 24.6%, 유치원만 이용이 27.0%로 나타났다. 반면, 복수서비스 이용의 비중은 3세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복수서비스이용 중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사교육(시간제)를 이용하는 아동이 2세에서 19.4%였으나, 3세 35.1%, 4세 48.1%, 5세 70.5%까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가지 복수서비스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5세의 경우 12.8%에 달했다.

〈표 III-1-4〉 아동 연령별 및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응답자

단위: %(명)

구분	아동 보육 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전체	100.0(234)	100.0(241)	100.0(250)	100.0(248)	100.0(264)	100.0(268)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	71.9(168)	17.3(42)	3.1(8)	-	-	-
단일서비스 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1.3(26)	62.3(150)	60.8(152)	24.6(61)	11.4(30)	0.9(2)
유치원만 이용	-	-	-	27.0(67)	27.7(73)	13.2(35)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	-	2.5(6)	2.2(5)	1.9(5)	1.6(4)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8.6(20)	1.9(5)	-	-	-	-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5.1(12)	3.7(9)	-	-	-	-
복수서비스 이용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	6.2(15)	19.4(49)	35.1(87)	48.1(127)	70.5(189)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개별돌봄	3.2(7)	7.5(18)	12.1(30)	5.3(13)	4.8(13)	1.0(3)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	1.1(3)	-	-	-	-
기관 교육·보육 (반일이상) +사교육(시간제) +개별돌봄	-	-	2.1(5)	5.8(14)	6.0(16)	12.8(34)

2) 가구 특성

다음은 응답 가구의 특성을 가구원 수, 가구 형태, 지역규모, 가구소득, 기초생활 수급 여부, 맞벌이 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가구원 수에서는 4인 가구가 53.8%로 가장 많았고, 3인 이하 28.2%, 5명 14.3%, 6명 이상 3.7%로 뒤를 이었다. 가구 형태에서는 부부+자녀의 형태가 93.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3세대 가구 6.1%, 한부모+자녀 0.5%였다.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 42.8%, 중소도시 45.5%, 읍·면지역 11.7%였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300~399만원인 가구가 31.2%로 가장 많고, 가구소득 400~499만원인 가구 23.5%로 뒤를 이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가구는 0.5%였다. 맞벌이 가구는 46.3%였으며, 그 외 부모 중 한 명만 취업 중이거나 부모 모두 미취업상태인 비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53.7%였다.

〈표 III-1-5〉 응답 가구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수)
전체	100.0(1,119)	전체	100.0 (1,119)
가구원 수		가구소득	
3인이하	28.2(316)	199만원이하	1.7 (19)
4인	53.8(602)	200~299만원	10.7 (120)
5명	14.3(160)	300~399만원	31.2 (350)
6명이상	3.7(41)	400~499만원	23.5 (263)
가구 형태		500~599만원	17.4 (195)
부부+자녀	93.4 (1,045)	600~699만원	6.7 (75)
한부모+자녀	0.5 (6)	700만원이상	8.7 (98)
3세대가구	6.1 (68)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조손가정	0.0 (1)	수급 가구	0.5 (6)
지역규모		미수급 가구	99.5 (1,113)
대도시	42.8 (479)	맞벌이 여부	
중소도시	45.5 (509)	그렇다	46.3 (518)
읍면지역	11.7 (131)	아니다	53.7 (601)

본 조사의 조사대상이 되는 1,119 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1.9명이었으며, 총 자녀 수는 53.9%가 2명이라고 응답하였다. 가구 내 총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31.3%, 3명 이상인 경우가 14.8%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총 자녀수가 2명인 응답자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자녀수는 전체 평균 자녀수와 유사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 300~399만원이상인 가구의 경우 총 자녀수가 2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

〈표 III-1-6〉 응답 가구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총 자녀수(%)			평균 자녀수(명)				계(수)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영아	유아	초등 이상	
전체	31.3	53.9	14.8	1.9	0.6	0.7	0.5	100.0 (1,119)
지역규모								
대도시	14.1	23.8	4.9	1.8	0.6	0.7	0.5	42.8 (479)
중소도시	13.5	24.7	7.3	1.9	0.6	0.8	0.5	45.5 (509)
읍·면지역	3.7	5.4	2.6	1.9	0.6	0.8	0.6	11.7 (131)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0.8	0.8	0.1	1.6	0.8	0.5	0.3	1.7 (19)

(표 III-1-6 계속)

구분	총 자녀수(%)			평균 자녀수(명)				계(수)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영아	유아	초등 이상	
200~299만원	5.3	4.0	1.4	1.7	0.8	0.5	0.4	10.7 (120)
300~399만원	9.0	17.8	4.4	1.9	0.6	0.8	0.5	31.2 (350)
400~499만원	7.5	12.4	3.6	1.8	0.6	0.7	0.5	23.5 (263)
500~599만원	4.5	9.7	3.3	1.9	0.6	0.8	0.5	17.4 (195)
600~699만원	1.8	3.7	1.2	1.9	0.6	0.8	0.5	6.7 (75)
700만원이상	2.4	5.5	0.8	1.8	0.6	0.8	0.4	8.7 (98)
맞벌이 여부								
그렇다	13.8	25.9	6.6	1.9	0.6	0.8	0.5	46.3 (518)
아니다	17.5	28.0	8.2	1.9	0.7	0.7	0.5	53.7 (602)

3) 부모 특성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은 부모가 부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와 모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의 학력 특성으로 4년제대졸이 64.5%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하가 17.6%로 뒤를 이었다. 모의 학력 또한 4년제대졸이 57.6%, 고졸이하가 21.7%순이었다. 취업상태별로는 부의 경우 학업과 취업준비 중인 0.5%를 제외한 99.5%가 취업자라고 응답하였다. 모의 경우에는 52.2%가 전업주부(육아 및 가사), 41.7%가 취업, 5.3%가 육아휴직·일시휴직중이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 부의 경우 대부분 36시간이상 52시간미만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4.1%), 52시간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14.0%, 36시간미만인 경우 1.5%였다. 모의 경우 취업자를 기준으로 36시간이상 52시간미만 근로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8.3%로 가장 많았으며, 36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가 11.5%로 부에 비해 모가 단시간 근로자 비중이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

〈표 III-1-7〉 응답 가구의 부모 특성

		단위: %(명)	
부 특성	계 (수)	모 특성	계 (수)
전체	100.0 (1,115)	전체	100.0 (1,116)
학력		학력	
고졸이하	17.6 (197)	고졸이하	21.7 (243)
전문대졸	12.1 (135)	전문대졸	16.3 (182)
4년제대졸	64.5 (720)	4년제대졸	57.6 (643)
대학원이상	5.7 (64)	대학원이상	4.3 (48)

(표 III-1-7 계속)

부 특성	계 (수)	모 특성	계 (수)
취업상태		취업상태	
취업	99.5 (1,110)	취업	41.7 (466)
육아휴직,일시휴직	- -	육아휴직,일시휴직	5.3 (59)
학업 및 취업준비	0.5 (5)	학업 및 취업준비	0.8 (9)
전업주부(육아및가사)	- -	전업주부(육아및가사)	52.2 (582)
근로시간		근로시간	
36시간미만	1.5 (16)	36시간미만	11.5 (129)
36시간이상 52시간미만	84.1 (938)	36시간이상 52시간미만	28.3 (316)
52시간이상	14.0 (156)	52시간이상	1.9 (21)
해당없음	0.5 (5)	해당없음	58.3 (650)

주: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제근로라 할 수 있는 36시간 미만과 연장근로 제한 시간 (근로기준법 53조) 걸리는 52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로 구분함.

모의 특성에 따른 평균 자녀수는 모가 고졸이하인 경우 2.0명, 전문대졸 1.9명, 4년제대졸 1.8명, 대학원이상 1.8명으로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자녀 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취업의 경우 1.8명인데 비해 전업주부(육아 및 가사)의 경우 1.9명으로 0.1명 많았으며, 학업 및 취업준비 중인 경우 2.1명으로 격차를 보였다.

〈표 III-1-8〉 모 특성에 따른 평균 자녀 수

단위: 명

모 특성	평균 자녀 수(명)				(수)
	전체	영아	유아	초등이상	
전체	1.9	0.6	0.7	0.5	(1,116)
학력					
고졸이하	2.0	0.6	0.7	0.7	(243)
전문대졸	1.9	0.6	0.8	0.5	(182)
4년제대졸	1.8	0.6	0.8	0.4	(643)
대학원이상	1.8	0.6	0.8	0.3	(48)
취업상태					
취업	1.8	0.5	0.8	0.5	(466)
육아휴직,일시휴직	2.0	1.1	0.6	0.3	(59)
학업 및 취업준비	2.1	0.7	0.5	0.9	(9)
전업주부(육아및가사)	1.9	0.7	0.7	0.4	(582)
근로시간					
36시간미만	1.9	0.5	0.7	0.6	(129)
36시간이상 52시간미만	1.8	0.5	0.8	0.5	(316)
52시간이상	2.1	0.5	0.8	0.8	(21)
해당없음	1.9	0.7	0.7	0.4	(650)

4) 가중치 적용 전후 응답자 특성 차이

가중치 적용 전후 응답자 특성 차이를 아동 특성별로 살펴보면, 가중치 적용 후 대표적으로 아동연령별 응답자 비중이 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 구분의 경우 가중치 적용 전 영아 38.2%, 유아 61.8%였으나, 적용 후 48.2%, 51.8%로 영아에 가중치가 좀 더 크게 적용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에 따른 응답자의 비중 또한 다소 변동되었는데,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중치 적용 전 11.4%에서 적용 후 14.5%로, 단일서비스 이용 중에서 어린이집만 이용이 가중치 적용 전 23.8%에서 적용 후 28.1%, 유치원만 이용의 경우 가중치 적용 전 13.0%에서 적용 후 11.6%로 변동되었다. 복수서비스 이용의 경우, 기관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응답비중이 가중치 적용 전후로 36.3%에서 31.0%로 바뀌었다.

〈표 III-1-9〉 가중치 적용 전후 아동 특성별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	
전체	(1,505)	100.0	(1,505)	100.0
성별				
남아	(777)	51.6	(772)	51.3
여아	(728)	48.4	(733)	48.7
영유아 구분				
영아	(575)	38.2	(726)	48.2
유아	(930)	61.8	(779)	51.8
아동 연령별				
0세	(188)	12.5	(234)	15.6
1세	(188)	12.5	(241)	16.0
2세	(199)	13.2	(250)	16.6
3세	(253)	16.8	(248)	16.4
4세	(343)	22.8	(264)	17.5
5세	(334)	22.2	(268)	17.8
출생순위				
첫째	(657)	43.7	(639)	42.4
둘째	(665)	44.2	(685)	45.5
셋째이상	(183)	12.2	(181)	12.0

〈표 III-1-10〉 가중치 적용 전후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응답자

단위: (명), %

구분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	
	빈도	비중	빈도	비중
전체	(1,505)	100.0	(1,505)	100.0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	(171)	11.4	(218)	14.5
단일서비스 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358)	23.8	(422)	28.1
유치원만 이용	(196)	13.0	(175)	11.6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43)	2.9	(21)	1.4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22)	1.5	(25)	1.6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13)	0.9	(21)	1.4
복수서비스 이용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547)	36.3	(466)	31.0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개별돌봄	(74)	4.9	(84)	5.6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2)	0.1	(3)	0.2
기관 교육·보육 (반일이상) +사교육(시간제) +개별돌봄	(79)	5.2	(70)	4.6

2.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지금부터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실태 조사를 중심으로, 아동별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에 대해 살펴본다.

가. 아동당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및 총 비용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19만8천원이었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만을 기준으로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25만5천원이었다. 총 평균 교육·보육비용을 아동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지출여부와 관계없이 아동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높아지면서 비용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출비용의 구간별 비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0세의 경우 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79.8%로 가장 많은 반면, 1세와 2세의 경우 10만원미만이라는 응답이 각각 52.5%, 5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세부터 10~30만원미만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도 출생순위가 높아짐에 따라 총 교육·보육비용이 낮아지면서 비용분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출생순위 첫째아의 경우 지출비용 구간별 비중을 보면 10~30만원미만의 경우가 30.8%로 가장 높으며, 출생순위 둘째아는 지출비용이 1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2.6%로 가장 높았다. 셋째아의 경우는 첫째아, 둘째아에 비해 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이는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어린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III-2-1〉 아동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지출비용 구간별 비중					계(수)	평균비용 (미지출 포함)	평균비용 (지출 아동)
	없음	10 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전체	22.2	31.5	25.3	9.7	11.3	100.0(1,505)	19.8	25.5
아동 연령별								
0세	79.8	10.8	2.7	2.1	4.6	100.0(234)	5.6	27.5
1세	32.6	52.5	9.2	1.9	3.7	100.0(241)	7.7	11.4
2세	11.3	53.4	22.7	3.2	9.5	100.0(250)	16.8	19.0
3세	4.8	36.5	37.4	11.1	10.1	100.0(248)	21.6	22.7
4세	4.9	21.5	37.3	21.4	14.9	100.0(264)	28.1	29.6
5세	5.9	15.3	39.0	16.8	23.1	100.0(268)	36.3	38.6
X ² , F			884.0 ^{***}				46.0 ^{***}	19.8 ^{***}
출생순위								
첫째	14.1	29.9	30.8	12.1	13.1	100.0(639)	24.0	27.9
둘째	27.3	32.6	21.2	8.4	10.6	100.0(685)	17.9	24.5
셋째이상	32.0	32.9	21.3	6.3	7.5	100.0(181)	12.7	18.7
X ² , F			60.3 ^{***}				13.1 ^{***}	4.7 ^{**}

^{**} $p < .01$, ^{***} $p < .001$

한편, 총 교육·보육비용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총 교육·보육비용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비용이 1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맞벌이 가구 28.9%, 비맞벌이 가구 3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30만원 미만의 응답이 28.1%로 그 뒤를 이은 반면,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출비용이 없다는 응답이 28.0%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도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소득 499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10만원미만에 응답한 비율이 각 소득 구

간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가구소득 500~599만원, 600~699만원이 하인 구간에서는 10~30만원이 각 31.5%, 25.6%였으며, 가구소득 700만원이상인 가구의 경우 50만원 이상(32.4%) 비용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 교육·보육비용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두 10만원미만의 총 교육·보육비용이 지출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2-2〉 가구 특성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지출비용 구간별 비중					계(수)	평균비용 (미지출 포함)	평균비용 (지출 아동)
	없음	10 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전체	22.2	31.5	25.3	9.7	11.3	100.0(1,505)	19.8	25.5
맞벌이 여부								
그렇다	15.3	28.9	28.1	10.9	16.8	100.0(680)	25.7	30.3
아니다	28.0	33.6	22.9	8.8	6.7	100.0(825)	15.0	20.8
X^2, t			69.9***				6.8***	5.2***
가구원수								
3명	21.6	29.7	25.7	10.5	12.5	100.0(309)	21.0	26.8
4명	21.4	32.8	25.1	10.0	10.8	100.0(881)	19.9	25.3
5명이상	25.2	29.5	25.5	8.3	11.5	100.0(315)	18.5	24.7
X^2, F			4.2				0.6	0.3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9.4	39.7	7.0	11.3	2.5	100.0(24)	8.5	14.0
200~299만원	33.6	41.2	20.5	4.7	0.0	100.0(154)	7.2	10.8
300~399만원	23.0	35.8	24.4	11.3	5.5	100.0(474)	14.6	19.0
400~499만원	21.7	30.3	28.2	8.5	11.3	100.0(346)	18.5	23.7
500~599만원	17.8	25.4	31.5	11.0	14.2	100.0(265)	23.0	28.0
600~699만원	18.0	22.9	25.6	12.8	20.7	100.0(102)	29.2	35.5
700만원이상	16.8	25.5	17.3	8.0	32.4	100.0(140)	43.8	52.7
X^2, F			150.1***				27.6***	25.6***
지역 규모								
대도시	22.6	29.9	23.8	11.3	12.5	100.0(637)	21.7	28.0
중소도시	20.3	31.7	26.2	10.0	11.8	100.0(692)	20.3	25.4
읍면지역	28.6	36.4	26.8	3.1	5.2	100.0(176)	11.5	16.2
X^2, F			24.0**				8.2***	7.1***

** $p < .01$, *** $p < .001$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교육·보육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단일 서비

스 이용 아동들 중에서 어린이집만 이용 또는 사교육(시간제)만 이용한다는 응답자들 중 10만원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각각 66.9%, 7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치원만 이용한다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10~30만원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35.8%로 가장 높았다.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또는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한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총 교육·보육비용이 50만원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각각 60.6%, 55.6%로 높은 비용 분포를 보였다. 복수서비스 이용 중에서는 기관교육·보육(반일이상)+사교육(시간제)일 경우가 10~30만원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고, 사교육(시간제)+개별돌봄일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69.9%로 가장 높았으나 관측치가 3개에 불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III-2-3〉 교육·보육서비스 조합방식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만원

구분	지출비용 구간별 비중					평균비용 (지출아동)	계(수)
	없음	10 만원 미만	10~30 만원 미만	3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전체	22.2	31.5	25.3	9.7	11.3	25.5	100.0(1,505)
전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	100.0	0.0	0.0	0.0	0.0	0.0	100.0(218)
단일서비스 이용							
어린이집만 이용	15.8	66.9	17.3	0.0	0.0	6.6	100.0(422)
유치원만 이용	21.7	25.2	35.8	13.8	3.5	18.5	100.0(175)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0.0	0.0	16.7	22.7	60.6	66.1	100.0(21)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14.7	2.6	7.6	19.6	55.6	67.1	100.0(25)
사교육(시간제)만 이용	0.0	77.4	22.6	0.0	0.0	8.2	100.0(21)
복수서비스 이용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0.0	24.5	43.4	18.4	13.7	28.0	100.0(466)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개별돌봄	9.7	13.2	24.9	15.1	37.1	48.8	100.0(84)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0.0	0.0	0.0	30.1	69.9	100.0	100.0(3)
기관 교육·보육(반일이상) + 사교육(시간제) + 개별돌봄	0.0	7.6	16.0	18.7	57.7	71.1	100.0(70)
X^2, F			1658.3***			80.0***	

주: 사교육(시간제)은 시간제 학원,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부분은 복수응답이 가능한데, 하나라도 이용하고 있으면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p < .001$

나.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 및 비용

이 항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로 이용 실태와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는 아동별 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한 값이며, 이용비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한해 월 평균으로 계산한 값으로 미지출 아동의 비용은 제외되어 있다.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비용

가)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

전체 응답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43.3%였으며, 이 중 특별활동 이용자는 58.9%였다. 아동 연령별로는 어린이집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연령인 2세의 어린이집 이용 비율이 92.1%이었으며, 이 중 특별활동은 61.0%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4.2%는 시간 연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에서의 특별활동 이용비율은 2세 이후로 계속 과반이상을 유지하는데, 4세 때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아 87.9%에 달했다.

어린이집 총 이용비용은 총액 평균 6만9천원으로, 정규 교육·보육비 중 차액보육료는 평균 7만2천원, 기타 비용이 평균 3만1천원이었다. 선택적 교육비 중 특별활동비는 평균 5만5천원이었으며,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평균 2만4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5세의 경우, 선택적 교육비와 기타비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적은 것으로 응답된 반면, 차액보육료가 9만9천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III-2-4〉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이용비율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어린 이집	특별 활동	시간 연장 등	정규 교육·보육비		선택적교육비		
				차액 보육료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시간연장 보육료	
전체	43.3 (652)	58.9	4.4	7.2	3.1	5.5	2.4	6.9
아동 연령별								
0세	14.5 (34)	23.4	2.9	0.0	1.9	3.5	0.0	2.8
1세	76.0 (183)	36.1	2.8	0.0	2.8	4.6	2.3	4.1
2세	92.1 (231)	61.0	4.2	0.0	3.7	5.8	0.7	6.9

(표 III-2-4 계속)

구분	이용비율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어린 이집	특별 활동	시간 연장 등	정규 교육·보육비		선택적교육비		
				차액 보육료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시간연장 보육료	
3세	42.6 (106)	85.7	5.7	6.7	3.0	5.9	2.7	9.5
4세	24.2 (64)	87.9	8.0	7.3	3.1	5.8	6.0	9.9
5세	13.1 (35)	65.2	4.8	9.9	2.0	5.5	3.0	7.3
χ^2, F				1.7	3.1**	2.1	4.5**	19.6***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어린이집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별활동 및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3)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24시간, 휴일보육(본 조사에서는 주말보육) 등이 포함됨.

4) ()는 어린이집 이용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1$, *** $p < .001$

가구특성별로는 맞벌이 가구 중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46.9%로,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6.5%p 가량 높았으나, 특별활동 이용 비율은 각각 59.3%, 58.5%로 유사했다. 가구소득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비율은 전체 43.3%에서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특별활동의 경우도 각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자의 50% 이상이 특별활동을 이용하고 있었다. 단, 가구소득 500-599만원인 가구의 경우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데 어린이집 이용비율 39.8%에서 70.6%가 특별활동을 이용하였으며, 10.1%가 시간연장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소득구간의 아동들과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반면, 이용 비율과 달리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이 300-399만원인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평균 5만9천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구소득 500-599만원인 가구들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평균 8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특별활동 이용 비용의 가구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5만5천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가구소득 400~499만원, 500-599만원인 가구에서 각각 6만5천원, 6만원으로 비교적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5〉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이용비용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이용 비용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어린이집	특별 활동	시간 연장 등	정규 교육·보육비 차액 보육료	선택적 기타 비용	교육비 특별 활동비	시간연장 보육료	
전체	43.3 (652)	58.9	4.4	7.2	3.1	5.5	2.4	6.9
맞벌이 여부								
그렇다	46.9 (319)	59.3	6.2	7.0	3.0	5.7	2.9	6.8
아니다	40.4 (333)	58.5	2.7	7.4	3.3	5.4	1.5	7.0
χ^2, t				0.4	0.9	1.0	1.3	-0.4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45.3 (11)	51.4	0.0	0.0	5.8	4.7	0.0	8.2
200~299만원	55.7 (86)	52.4	3.6	8.7	2.7	4.6	1.8	6.0
300~399만원	42.0 (199)	51.4	3.9	7.6	3.2	4.5	1.7	5.9
400~499만원	44.0 (152)	65.7	1.8	7.1	3.1	6.5	0.0	7.8
500~599만원	39.8 (106)	70.6	10.1	7.0	3.2	6.0	3.3	8.4
600~699만원	41.2 (42)	54.0	0.0	6.8	2.9	4.7	0.0	6.3
700만원이상	40.4 (56)	59.7	7.9	4.4	2.9	6.3	3.6	6.5
χ^2, F				0.3	1.7	5.0***	1.2	3.3**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각 집단별 전체 아동 대비 어린이집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별활동 및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 비율은 어린이집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3)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24시간, 휴일보육(본 조사에서는 주말보육) 등이 포함됨.

4) ()는 어린이집 이용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1$, *** $p < .001$

한편,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총 이용비용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4만6천원이었고,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어린이집이 4만1천원으로 다른 유형의 기관에 비해 저렴했다. 이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은 월 평균 총 이용비용은 9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정 어린이집이 4만9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건비 지원 기관에 해당하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의 경우에는 차액 보육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비용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민간 어린이집은 5만5천원 가량의 차액보육료가 발생했으며, 차액보육료는 가정 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부모협동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간의 이용비용 총액의 차이는 이러한 차액 보육료의 차이에 기인한 바가 크며, 특별활동비 또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약간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III-2-6〉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이용비용

단위: 개, 만원,(명)

구분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수)
	정규교육·보육비		선택적 교육비			
	차액 보육료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시간연장형 보육료		
전체	7.2	3.1	5.5	2.4	6.9	(652)
설립유형						
국공립	-	1.9	5.0	2.4	4.6	(180)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	2.1	5.0	0.0	4.1	(42)
민간	5.5	4.0	6.0	2.3	9.3	(302)
가정	7.3	3.3	4.7	5.0	4.9	(116)
직장·부모협동	7.7	1.3	4.5	0.0	4.7	(12)
F	0.2	14.2***	3.0*	0.5	29.2***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보육료, 기타비용, 특별활동비, 시간연장형보육비 등을 포함하였으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특성화비,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24시간, 휴일보육(본 조사에서는 주말보육) 등이 포함.

3) ()는 어린이집 이용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5$, *** $p < .001$

나)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비용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비용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별활동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384명 중 1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0.4%였으며, 2개의 특별활동 이용비율이 24.8%, 3개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4개가 17.4%, 5개 이상이 13.1%였다. 1개의 특별활동을 이용할 때 특별활동 총 비용은 평균 2만2천원이었고, 2개의 특별활동 이용하는 경우 4만2천원, 3개 이용시 6만3천원이었다.

〈표 III-2-7〉 특별활동 개수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이용 실태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비중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100.0 (384)	1.9	0.8	5.5	20.0
특별활동개수					
1개	10.4 (40)	2.2	1.0	2.2	7.5
2개	24.8 (95)	2.1	1.0	4.2	11.6
3개	34.3 (132)	2.1	1.2	6.3	12.0
4개	17.4 (67)	1.8	1.5	7.2	12.0
5개이상	13.1 (50)	1.1	0.8	6.4	20.0
F		10.7***		29.2***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01$

전체 평균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가 3.1개인 가운데, 아동연령별로 0세는 2.0개, 1세 2.6개, 2세 3.1개로 계속 증가하여 5세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개수가 3.9개까지 많아졌다. 특별활동 과목당 평균 이용비용은 1만9천원으로,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5세의 경우에 과목당 이용비용이 1만5천원으로 약간 적었다.

〈표 III-2-8〉 아동연령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구분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3.1	1.9	0.8	5.5	20.0	(384)
아동 연령별						
0세	2.0	1.8	1.5	3.5	7.7	(8)
1세	2.6	1.9	1.0	4.6	12.0	(66)
2세	3.1	2.0	1.2	5.8	20.0	(141)
3세	3.2	1.9	0.8	5.9	12.0	(91)
4세	3.4	2.0	1.8	5.8	12.0	(56)
5세	3.9	1.5	1.5	5.5	10.0	(23)
F	4.7***	0.3		0.1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01$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개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3.2개, 비맞벌이 가구는 3.0개였으며, 특별활동 총 비용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만7천원, 비맞벌이 가구는 5만4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가구에서 특별활동 이용 개수가 2.5개로 가장 적었고, 가구소득 400~499만원 가구에서 3.4개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활동 이용 비용도 400~499에서 6만5천원으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특별활동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구분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3.1	1.9	0.8	5.5	20.0	(384)
맞벌이 여부						
그렇다	3.2	1.9	1.0	5.7	20.0	(189)
아니다	3.0	2.0	0.8	5.4	12.0	(195)
t	1.6	-1.2		1.0		

(표 III-2-9 계속)

구분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5	2.1	3.0	4.7	6.0	(6)
200~299만원	3.1	1.7	0.8	4.6	12.0	(45)
300~399만원	3.0	1.7	1.0	4.5	12.0	(103)
400~499만원	3.4	2.1	1.5	6.5	20.0	(100)
500~599만원	2.9	2.1	1.4	6.0	12.5	(75)
600~699만원	2.7	1.7	1.5	4.7	8.6	(23)
700만원이상	3.1	2.2	3.8	6.3	12.0	(34)
F	1.5	3.5**		5.0***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이며, (수)는 특별활동 이용자 수를 의미함.

** $p < .01$, *** $p < .001$

다)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비용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은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652명 중에 야간보육 이용비율은 3.3%, 휴일보육은 2.1%, 24시간보육은 0.2%였다. 이용비용 면에서는 야간 보육은 평균 2만8천원, 휴일보육 평균 3만7천원이 응답되었으며, 24시간 보육은 비용이 응답되지 않았으나 이용자가 1명에 불과하고 전반적으로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 비율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III-2-10〉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보육 이용비율 및 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야간보육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수)
	이용비중	평균비용	이용비중	평균비용	이용비중	평균비용	
전체	3.3	2.8	2.1	3.7	0.2	0.0	(652)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2) 유치원 이용 실태 및 비용

가) 유치원 총 이용비용

아동 특성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을 분석한 결과, 유치원 이용비율은 35.2%로, 조사대상 중 530명의 아동이 유치원을 이용했다. 이 중 (방과

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율은 71.0%였으며, 방과후 과정 이용비율은 21.1%였다. 아동 연령별로는 3세 아동 중 유치원 이용비율은 52.4%였으며, 그 중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율은 62.0%였다. 4세 아동 중 유치원 이용비율은 70.8%였으며, 이 중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율은 72.5%였다. 5세는 유치원 이용비율이 79.9%였고,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율이 75.2%였다.

〈표 III-2-11〉 아동 연령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이용비율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정규 교육비 수업료	기타 비용	선택적교육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전체	35.2 (530)	71.0	21.1	21.0	4.4	5.7	4.2	19.8
아동 연령별								
3세	52.4 (130)	62.0	18.0	18.8	4.0	5.0	4.1	16.8
4세	70.8 (187)	72.5	21.6	19.5	4.4	6.1	4.4	20.9
5세	79.9 (214)	75.2	22.5	24.4	4.5	5.6	4.0	20.6
X ² , F				6.1**	0.4	1.4	0.2	2.4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유치원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유치원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성화 프로그램 및 방과후 과정 이용 비율은 유치원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3) ()는 유치원 이용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1$

한편, 유치원 이용 아동의 이용비용은 정규교육비와 선택적 교육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전체 유치원 이용아동의 정규교육비의 수업료는 21만원, 기타비용 4만4천원이며, 선택적 교육비로 특성화프로그램비 5만7천원, 방과후과정 4만2천원으로 유치원 이용비용의 총액 평균은 19만8천원이었다. 이를 아동 연령별로 살펴보면, 먼저 정규교육비의 수업료가 3세 18만8천원, 4세 19만5천원, 5세 24만4천원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수업료도 증가했다. 정규교육비에서 수업료를 제외한 기타비용은 아동연령에 상관없이 4만원대로 유사했으며, 유치원의 선택적 교육비에 해당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는 4세에서 6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방과후 과정 비용 역시 4세에서 4만4천원으로 다소 높았다.

전체 맞벌이 가구 중 37.8%가 유치원을 이용하였으며, 유치원 이용자 중

72.4%가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그 비율이 전반적으로 맞벌이가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볼 수 있는데, 비맞벌이 가구 중 유치원 이용비율은 33.1%였으며, 이 중 69.7%가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방과후 과정은 19.7%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소득 500~599만원인 가구가 41.1%로 유치원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비율도 80.5%로 가장 높았다. 한편, 방과후 과정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소득구간은 가구소득 199만원이하인 가구로, 유치원 이용비율 27.3% 중에서 방과후 과정 이용비율은 35.0%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정규교육비나 선택적 교육비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유치원의 수업료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21만3천원, 비맞벌이 가구는 20만8천원을 지불하고 있었으며, 특성화프로그램 비용은 5만원대로 유사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가구는 수업료로 14만4천원, 가구소득 200~299만원인 가구는 16만2천원을 지불하였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업료 지출규모도 증가하는데, 가구소득 700만원이상인 가구는 유치원 수업료로 월평균 30만4천원을 지출하였다. 선택적 교육비의 경우 특징적인 점은 가구소득 199만원이하인 가구에서 다소 높은 이용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른 소득구간의 선택적 교육비는 전체 평균비용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가구소득 199만원이하인 가구에서는 특성화 활동비로 8만1천원, 방과후 과정으로 8만9천원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단, 해당 구간의 응답자가 매우 적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표 III-2-12〉 가구 특성별 유치원 이용비율 및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이용 비율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 후 과정	정규 교육비 수업료	기타 비용	선택적교육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전체	35.2 (530)	71.0	21.1	21.0	4.4	5.7	4.2	19.8
맞벌이 여부								
그렇다	37.8 (257)	72.4	22.6	21.3	4.2	5.9	4.1	20.3
아니다	33.1 (273)	69.7	19.7	20.8	4.5	5.5	4.3	19.4
χ^2, t				0.3	-0.6	0.9	-0.3	0.6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7.3 (6)	72.1	35.0	14.4	2.8	8.1	8.9	21.9
200~299만원	21.1 (32)	66.9	10.2	16.2	4.9	5.7	0.6	17.3
300~399만원	40.3 (191)	69.8	20.6	19.6	4.5	4.8	4.5	20.5

(표 III-2-12 계속)

구분	이용 비율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 후 과정	정규 교육비		선택적교육비		
				수업료	기타 비용	특성화 프로그램	방과후 과정	
400~499만원	35.3 (122)	66.3	17.9	21.8	4.6	5.9	3.8	18.2
500~599만원	41.1 (109)	80.5	25.3	20.5	4.2	6.0	4.9	19.7
600~699만원	37.1 (38)	78.2	31.7	24.4	4.0	6.4	2.3	20.1
700만원이상	22.5 (31)	58.8	17.5	30.4	3.5	6.8	3.3	23.6
χ^2, F				2.9*	0.4	1.4	2.1	0.6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유치원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유치원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성화 프로그램 및 방과후 과정 이용 비율은 유치원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3) ()는 유치원 이용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5$

〈표 III-2-13〉유치원 설립유형별 이용 비율 및 이용비용

단위: 개, 만원,(명)

구분	이용 비용				총액 평균	(수)
	정규 교육비		선택적교육비			
	수업료	기타 비용	특성화프로 그램비	방과후 과정		
전체	21.0	4.4	5.7	4.2	19.8	(530)
설립유형						
국공립	-	1.7	4.2	3.2	5.2	(242)
사립	21.0	5.8	6.4	5.1	27.3	(288)
t		-12.4***	-5.5***	-2.8**	-23.3***	

주: 1) 총액은 입학금 등 초도물품비는 제외한 수업료, 기타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방과후 과정비 등을 포함하며, 기타 비용에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운행비, 급간식, 교재교구비 등이 포함됨.

2) 유치원 이용 비율은 각 연령별 전체 아동 대비 유치원 이용자 비율을 의미하며, 특성화 프로그램 및 방과후 과정 이용 비율은 유치원 이용자 중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의미함.

3) ()는 유치원 이용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1$, *** $p < .001$

유치원 설립 유형별 유치원 총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표 III-2-13>과 같다. 수업료는 국공립의 경우 전혀 들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21만원이었다. 그 외 기타비용도 국공립 유치원은 1만7천원인데 비해 사립유치원은 5

만8천원이었으며, 선택적 교육비 중에서 특성화 활동비의 경우 국공립은 4만2천원, 사립은 6만4천원이었다. 방과후 과정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3만2천원, 사립은 5만1천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총 이용비용은 국공립 유치원이 총액평균 5만2천원, 사립유치원 27만3천원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를 보였다.

나) 유치원 특성화프로그램비 이용비용

유치원 이용자 중 특성화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376명 중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3개 이용한다는 응답이 25.9%로 가장 높았으며, 2개 이용한다는 응답이 19.4%, 1개 이용한다는 응답은 12.9% 순이었다. 특성화프로그램 총비용은 평균 5만7천원이며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액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성화프로그램 총비용의 최소값은 5천원, 최대값은 30만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과목당 평균 비용은 2만1천원이었으며, 과목수가 증가할수록 과목당 평균 비용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I-2-14〉 특성화프로그램 개수별 이용 비율 및 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이용 실태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총비용		
	비중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100.0(376)	2.1	0.5	5.7	30.0
특성화프로그램 개수					
1개	12.9(49)	3.6	0.5	3.6	12.0
2개	19.4(73)	2.8	0.8	5.6	13.0
3개	25.9(98)	1.8	1.0	5.5	15.9
4개	20.0(75)	1.7	1.5	6.9	22.0
5개이상	21.8(82)	1.1	0.7	6.0	30.0
F		26.3***		4.5**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1$, *** $p < .001$

(방과후)특성화 프로그램의 평균 이용개수는 3.3개로, 3세와 4세 아동의 경우 평균 이용 개수는 3.1개, 5세는 3.7개였다. 특성화프로그램 총 비용은 아동연령에 따라 3세 5만원, 4세 6만1천원, 5세 5만6천원이었으며, 연령별 과목당 평균비용은 3세 아동의 경우 특성화프로그램 과목당 평균 2만3천원이며, 4세 2만2천원, 5세 1만9천원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과목당 비용은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15〉 아동연령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구분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3.3	2.1	0.5	5.7	30.0	(376)
아동 연령별						
3세	3.1	2.3	1.0	5.0	15.9	(80)
4세	3.1	2.2	0.5	6.1	22.0	(135)
5세	3.7	1.9	0.7	5.6	30.0	(161)
F	5.3**	1.9		1.4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1$

맞벌이 여부에 따라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구소득구간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이용개수 평균이 비교적 높았다.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 가구의 경우 이용개수 평균이 3.8개, 200~299만원인 가구는 4.0개로 다소 많은 편이나, 가구소득 300~399만원인 가구부터 3.4개, 400~499만원인 가구가 3.3개, 600~699만원인 가구에서 2.7개로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가 비교적 적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평균에서 별다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표 III-2-16〉 가구특성별 유치원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구분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3.3	2.1	0.5	5.7	30.0	(376)
맞벌이 유무						
그렇다	3.2	2.1	0.5	5.9	30.0	(186)
아니다	3.5	2.0	0.7	5.5	22.0	(190)
t	-1.7	0.4		0.9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8	2.0	5.6	8.1	9.0	(5)
200~299만원	4.0	1.9	1.5	5.7	15.0	(22)
300~399만원	3.4	1.9	0.7	4.8	20.0	(133)
400~499만원	3.3	2.1	1.0	5.9	22.0	(81)
500~599만원	3.3	2.1	1.6	6.0	15.0	(88)
600~699만원	2.7	2.6	1.1	6.4	12.0	(29)
700만원이상	3.4	2.1	0.5	6.8	30.0	(18)
F	1.6	0.7		1.4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다음으로 유치원 설립유형별 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에 관한 조사 결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특성화프로그램 이용개수는 평균 3.5개이며, 사립유치원은 3.2개였다. 특성화프로그램 총 비용은 국공립유치원은 4만2천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6만4천원이었다. 이때 사립유치원의 경우 특성화프로그램 총비용 최소값은 7천원이었으며 최대값은 30만원이었다.

〈표 III-2-17〉 유치원 설립유형별 (방과후)특성화프로그램 이용 개수 및 비용

단위: 개, 만원,(명)

구분	이용개수 평균	과목당 평균비용	특성화프로그램 총비용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3.3	2.1	0.5	5.7	30.0	(376)
설립유형						
국공립	3.5	1.3	0.5	4.2	10.0	(169)
사립	3.2	2.5	0.7	6.4	30.0	(208)
<i>t</i>	1.6	-7.5***		-5.5***		

주: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01$

3) 사교육 실태 및 비용

영유아의 사교육 이용은 반일제 이상 학원과 시간제로 이용하는 사교육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가) 반일제 이상 학원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7%로, 그 중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비율은 44.1%이었으며 종일반 이용은 15.9%였다.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지 않는 0-1세를 제외하고,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2세가 4.7%, 3세 5.0%, 4세 5.1%, 5세 7.0%였다. 반일제 이용 영유아의 특별활동 이용 비율은 2세가 56.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세가 51.0%로 뒤를 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용은 총 이용비용이 5세 80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세가 74만2천원, 4세가 73만1천원, 3세가 62만1천원 순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인 비용 항목별로는 교육비가 57만4천원이고 기타비용이 12만7천원, 특별활동비가 12만9천원, 종일반비 10만1천원 등으로 총액 평균 73만5천원이었다.

〈표 III-2-18〉 아동 특성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이용비율			이용비용				총액 평균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 활동	종일반	교육비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종일반비	
전체	3.7 (56)	44.1	15.9	57.4	12.7	12.9	10.1	73.5
아동 연령별								
2세	4.7 (12)	56.8	4.2	58.3	12.8	7.4	15.0	74.2
3세	5.0 (12)	41.6	11.8	44.0	15.2	15.2	8.8	62.1
4세	5.1 (13)	25.2	16.5	60.1	12.3	13.1	7.5	73.1
5세	7.0 (19)	51.0	25.5	63.7	11.0	14.5	11.2	80.9
X ² , F				1.2	0.3	0.9	0.4	0.8

주 : 1) ()는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2) 1세 이하는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가 조사되지 않아 제시하지 않음.

반일제 학원 종류별로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영어학원 2.4%, 선교원 등 기타 0.5%, 놀이학원 0.4%, 체육학원 0.3%, 미술학원 0.1% 등을 이용하고 있었다. 각 기관 내 특별활동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선교원 등 기타에 다니는 경우에 82.8%, 체육학원 이용자 중 53.9%, 놀이학원 이용자 중 53.1%, 영어학원 이용자 중 35.3%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종일반은 미술학원 이용자 중 21.5%, 영어학원 18.9%, 놀이학원 17.3%, 체육학원 이용자의 14.9%가 이용하고 있었다.

반일제 학원 종류별로 이용비용은 교육비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놀이학원 이용자들의 평균 교육비는 67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학원이 65만3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술학원은 49만원, 체육학원이 35만2천원, 선교원 등 기타가 27만5천원이었다. 교육비 항목 이외의 기타비용은 놀이학원이 19만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특별활동비는 영어학원의 특별활동비가 16만4천원, 체육학원의 특별활동비 14만3천원으로 다소 높았다. 총액 평균을 기준으로 놀이 학원 이용비용이 88만3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학원이 83만2천원으로 다음이었다. 미술학원의 경우 54만7천원으로 영어학원 등에 비해 이용비용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선교원 등 기타 기관의 이용비용은 평균 37만6천원으로 앞서 살펴본 사립유치원의 이용 총액 평균 27만3천원에 비해서도 약 10만 원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반일제 학원 이용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도한 해석은 주의해야 한다.

〈표 III-2-19〉 기관 특성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명), 만원

구분	이용 비율			이용 비용				총액 평균
	반일제이상 학원	특별 활동	종일반	교육비	기타 비용	특별 활동비	종일반비	
전체	3.7 (56)	44.1	15.9	57.4	12.7	12.9	10.1	73.5
기관종류								
영어학원	2.4 (36)	35.3	18.9	65.3	13.8	16.4	11.0	83.2
미술학원	0.1 (2)	-	21.5	49.0	6.4	-	2.0	54.7
놀이학원	0.4 (6)	53.1	17.3	67.3	19.8	-	10.0	88.3
체육학원	0.3 (4)	53.9	14.9	35.2	6.5	14.3	6.6	46.4
기타	0.5 (8)	82.8	-	27.5	5.1	7.3	-	37.6
X^2, F		-		4.3**	2.0	4.0*	0.5	6.1***

주: 1) 선교원 등은 기타기관에 속하며, 음악학원은 응답이 하나도 없어 제외함.

2) ()는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수이며, 이용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5$, ** $p < .01$, *** $p < .001$

특별활동 이용자 2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특별활동을 5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40.4%에 달했다. 다음 특별활동 이용자 중 28.2%가 특별활동을 3개 이용하고 있었고, 2개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19.0% 비중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총 비용은 12만9천원으로 최소 2만5천원에서 33만원까지로 편차를 보였으며, 특별활동 이용 개수가 많을수록 특별활동 총비용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0〉 특별활동 개수별 반일제 이상 학원 특별활동 이용 비율 및 비용

단위: %, (개), 만원

구분	이용 실태	과목당 평균비용	특별활동 총비용		
	비중 (수)		최소값	평균	최대값
전체	100.0(25)	2.7	2.5	12.9	33.0
특별활동 개수					
1개	4.0(1)	4.6	2.5	4.6	6.0
2개	19.0(5)	4.1	10.0	11.7	15.0
3개	28.2(7)	2.8	3.0	10.3	30.0
4개	8.4(2)	3.9	8.0	15.7	20.0
5개이상	40.4(10)	1.6	6.0	16.5	33.0
X^2, F		1.1		0.9	

주: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나) 사교육(시간제)

사교육(시간제)은 종류를 시간제 학원,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으로 세분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영유아의 사교육(시간제) 평균 이용 개수는 1.9개였으며, 이는 아동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아동의 연령이 0세인 경우 1.1개, 1세 1.5개, 2세 1.6개로 증가하다가 4세 1.9개, 5세 최고 2.2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간제)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시간제 학원의 경우 0-1세까지는 2%대였으나 3세부터 11.8%, 4세 25.1%, 5세 53.5%로 이용비율이 상당폭 증가했다.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의 경우에는 이용 비율 자체는 시간제 학원에 비해 낮지만 3세 이후로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유사했다. 학습지 항목의 이용 비율은 0세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5세 때 54.1%로 시간제 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 절반이상이 이용했다. 사교육(시간제)의 총 이용비용은 월평균 11만4천원으로, 아동 연령 0세에 5만6천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5세에는 평균 13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21〉 아동 특성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단위: %, 개, 만원, (명)

구분	이용 비율					평균 이용 개수	총액 평균	(수)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 활동	통신 교육			
전체	17.0	2.8	25.4	3.0	1.2	1.9	11.4	(1,505)
아동 연령별								
0세	2.2	0.3	1.4	1.5	0.0	1.1	5.6	(234)
1세	2.0	1.8	6.4	3.8	0.3	1.5	8.5	(241)
2세	3.1	0.8	17.4	1.5	1.3	1.6	8.7	(250)
3세	11.8	3.2	30.7	4.2	1.6	1.7	9.1	(248)
4세	25.1	3.2	37.3	4.8	2.0	1.9	11.2	(264)
5세	53.5	6.8	54.1	2.3	1.6	2.2	13.9	(268)
X ² , F	376.4***	25.5***	267.1***	9.4	6.0	6.1***	6.3***	

주: 1) 비율은 해당 서비스를 한 개라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평균 이용 개수는 숫자를 합산해서 평균함. 예를 들어, 시간제 학원 2개와 학습지 2개를 이용하는 경우 4개임.

2)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01$

사교육(시간제) 개수별 총 교육·보육비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사교육(시간제)를

이용한다는 응답자 37.2% 중에서 사교육(시간제) 1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1%, 2개 8.4%, 3개 6.4%였다. 사교육(시간제) 이용 아동 중 1개 이용 아동의 월평균 비용은 5만9천원, 2개 이용아동은 11만3천원, 3개 이용아동은 17만9천원이었다.

〈표 III-2-22〉 사교육(시간제) 개수별 총 교육·보육비용(아동당 월평균비용)

단위: %(명), 만원

구분	이용 비율	평균비용 (지출아동)
전체	37.2 (560)	11.4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		
1개	19.1 (287)	5.9
2개	8.4 (126)	11.3
3개	6.4 (96)	17.9
4개이상	3.3 (50)	30.8

주: 사교육 개수는 시간제 학원,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활동, 통신교육 등 세부적인 이용 개수를 모두 더하여 산출함.

〈표 III-2-23〉 가구 특성별 사교육(시간제) 이용비율 및 총 이용비용

단위: %, 개, 만원, (명)

구분	이용 비율					평균 이용 개수	총액 평균	(수)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구 활동	통신 교육			
전체	17.0	2.8	25.4	3.0	1.2	1.9	11.4	(1,505)
맞벌이 여부								
그렇다	21.2	3.9	26.6	2.8	1.8	1.9	12.1	(680)
아니다	13.6	1.8	24.3	3.2	0.6	1.9	10.8	(825)
X^2, t	15.2***	6.3*	1.0	0.2	4.5*	0.7	1.6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9	2.5	34.6	0.0	0.0	1.4	6.7	(24)
200~299만원	8.3	2.4	20.8	1.1	0.0	1.5	7.1	(154)
300~399만원	14.2	0.4	24.0	2.9	1.0	1.8	9.4	(474)
400~499만원	18.1	3.1	24.3	1.1	1.8	1.9	11.0	(346)
500~599만원	22.9	3.7	29.2	4.1	0.8	1.9	12.6	(265)
600~699만원	25.9	1.5	28.2	4.9	1.4	1.8	12.0	(102)
700만원이상	18.7	9.4	26.7	7.6	2.0	2.6	19.1	(140)
X^2, F	26.1***	34.1***	6.3	19.3**	4.8	4.9***	9.4***	

주: 1) 이용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한 개라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평균 이용 개수는 숫자를 합산해서 평균함. 예를 들어, 시간제 학원 2개와 학습지 2개를 이용하는 경우 4개임.

2)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 $p < .05$, ** $p < .01$, *** $p < .001$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시간제) 이용비용을 살펴보면, <표 III-2-23>과 같다.

맞벌이 가구의 사교육(시간제) 이용 비율은 21.2%로 비맞벌이 가구의 13.6%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평균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를 보면 맞벌이 가구가 평균 1.9개, 비맞벌이 가구가 평균 1.9개로 동일했다. 사교육(시간제) 이용비용은 총 비용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가 평균 12만1천원, 비맞벌이 가구가 10만8천원이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가구는 평균 1.4개 이용하였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개수도 계속 증가하여 가구소득이 7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 2.6개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총 이용비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가구에서 사교육(시간제) 이용비용 총액은 평균 6만7천원이었으나 가구소득이 7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는 19만1천원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시간제) 이용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관 유형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 및 이용 비용을 살펴보면, <표 III-2-24>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에서 사교육(시간제)을 1개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4%, 2개는 22.6%, 3개 이상 26.1%이며, 평균 1.9개 이용 중이었다. 이용 서비스 종류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학원 이용자 중에서는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가 1개라는 응답이 75.4%, 2개 19.1%였다. 개인 및 그룹지도는 1개라는 응답이 71.8%, 2개 21.7%였다. 학습지의 경우 1개 56.0%였다. 사교육(시간제) 이용비용은 시간제 학원이 평균 12만1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 11만원, 교구활동 9만7천원, 학습지 6만1천원, 통신교육이 3만9천원이었다.

<표 III-2-24> 기관 유형별 사교육(시간제) 이용 개수 및 이용 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이용 개수				과목당 평균비용	총액 평균	(수)
	1개	2개	3개이상	평균			
전체	51.4	22.6	26.1	1.9	5.9	11.4	(560)
이용 서비스 종류							
시간제 학원	75.4	19.1	5.4	1.3	9.2	12.1	(256)
개인 및 그룹지도	71.8	21.7	6.4	1.4	8.0	11.0	(42)
학습지	56.0	34.2	9.8	1.6	4.0	6.1	(382)
교구활동	91.6	6.4	2.1	1.1	8.7	9.7	(46)
통신교육	100.0	0.0	0.0	1.0	3.9	3.9	(18)

주: 이용 개수는 해당 서비스를 한 개라도 이용하면 이용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평균비용은 지출하는 경우의 평균임.

사교육(시간제) 중에서 시간제 학원은 학원에서 다루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체육이 44.9%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술 37.1%, 음악 16.8%, 영어 9.9%, 한글 7.1% 순으로 높은 이용비율을 보였다. 평균 과목 수는 대부분 1개였고, 주당 이용횟수는 체육이 3.3회로 가장 높았으며, 음악이 3.1회로 그 다음을 이었다. 기관유형별로는 대다수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과목별로 교구활동의 경우 기관유형이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32.8%로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음악의 경우 기관유형이 사설문화센터라는 응답이 11.4%로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다수가 비용을 지불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월평균 이용비용은 12만2천원으로 수학이 가장 높았으며, 영어가 12만원, 과학이 11만1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재료비 월평균 비용은 교구활동이 6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 미술이 뒤를 이었다.

〈표 III-2-25〉 시간제 학원 이용 실태 및 이용비용

단위: %, 개, 회, 시간, %, 만원

구분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교구 활동	과학	수학	기타
이용 비율	7.1	9.9	37.1	44.9	16.8	4.5	2.4	4.0	3.5
평균 과목 수	1.1	1.0	1.0	1.0	1.0	1.0	1.0	1.0	1.1
평균 주당 이용 횟수	2.2	2.0	2.3	3.3	3.1	1.1	1.0	2.2	1.5
평균 주당 이용 시간	1.8	1.8	2.1	2.9	2.4	1.0	1.0	1.9	1.2
교육기관 유형									
사설학원	83.2	93.2	87.6	82.4	81.1	67.2	80.5	100.0	30.1
공공기관	9.3	4.0	3.1	5.6	1.3	32.8	19.5	0.0	27.3
사회복지기관 등	0.0	0.0	3.0	2.8	6.3	0.0	0.0	0.0	0.0
사설문화센터	7.5	2.8	3.4	9.1	11.4	0.0	0.0	0.0	42.7
월평균 비용	5.3	12.0	8.7	9.2	9.7	6.7	11.1	12.2	3.8
재료비 월평균 비용	0.5	0.2	0.4	0.1	0.4	0.6	0.0	0.0	0.1

주: 전체 시간제 학원 이용자 256명에 대한 분석 결과로 중복응답.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42명으로 관측치가 매우 작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35.1%가 한글 지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 미술 지도가 31.8%, 수학이 19.1%로 다른 과목에 비해 다소 이용비율이 높았다. 과목별 평균 과목 수는 1개이며, 평균 주당 이용 횟수는 대략 1회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월평균 비용은 영어가 10만6천원으로 가장 높고, 과학이 9만5천원, 음악이 8만5천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표 III-2-26〉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실태 및 이용 비용

단위: %, 개, 회, 시간, 만원

구분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기타
이용 비율	35.1	18.3	31.8	2.8	5.6	5.1	19.1	18.1
평균 과목 수	1.0	1.0	1.0	1.0	1.0	1.0	1.0	1.0
평균 주당 이용 횟수	1.2	1.2	1.1	1.0	1.2	1.3	1.2	1.0
평균 주당 이용 시간	0.5	0.6	0.8	0.8	0.7	1.0	0.7	0.6
월평균 비용	6.6	10.6	8.4	8.0	8.5	9.5	7.7	6.4
재료비 월평균 비용	0.1	0.0	0.6	0.0	0.0	0.0	0.0	0.0

주: 전체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서비스 이용자 42명에 대한 분석 결과로 중복응답.

가정 내 학습지를 이용하는 응답자 중 72.5%가 한글 학습지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학이 49.6%로 뒤를 이었다. 학습지 학습을 위한 교사 방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과목에서 방문교사가 있다는 응답이 기타를 제외하고 90% 이상이었다. 평균 주당 이용 횟수는 한글과 기타과목이 1.2회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평균 주당 1회라고 응답하였다. 평균 주당 이용 시간은 대부분 0.3시간 즉 18분 내외였다. 월 평균 이용비용은 기타 과목이 4만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어가 4만2천원으로 그 다음을 이었고, 수학 3만9천원, 한글 3만8천원, 한자 3만3천원 순이었다.

〈표 III-2-27〉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실태 및 이용 비용

단위: %, 회, 시간, 개, 만원

구분	한글	영어	수학	한자	기타
전체	72.5	12.5	49.6	5.4	12.8
방문교사 여부					
있음	91.1	97.0	94.9	93.0	67.8
없음	8.9	3.0	5.1	7.0	32.2
평균 주당 이용 횟수	1.2	1.0	1.0	1.0	1.2
평균 주당 이용 시간	0.3	0.3	0.3	0.3	0.4
평균 이용 개수	1.0	1.0	1.0	1.0	1.0
월평균 비용	3.8	4.2	3.9	3.3	4.4

주: 전체 학습지 이용자 382명에 대한 분석 결과로 중복 응답.

교구활동을 이용하는 영유아도 46명으로 관측치가 작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교구활동을 이용한다는 응답 중 교사가 방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8%에서 100%였다. 교사 방문 시 주당 평균 방문 횟수는 1회이며,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대략 0.7시간, 즉 40~45분정도였다. 월 평균 이용비용은 7만원이며 교구구입 비용은 1만6천원이며, 총 비용은 월평균 9만7천원이었다.

〈표 III-2-28〉 교구활동 이용 실태 및 이용 비용

단위: %, 회, 시간, 만원

구분	교구활동1	교구활동2	교구활동3	평균
방문교사 여부				
있음	74.8	95.8	100.0	-
없음	25.2	4.2	0.0	-
(교사방문시) 주당 교사 방문 횟수	1.0	1.0	1.0	1.2
(교사방문시) 평균 주당 교육 시간	0.6	0.6	0.6	0.7
월평균 비용	7.0	8.2	9.2	7.0
교구구입 비용(월평균)	1.7	1.2	0.6	1.6
월평균 총액	8.7	9.4	9.8	9.7

주: 전체 교구활동 서비스 이용자 46명에 대한 분석 결과로 중복 응답.

4) 개별돌봄서비스

개별돌봄서비스는 영유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보육하는 대신 타인이 가정 내에서 보육하는 경우로, 총 181명이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개별돌봄서비스는 혈연도우미와 비혈연도우미로 구분할 수 있지만, 혈연도우미와 비혈연도우미를 둘 다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2017년도 조사에서는 비혈연도우미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관측치가 8개에 불과하여 서비스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개별돌봄서비스는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2개 이상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값을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표 III-2-29〉 아동 연령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및 총 비용

단위: %(명), 일, 시간, 만원

구분	이용 비율 (수)	평균 주당 이용 일수	1일 평균 이용 시간	월평균 비용
전체	11.6 (181)	4.8	5.6	53.7
아동 연령별				
0세	11.8 (28)	4.6	7.6	55.3
1세	10.5 (25)	5.1	6.0	57.7
2세	14.1 (35)	5.2	5.3	66.4
3세	11.1 (28)	3.9	4.5	49.5
4세	10.9 (29)	5.0	4.3	42.2
5세	13.8 (37)	4.8	5.5	51.9
F		2.9*	2.6*	1.2

* $p < .05$

아동 연령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 및 총 비용을 살펴보면, <표 III-2-29>과 같다.

개별돌봄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의 11.6%가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이용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당 평균 4.8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1일 평균 이용 시간은 5.6시간이었다. 연령별로는 0세아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긴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월평균 53만7천원으로, 2세아의 경우에 평균 비용이 다른 연령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비용 부담정도 점수 평균이 가장 낮은 경우는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혈연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였다. 어린이집 이용자가 정규교육·보육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은 2.7점으로 혈연도우미를 활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반대로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3.6점을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이용자의 약 30%가 비용이 부담된다(조금부담+매우부담)고 응답한 반면, 유치원 이용자는 45.9%가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시간제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표 III-2-30> 이용하고 있는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비용 부담(아동별조사)

단위: %, 점(명)

구분	부담정도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보통임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평균	
어린이집 이용자							
정규교육·보육비	18.7	23.7	27.8	25.6	4.2	2.7	(476)
시간연장형 보육	0.0	0.0	35.4	64.6	0.0	3.7	(17)
유치원 이용자							
정규교육·보육비	12.8	16.8	24.4	34.4	11.5	3.2	(403)
방과후과정	4.2	15.8	40.5	31.9	7.7	3.2	(80)
반일제 이상 학원							
기관이용비(종일반비포함)	0.1	15.5	24.5	37.4	22.0	3.6	(56)
시간제 학원	1.4	17.1	32.5	39.3	9.7	3.4	(257)
개인 및 그룹지도	7.7	14.2	38.4	28.2	11.5	3.2	(42)

(표 III-2-30 계속)

구분	부담정도						(수)
	전혀 부담안됨	별로 부담안됨	보통임	조금 부담됨	매우 부담됨	평균	
학습지	5.3	21.4	34.9	33.2	5.3	3.1	(382)
개별돌봄서비스							
혈연도우미	37.1	10.6	22.3	23.8	6.2	2.5	(174)
비혈연도우미	7.2	0.0	30.5	48.9	13.4	3.6	(8)

주: 5점 척도로 매우 부담됨이 5점임.

3.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실태

이 절에서는 가구 단위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에 대해 살펴본다.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은 영유아 단위의 개별적 선택이기도 하지만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자녀가 1명인 가구와 2명인 가구는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른 양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 가구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28만9천원이며, 비용구간별로는 0원 초과~10만원미만인 비용 구간에서 2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0~20만원미만 구간에서 18.1%로 그 다음을 이었다. 총 자녀수가 1명일 때 22만2천원이었으며, 2명일 때 33만2천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자녀가 3명이상일 때에는 27만3천원으로 다시 월 평균 비용이 감소하였다. 가구 내 총 자녀 수 대신 영유아 자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비용이 영유아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22만9천원, 2명일 때 39만원, 3명 이상일 때 54만2천원으로, 가구 내 영유아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맞벌이 여부 및 가구원 수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3-2>와 같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 비용은 36만1천원으로, 비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비용인 22만6천원과 비교해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용 분포를 보면, 맞벌이 가구도 비맞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0원 초과 10만원 미만 비용구간(25.0%)에서 가장 많긴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23.2%)이 그 다음으로 높은 분포를 차지하여

가구당 월평균 총교육·보육비용이 두 구간으로 양분되는 모습이 두드러졌다.

가구원 수에 따른 총 교육·보육비용의 차이도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원이 3명 이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당 월평균 총 비용이 평균 21만원인데 반해 가구원수 4명일 때는 31만7천원, 5명 이상일 때는 32만6천원으로,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구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도 높아졌다. 이때 가구원이 4명일 때와 5명일 때는 비용 상승이 크지 않은 반면, 가구원이 3명일 때와 4명일 때는 비용의 격차가 커지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표 III-3-1〉 자녀수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							평균	표준 편차	(수)
	없음	0원 초과~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전체	11.8	28.7	18.1	12.2	7.0	5.1	17.0	28.9	41.4	(1,118)
총 자녀수										
1명	23.4	28.2	16.0	9.1	6.6	3.4	13.4	22.2	34.0	(350)
2명	5.1	29.5	19.3	14.2	6.7	6.2	19.1	33.2	45.5	(603)
3명이상	12.1	27.1	18.4	11.9	9.2	4.4	16.9	27.3	37.8	(165)
$X^2(df), F$				77.0***				8.1***		
영유아 자녀수										
1명	17.0	30.3	18.1	10.6	6.7	3.8	13.4	22.9	32.1	(728)
2명	2.3	26.5	18.1	15.0	8.2	7.3	22.6	39.0	51.6	(365)
3명이상	0.0	14.4	20.9	19.1	0.0	7.1	38.5	54.2	68.8	(26)
X^2, F				84.4***				24.1***		

*** $p < .001$

〈표 III-3-2〉 맞벌이 여부 및 가구원 수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							평균	표준 편차	(수)
	없음	0원 초과~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전체	11.8	28.7	18.1	12.2	7.0	5.1	17.0	28.9	41.4	(1,118)
맞벌이 여부										
그렇다	8.1	25.0	18.2	13.1	8.0	4.5	23.2	36.1	48.2	(518)
아니다	15.1	31.9	18.1	11.5	6.3	5.6	11.6	22.6	33.2	(600)
$X^2(df), t$				39.4***				30.6***		

(표 III-3-2 계속)

구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							평균	표준 편차	(수)
	없음	0원 초과~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가구원수										
3명이하	21.6	29.7	16.0	9.7	6.7	3.7	12.5	21.0	31.0	(316)
4명	6.3	29.5	19.3	13.5	6.6	5.9	18.9	31.7	42.2	(602)
5명이상	13.2	24.7	17.8	12.5	9.0	4.5	18.3	32.6	50.7	(200)
$X^2(df), F$				77.3 ^{***}				8.1 ^{***}		

*** $p < .001$

가구 소득에 따라서도 총 교육·보육비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경우 평균 교육·보육비용이 11만2천원이고, 가구소득 200~299만원이하인 가구는 9만7천원으로 다른 가구소득구간에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으나, 이후 소득구간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 교육·보육비용의 비용구간 중에 비중이 높았던 0원 초과 1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도 200~299만원인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분포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역 규모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는데, 지역 규모가 클수록 그 비용의 규모도 커져,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의 평균은 각각 31만4천원, 29만3천원, 17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가구 소득 및 지역규모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가구당 월평균 비용)
단위: %, 만원(명)

구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							평균	표준 편차	(수)
	없음	0원 초과~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전체	11.8	28.7	18.1	12.2	7.0	5.1	17.0	28.9	41.4	(1,11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3.0	39.7	0.0	9.1	14.6	0.0	3.6	11.2	15.9	(19)
200~299만원	24.3	40.7	17.8	8.9	4.0	3.5	0.7	9.7	11.6	(120)
300~399만원	12.0	32.3	16.3	14.2	7.4	6.2	11.5	21.0	23.7	(350)
400~499만원	12.4	27.7	21.0	11.4	6.4	4.4	16.7	26.1	31.9	(263)
500~599만원	5.4	22.6	21.4	15.0	8.3	6.2	21.0	33.1	37.3	(195)
600~699만원	6.1	22.6	15.7	12.0	12.7	4.8	26.2	44.3	56.2	(74)

(표 III-3-3 계속)

구분	총 교육·보육 비용 분포							평균	표준 편차	(수)
	없음	0원 초과~ 10만원 미만	10~20 만원 미만	20~30 만원 미만	30~40 만원 미만	40~50 만원 미만	50 만원 이상			
700만원이상 $X^2(df), F$	7.6	18.5	16.5	6.6	2.8	3.2	44.8	71.2 30.4***	82.4	(98)
지역 규모				151.3***						
대도시	12.9	26.4	18.8	10.6	7.8	5.3	18.2	31.4	45.5	(478)
중소도시	8.8	30.1	17.3	12.4	7.1	5.9	18.4	29.3	38.7	(509)
읍면지역 $X^2(df), F$	19.8	32.1	19.0	17.5	4.0	0.7	7.0	17.9 5.5**	32.8	(131)
				34.4**						

** $p < .01$, *** $p < .001$

나. 가구소득 및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은 <표 III-3-4>와 같다. 먼저 총 교육·보육 비용의 지출 여부에 따라 지출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중 11.8%였다. 총 교육·보육 비용의 지출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맞벌이 가구 8.1%, 비맞벌이 가구 15.1%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 총 교육·보육 비용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수 1명일 때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없는 가구의 비중이 23.4%로 가장 높았고, 영유아 자녀수에 따른 비용지출이 없는 가구의 비중도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1명일 때 17.0%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영아 자녀가 1명 있는 가구에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비중이 큰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전체 가구대상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있는 88.2%의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2%였으며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의 비중은 8.5%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맞벌이 가구 7.0%, 비맞벌이 5.5%로, 맞벌이 가구가 오히려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총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이 5.1%, 총 자녀수 2명인 가구의 경우 7.0%, 3명이상인 가구의 경우 5.7%로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서는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는 5.1%, 2명인 가구 8.2%, 3명인 가구 8.8%로 영유아 자녀가 증가할수록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III-3-4〉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 비용 (가구당비용)
단위: %(명)

구분	지출이 없는 가구 비중	지출이 있는 가구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평균)	가구지출 대비비율(평균)	
전체	11.8	6.2	8.5	(1,118)
맞벌이 여부				
그렇다	8.1	7.0	9.8	(518)
아니다	15.1	5.5	7.4	(600)
X^2, t	12.8***	3.2**	3.7***	
총 자녀수				
1명	23.4	5.1	7.0	(350)
2명	5.1	7.0	9.7	(603)
3명이상	12.1	5.7	7.6	(165)
X^2, F	70.7***	7.9***	8.6***	
영유아 자녀수				
1명	17.0	5.1	7.0	(728)
2명	2.3	8.2	11.3	(365)
3명이상	0.0	8.8	11.7	(26)
X^2, F	54.9***	22.8***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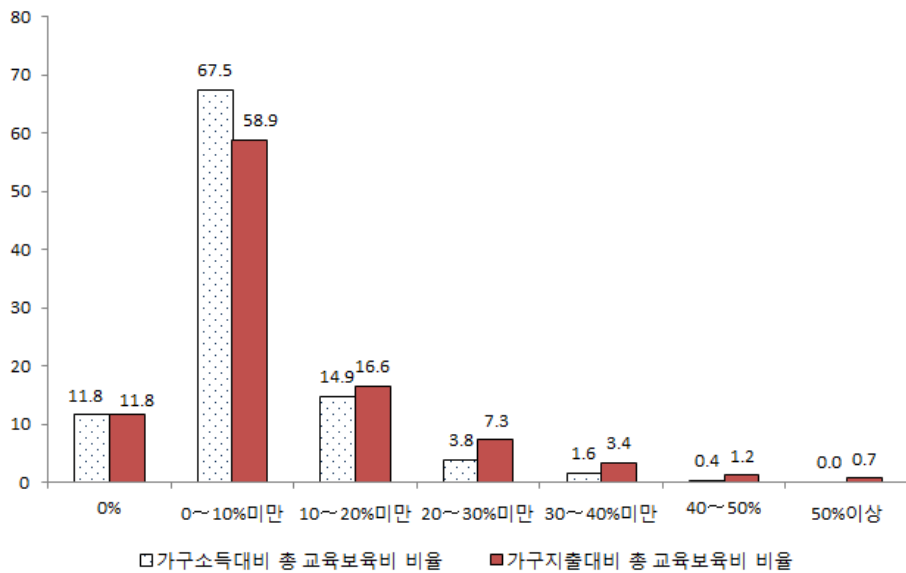
** $p < .01$, *** $p < .001$

가구소득에 따른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199만원이하인 가구 중 33.0%가 지출이 없다고 응답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출이 없는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하지만, 일단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의 비중이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가구(7.7%)와 700만원이상인 가구(7.8%)에서 높게 나타나며 양분된 양상을 보인다.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로 아예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 소득이 높을수록 고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소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구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의 경향 또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가구를 제외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의 비중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지역 규모별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 가구의 지출이 적은 편으로,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4.0%, 가구지출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5.2% 수준에 그쳤다.

〈표 III-3-5〉 가구 특성별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 비용 (가구당 비용)
단위: %(명)

구분	지출이 없는 가구 비중	지출이 있는 가구		(수)
		가구소득 대비 비율(평균)	가구지출 대비비율(평균)	
전체	11.8	6.2	8.5	(1,11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3.0	7.7	8.3	(19)
200~299만원	24.3	3.9	4.8	(120)
300~399만원	12.0	6.3	8.2	(350)
400~499만원	12.4	6.1	8.3	(263)
500~599만원	5.4	6.3	9.0	(195)
600~699만원	6.1	7.1	10.5	(74)
700만원이상	7.6	7.8	12.3	(98)
$\chi^2(df), F$	36.9***	3.0**	5.6***	
지역 규모				
대도시	12.9	6.4	8.7	(478)
중소도시	8.8	6.6	9.2	(509)
읍면지역	19.8	4.0	5.2	(131)
$\chi^2(df), F$	13.0**	6.5**	8.0***	

** $p < .01$, *** $p < .001$



〔그림 III-3-1〕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분포(가구당 비용)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율과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 비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III-3-5>와 같다. 전반적으로 0~10%미만의 비중이 가장 높아 각각 67.5%와 58.9%였다. 다음으로 10~20%미만인 경우가 가구소득 대비 14.9%, 가구지출 대비 16.6%로 다음을 차지했으며, 20~30%미만인 경우에는 가구지출 대비 7.3% 가량이었다. 즉,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이 20%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5.8%이며,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이 20%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12.6%에 그쳐, 높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결과

이 절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2017년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치를 산출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방법은 미국 농무성(USDA)의 양육비 추정 방법 중 교육·보육비용의 추정 방식을 응용한 것으로, 연속과제의 성격상 4차년도 연구인 최효미 외(2016: 139)에서 사용한 추정방법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추정방법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토빗(tobit) 분석을 실시하여 추정치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추정 방법은 4차년도 연구보고서(최효미 외, 2016: 139~140)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추정과정에서 산출되는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또한 매해 반복적으로 실시되던 것으로, 2017년도에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가.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치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먼저 조사값 기준 가중치 미적용시 22만9천원이었으며, 가중치 적용시 19만8천원이었는데, 추정 비용은 26만2천원으로 꽤 상승함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0세아 4만1천원으로 실제 조사 값보다 추정치가 1만5천원가량 적었으나, 1세 이후로는 조사 값에 비해 추정비용 평균값이 높았으며, 5세의 경우 추정비용이 40만3천원이었다. 추정비용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 값이 0에 상당히 밀집된 상태에서 꼬리가 긴 형태를 띠는데 반해, 추정비용은 낮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형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III-4-1〉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및 분포
단위: 만원

구분	조사값		추정비용	추정비용 분포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전체	22.9	19.8	26.2	
아동연령				
0세	6.3	5.6	4.1	
1세	7.6	7.7	11.0	
2세	14.5	16.8	20.2	
3세	21.7	21.6	26.1	
4세	33.5	28.1	36.4	
5세	36.0	36.3	40.3	

주: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는 0원으로 간주하고 추정한 비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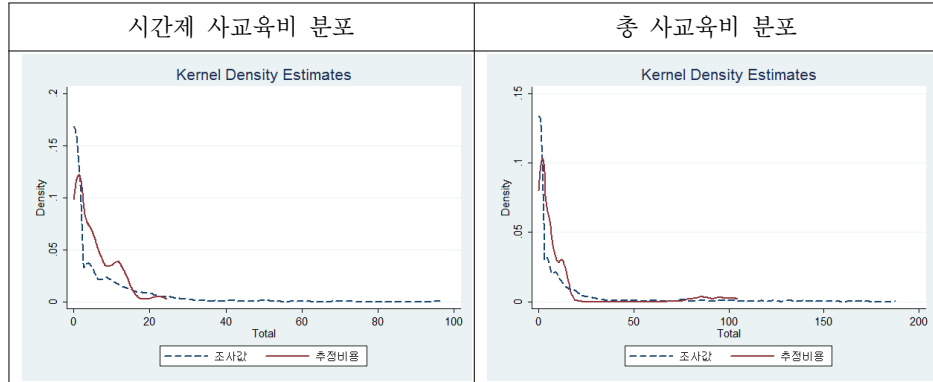
한편, 영유아 1인당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평균 11만6천원으로, 조사 값 기준 가중치 적용시 7만원, 가중치 미적용시 조사 값은 10만6천원으로 추정비용이 1만원가량 높았다.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을 제외하고 학원, 학습지 등의 시간제 사교육비는 가중치 적용 조사 값은 4만2천원, 가중치 미적용 조사 값은 5만1천원이었으며, 추정비용은 5만4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간제 사교육비는 가중치 적용시 조사 값과 추정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4세 이후로는 약간 높았다.

〈표 III-4-2〉 아동연령별 영유아 1인당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단위: 만원

구분	시간제 사교육비			총 사교육 비용		
	조사값		추정비용	조사값		추정비용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가중치 미적용	가중치 적용	
전체	5.1	4.2	5.4	10.6	7.0	11.6
아동연령						
0세	0.3	0.3	0.3	0.3	0.3	0.3
1세	0.9	0.9	0.8	0.9	0.9	0.9
2세	2.0	1.9	1.7	5.0	5.4	5.2
3세	4.0	3.7	3.9	8.8	6.8	9.7
4세	6.6	6.1	6.8	16.5	9.7	18.1
5세	11.3	11.6	12.5	20.5	17.2	22.6

주: 사교육 미이용자의 비용은 0원으로 간주하고 추정한 비용임.



[그림 III-4-1]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 추정비용(월평균) 분포

나.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규모 추정치

한편,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표 III-4-3>과 같다.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규모는 8조 4,172억 9,128만원으로,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 314만1천원이고 영유아 수 268만88명으로 산출하여 추산된 금액이다. 0세의 1인당 연평균 비용 49만2천원으로 연간 총액 1,936억 5,156만원이었고, 1세에는 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1인당 연평균 비용은 132만2천원으로 연간 총액 5,840억 3,141만원이었다. 영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영유아 수는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0세를 제외하고 40~50만명대를 보이며, 5세에는 2조 3,022억 3,694만원이었다. 2016년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추산치 6조 4,114억 8,534만원(최효미, 2016: 145)과 비교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연령별로 4세와 5세의 연간 총액의 증가에 기인한다.

영유아 총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표 III-4-4>와 같다. 영유아 총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3조 7,397억 2,618만원으로, 총 교육·보육비용 대비 총 사교육비 비율은 44.4%였다.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 139만5천원에 영유아 수 268만 88명을 곱하여 추산하였다. 연령별로는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0세 164억 3,668만원, 1세 467억 5,519만원, 2세 2,758억 2,635만원, 3세 5,104억 8,259만원, 4세 1조 644억 6,353만원, 5세 1조 2,928억 2,867만원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총 비용 대비 총 사교육비 비율 또한 0세 때 8.5%에서 1세에 8.0%로 약간 감소했다가 2세 때는 26.0%로 크게 증가한 이후, 5세에는 56.2%에 달했다.

〈표 III-4-3〉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규모

단위: 만원, 명

구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	영유아 수	연간 총액
전체	26.2	314.1	2,680,088	841,729,128
아동연령				
0세	4.1	49.2	393,674	19,365,156
1세	11.0	132.2	441,720	58,403,141
2세	20.2	241.9	439,207	106,265,080
3세	26.1	313.7	440,530	138,203,265
4세	36.4	436.4	489,140	213,454,376
5세	40.3	483.8	475,817	230,223,694

주: 1)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표 III-4-1>의 추정비용과 동일하며, 연평균 비용은 월평균비용*12개월로 산출함.

2)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2016년 12월기준)을 기준으로, 2017년도 보육연령으로 환산한 값임. 따라서, 2016년 출생아가 보육연령 0세아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도 출생아는 제외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2017.10.16. 인출).

〈표 III-4-4〉 영유아 총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단위: 만원, 명, %

구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	영유아 수	연간 총액	총비용 대비 총사교육비 비율
전체	11.6	139.5	2,680,088	373,972,618	44.4
아동연령					
0세	0.3	4.2	393,674	1,643,668	8.5
1세	0.9	10.6	441,720	4,675,519	8.0
2세	5.2	62.8	439,207	27,582,635	26.0
3세	9.7	115.9	440,530	51,048,259	36.9
4세	18.1	217.6	489,140	106,446,353	49.9
5세	22.6	271.7	475,817	129,282,867	56.2

주: 1)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표 III-4-2>의 추정비용과 동일하며, 연평균 비용은 월평균비용*12개월로 산출함.

2)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2016년 12월기준)을 기준으로, 2017년도 보육연령으로 환산한 값임. 따라서, 2016년 출생아가 보육연령 0세아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도 출생아는 제외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2017.10.16. 인출).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을 제외하고 영유아 총 시간제 사교육비는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5만4천원, 연평균 64만3천원으로, 연간 총액 1조 7,225억 9,858만원이었다. 시간제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0세 134억 7,014만원, 1세 400억 7,971만원, 2세 912억 7,324만원, 3세 2,074억 6,378만원, 4세 4,010억 7,576만원, 5세 7,154억 6,299만원이었다.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 대비 총 시간제 사교육비 연간 총액 비율은 20.5%로, 연령별로 0세 7.0%였으며, 1세 6.9%로 약간 감소하지만, 2세 8.6%, 3세 15.0%, 4세 18.8%로 증가하였으며, 5세에는 크게 증가하여 31.1%에 달했다. 연간 총 교육·보육비용 총액 대비 총 시간제 사교육 비용 비율은 2016년 4차년도 연구(최효미 외, 2016: 147)에서도 평균 20.5%로, 2017년 연구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III-4-5〉 영유아 총 시간제 사교육 비용 연간 총액 규모

구분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	영유아 1인당 연평균 비용	영유아 수	연간 총액	단위: 만원, 명, %
					총비용 대비 총 시간제 사교육비 비율
전체	5.4	64.3	2,680,088	172,259,858	20.5
아동연령					
0세	0.3	3.4	393,674	1,347,014	7.0
1세	0.8	9.1	441,720	4,007,971	6.9
2세	1.7	20.8	439,207	9,127,324	8.6
3세	3.9	47.1	440,530	20,746,378	15.0
4세	6.8	82.0	489,140	40,107,576	18.8
5세	12.5	150.4	475,817	71,546,299	31.1

주: 1) 영유아 1인당 월평균 비용은 <표 III-4-2>의 추정비용과 동일하며, 연평균 비용은 월평균비용*12개월로 산출함.

2) 영유아 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2016년 12월기준)을 기준으로, 2017년도 보육연령으로 환산한 값임. 따라서, 2016년 출생아가 보육연령 0세아로 분류되었으며, 2017년도 출생아는 제외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2017.10.16. 인출).

5. 소결

2017년 영유아 가구 대상 실태조사는 총 1,119가구 1,505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영유아 가구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및 이용비용 실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 1인당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19만8천원이었으며,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만을 기준으로 월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25만5천원이었다. 총 교육·보육비용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약 10만원가량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전체 응답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43.3%였으며, 어린이집 이용비용 총액은 월평균 6만9천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유아반의 차액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주를 이루며, 가구소득이 중간인 경우(400~599만원)에서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다른 소득 구간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에 다니는 경우에는 월평균 4만6천원인데 반해 민간 어린이집 9만3천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 어린이집(4만9천원)이나 직장·부모협동 어린이집(4만7천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같은 경향은 정부 미지원 기관의 유아반에 한해서 차액보육료가 허용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기관이나 유아반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비용이 국공립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 응답자의 35.2%로, 이용비용은 월평균 19만8천원으로 어린이집에 비해 12만9천이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의 이용비용은 주로 정규 교육비 중 수업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세의 경우에만 조금 낮았다.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은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이용비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설립 유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의 특별활동 이용비용 평균은 4만2천원이고, 사립 유치원은 6만4천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전체에서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3.7%에 불과했으며, 교육비 57만4천원을 포함하여 총액 평균 73만5천원으로,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서도 높은 비용 수준을 보였다. 한편,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총액 평균 11만4천원이었다. 시간제 사교육 종류별로 시간제 학원 이용자가 17.0%로 평균 12만1천원의 비용을 지출했으며, 2.8%가 이용하는 개인 및 그룹지도는 평균 11만원,

이용자 비중이 25.4%로 가장 높은 학습지는 평균 6만1천원이었으며, 교구활동은 3.0%가 이용하고 평균 9만7천원, 통신교육은 1.2%가 이용하고 평균 3만9천원을 지출하였다.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학습지가 이용이 가장 빈번하며, 시간제 학원의 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시간제 사교육 이용비용은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다섯째,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일 평균 5.6시간, 주당 평균 4.8일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비용은 53만7천원이었다. 하지만, 비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혈연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비용 부담을 묻는 질문에 5점 만점에 평균 2.5점을 응답해 다른 교육·보육서비스에 비해 비용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섯째,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28만9천원으로, 0~10만원 미만 구간에 28.7%가 밀집되어 있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3명일 때보다 2명일 때 오히려 교육·보육비용이 더 드는 것을 조사했으나, 영유아 자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교육·보육비용도 증가하는 것을 분석됐다. 이러한 현상은 총 자녀수에는 초등기 이상의 자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오히려 자녀가 초등기에 접어들면 교육·보육비용이 감소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곱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1.8%였으며,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 가구 지출 대비 비중은 8.5%였다. 이 비중들은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고, 영유아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이 비중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여덟째,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치를 산출해 본 결과, 영유아 1인당 총 교육·보육비용 추정비용은 26만2천원이었으며, 총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11만6천원, 시간제 사교육비 추정비용은 5만4천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연간 총액을 계산해보면, 총 교육·보육비용은 8조 4,172억 9,128만원에 이르며, 총 사교육비 연간 총액은 3조 7,397억 2,618만원으로 총 교육·보육비용 대비 총 사교육비 비율은 44.4%에 달했다. 여기서 반일제 학원 이용 비용을 제외한 시간제 사교육비의 연간 총액 추정비용은 1조 7,225억 9,858만원으로, 총 교육·보육비용 연간 총액의 20.5% 수준이었다.

IV.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IV장에서는 지난 5년간의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는 매해 표본의 규모 및 조사 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횡단 조사로 이뤄짐에 따라, 산출 값의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해마다 진행된 실태조사의 특징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교육·보육비용의 추이 변화에서 조사 과정에 기인한 차이를 명시하고자 하였다.

1. 조사 설계의 차수 간 변동

가. 표본 설계상의 차이

표본 설계상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1>과 같이 정리된다. 표본규모에 있어서 1차 조사인 2013년에는 2,519가구의 영유아 총 3,630명을 조사하였으며, 2014년에는 2,509가구 3,611명, 2015년 2,499가구 3,075명, 2016년은 1,312가구 총 1,820명을 조사하였다. 2017년도 연구에서는 1,119가구 총 1,505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특히 4차년도 연구 이후 표본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연구 예산상의 문제로, 표본 수 감소는 표집의 대표성 확보 및 가중치 적용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표본추출을 위해 2013년에는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읍면동 리스트를 1차 추출단위로 선정하고, 표본 읍면동(PSU)의 주소지별 가구 명부를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014년에는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1단계에 대규모로 표본을 선정하고 아동가구로 판별된 표본가구에 대해 심층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화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리스트 활용이 용이치 않아짐에 따라, 2015년에는 '2015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시도(세종시 포함)로 1차 층화, 지역규모에 따라 2차 층화 추출한 무작위 접촉을 통해 조사하였다. 2016년에는 '국가기초구역 주소 요도'를 활용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 배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동, 읍, 면을 인구 비례확률 표집을 원칙으로 하여 무작위 추출하였다.

조사방법은 모든 해에 동일하게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및 면접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종이 설문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다만, 실사 수행 업체는 1차와 2차가 A사로 동일하고, 3차년도 B사, 4차와 5차 C사로 각기 달랐다.

〈표 IV-1-1〉 조사별 표본 설계상의 특징

구분	표본규모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
I 차 연구 (양미선 외, 2013)	2,519가구의 총 3,630명 영유아부모조사	· 100개 조사구의 2,500가구 조사목표(2010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 전국 읍면동 리스트를 1차 추출단위로 선정하고, 표본 읍면동(PSU)의 주소지별 가구 명부를 2차 추출단위로 하는 2단계 층화집락 추출 방법 사용 ·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개 층으로 구분하고 가구와 영유아 분포를 고려하여 네이만 배분을 실시	·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및 면접조사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조사구 관할 시군구에 조사 협조 요청
II 차 연구 (양미선 외, 2014)	2,509가구의 총 3,611명 영유아부모조사	· 100개 조사구의 2,500가구 조사목표(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활용) · 1단계에서는 대규모로 표본을 선정하고, 아동가구로 판별된 표본가구에 대해 심층조사를 수행 ·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아동 가구로 판별된 가구는 총 2,506가구이며, 이중 약 2,500명의 아동을 층화추출하여 표본 가구를 선정함 · 부산, 강원 및 경북지역은 네이만 배분 결과와 2012년 보육실태조사를 비교한 결과 표본 가구수가 부족하여 2012년 조사 결과에 따라 모두 배분하고, 전체 표본규모를 조정하여 서울, 경기, 대전 및 울산지역에 추가로 표본가구를 배분함	·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및 면접조사 ·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조사구 관할 시군구에 조사 협조 요청
III 차 연구 (이진화 · 박진아 · 박기원, 2015)	2,499가구의 총 3,075명 영유아부모조사	· 3,508개 행정동의 2,500가구 조사목표(2015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활용) · 제주도를 제외한 16개시도(세종시 포함)로 1차 층화,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으로 2차 층화 추출함	·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및 면접조사

(표 IV-1-1 계속)

구분	표본규모	표본추출 방법	조사방법
IV차 연구 (최효미 외, 2016)	1,312가구의 총 1,820명 영유아부모조사	· 최종표집 블록수를 120개로 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동, 읍, 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 추출함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가 최소한 100개 이상 조사 될 수 있도록 가중 표집을 실시	·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및 면접조사
V차 연구 (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1,119가구의 총 1,505명 영유아부모조사	· 최종표집 블록수를 100개로 하여 1차 표집 단위인 전국 광역시도의 가구 수 분포에 따라 비례배분하고, 2차 표집 단위인 동, 읍, 면을 인구비례확률표집 원칙을 적용하여 무작위 추출함 ·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 가중 표집을 실시	·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및 면접조사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9~15.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 11~22.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p. 13~27.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p. 94~95.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본 연구.

나. 설문구조의 차이

이 항에서는 각 연도별 조사에서 설문 문항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지 구성에 있어서 차이는 2013, 2014, 2016년은 아동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 행태 및 비용을 병렬적으로 묻는 방식인데 반해, 2015년은 교육·보육기관 이용을 중심으로 유치원 이용아동, 어린이집 이용아동, 미이용 아동을 구분하여 3가지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3차년도 연구인 2015년도에는 비용 집계 기준 시점을 2015년 5월에 국한하여 조사함으로써, 비용에 큰 차이가 유발되었다. 즉, 연간 이용비용을 월 평균하는 방식이 아닌 5월 한 달 간의 이용비용을 응답함에 따라, 집계에서 누락되는 비용이 발생하였다.

한편, 사교육비의 범주 구분과 관련하여, 2차년도 연구까지 어린이집 특별활동과 유치원의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비용을 사교육비에 포함시킨 반면, 3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를 사교육비에서 제외하였으며, 4차년도 이후 연구에서는 이를 사교육비에서는 제외하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중 선택적 교육비로 분리하여 명명한 차

이가 있었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부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일반 특성 문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IV-1-2>와 같다.

<표 IV-1-2> 일반특성 설문항목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가구 특성	가구규모(가구원수), 자녀수, 거주지역, 지역규모, 월평균 가구소득·지출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O	O	O	O	O
	가구유형	O	O	X	O	O
	주택 소유형태	O	O	O	X	X
	연령, 출신국가, 학력, 취업상태	O	O	O	O	O
	직업 및 근로시간	O	O	X	O	O
부모 특성	건강상태	O	O	X	X	X
	성별, 연령, 출생순위	O	O	O	O	O
아동 특성	건강상태	O	O	X	X	X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3>과 같다.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설립유형), 이용시간, 지출비용, 비용 부담정도에 관해 묻고 있지만, 만족도에 대해서는 2014, 2015년만 물어보았다. 지출비용의 경우, 2013, 2014년은 월 평균 비용으로 물어보지만, 2015, 2016, 2017년은 납입주기와 함께 물어보는 차이가 있으며, 2015년은 입학금을 묻지 않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매년 동일하게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지출비용을 물었지만, 2015년은 주당 이용시간, 2017년은 만족도 및 비용 부담정도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

<표 IV-1-3>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관련 설문항목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관련	이용기관(설립유형), 이용 시간, 지출 비용, 비용 부담 정도	O	O	O	O	O
	만족도	X	O	O	X	X

(표 IV-1-3 계속)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이용 관련	이용 프로그램 종류, 지출비용, 주당 이용시간 만족도, 비용 부담 정도	O O O O	O O O O	O O X O	O O O O	O O O X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반일제 이상 학원에 관한 설문항목을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 IV-1-4>와 같다. 공통적으로 매년 이용기관,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사유에 대해 물어보았으며, 2015년을 제외한 해에는 모두 반일제 이상 학원에서 제공하는 특별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한편, 2013, 2014년에는 지출비용에 대해 월평균으로 질문하였으나, 2015, 2016년은 납입주기를 묻고 주기별 납입 금액을 물어보는 형식을 취하였다.

<표 IV-1-4>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관련 설문항목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용기관, 지출비용, 만족도, 이용사유	O	O	O	O	O
특별활동, 이용시간	O	O	X	O	O
비용 부담정도	O	O	O	O	X
최초 이용시기	X	O	X	X	X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사교육 이용관련 항목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 IV-1-5>와 같다. 한편, 사교육 서비스 이용 설문의 경우 2013, 2014, 2016년에는 시간제 학원, 개인 및 그룹지도, 학습지 교육, 교구활동 교육, 통신교육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고, 2015년에는 과목별로 구분한 후 해당 과목을 개인교습, 그룹교습, 시간제 학원 중 어디서 받았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2015년은 통신교육 이용

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

세부항목으로는 공통적으로 과목별 이용여부, 이용시간⁴⁴⁾, 월평균 지출비용, 비용 부담정도, 만족도, 이용사유 등을 물었으며 2014년에는 추가로 최초 이용 시기를 물어보았다. 학습지 교육과 교구활동 이용에 대해서는 교사방문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았으나 2015년에는 물어보지 않았다.

〈표 IV-1-5〉 사교육 이용관련 설문항목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시간제 학원 이용, 개별/그룹지도 이용, 학습지 교육 이용, 교구활동 교육 이용	○	○	○	○	○
통신교육 이용	○	○	X	○	○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표 IV-1-6〉 개별돌봄서비스 이용관련 설문항목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개별돌봄 제공자(혈연 및 비혈연 등), 이용시간, 지출비용	○	○	○	○	○
개별돌봄 제공자 동거여부	X	X	X	○	○
만족도	X	X	○	○	X
비용 부담정도	X	X	○	○	○
이용사유	X	X	○	X	X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관련 설문항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V-1-6>과 같다. 공통적으로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혈연 및 비혈연 등), 이용시간, 지출비용을 물어보았다. 추가로 2015~2017년에는 만족도와 비용 부담정도를 물어보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개별돌봄서비스 제공자 동거여부, 2015년에는 이용사유를 물어보았다.

44) 2015년은 이용시간에 대해 묻지 않았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관련 설문항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V-1-7>과 같다. 이용기관, 이용시간, 지출비용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물어보았으며, 지출비용에 대해 2013, 2014년은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2015년은 5월 한 달, 2016년은 상반기 월평균 지출금액을 물어보았다. 만족도와 부담정도는 2015, 2016, 2017년에만 물어보았으며, 이용사유에 대해서는 2013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 물어보았다.

<표 IV-1-7>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관련 설문항목

항목	2013	2014	2015	2016	2017
이용기관, 이용시간, 지출비용	O	O	O	O	O
만족도	X	X	O	O	O
부담정도	X	X	O	O	O
이용사유	X	O	O	O	O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다. 응답자 특성 차이

실제 가구의 지출 비용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2013~2017년 5개년간 조사된 실태조사 응답자의 특성을 아동특성, 부모특성, 가구특성별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아동연령에 따른 응답 가구 아동수를 살펴보면, 2015, 2016년은 매우 고른 반면에 2013년은 만 2세가 18.2%로 다소 많고, 2014년에는 만 3세 19.2%, 만 4세 14.6%로 다소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2015년에 대도시 비율이 65.1%, 읍·면지역이 6.5%로 나타나 나머지 연도에 비해 대도시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연도별 응답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IV-1-9>와 같다. 가구원 수가 3인 이하인 가구가 2015년에 47.7%로 절반에 가까워 다른 연도에 비해 3인 이하의 비중이 컸고, 5인 이상 가구 비중은 2013년 22.3%, 2014년 17.4%, 2015년 8.9%, 2016년 18.8%, 2017년 18.0%로 나타나 2015년에는 5인 이상 가구 비중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연도별 응답 가구의 아동 특성

단위: %,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3,630	100.0	3,611	100.0	3,075	100.0	1,820	100.0	1,505	100.0
아동연령										
0세	592	16.3	587	16.3	508	16.5	301	16.5	234	15.5
1세	553	15.2	627	17.4	509	16.6	300	16.5	241	16.0
2세	661	18.2	624	17.3	510	16.6	300	16.5	250	16.6
3세	596	16.4	693	19.2	507	16.5	301	16.5	248	16.5
4세	615	16.9	526	14.6	543	17.7	300	16.5	264	17.5
5세	613	16.9	554	15.3	498	16.2	318	17.5	268	17.8
지역규모										
대도시	1,712	47.2	1,479	41.0	2,001	65.1	822	45.2	637	42.3
중소도시	1,427	39.3	1,443	40.0	874	28.4	655	36.0	692	46.0
읍·면지역	491	13.5	689	19.1	200	6.5	343	18.8	176	11.7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71.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79.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p.79.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p.97.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가구소득에 따른 응답 가구 비중을 살펴보면, 2015년은 299만원 이하 30.6%, 300~499만원 56.6%, 500만원 이상 12.9%로 다른 연도에 비해 응답가구의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 가구의 비중은 2013년 40.8%, 2014년 51.8%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반대로 2015년에는 12.9%로 지나치게 과소 표집된 경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16년 27.3%, 2017년은 32.8%였다. 반대로 가구 소득이 299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2013년 23.9%, 2014년 13.4%, 2015년 30.6%, 2016년 16.2%, 2017년 12.4%로, 2013년과 2015년에 그 비중이 매우 높았다.

〈표 IV-1-9〉 연도별 응답 가구 특성

단위: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2,519	100.0	2,509	100.0	2,500	100.0	1,312	100.0	1,119	100.0
가구원수										
3인 이하	658	26.1	693	27.6	1,193	47.7	418	31.9	316	28.2
4인	1,297	51.5	1,380	55.0	1,083	43.3	648	49.4	602	53.8
5인 이상	561	22.3	437	17.4	224	8.9	247	18.8	201	18.0

(표 IV-1-9 계속)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62	10.4	108	4.3	72	2.9	22	1.7	19	1.7
200~299만원	340	13.5	228	9.1	691	27.7	190	14.5	120	10.7
300~399만원	428	17.0	401	16.0	955	38.2	458	34.9	350	31.2
400~499만원	458	18.2	477	19.0	460	18.4	283	21.6	263	23.5
500~599만원	209	8.3	271	10.8			210	16.0	195	17.4
600~699만원	380	15.1	401	16.0	322	12.9	62	4.7	75	6.7
700만원 이상	438	17.4	627	25.0			87	6.6	98	8.7

주: 1) 2013년도와 2014년도 가구원수 비율은 표본 규모를 통해 재산출한 값임.

2) 2015년의 경우,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어 구분이 다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7, 60, 63.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63, 66, 69.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p.75~76.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p.100.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응답가구의 모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10>과 같다. 각 조사연도별 모 학력은 고졸이하가 2013년 38.2%, 2014년 36.5%로 비교적 높았으며, 2015년에는 26.6%, 2016년과 2017년 21.7%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차수로 올수록 모의 학력이 4년제 대졸이상이라는 응답자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취업모의 비중은 2013년 31.5%, 2014년 30.2%에 비해 2016년에는 40.1%, 2017년 41.6%로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모의 취업 상태별 비중을 알기 어렵다.

<표 IV-1-10> 연도별 응답 가구의 모 특성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명	%	명	%	명	%	명	%	명	%
전체	2,519	100.0	2,509	100.0	2,499	100.0	1,301	100.0	1,119	100.0
학력										
고졸 이하	963	38.2	916	36.5	666	26.6	282	21.7	243	21.7
전문대졸	538	21.4	550	21.9	754	30.2	245	18.9	182	16.3
4년제졸	890	35.3	922	36.7	1,066	42.6	719	55.2	643	57.5
대학원 이상	88	3.5	92	3.7	12	0.5	52	4.0	48	4.3
기타	39	1.5	29	1.2	1	0.1	3	0.2	3	0.3
취업상태										
취업	792	31.5	757	30.2	-	-	521	40.1	466	41.6
육아휴직, 일시휴직	96	3.8	103	4.1	-	-	79	6.1	59	5.3

(표 IV-1-10 계속)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미취업	1,591	63.2	1,620	64.6	-	-	698	53.6	591	52.8
기타	39	1.5	29	1.2	-	-	3	0.2	3	0.3

주: 1) 2016년과 2017년의 미취업은 '학업 및 취업준비'와 '전업주부(육아 및 가사)'를 합한 값임.

2) 2013년과 2014년 '고졸 이하'는 '고졸'과 '고졸 미만'의 합으로 계산한 값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6.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9.

3)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I). 육아정책연구소. p.75.

4)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p.101~102.

5)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2. 아동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지난 5년간 설문구조와 응답자 특성을 통해 유추해볼 때, 2015년도 자료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에 대한 과표집과 설문구조의 급격한 변화, 지출 비용의 집계 시점이 5월 한 달간으로 고정된 것 등 조사 방식과 표집에 있어서 다른 차수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로 인해 2015년도 조사 자료의 결과 값이 실제로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지출 변화 추이 분석에서 해당 차수의 결과 값을 제외하였다. 즉, 교육·보육비용 변화 추이는 2013년, 2014년과 2016년과 2017년의 결과값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횡단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수별 비용 변화 추이에는 표본 특성 변화에 따른 차이가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주지하는 바이다.

한편, 조사상 시계열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비용 변화 추이가 전반적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비용 추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비교해보았다. '가계동향조사'는 대규모 표본 조사라는 장점이 있으나, 다만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 비용이 일부 항목만 조사되어 전체 영유아 교육·보육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동 단위 서비스 이용비용이 아닌 가구 단위 비용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에 전반적인 비용 변화 추이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보조적 지표로 활용하였다.

가. 아동별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

2013년 아동별 총 교육·보육비용은 평균 18만2천원에서 2014년 23만5천원으로 크게 늘어나고 2016년 22만8천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연령별로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만 1세가 가장 적고 연령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커지는 현상이 매해 발견되었으며, 만 0세의 총 교육·보육비용이 만 4세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조사연도에 관계없이 공통적이었다. 한편, 각 연령별 이용비용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는 차수는 2016년도의 0세와 5세의 경향성이다. 2016년도에는 0세의 총 교육·보육비용이 다소 높게 조사된 반면 5세의 비용은 다소 낮게 조사된 경향이 있었다.

〈표 IV-2-1〉 연도별 아동 연령별 총 교육·보육비용 평균(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18.2	23.5	22.8	25.5
아동연령별				
0세	22.5	27.7	38.6	27.5
1세	7.3	8.1	7.4	11.4
2세	11.7	13.7	14.1	19.0
3세	18.9	23.5	25.5	22.7
4세	22.3	28.1	27.5	29.6
5세	26.6	33.3	29.2	38.6
F	72.8***	86.8***	23.5***	19.8***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85.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69.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03.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01$

나. 아동당 교육·보육서비스 종류별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1) 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조사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 56.1%로 가장 높았고, 2014년 54.9%, 2016년 49.9%, 2017년 43.3%로 매년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용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만 0세는 20% 미만만 이용하였으며, 만 2세가 가장 많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어린이집 이용비용 변화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56.1	54.9	49.9	43.3
아동연령별				
0세	18.1	17.6	18.4	14.5
1세	72.8	76.3	80.1	76.0
2세	92.6	96.4	88.5	92.1
3세	64.4	64.2	54.4	42.6
4세	47.3	41.8	33.9	24.2
5세	39.0	39.5	25.5	13.1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8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81.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08.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집 이용자의 이용비용은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2013년에 비해 2014년 1만6천원 정도 상승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2013년보다 낮은 6만5천원, 2017년에는 6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성은 만2세 이상의 연령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만 0세와 1세는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해마다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2-3〉 어린이집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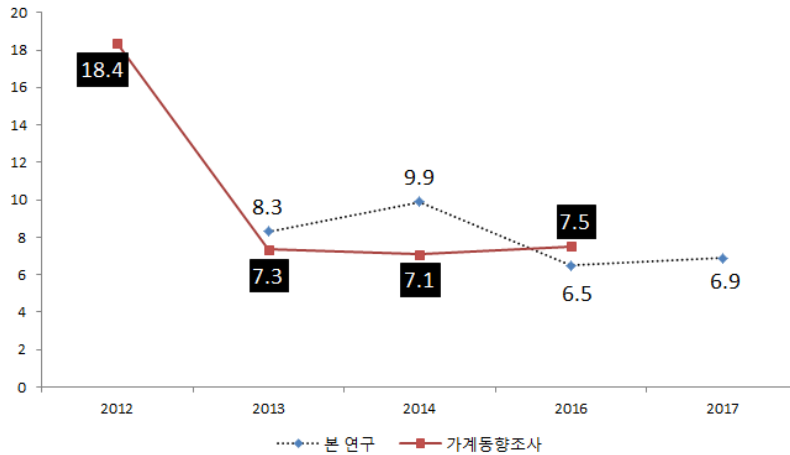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8.3	9.9	6.5	6.9
아동연령별				
0세	1.4	1.5	3.5	2.8
1세	3.8	4.6	4.3	4.1
2세	7.4	8.7	5.7	6.9
3세	10.4	13.1	8.4	9.5
4세	10.9	11.2	9.0	9.9
5세	10.8	11.9	7.1	7.3
F	119.5 ^{***}	150.9 ^{***}	17.4 ^{***}	19.6 ^{***}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0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04.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08.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01$

단위: 만원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0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04.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08.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2016)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그림 IV-2-1] 어린이집 이용비용 변화 추이 비교(2012-2017)

한편, 가계동향조사 자료는 가구당 비용이고 본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은 아동당 비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에는 무리가 있으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전반적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와 본 연구의 비용을 비교해보았다(그림 IV-2-1 참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2년 18만4천원까지 지출하던 보육료(어린이집 이용비용)는 2013년도에 크게 감소하여 가구당 7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7만원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값은 2014년도에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9만9천원으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으나, 2016년도 6만5천원, 2017년 6만9천원으로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어린이집 이용비용이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은 가계동향조사는 가구당 어린이집 이용비용인데 반해 본 연구는 아동당 이용비용인 것에 기인한 차이로 보인다.

2) 유치원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유치원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영유아 중에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중이 20~30%가량이었으며, 2017년도에는 유치원 이용자 비중이 35.2%로 다소 증가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치원 이용 비율도 증가하는 양상은 매해 관측되는 현상이며,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최근으로 올수록 유치원 이용비율도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표 IV-2-4〉 유치원 이용 비율의 변화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23.5	27.0	28.2	35.2
아동연령별				
3세	32.6	30.0	39.5	52.4
4세	49.6	54.9	59.9	70.8
5세	58.2	55.1	67.3	79.9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8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81.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14.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이용비용은 2014년도에 22만5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19만원대를 유지하였다. 연령별 유치원 이용비용은 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연령 간에 이용비용이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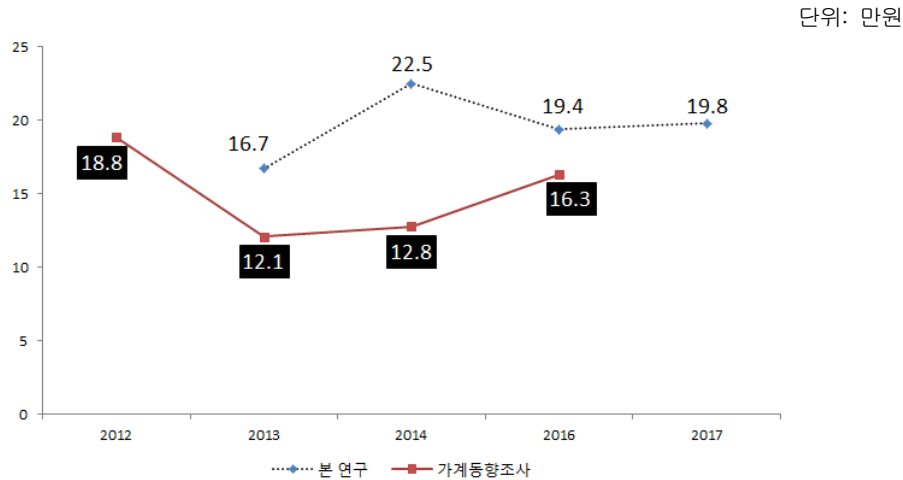
〈표 IV-2-5〉 유치원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16.7	22.5	19.4	19.8
아동연령별				
3세	17.5	21.4	22.3	16.8
4세	17.2	23.2	19.1	20.9
5세	15.9	22.5	18.0	20.6
F	1.5	1.5	3.1*	2.4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33.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25.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14.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5$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0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 p.104.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p.108.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본 연구 실태조사 결과.
 5)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2016)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그림 IV-2-2] 유치원 이용비용 변화 추이 비교(2012-2017)

한편,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유치원 이용비용과 본 연구 실태조사 결과 값을 비교해보면(그림 IV-2-2 참조), 오히려 가계동향조사의 유치원 이용비용이 낮게 조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13년 유치원 이용비용은 12만1천원이었으며, 2016년에 크게 상승하여 16만3천원이었다. 다만, 가계동향조사의 유치원 이용비용은 유아학비로 되어 있어 유치원의 교육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치원 이용비용 총액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일부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연도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비율을 살펴보면 <표 IV-2-6>과 같다. 응답 아동 중 매년 5% 미만의 아동이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3%에서 2014년 2.6%, 2016년에는 4.2%, 2017년 3.7%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표본 축소에 따라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수가 작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중표집을 실시한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용비율을 조정한 값이다.

반일제 이상 학원의 월평균 이용비용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표 IV-2-7 참조), 2013년에 60만원에서 2014년 85만7천원으로 증가한 후, 2016년에 61만8천원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17년 73만5천원이었다. 이러한 연도별 변화 추이는 연령별로 살펴보아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동일연도 내에서 2016년도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2017년도에는 2세아의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이 크게 높아진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IV-2-6〉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비용 변화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1.3	2.6	4.2	3.7
아동연령별				
0세	0.0	0.0	1.1	0.0
1세	0.2	0.0	1.3	0.0
2세	0.6	0.5	5.5	4.7
3세	2.0	5.0	5.0	5.0
4세	2.6	2.9	5.0	5.1
5세	2.5	5.1	7.0	7.0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8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81.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20.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표 IV-2-7〉 반일제 이상 학원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60.0	85.7	61.8	73.5
아동연령별				
0세	-	-	50.9	0.0
1세	25.0	-	26.2	0.0
2세	42.4	32.6	45.0	74.2
3세	43.2	78.8	64.6	62.1
4세	66.7	88.3	76.0	73.1
5세	73.6	93.6	70.6	80.9
F	3.0*	9.2***	2.1	0.8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42.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34.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20.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5$, *** $p < .001$

4) 시간제 사교육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은 2013년 18.3%에서 2014년 21.4%로 증가한 후, 2016년 13.4%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2017년에 17.0%로 다소 증가하였다(표 IV-2-8 참조). 시간제 학원 종류별로는 가정 내 학습지 이용 비중이 매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다음으로 시간제 학원 이용이 10%대의 이용 비중을 보였다.

시간제 학원 이용 비용은 2013년 8만7천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13만3천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7년 12만1천원이었다(표 IV-2-9 참조). 개인 및 그룹지도와 가정 내 학습지의 경우에도 2013년 12만8천원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 및 그룹지도와 시간제 학원은 10만원 초반대의 비용 수준을 보였으며 가정 내 학습지는 6만원대의 지출 비용을 나타냈다.

〈표 IV-2-8〉 시간제 사교육별 이용비율 변화

구분	단위: %			
	2013	2014	2016	2017
시간제 학원	18.3	21.4	13.4	17.0
개인 및 그룹지도	2.2	2.2	2.6	2.8
가정 내 학습지	31.6	29.4	19.3	25.4

주: 1) 2013, 2014년 시간제 학원은 ‘공공기관’, ‘문화센터’, ‘시간제 학원’의 합으로 계산하였으며, ‘개인 및 그룹지도’와 ‘가정 내 학습지’ 값도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계산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8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81.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23.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표 IV-2-9〉 시간제 사교육별 월평균 총 평균 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구분	단위: 만원			
	2013	2014	2016	2017
시간제 학원	8.7	10.3	13.3	12.1
개인 및 그룹지도	12.8	12.2	13.0	11.0
가정 내 학습지	6.3	6.3	6.8	6.1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49.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39.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25.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5)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비용 변화

연도별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2013년 4.9%, 2014년 4.3%에서 2016년 10.0%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더 증가하여 12.1%였다(표 IV-2-10 참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은 연령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2016년도에는 4세와 5세에서 이용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V-2-10〉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율 변화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4.9	4.3	10.0	12.1
아동연령별				
0세	7.8	6.6	12.3	11.8
1세	5.1	4.3	12.3	10.5
2세	5.0	6.0	11.0	14.1
3세	4.7	2.5	12.1	11.1
4세	3.1	4.1	6.2	10.9
5세	3.9	3.2	6.1	13.8

주: 혈연 및 비혈연 돌봄 서비스 이용자를 합한 값임.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87.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81.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30.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개별돌봄서비스 월평균 이용비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45만7천원에서 2014년 52만8천원, 2016년 56만3천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53만7천원이었다(표 IV-2-11 참조).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아동연령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0세일 때 다른 연령에 비해 평균 비용 지출액이 다소 크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앞서 살펴본 반일 이상 이용 기관 중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비용 등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 등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IV-2-11〉 개별돌봄서비스 월평균 총 이용비용 변화(비용 지불시 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45.7	52.8	56.3	53.7
아동연령별				
0세	58.5	73.0	82.4	55.3
1세	33.9	48.5	24.0	57.7
2세	46.1	54.2	41.5	66.4
3세	47.2	54.1	67.5	49.5
4세	31.4	41.0	57.8	42.2
5세	43.2	37.6	49.0	51.9
F	3.1*	6.0***	5.7**	1.2

주: 혈연 및 비혈연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170.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63.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30.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5$, *** $p < .001$

3. 가구별 교육·보육비용 지출 변화

이 항에서는 가구별 교육·보육 지출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가구소득 및 가구 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고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 부담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연도별 자녀수별 가구의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을 정리하면 <표 IV-3-1>과 같다. 2013년 21만6천원에서 2014년 27만7천원으로 증가하고, 2016년 23만4천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8만9천원으로 증가하는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20~3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서는 1명 < 3명 이상 < 2명 순으로 총 교육·보육비용이 지출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가구 내 자녀가 2명인 경우에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커지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중 일부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게 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를 가구소득에 따라 살펴보면(표 IV-3-2 참조),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은 2013년도에 는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편차가 12만원부터 36만8천원

까지 24만8천원인데, 2017년에는 199만원이하 소득구간과 7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의 비용 편차가 60만원에 이르는 등 최근으로 올수록 소득구간 사이의 지출 비용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물론 2013년도에는 소득 구간이 500만원이상 가구를 전체로 한 평균 비용이므로 700만원이상 가구의 비용은 36만8천원보다는 컸을 것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지출 비용의 편차가 확대되는 경향성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이처럼 199만원이하 혹은 200~299만원이하의 저소득 구간에서는 지난 5년간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가구소득이 700만원이상인 고소득 가구에서는 가구당 총 교육·보육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IV-3-1〉 자녀수별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월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21.6	27.7	23.4	28.9
총자녀수				
1명	19.2	26.7	18.9	22.2
2명	25.6	29.5	27.3	33.2
3명 이상	13.5	31.5	20.9	27.3
F	24.8 ^{***}	3.0 [*]	8.0 ^{***}	8.1 ^{***}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201.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77.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32~134.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5$, *** $p < .001$

〈표 IV-3-2〉 가구소득별 가구당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변화(월평균)

단위: 만원				
구분	2013	2014	2016	2017
전체	21.6	27.7	23.4	28.9
가구소득별				
199만원 이하	12.0	13.8	10.6	11.2
200~249만원	14.5	15.2		
250~299만원	16.2	17.7	11.8	9.7
300~349만원	20.0	19.8		
350~399만원	22.7	25.3	15.4	21.0
400~449만원	24.1			
450~499만원	30.4	32.0	21.0	26.1

(표 IV-3-2 계속)

구분	2013	2014	2016	2017
500~599만원		32.6	31.0	33.1
600~699만원	36.8	56.3	45.8	44.3
700만원 이상			70.3	71.2
F	46.3 ^{***}	93.0 ^{***}	44.6 ^{***}	30.4 ^{***}

주: 2013년과 2014년은 천원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201.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77.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32~134.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 $p < .001$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14년 6.7%로 증가 후, 2016년 5.4%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17년 6.2%였다. 가구지출 대비 영유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2013년 7.6%에서 2017년 8.5%로 변화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영유아 가구의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이 10%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80%가량이고,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이 10%미만인 가구가 전체의 70%가량인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들은 총 교육·보육비용이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의 10%를 넘지 않도록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강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표 IV-3-3〉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 변화(월평균)

단위: %				
구분	2013	2014	2016	2017
가구소득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6.1	6.7	5.4	6.2
가구지출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7.6	7.9	7.6	8.5

자료: 1) 양미선 외(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 p.202.

2) 양미선 외(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I). p.178.

3) 최효미 외(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IV). p.136~137.

4)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영유아가구 실태조사 결과.

4. 소결

이 장에서는 그 간의 연구 결과 중심으로 지난 5년간의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때, 본 연구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는 5개년 연속과제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표집 방법과 조사 방식 등이 변화하는 횡단면 조사 자료로서,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특성과 조사 방식 등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3차년도(2015년) 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년도의 교육·보육비용을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아동별 총 교육·보육비용은 2013년 18만2천원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0세를 제외하고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교육·보육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매해 발견되는 공통된 현상이었다. 또한, 아동 연령이 0세인 경우에는 1세나 2세 영아에 비해 교육·보육비용의 지출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개별돌봄 서비스의 이용비용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고가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용 서비스 종류별로 어린이집 이용 비율은 2013년 이후 매해 감소세가 발견되었으며, 반대로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관 이용비용은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2013년 8만3천원에서 등락을 보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소폭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셋째,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율은 전반적으로 5%미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으나, 언제나 이용비용은 가장 비싼 고가의 교육·보육서비스였다. 시간제 학원 이용 비중은 해마다 들쭉날쭉한 편이지만 통상 10%대의 이용 비중을 보였으며, 시간제 사교육 중에서는 학습지 이용 비중이 매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영유아 가구에게는 학습지가 가장 보편적인 사교육 서비스임을 엿볼 수 있었다.

넷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비중은 2013년과 2014년에는 5%미만이었으나, 2016년에는 10.0%, 2017년에는 12.1%였다. 이같은 차이가 실제로 서비스 이용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응답 가구의 특성 차이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짓기 어렵다. 다만,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해마다 월평균 50만원대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이 지난 5년간 큰 상승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가구당 영유아 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은 지난 5년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20만원대를 보이고 있어, 이 비용 또한 5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3명인 경우보다 2명인 경우에 총 교육·보육비 지출이 많은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었다. 또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당 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또한 증가하는 양상도 매해 공통되게 발견되는 현상이었다.

여섯째, 가구소득 대비 총 교육·보육비용 비중은 대체로 6% 전후이고, 가구 지출 대비 비중은 7~8%로, 해마다 이러한 비중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즉, 영유아 가구의 대다수는 가구 소득과 가구 지출의 변동을 고려하여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V.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이 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 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문항을 동일하게 하여 전문가들에게 질문한 몇몇 문항(전문가 조사 일반설문 문항에 해당)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 조사 결과와 함께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병기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영유아 부모들의 교육·보육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은 크게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이용 의사 및 지불 의사(유보가격)와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지원 방식 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1.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영유아 가구의 유보가격

이 절에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향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추가 이용 의사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가격인 유보가격(reservation price)에 대해 알아보았다.

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추가 이용 의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은 5시간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1.2%, 5시간~8시간미만 75.1%, 8시간이상 23.8%이었으며, 평균 7.2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5시간미만 이용자가 4.3%, 5시간~8시간미만 57.9%, 8시간 이상 37.8%로, 유치원과 비교해 어린이집의 경우 5시간~8시간 미만 이용자의 분포가 집중되어 있었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이용시간이 가장 짧은 0세의 경우에도 5시간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7.3%, 5시간~8시간미만 64.2%, 8시간 이상 28.6%로, 5시간~8시간미만 이용에 밀집된 분포를 보이며, 5세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비중이 다소 높았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에는 3세에서 5

시간미만 이용자의 분포가 3.8%, 5시간~8시간미만 61.9%, 8시간이상 34.3%로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분포와 비교해 5시간~8시간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대신, 5시간 미만 이용하거나 8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의 분포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4세, 5세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현상으로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 비해 이용시간의 분포가 보다 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아동 연령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별 조사)

단위: %,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계(수)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계(수)
전체	1.2	75.1	23.8	7.2	1000 (652)	4.3	57.9	37.8	7.3	1000 (530)
아동 연령별										
0세	7.3	64.2	28.6	6.8	1000 (34)	-	-	-	-	-
1세	2.1	81.5	16.4	6.9	1000 (183)	-	-	-	-	-
2세	0.0	74.8	25.2	7.2	1000 (231)	-	-	-	-	-
3세	0.0	73.0	27.0	7.5	1000 (106)	3.8	61.9	34.3	7.1	1000 (130)
4세	0.0	75.5	24.5	7.1	1000 (64)	4.7	53.8	41.5	7.3	1000 (187)
5세	3.4	58.7	37.9	7.6	1000 (35)	4.2	59.1	36.7	7.4	1000 (214)
X^2 F		25.2**		4.7***			2.3		1.3	

** $p < .01$, *** $p < .001$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자는 하루 평균 5시간~8시간미만 이용한다는 응답이 높긴 하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33.7%에 달하는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14.2%에 그쳤다.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져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51.6%가 8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비맞벌이 가구는 24.9%만이 8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맞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8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돌봄시간을 8시간 이내로 조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자녀수에 따라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인 경우에는 이용 시간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반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관측치가 적은 199만원 이하 소득 구간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

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미묘하게 길어지는 양상이 발견되는 반면,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시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띠긴 하지만 700만원 이상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유치원 이용 시간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어린이집 이용자의 경우 대도시에서 이용 시간이 하루 평균 6.9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8.1시간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긴 이용시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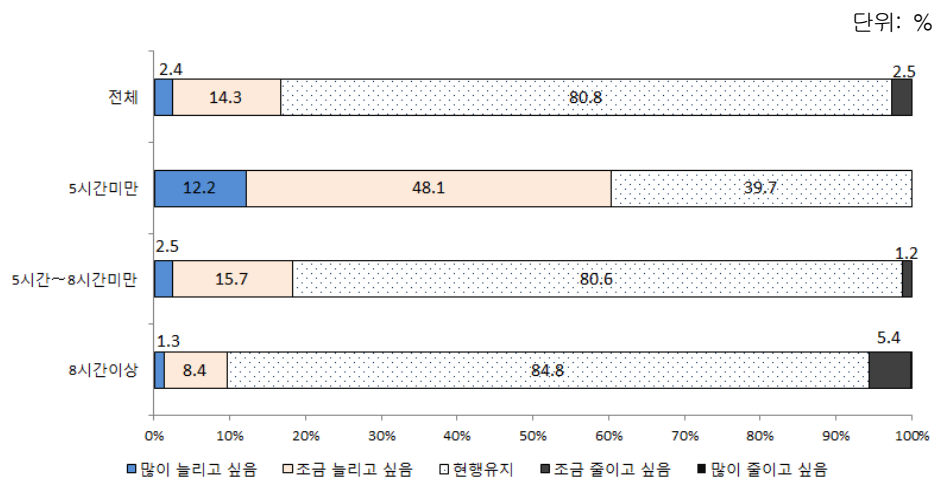
〈표 V-1-2〉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아동조사)

단위: %, 시간(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계(수)	5시간 미만	5~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평균	계(수)
전체	1.2	75.1	23.8	7.2	100.0 (652)	4.3	57.9	37.8	7.3	100.0 (530)
맞벌이 여부										
그렇다	1.7	64.6	33.7	7.4	100.0 (319)	1.6	46.9	51.6	7.7	100.0 (257)
아니다	0.7	85.1	14.2	6.9	100.0 (333)	6.8	68.3	24.9	6.9	100.0 (273)
$X^2(df), F$		37.2***		5.4***			44.9***		6.9***	
총 자녀수										
1명	0.3	76.1	23.5	7.1	100.0 (150)	10.2	53.0	36.8	7.1	100.0 (105)
2명	1.8	76.9	21.3	7.1	100.0 (391)	3.1	60.5	36.3	7.3	100.0 (320)
3명 이상	0.0	67.4	32.6	7.4	100.0 (111)	1.8	54.8	43.3	7.6	100.0 (105)
$X^2(df), F$		10.3*		3.8*			13.7**		1.9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0.0	69.6	30.4	7.0	100.0 (11)	0.0	9.3	90.7	8.1	100.0 (6)
200~299만원	0.0	78.0	22.0	7.0	100.0 (86)	3.7	58.1	38.2	7.3	100.0 (32)
300~399만원	1.6	81.0	17.4	6.9	100.0 (199)	6.7	65.1	28.2	7.0	100.0 (191)
400~499만원	0.0	81.3	18.7	7.1	100.0 (152)	4.0	58.1	37.9	7.4	100.0 (122)
500~599만원	2.6	63.1	34.3	7.5	100.0 (106)	1.1	53.3	45.6	7.6	100.0 (109)
600~699만원	4.1	63.0	32.9	7.4	100.0 (42)	0.0	45.4	54.6	7.8	100.0 (38)
700만원 이상	0.0	65.1	34.9	7.5	100.0 (56)	8.3	54.6	37.2	6.9	100.0 (31)
$X^2(df), F$		30.3**		2.7*			29.0**		4.4***	
지역 규모										
대도시	1.7	79.1	19.1	6.9	100.0 (257)	5.5	52.7	41.8	7.2	100.0 (238)
중소도시	1.0	73.0	26.0	7.3	100.0 (303)	3.6	67.1	29.3	7.2	100.0 (241)
읍면지역	0.0	70.6	29.4	7.3	100.0 (93)	1.5	39.0	59.5	8.1	100.0 (51)
$X^2(df), F$		6.7		3.3*			21.6***		7.9***	

* $p < .05$, ** $p < .01$, *** $p < .001$

현재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2.4%, 조금 늘리고 싶음 14.3%, 현행 유지 80.8%, 조금 줄이고 싶음 2.5%, 많이 줄이고 싶음 0.1%로 현행유지에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다. 현재 이용시간에 따라서는 다소 편차를 보이는데, 현재 이용 시간이 5시간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48.1%로 현행유지 응답 39.7%에 비해 높았다. 반면, 현재 5시간~8시간미만 혹은 8시간 이상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현행유지가 80%대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 전체 응답자 수는 1,183명, 5시간미만 30명, 5~8시간미만 797명, 8시간 이상 356명에 대한 분석 결과임.

[그림 V-1-1]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 추가 의향(아동별 조사)

현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에 이용시간을 희망하는 만큼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고,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가 25.8%,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가 12.5%, '다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3.7% 순이었다. 현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5시간미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지만, 관측치가 18개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게 산출된 것일 뿐, 전반적으로 현재 이용시간에 따라 기관 이용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V-1-3〉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동별 조사)

단위: %(명)

구분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다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추가 이용 비용이 부담되어서	X ²	계(수)
전체	58.0	25.8	3.7	12.5		1000 (197)
이용시간						
5시간미만	81.7	3.9	0.0	14.4		1000 (18)
5시간~8시간미만	57.3	25.5	5.1	12.1	9.7	1000 (145)
8시간이상	48.2	38.5	0.0	13.3		1000 (34)

반대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장시간 보육을 원해서’가 30.6%로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고,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육하고 싶어서’가 24.6%, ‘학원이나 개별돌봄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어서’가 22.4%,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17.4%,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가 4.9% 순이었다. 5시간~8시간미만 이용 아동의 경우 ‘기관에서 장시간 보육을 원해서’가 56.8%,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가 37.2%로 집중되어 있었으나, 8시간 이상 이용한다는 아동의 경우 기관이 장시간 보육을 원해서(17.5%), 안전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18.3%)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비용이 부담되어서(33.7%)와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26.2%)가 높게 나타나, 8시간 이상 장시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찾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았다.

〈표 V-1-4〉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시간을 감소시키지 못하는 이유 (아동별 조사)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장시간 보육을 원해서	학원이나 개별돌봄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	같은 기관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X ²	계(수)
전체	30.6	22.4	17.4	24.6	4.9		1000 (30)
이용시간							
5시간~8시간미만	56.8	0.0	0.0	37.2	6.0	11.3	1000 (10)
8시간이상	17.5	33.7	26.2	18.3	4.3		1000 (20)

나. 비용 상승에 대한 지불 의사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 1,18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관 이용비용이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이용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의 비율이 51.2%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지출할 의사가 있는지 유보가격을 조사한 결과, 유보가격이 5만원 미만인 경우가 18.5%로 가장 높았다. 유보가격이 5~10만원미만인 경우는 18.4%로 5만원 미만인 경우와 거의 흡사한 비중을 보였다. 유보가격이 10~15만원미만인 경우는 9.4%였고, 15~20만원미만의 경우 1.0%, 20만원이상 1.5%였다. 평균 유보가격은 5만7천원이었고,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다수의 가구가 10만원미만의 비용 상승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표 V-1-5〉 이용기관 및 이용비용별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단위: %, 만원(명)

구분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기관 계속이용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유보 가격 (평균)	계(수)
		5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51.2	18.5	18.4	9.4	1.0	1.5	5.7	100.0 (1,183)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	49.2	22.2	17.5	9.6	0.4	1.2	5.3	100.0 (652)
유치원	53.6	14.1	19.6	9.3	1.6	1.9	6.3	100.0 (530)
$X^2(df), t$			16.4**				-2.5*	
현재 이용비용								
10만원미만	52.1	18.5	17.6	10.4	0.6	0.7	5.5	100.0 (570)
10~30만원미만	46.2	21.3	21.4	8.2	1.0	2.0	5.6	100.0 (369)
30~50만원미만	52.5	15.2	16.1	10.2	2.7	3.3	6.9	100.0 (133)
50만원이상	61.4	13.3	15.3	8.0	0.5	1.5	6.0	100.0 (111)
$X^2(df), F$			24.4				1.7	

주: 유보가격은 얼마가 늘어나든 계속 이용한다는 경우는 제외하고, 금액을 응답한 경우의 평균 금액임.

* $p < .05$, ** $p < .01$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어린이집의 경우 49.2%, 유치원 53.6%였으며, 현재 이용기관인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지출할 의사를 물어본 결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만원미만이 22.2%로 다른 유보가격 구간에 비해 가장 높았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5~10만원미만일 경우가 19.6%로 다른 유보가격 구간에 비해 가장 높았다.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평균 유보가격은 5만3천원이었으며, 유치원의 평균 유보가격은 6만3천원이었다.

현재 기관 이용비용 지출 수준에 따라서는 먼저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비용 지출 수준에 상관없이 가장 높았는데, 이 비중은 현재 이용비용이 50만원이상인 응답자의 경우에 61.4%로 가장 높았고, 10~30만원 미만일 경우 46.2%로 가장 낮았다.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들을 제외하고는, 현재 이용비용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 유보가격은 5만원미만인 구간이 18.5%로 가장 높았고, 현재 이용비용이 10~30만원미만인 경우와 30~50만원미만과 50만원이상인 경우에 모두 유보가격이 5~10만원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구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현재 이용비용에 따라서는 유보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6〉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단위: %, (명)

구분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 계속 이용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유보 가격 (평균)	계(수)
		5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51.2	18.5	18.4	9.4	1.0	1.5	5.7	1000 (1,183)
맞벌이 여부								
그렇다	52.6	18.1	16.5	11.0	1.2	0.6	5.6	1000 (576)
아니다	49.8	19.0	20.3	7.9	0.7	2.3	5.8	1000 (606)
$X^2(df), F$			11.6*				-0.5	

주: 유보가격은 얼마가 늘어나든 계속 이용한다는 경우는 제외하고, 금액을 응답한 경우의 평균 금액임.

* $p < .05$

비용이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기관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맞벌이 가구 52.6%, 비맞벌이 가구 49.8%였다(표 V-1-6 참조).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보가격이 5만원 미만일 경우가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비맞벌이 가구의 경우 유보가격 5~10만원미만 구간에서 20.3%로 가장 높았다.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평균 유보가격은 맞벌이 가구 5만6천원, 비맞벌이 가구 5만8천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가구는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을 포함하여 유보가격이 5~10만원미만의 응답률이 33.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26.5%였다. 반면, 가구소득이 200~299만원미만인 가구부터는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편,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평균 유보가격은 가구소득에 따라 특별히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의 경우가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63.4%로, 대도시(54.6%)나 중소도시(44.8%)에 비해 높았으나,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평균 유보가격 자체는 읍면지역에서 4만6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읍면지역의 경우 제공되는 보육·교육서비스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반면, 지불 의사 자체는 높지 않은 현상을 반영한 결과로 추측된다.

〈표 V-1-7〉 가구 특성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유보가격(아동별 조사)

단위: %, 만원, (명)

구분	얼마가 늘어나든 현재 기관 계속 이용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					유보 가격 (평균)	계(수)
		5만원 미만	5~10 만원 미만	10~15 만원 미만	15~20 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전체	51.2	18.5	18.4	9.4	1.0	1.5	5.7	100.0 (11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6.5	24.0	33.9	0.0	0.0	15.5	7.0	100.0 (17)
200~299만원	38.6	21.1	28.2	10.6	1.0	0.5	5.3	100.0 (118)
300~399만원	55.2	16.4	17.4	7.8	1.2	2.0	6.1	100.0 (390)
400~499만원	52.3	18.5	17.9	9.8	0.6	0.9	5.6	100.0 (275)
500~599만원	48.0	21.2	17.2	11.9	0.2	1.5	5.6	100.0 (215)
600~699만원	53.3	17.4	13.9	11.2	4.2	0.0	6.0	100.0 (80)
700만원이상	57.2	18.2	15.2	8.5	0.0	0.9	4.8	100.0 (88)
$X^2(df), F$			63.9***				0.8	
지역 규모								
대도시	54.6	14.4	19.1	9.7	1.0	1.2	6.0	100.0 (494)
중소도시	44.8	23.0	18.7	10.4	0.9	2.2	5.7	100.0 (544)
읍면지역	63.4	15.9	14.8	5.1	0.8	0.0	4.6	100.0 (144)
X^2, F			30.3***				1.8	

주: 유보가격은 얼마가 늘어나든 계속 이용한다는 경우는 제외하고, 금액을 응답한 경우의 평균 금액임.

*** $p < .001$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에서는 유

유보가격 초과 시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5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용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27.5%,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이 12.4%, ‘부모직접양육’ 4.2%,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1.3% 순이었다. 현재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최대 지불의사인 유보가격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V-1-8〉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이용 시간을 줄임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직접 양육	χ^2	계(수)
전체	27.5	54.7	12.4	1.3	4.2		100.0 (578)
이용 기관							
어린이집	26.2	57.0	11.9	1.3	3.5	2.1	100.0 (332)
유치원	29.1	51.5	13.2	1.2	5.0		100.0 (246)
유보가격							
5만원미만	27.6	57.2	9.7	2.0	3.6	17.3	100.0 (219)
5~10만원	28.2	53.8	13.2	0.6	4.2		100.0 (218)
10~15만원	28.4	50.4	15.8	1.5	3.9		100.0 (112)
15~20만원	17.6	62.3	12.4	0.0	7.7		100.0 (11)
20만원이상	17.7	55.8	15.1	0.0	11.4		100.0 (18)

맞벌이 가구의 경우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59.1%, ‘이용시간을 줄임’이 24.7%이었다. 맞벌이가 아닌 경우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50.7%, ‘이용시간을 줄임’이 30.0%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인 경우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30.8%, ‘이용시간 줄임’이 21.2%였다. 이후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50%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은 응답분포를 보였다. 다만, 가구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유보가격 초과 시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48.0%, 다른 사교육기관 이용 22.6%, 이용시간을 줄임이 16.7%, 부모직접양육이 12.7% 순이었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일수록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이 45.4%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은 반면,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에 대한 응답이 각각 32.3%, 16.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1-9〉 가구 특성별 유보가격 초과 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계획(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이용 시간을 줄임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	다른 사교육 기관 이용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 직접 양육	X ²	계(수)
전체	27.5	54.7	12.4	1.3	4.2		1000 (578)
맞벌이 여부							
그렇다	24.7	59.1	12.3	2.3	1.7	14.3**	1000 (273)
아니다	30.0	50.7	12.6	0.4	6.3		1000 (304)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1.2	30.8	41.9	0.0	6.2	50.2**	1000 (13)
200~299만원	24.5	62.9	5.6	0.0	7.0		1000 (73)
300~399만원	30.5	54.6	12.1	0.0	2.8		1000 (175)
400~499만원	29.4	47.3	17.1	3.4	2.8		1000 (131)
500~599만원	28.9	57.7	6.7	2.5	4.3		1000 (112)
600~699만원	21.1	70.9	8.0	0.0	0.0		1000 (37)
700만원이상	16.7	48.0	22.6	0.0	12.7		1000 (38)
지역 규모							
대도시	26.7	58.2	10.6	0.0	4.6	17.3*	1000 (224)
중소도시	27.2	53.7	13.1	1.4	4.6		1000 (300)
읍면지역	32.3	45.4	16.8	5.6	0.0		1000 (53)

* $p < .05$, ** $p < .01$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 시간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15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줄어든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어떤 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인지를 조사한 결과, 부모가 직접양육이 66.9%로 가장 높았으며 시간제 학원 및 문화센터 등을 이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26.4%,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6.7%였다.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용기관이 어린이집인 경우 부모가 직접 양육이 66.5%, 시간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이용이 21.2%,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12.3%인 반면, 유치원의 경우 부모가 직접양육 67.4%, 시간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이용이 32.6%로, 전반적으로 부모 직접 양육으로의 전환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유보가격에 따라서는 유보가격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던 5만원미만인 구간에서는 부모가 직접양육 69.3%, 시간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이용이 29.3%, 개별돌봄서비스 1.5%이고, 유보가격이 5~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양육이 72.0%, 시간제 학원이나 문화센터 등 이용 21.6%,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6.5%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모가 직접양육이 56.5%, 시간제 학원이나 문화 센터 등 이용이 30.7%,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이 12.8%인 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부모가 직접양육이 74.5%, 시간제학원이나 문화 센터 등 이용 23.2%,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의 응답비율이 2.3%였다.

〈표 V-1-10〉 유보가격 초과 시 이용시간을 줄일 경우 추가 기관 이용 계획(아동별조사)

단위: %(명)

구분	부모가 직접 양육	개별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제 학원, 문화센터등	χ^2	계(수)
전체	66.9	6.7	26.4		100.0 (159)
이용 기관					
어린이집	66.5	12.3	21.2	11.0**	100.0 (87)
유치원	67.4	0.0	32.6		100.0 (72)
유보가격					
5만원미만	69.3	1.5	29.3	9.9	100.0 (60)
5~10만원	72.0	6.5	21.6		100.0 (61)
10~15만원	53.4	18.4	28.1		100.0 (32)
15~20만원	70.0	0.0	30.0		100.0 (2)
20만원이상	54.7	0.0	45.3		100.0 (3)
맞벌이 여부					
그렇다	56.5	12.8	30.7	9.8(2)**	100.0 (67)
아니다	74.5	2.3	23.2		100.0 (91)

** $p < .01$

지불금액이 증가해도 이용시간을 줄이지 않겠다는 응답자 607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보육·교육의 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높았고, 금액이 증가해도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5%,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려워서 19.8%,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19.7% 순이었다.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보육·교육의 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0%로 가장 높았고,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려워서 24.0%,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2.6%, 금액이 증가해도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9.6% 순이었다. 한편, 유치원의

경우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보육·교육의 질이 좋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높았고, 금액이 증가해도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9%,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16.5%,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려워서 15.0% 순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V-1-11〉 지불 금액 증가에도 이용시간을 줄이지 않는 이유(아동별조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X ²	계(수)
전체	30.6	23.5	19.8	19.7	2.6	2.9	0.8		100.0 (607)
이용 기관									
어린이집	27.0	19.6	24.0	22.6	2.2	3.7	1.0	18.4**	100.0 (322)
유치원	34.6	27.9	15.0	16.5	3.2	2.1	0.6		100.0 (285)

주: ①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교육·보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② 금액이 증가해도 다른 기관 혹은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③ 아이를 봐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을 구하기 어려워서, ④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 ⑤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 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⑥ 내 편의대로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서, ⑦ 기타

** $p < .01$

2.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학부모 의견

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를 조사한 결과, 적극찬성 32.6%, 찬성 53.1%, 반대 11.2%, 절대 반대 1.2%, 모르겠음이 1.9%였다.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적극찬성 응답률의 경우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35.5%,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28.2%,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 23.5%, 반일 이상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6.4%였다. 현재 지출하는 총 교육·보육비용별 구간에 따른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점 만점 기준 평균 3.1점으로, 현재 이용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가 3.1점, 유치원 이용자가 3.0점, 기관미이용자가 3.2점이었다.

〈표 V-2-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아동별조사)

단위: %, 점(명)

구분	정책에 대한 선호					평균	계(수)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절대반대	모르겠음		
전체	32.6	53.1	11.2	1.2	1.9	3.1	100.0 (1505)
이용 기관							
어린이집	35.5	51.0	10.4	1.4	1.7	3.1	100.0 (652)
유치원	28.2	56.2	13.0	1.1	1.5	3.0	100.0 (530)
반일제이상	23.5	54.4	19.0	0.9	2.1	2.8	100.0 (56)
미이용	36.4	51.8	8.0	0.8	3.0	3.2	100.0 (266)
X^2, F			21.1*			4.7**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32.8	52.4	11.6	0.9	2.3	3.1	100.0 (808)
10~30만원 미만	33.5	53.0	11.3	1.1	1.1	3.1	100.0 (381)
30~50만원 미만	31.6	54.1	11.0	1.9	1.4	3.1	100.0 (146)
50만원이상	30.8	56.1	9.1	2.0	2.0	3.1	100.0 (170)
X^2, F			6.1			0.0	

주 : 정책 선호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쪽임.

* $p < .05$, ** $p < .0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부모들은 현행 유지를 원한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인상 필요가 32.3%, 삭감 필요 2.4%였다. 인상 필요시 적정 인상액은 평균 14만4천원으로 응답하였고, 삭감 필요 시 삭감 적정액은 평균 9만3천원이었다. 이용 기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자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3%, 현행 유지 66.0%, 삭감 필요 2.7%였고, 유치원 이용자의 경우에는 인상 필요 28.9%, 현행 유지 69.1%, 삭감 필요 2.0%로 현행 유지에 응답한 비중이 조금 높았다.

한편,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필요시 적정 인상액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일제 학원에 다니는 경우 각각 13만5천원과 12만8천원, 18만1천원이었다. 삭감 필요시 적정 삭감액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각각 8만8천원, 8만2천원으로 응답하였으나, 반일제 이상 학원의 경우 13만7천원으로 적정 삭감액이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높았다. 영유아의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액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비용의 적정성 질문에 대해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조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V-2-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모 의견(아동조사)

단위: %, 만원(명)

구분	비용의 적정성			인상 필요시 적정 인상액	삭감 필요시 적정 삭감액	계(수)
	인상 필요	현행 유지	삭감 필요			
전체	32.3	65.3	2.4	14.4	9.3	100.0 (1,505)
이용 기관						
어린이집	31.3	66.0	2.7	13.5	8.8	100.0 (652)
유치원	28.9	69.1	2.0	12.8	8.2	100.0 (530)
반일제 이상	18.0	72.6	9.4	18.1	13.7	100.0 (56)
미이용	44.7	54.4	0.9	17.5	8.6	100.0 (266)
X^2, F		38.5***		4.9**	1.1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33.2	64.4	2.4	15.1	8.8	100.0 (808)
10~30만원 미만	31.7	65.8	2.5	13.0	6.7	100.0 (381)
30~50만원 미만	31.9	66.5	1.6	15.0	10.8	100.0 (146)
50만원이상	29.9	66.9	3.2	13.3	14.7	100.0 (170)
X^2, F		1.6		1.1	2.2	

** $p < .01$, *** $p < .001$

나.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를 조사한 결과, 적극찬성 31.9%, 찬성 51.8%, 반대 13.3%, 절대반대 1.5%, 모르겠음 1.4%였으며, 4점 만점에 평균 3.2점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의 동의도를 보였다. 이용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적극 찬성이 34.3%, 유치원 25.6%, 반일제 이상 학원 24.5%, 기관 미이용자 40.1%였다. 유치원과 반일제 이상 학원에 다니는 경우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률이 17.3%와 14.4%로 비교적 높게 응답되었다.

현재 지출하는 총 교육·보육비용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총 교육·보육비용이 50만원이상인 경우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선호도에서 적극 찬성이 25.1%로 상대적으로 비교적 낮은 지지를 받았으나, 이 경우에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56.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반대(반대+절대반대)의 응답 비중은 다른 구간의 가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현재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이 많은 가구의 경우에도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가 낮을 뿐 반대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표 V-2-3〉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부모 선호(아동 조사)

단위: %, 점(명)

구분	정책에 대한 선호					평균	계(수)
	적극찬성	찬성	반대	절대반대	모르겠음		
전체	31.9	51.8	13.3	1.5	1.4	3.2	100.0 (155)
이용 기관							
어린이집	34.3	51.1	10.9	1.8	1.9	3.2	100.0 (652)
유치원	25.6	54.6	17.3	1.2	1.2	3.1	100.0 (530)
반일제 이상 학원	24.5	59.6	14.4	0.9	0.7	3.1	100.0 (56)
미이용	40.1	46.5	11.1	1.6	0.7	3.3	100.0 (266)
X^2, t			31.8**			6.4***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33.3	51.4	12.1	1.6	1.5	3.2	100.0 (808)
10~30만원 미만	31.6	51.3	14.6	1.1	1.4	3.1	100.0 (381)
30~50만원 미만	32.4	50.3	15.1	1.9	0.3	3.1	100.0 (146)
50만원이상	25.1	56.4	14.8	1.8	1.9	3.1	100.0 (170)
X^2, F			8.7			1.3	

주: 정책 선호 문항은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찬성하는 쪽임.

** $p < .01$, *** $p < .001$

가정 양육수당의 비용 적정성에 대한 부모의견 조사 결과에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9%, 현행 유지 56.1%, 삭감 필요가 2.0%였으며, 인상 필요시 적정 인상액은 평균 15만7천원으로 조사됐으며, 반대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삭감액은 평균 8만6천원이었다.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 양육수당 비용 적정성에서 현행유지의 응답률이 50%를 웃도는 반면, 반일 이상 기관 미이용자 즉 현재 가정 양육수당 수혜자들의 경우 현행 유지는 36.8%에 그치고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가정 양육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기관 미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인상액도 기관 이용 아동들의 응답 금액보다 높은 평균 17만2천원이었다.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액에 따라서는 총 교육·보육비용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가정 양육수당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해 현행유지에 대한 비율이 52.7%로 다른 비용 구간에 비해 낮은 대신 인상 필요에 대한 응답률이 45.8%로 높았다.

〈표 V-2-4〉 양육수당 지원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모 의견(아동 조사)

단위: %, 만원(명)

구분	비용의 적정성			인상필요시	삭감 필요시	계(수)
	인상 필요	현행 유지	삭감 필요	적정 인상액	적정 삭감액	
전체	41.9	56.1	2.0	15.7	8.6	100.0 (1,505)
이용 기관						
어린이집	42.5	55.5	1.9	15.9	8.3	100.0 (652)
유치원	31.5	65.9	2.5	13.8	7.5	100.0 (530)
반일제 이상	34.0	61.6	4.5	15.9	17.7	100.0 (56)
미이용	62.4	36.8	0.7	17.2	7.1	100.0 (266)
X^2, t		74.2***		3.3*	2.6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45.8	52.7	1.5	16.1	8.3	100.0 (808)
10~30만원 미만	39.1	58.7	2.3	15.0	6.9	100.0 (381)
30~50만원 미만	31.6	67.5	0.9	15.2	10.1	100.0 (146)
50만원이상	38.4	56.6	5.1	15.4	10.6	100.0 (170)
X^2, F		25.0***		0.5	0.6	

* $p < .05$, *** $p < .001$

3.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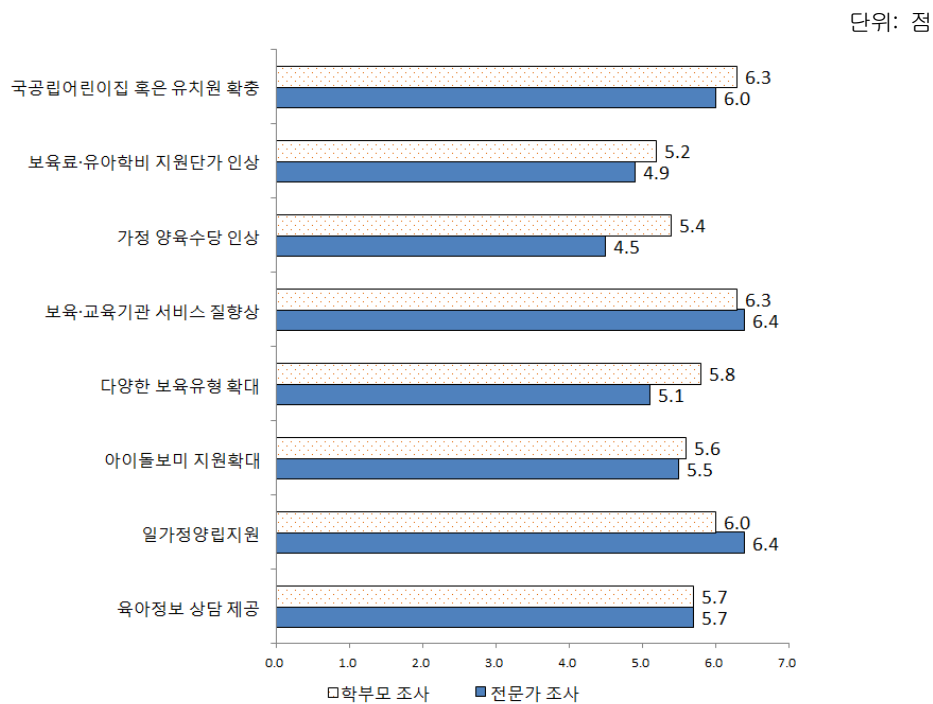
이 항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즉 비용 지원 체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영유아 부모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이때 일부 문항은 동일한 설문을 가지고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병기하여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의견 사이의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항에 제시된 전문가 의견은 전문가 조사 일반 설문 문항에 해당하는 문항들로 총 40명의 전문가가 응답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영유아 부모 실태조사 결과의 보완적 자료로 제시된 부모 심층면담 설문의 내용은 최효미 외(2016)에서 재인용된 것이다.

가. 정책 필요성 및 우선 순위에 대한 의견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먼저 영유아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정책과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7점 만점에 평균 6.3점으로 다른 정책들에 비

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다음으로 일·가정양립 지원 6.0점,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 정책은 5.8점, 육아정보상담 제공 정책이 5.7점 순이었다. 가정 양육수당 인상 정책이 5.4점, 보육료·유아학비지원 단가 인상 5.2점 순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낮은 선호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에 6.4점을 주어 가장 필요하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학부모 조사와 의견을 같이 했으나,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 또한 6.4점으로 학부모 조사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한편, 학부모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에는 전문가들은 6.0점을 주어 학부모에 비해서는 낮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학부모에 비해 중요도가 낮다고 보았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4.9점)과 가정 양육수당 인상(4.5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낮게 평가하였다.



주: 총 1,119가구 및 총 40명의 전문가 조사에 대한 결과이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조사함.

[그림 V-3-1]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

가구특성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맞벌이 여부와 무관하게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 정책과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7점 만점에 6.3점 정도로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가정 양립지원 6.0점,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에 대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 5.8점으로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 높았다.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구소득 199만원이하의 경우 전반적으로 다른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전반적인 경향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4.8점)의 필요성에 대해 낮은 점수를 준 반면, 대도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양한 보육유형 확대(5.6점),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5.5점), 일가정 양립지원(5.8점), 육아정보 상담 제공(5.5점)의 필요성 등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표 V-3-1〉 가구 특성별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가구조사)

단위: 점(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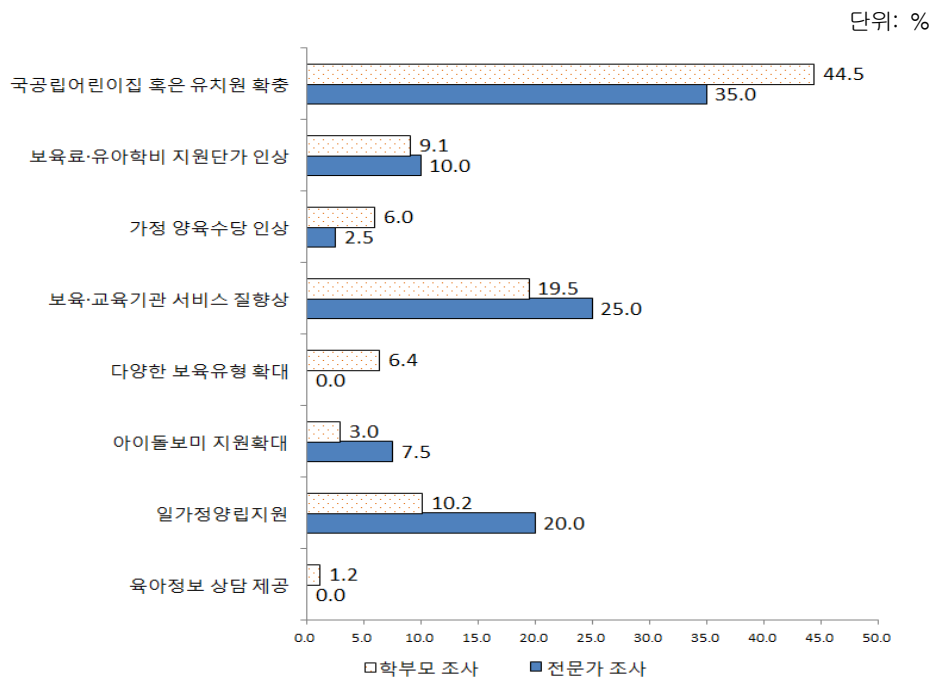
구분	정책 필요성								계(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	가정 양육 수당 인상	보육· 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아이 돌보미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 정보 상담 제공	
전체	6.3	5.2	5.4	6.3	5.8	5.6	6.0	5.7	100.0 (1,119)
맞벌이 여부									
그렇다	6.3	5.1	5.3	6.3	5.8	5.6	6.0	5.7	100.0 (518)
아니다	6.2	5.2	5.5	6.3	5.7	5.6	5.9	5.7	100.0 (601)
<i>t</i>	0.6	-1.4	-2.3*	-0.5	2.1*	0.0	2.6**	-0.6	
지역 규모									
대도시	6.3	5.2	5.3	6.2	5.6	5.5	5.8	5.5	100.0 (479)
중소도시	6.2	5.2	5.5	6.3	5.9	5.8	6.1	5.8	100.0 (509)
읍면지역	6.4	4.8	5.2	6.4	6.0	5.8	6.1	5.8	100.0 (131)
<i>F</i>	1.2	5.8**	4.3**	7.3***	10.0***	9.0***	13.8***	10.5***	

주: 각각의 문항에 대해 7점 척도로 조사함.

* $p < .05$, ** $p < .01$, *** $p < .001$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필요성을 넘어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학부모조사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44.5%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다음으로는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19.5%였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 10.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이 9.1%, 가정 양육수당 인상 6.0% 순이었다. 반면,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35.0%로 가장 많긴 했으나 학부모들에 비해서는 9.5%p가량 낮은 비중을 보인 반면,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 25.0%, 일가정 양립 지원이 20.0%로 학부모 조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 총 1,119가구 및 총 40명의 전문가 조사에 대한 결과로, 가장 우선하는 정책 한가지만 응답.

[그림 V-3-2]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 순위

이상의 결과를 통해 영유아 부모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이나 가정 양육수당 인상과 같이 가구 지원금의 확대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확충과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인 것으로 분석됐

다. 이 같은 경향은 최효미 외(2016: 166)에 제시되어 있는 부모 심층 면담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된 내용으로,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약간의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 받기를 희망함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저는 6, 7세는 교육에 조금 더 집중하는 대신에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6, 7세 전담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시켜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솔직히 사교육보다는 그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유치원을 안 보내도 우리 애가 그 정도까지 적응할 수 있다면 선생님에 대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6, 7세는 보육보다는 교육에 조금 더 치중해서.<맞벌이가구 면담, 석○○> (최효미 외, 2016: 166에서 재인용).

나. 정책 지원 대상 및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조정 방식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영유아 부모의 경우 정책 지원의 지원대상의 범위가 전 계층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61.8%로 가장 많긴 했으나, 취약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응답이 24.1%, 특정연령만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14.1%였다. 한편, 전 계층에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 지원 금액을 조정할 경우 그 방식에 대해 지금 현행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7%로 가장 높았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이 14.6%로 그 다음을 이었다.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평균 6.9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되었다.

〈표 V-3-2〉 비용 지원 대상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조정 방식에 대한 의견(가구조사)

단위: %, 시간(명)

구분	지원 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조정 방식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지원 시 비용 지원 시간	계(수)
	전계층	특정 연령만	취약 계층만	현행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		
학부모 조사	61.8	14.1	24.1	68.7	9.0	14.6	7.7	6.9	1000 (1,118)
전문가 조사	32.5	10.0	57.5	23.1	7.7	46.2	23.1	6.0	100.0 (40)

주: 1) 지원 금액 조정 방식은 '전 계층'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응답.

2)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지원 시간은 지원 금액 조정 방식에서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에 응답한 경우에만 응답.

3) 전문가 응답 중 기타(저소득층*근로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으로 분류했으며, 이용 시간에 따른 차등은 1명이 응답.

반면, 전문가 조사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를 취약 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전 계층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2.5%였다(표 V-3-2 참조). 지원 금액의 조정 방식 또한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대로와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차등이 23.1%였다. 전문가들은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을 가장 낮은 비중으로 응답했지만, 이용시간에 따른 차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6.0시간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여 학부모에 비해서도 지원 시간을 짧게 응답하였다.

한편, 연령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지원이 필요한 연령을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만1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낮은 편이었다.

〈표 V-3-3〉 비용 지원 필요 대상 연령

단위: %, (명)

구분	정책 지원 필요 대상 연령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학부모 조사	45.4	50.3	63.1	65.1	62.2	61.2	(157)
전문가 조사	6.3	6.3	25.0	25.0	25.0	12.5	(16)

주: 연령별 차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해, 각 연령별로 필요 여부를 응답함.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우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중복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와 2순위를 합쳐서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영유아 부모들은 장애 영유아(52.1%),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44.4%) 순이었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61.5%)과 장애 영유아(34.6%)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맞벌이 가구에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부모조사 10.0%, 전문가 조사 3.9%로 높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표 V-3-4〉 비용 지원이 필요한 취약 계층(1+2순위)

단위: %, (명)

구분	정책 지원 필요 취약 계층							(수)
	장애 영유아	한부모, 조손가정	저소득층	다자녀	맞벌이	다문화	농어촌	
학부모조사	52.1	44.4	73.4	16.0	10.0	3.0	0.7	(321)
전문가조사	34.6	61.5	84.6	11.5	3.9	3.9	-	(52)

주: 취약 계층은 2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여 비율을 합산하였으며, 전체 200%인 비율임.

이러한 경향은 지난 4차년도 연구인 최효미 외(2016: 178)에서도 발견된 현상으로, 당시 부모 심층면담에서 중산층 면담자들은 전반적으로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지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할 경우 저소득층 우선 지원에 높은 지지를 보였다.

소득이라든가...(중략)...부부소득으로 해서 유치원비, 어린이집 비용을 지원도 못받고.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받잖아요. 학교도 다 무상급식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넉넉하면 좋는데 부족하다면 조금 차등을 뒀서 상위 몇프로까지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고. 물론 그럼 또 문제가 있겠지만. 불안도 있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제일 우선인 건 저소득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혜택을 많이.<중산층 면담, 김○○> (최효미 외, 2016: 178에서 재인용).

다. 양육수당 인상 시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이용 계획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이용 계획을 질문한 결과, 양육수당 인상에 따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6.2%로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을 이은 부모 직접 양육은 7.6%정도이며, 반일제 이상 학원 3.6%, 개별돌봄서비스는 2.3%, 기타 0.2% 순으로 응답하였다. 현재 이용기관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가 직접 양육한다는 비율이 9.1%,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이 4.8%로 어린이집의 각각의 응답률인 6.4%, 2.7%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V-3-5〉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부모 직접 양육	개별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계속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X ²	계(수)
전체	7.6	2.3	86.2	3.6	0.2		100.0 (1,183)
이용 기관							
어린이집	6.4	3.2	87.3	2.7	0.4	12.8*	100.0 (652)
유치원	9.1	1.2	84.9	4.8	0.0		100.0 (530)
총 교육·보육비용							
10만원미만	6.4	3.6	87.6	2.5	0.0	37.6***	100.0 (570)
10~30만원 미만	10.4	1.3	83.9	3.6	0.8		100.0 (369)
30~50만원 미만	10.5	0.0	84.4	5.1	0.0		100.0 (133)
50만원이상	1.1	1.8	89.0	8.2	0.0		100.0 (111)

* $p < .05$, *** $p < .001$

총 교육·보육비용 지출 수준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총 교육·보육비용 50만원이상인 경우(89.0%)와 10만원미만인 경우(87.6%)에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V-3-5 참조). 총 교육·보육비용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10~30만원미만 구간과 30~5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각 10.4%와 10.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아동 연령별로는 0세의 경우 91.9%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연령별로 비교해도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1세와 2세의 경우도 유사한 수준을 보였는데,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은 다른 연령에 비해 3세에 높아서 9.9%에 달했으며, 4세와 5세의 경우에도 7.8%로 영아에 비해 오히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V-3-6〉 아동연령별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부모직접 양육	개별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계속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X ²	계(수)
전체	7.6	2.3	86.2	3.6	0.2		100.0 (1,183)
아동 연령별							
0세	5.1	3.0	91.9	0.0	0.0	42.7**	100.0 (34)
1세	6.9	4.9	87.9	0.4	0.0		100.0 (183)
2세	5.8	3.8	87.9	2.5	0.0		100.0 (231)
3세	9.9	1.7	84.0	4.0	0.4		100.0 (235)
4세	7.8	1.3	87.4	2.8	0.7		100.0 (250)
5세	7.8	0.6	83.6	8.1	0.0		100.0 (249)

** $p < .01$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영유아 가구 서비스 이용 계획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8.2%,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6%,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4.2%,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2.9%였다. 반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4.3%,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12.0%,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2.8%로,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매우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199만원이하일 경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74.1%로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 대신 부모가 직접 양육하겠다는 응답이 25.9%였다. 이러한 응답분포는 가구소득이 500~599만원인 구간까지 유지되다가, 가구소득 600~699만원인 가구부터는 개별돌봄서비스와 반일제 이상 학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아졌다. 이는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맞벌이 가구 비중이 높은 것과 상관된 것으로 보인다.

〈표 V-3-7〉 가구 특성별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양육수당 인상 시 이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부모 직접 양육	개별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계속이용	반일제 이상 학원	기타	X ²	계(수)
전체	7.6	2.3	86.2	3.6	0.2		100.0 (1,183)
맞벌이 여부							
그렇다	2.9	4.2	88.2	4.6	0.1	52.7***	100.0 (576)
아니다	12.0	0.6	84.3	2.8	0.4		100.0 (606)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25.9	0.0	74.1	0.0	0.0	65.0***	100.0 (17)
200~299만원	14.9	0.5	84.1	0.6	0.0		100.0 (118)
300~399만원	7.0	0.3	88.3	4.0	0.4		100.0 (390)
400~499만원	5.7	2.4	87.6	4.3	0.0		100.0 (275)
500~599만원	10.0	3.7	84.3	2.0	0.0		100.0 (215)
600~699만원	1.6	5.5	87.4	5.5	0.0		100.0 (80)
700만원이상	2.4	7.8	81.2	7.2	1.4		100.0 (88)

*** $p < .001$

양육수당 상향 조정 시 부모 직접 양육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또래경험 발달을 위해’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54.7%로 가장 높았다. ‘부모가 일을 해야 해서’라는 이유가 다음으로 20.1%였으며, ‘기관보육의 질이 좋아서’ 19.9%, ‘육체적으로 힘들어서’가 3.7%였다. 아동연령에 따라서는 0세의 경우 또래경험 발달의 이유에 대한 응답은 39.5%였고, 부모가 일을 해야 해서 33.0%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래경험 발달의 이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0세에서 2세의 경우 부모가 일을 해야 해서였다면, 3세부터는 기관보육의 질이 좋아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8〉 아동 연령별 양육수당 상향 조정 시 부모 직접 양육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또래 경험 발달	기관보육의 질이 좋아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부모가 일을 해야해서	χ^2	계(수)
전체	54.7	19.9	3.7	1.5	20.1		100.0 (1,093)
아동 연령별							
0세	39.5	16.7	10.9	0.0	33.0	52.3***	100.0 (32)
1세	59.3	13.4	3.2	0.7	23.3		100.0 (171)
2세	50.2	15.8	8.2	3.0	22.8		100.0 (217)
3세	53.2	23.6	1.8	1.1	20.3		100.0 (212)
4세	59.2	23.1	2.5	2.7	12.5		100.0 (231)
5세	54.6	22.7	1.6	0.3	20.8		100.0 (230)

*** $p < .001$

4. 소결

이 장에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 추가 지불 의사와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현재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들은 대체로 5~8시간 가량을 기관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시간 이상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은 어린이집의 경우 23.8%, 유치원의 경우 37.8%로 유치원이 오히려 장시간 이용자 비중이 높았다.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유치원 이용자가 어린이집 이용자에 비해 장시간 이용자 비중이 많았다. 가구특성 중에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51.6%가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과 크게 차이를 보였다.

둘째, 현재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을 늘리고 싶다(많이 늘림+조금 늘림)는 의견은 16.7%였으며, 80.8%가 현행 이용 시간 정도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현재보다 기관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시키지 못하는 이유로는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라는 응답(58.0%)이 가장 많았다.

셋째, 향후 기관 이용비용이 증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현재 이용하는 기관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유보가격을 응답한 경우에는 5만원 미만이 18.5%, 5~10만원 미만이 18.4%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관에 따라서는 유치원을 다

니고 있는 경우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 비해 전반적으로 추가 지불의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보가격을 초과하여 이용비용이 상승할 경우 교육·보육서비스의 변경 계획을 질문한 결과에서는 저렴한 다른 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응답이 54.7%로 가장 많았고, 이용 시간을 줄이겠다(27.5%)가 다음을 이었다.

넷째,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 찬성 32.6%, 찬성 53.1%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였다. 보육료·유아학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가 65.3%, 인상 필요가 32.3%로 현재보다 지원 수준이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한편, 가정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 31.9%, 찬성 51.8%로 높은 지지를 보였으며, 가정 양육수당의 비용 적정성에 대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1.9%, 현행 유지가 56.1%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금이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서는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영유아 부모들은 정책의 필요성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과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7점 만점에 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6.4점을 주어 영유아 부모들과 같은 의견이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에는 6.0점을 주어 영유아 부모에 비해서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해서는 6.4점을 주어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모두 보육료·유아학비 인상과 가정 양육수당 인상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여섯째, 각 문항에 대해 7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필요성과 달리 정책들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한 결과에서는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모두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 부모는 다음으로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19.5%) > 일가정 양립 지원(10.2%)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9.1%) > 가정 양육수당 인상(6.0%) 순으로 응답하였고, 전문가들은 보육·교육기관 서비스 질 향상이 가장 우선한다는 의견이 25.0%, 일가정 양립 지원은 20.0%로 영유아 부모 조사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일곱째, 정책 지원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은 현행과 같이 전 계층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약계층만 지원(24.1%), 특정 연령만 지원(14.1%) 순이었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만 지원해도 된다는 의견이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현행처럼 전 계층에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이 32.5%였다. 한편, 지원 금액을 조정할 경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우 현행대로 차등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6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이 14.6%였으나, 전문가들은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이 46.2%로 가장 높았다.

여덟째,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 영유아 부모와 전문가 모두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유아 부모는 장애 영유아를, 전문가들은 한부모 혹은 조손 가정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부모들에게 가정 양육 수당을 보육료·유아학비 수준으로 인상한다면 어떠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가정 양육수당이 인상되더라도 현행처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86.2%로, 그 이유는 또래 경험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해 가정 양육수당의 인상으로는 가정 내 양육을 독려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VI.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이 장에서는 전문가 조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조사 결과와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현행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개선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체계라는 것은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용 지원 체계와 맞물려 있는 교육·보육서비스 정책을 의미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전문가 조사 AHP 모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먼저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방식을 중심으로 하여 어떠한 방식의 비용 지원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비용 부담뿐 아니라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였다. 후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비용(현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현행 지원 정책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 조사에 활용한 AHP 조사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요소(대안)들을 쌍대비교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려고 할 때 자주 활용되는 분석방법이다. 평가자들은 여러 개의 대안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하는지를 직접 응답하는 것이 아닌 대안들끼리 1:1로 쌍대비교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안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AHP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은 논의의 집중을 위해 보론에 제시하였으므로 참조하기 바라며, 설문내용은 부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AHP 조사의 분석대상은 응답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해 신뢰성이 낮은 자료를 제외하고 모델1은 29명, 모델2는 28명의 응답 결과이다⁴⁵⁾.

한편, AHP 조사에 응답률이 낮았던 현장 전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원장(감)이 현장에서 느끼는 기관 운영비용과 관련된 고충과 이와 연관된 현행 영유아 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의 개선점에 대한 것이었다. 즉, 현장 전문가 심층 면

45) AHP 조사와 자료 분석을 위해서 연구협력진으로 수고해주신 디지전사이언스의 안일준 연구원과 김장현 연구원께 감사드린다.

답은 주로 현행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하여, 균형감 있고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1.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는 일반설문과 AHP 조사 설문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AHP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일반설문에서 전문가들에게만 추가 질문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살펴보았다⁴⁶⁾.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현행 지원 방식과 같은 가구 대상 바우처 지원에 대한 지지(47.5%)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세금 감면 형태로의 지원이 25.0%의 지지를 받았다. 전액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15.0%에 그쳤으며, 영유아 가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정책 또한 7.5%에 그쳤다. 즉,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지원 정책이 현행과 같이 영유아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되, 지원금의 사용처는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지원 방식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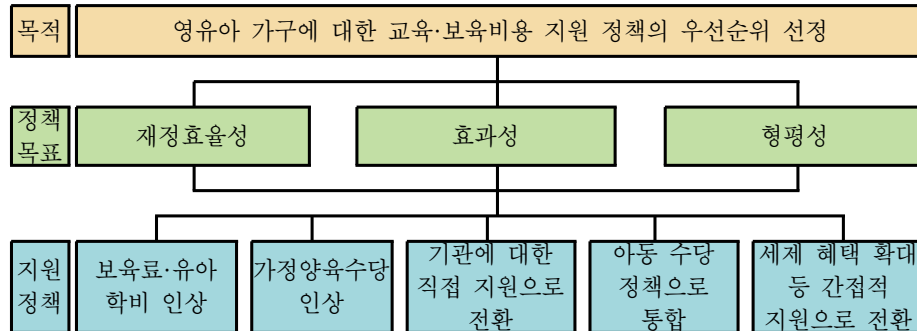
〈표 VI-1-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지원방식	단위: %, (명)	
	비중	(수)
현행처럼 영유아 가구 대상 바우처로 지원	47.5	(19)
영유아 가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원	7.5	(3)
보육료·유아학비 지출금만큼의 세금 감면으로 지원	25.0	(10)
전액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지원(가구대상 지원 폐지)	15.0	(6)
기타	5.0	(2)

먼저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모델¹을 살펴보면, 먼저 1단계에서 정책목표로 재정효율성과 효과성, 형평성 등을 조사한 후, 2단계에서 지원 정책인 보육료·유아학비(가구 대상 바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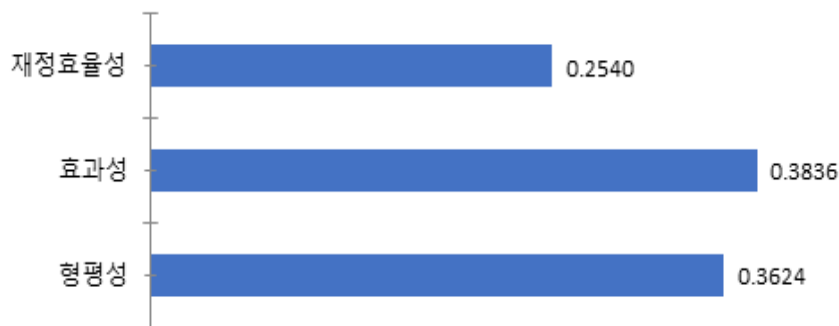
46) 전문가 조사 일반설문 문항 중에서 영유아 부모 설문지와 동일한 문항에 대한 결과는 부모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V장에 제시함.

지원) 인상과 가정양육수당 인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세제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총 5개를 각 정책목표 별로 쌍대비교를 진행하였다.



[그림 VI-1-1] AHP 모델 1 :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모형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효과성이 가장 높은 점수(0.3836)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형평성(0.3624), 재정효율성(0.2540) 순이었다. 3개 기준 중에서 효과성과 형평성의 중요도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재정효율성에 대한 중요도는 2개 기준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그림 VI-1-2] AHP 모델 1 : 정책목표의 상대적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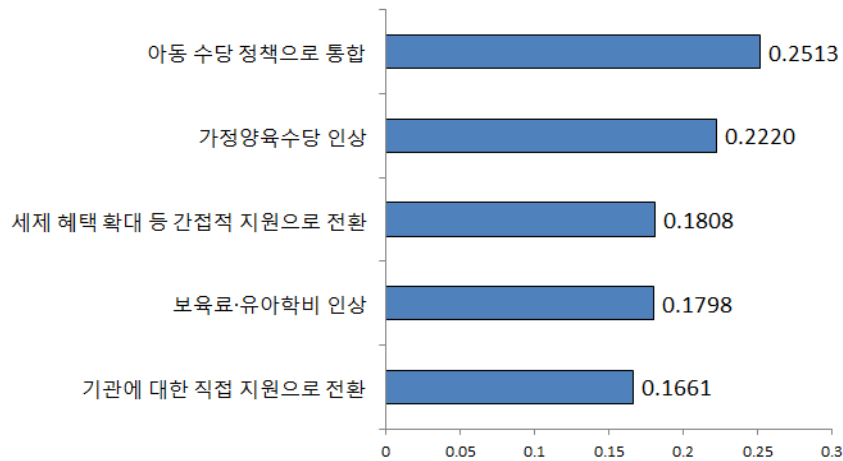
정책목표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를 살펴보면, 먼저 효과성 측면에서는 아동수당 정책으로의 통합이 0.2402로 1순위였으며 가정양육수당

인상이 2순위, 보육료·유아학비 인상이 3순위였다. 형평성 측면에서는 1순위와 2순위는 효과성 측면에서와 동일했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는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의 전환이 3순위였으며 보육료·유아학비 인상이 4순위,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이 5순위였다. 한편, 정책 목표로서는 낮은 우선순위를 받았던 재정효율성의 경우에는 형평성과 동일한 우선순위를 보였다.

〈표 VI-1-2〉 AHP 모델1 : 정책목표별 하위 지원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재정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0.1924	4	0.1901	3	0.1600	4
가정양육수당 인상	0.2051	2	0.2136	2	0.2428	2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0.1559	5	0.1797	4	0.1588	5
아동 수당 정책으로의 통합	0.2532	1	0.2402	1	0.2618	1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0.1933	3	0.1764	5	0.1766	3

모델1에 대한 2단계에 걸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문가들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에서 아동수당 정책으로 통합이 가장 적합하다(0.2513)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정 양육수당 인상(0.2220),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0.1808), 보육료·유아학비(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0.1798),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0.1661) 순이었다. 즉, AHP 모델 1의 결과에서는 가구에 대한 직접적 지원인 아동수당 정책과 가정 양육수당 인상 등의 정책이 우선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다소 간접적 지원 방식인 세제 혜택을 다음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에 대해서는 낮은 우선권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의 전환은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하위 지원 정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서 보면,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의 경우 특히 형평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최하순위를 보였으며, 효과성도 4순위에 그쳤다. 한편, 앞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가구에 대한 지원 방식은 유지하되 사용처를 통제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 형태의 지원이 우선함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VI-1-3]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전문가 전공별로는 우선순위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보육 및 유아교육 전공자의 경우 아동수당 정책으로의 통합을 1순위로 응답했으며,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의 전환이 2순위, 가정 양육수당 인상 3순위,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4순위, 보육료·유아학비 인상을 5순위로 응답하였다. 반면, 사회복지 및 경제학 등의 전공자의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 인상을 1순위로 응답하였고, 아동수당 정책으로의 통합,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순이었다.

〈표 VI-1-3〉 전문가 전공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구분	전체		보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경제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0.1798	4	0.1680	5	0.2146	3
가정양육수당 인상	0.2220	2	0.2000	3	0.2884	1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0.1661	5	0.1745	4	0.1336	4
아동수당 정책으로 통합	0.2513	1	0.2449	1	0.2598	2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0.1808	3	0.2127	2	0.1036	5

전문가 직업별로는 학계 전문가 뿐 아니라 현장 전문가도 아동수당 정책으로의 통합을 가장 우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정 양육수당 인상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2순위였다. 학계전문가는 세제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의 전환을 3순위로 응답하고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 순으로 응답한 반면, 현장 전문가의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세제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순이었다.

〈표 VI-1-4〉 전문가 직업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구분	전체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중요도	우선순위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0.1798	4	0.1847	4	0.1628	3
가정양육수당 인상	0.2220	2	0.2137	2	0.2460	2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0.1661	5	0.1730	5	0.1330	4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0.2513	1	0.2310	1	0.3295	1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0.1808	3	0.1976	3	0.1287	5

2.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이 절에서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을 넘어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과 관련된 논의를 담았다. 이는 영유아 가구의 비용 부담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관된 정책들을 망라하여 보다 거시적 측면에서의 비용 지원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모델1이 1단계에서 평가한 각 정책 목표별로 2단계에서 하위 지표를 각각 쌍대 평가하도록 단계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AHP 모델2는 정책 과제들 사이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1단계 평가에 이어 2단계 평가에서는 각 정책 과제와 관련 정책들에 국한하여 이들 사이의 쌍대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병렬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즉, 모델1이 재정효율성, 효과성, 형평성을 각 축으로 각각의 정책들을 반복적으로 쌍대비교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면, 모델2의 경우에는 정책과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조사하고 정책 과제 안에서 관련 정책들 간에만 쌍대비교를 실시한 것으로, 예를 들어 보육료·유아학비 인상과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은 쌍대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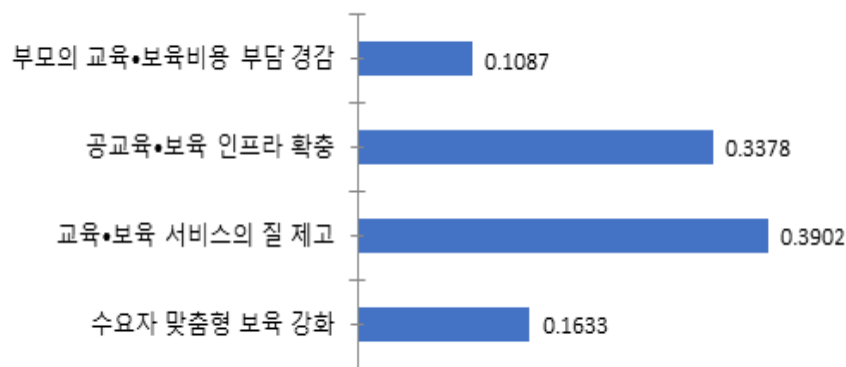
영유아 가구에 제공되는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우선순위 선정 모델은 [그림 VI-2-1]과 같다. 먼저 정책과제로서 부모 교육·보육

비용 부담 경감, 공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 총 4개 영역을 기준으로 쌍대비교를 실시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는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서는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가정 양육수당 인상,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준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4가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공교육·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육아정보·상담 제공 및 부모교육강화, 지역 내 육아인프라(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확충 3가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관련하여서는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 강화,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에 대한 우선 순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영아 맞춤형 지원 총 4가지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를 실시하였다.

목적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정책 과제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	공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
관련 정책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교사 처우 개선	취약계층 지원 강화
	가정 양육 수당 인상	육아정보·상담 제공, 부모교육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지원 강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보육료·원비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준수	지역 내 육아인프라 확충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영아 맞춤형 지원

[그림 VI-2-1] AHP 모델2 :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모형

먼저 모델2의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가 0.390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교육·보육인프라 확충(0.3378), 수요자 맞춤형 보육강화(0.1633),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0.1087) 순이었다. 즉,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에 있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비용 부담 경감보다 크게 우선해야한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VI-2-2] AHP 모델2 :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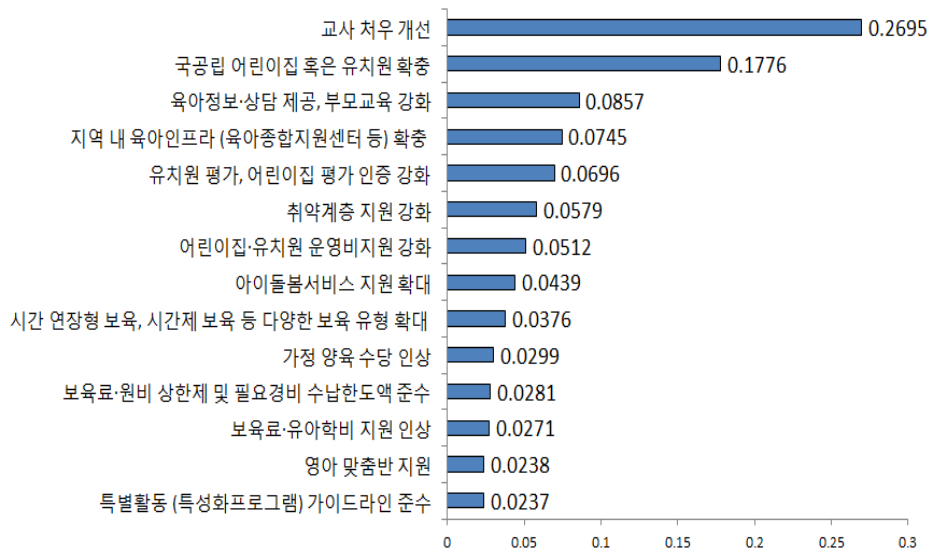
다음으로 모델2의 2단계 평가는 정책과제별로 계층 내에서 쌍대 비교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각 정책과제 내의 관련 정책별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과 관련하여서는 가정 양육수당 인상이 최우선 과제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순이었다. 두 번째로 공교육·보육인프라 확충 관련 정책들 중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며, 육아정보·상담제공 및 부모교육 강화, 지역 내 육아인프라(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확충 순이었다. 정책과제로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았던 교육·보육서비스 질 제고 관련 정책 중에서는 교사 처우 개선에 집중되었으며,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 지원 강화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 정책들 중에서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영아 맞춤형 지원 순이었다.

〈표 VI-2-1〉 AHP 모델2 : 정책과제별 하위 관련 정책의 상대적 중요도

구분		중요도	우선 순위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0.2492	3
	가정 양육 수당 인상	0.2750	1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0.2582	2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0.2175	4
공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0.5258	1
	육아정보·상담 제공, 부모교육 강화	0.2537	2
	지역 내 육아인프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확충	0.2205	3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교사 처우 개선	0.6905	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지원 강화	0.1313	3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0.1782	2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0.3549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0.2691	2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0.2301	3
	영아 맞춤형 지원	0.1459	4

다음으로 모델2의 1단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 결과와 계층 내 관련 정책별 우선순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정책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그림 VI-2-3]과 같다. 총 14개의 정책 중에서 전문가들은 교사 처우 개선(0.2695)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0.1776)을 응답하였다. 3순위부터 14순위까지는 우선순위의 가중치가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앞서 1순위, 2순위와는 상당한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즉, 전문가들은 교사 처우 개선과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에 압도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3순위를 차지한 정책은 육아정보 상담 제공 및 부모 교육 강화(0.0857)이었으며, 지역 내 육아인프라 확충(0.0745),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강화(0.0696), 취약 계층 지원 강화(0.0579),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 지원 강화(0.051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0.0439), 시간 연장형 보육 및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0.0376) 가정 양육수당 인상(0.0299),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준수(0.0281),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인상(0.0271), 영아 맞춤형 지원(0.0238),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0.0237) 순이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문가들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가 낮다고 응답한 부모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 영역에 속한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가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가

운데, 정책과제 중 3순위 우선순위를 보였던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 영역에 속한 영아 맞춤형 지원의 경우에는 계층 내에서 정책 중요도가 매우 낮게 평가 되면서 전체 정책 중 13위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그림 VI-2-3]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전문가 전공 영역별로는 1순위 교사 처우 개선과 2순위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에 우선순위를 주었다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보육·유아교육 전공자가 사회복지 및 경제 등 전공자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3순위 응답은 사회복지 및 경제 등 전공자의 경우에는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준 반면, 보육 및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육아정보·상담 제공 및 부모교육 강화가 3순위였다. 반면, 보육 및 유아교육 전공자들은 영아 맞춤형 지원에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주었으나, 사회복지 및 경제학 등 전공자의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 인상을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고 보았다.

〈표 VI-2-2〉 전문가 전공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이름	전체		보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경제 등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0.0271	12	0.0281	11	0.0236	14
가정 양육 수당 인상	0.0299	10	0.0287	10	0.0316	11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0.0281	11	0.0279	12	0.0272	12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0.0237	14	0.0230	13	0.0242	13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0.1776	2	0.2061	2	0.1164	2
육아정보·상담 제공, 부모교육 강화	0.0857	3	0.0954	3	0.0623	5
지역 내 육아인프라 확충	0.0745	4	0.0833	4	0.0534	8
교사 처우 개선	0.2695	1	0.2564	1	0.2898	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지원 강화	0.0512	7	0.0490	7	0.0545	7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0.0696	5	0.0610	6	0.0918	3
취약계층 지원 강화	0.0579	6	0.0610	5	0.0437	9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0.0439	8	0.0319	8	0.0840	4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0.0376	9	0.0302	9	0.0560	6
영아 맞춤형 지원	0.0238	13	0.0180	14	0.0414	10

전문가 직업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 우선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 모두 교사 처우 개선을 1순위로 꼽은 것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현장 전문가의 경우 2순위로 육아정보·상담 제공 및 부모교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계 전문가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을 2순위로 응답하였다. 한편, 현장 전문가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3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순위로 지역 내 육아인프라 확충을 응답하였고, 5순위로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강화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에는 3순위 응답으로 지역 내 육아인프라 확충, 유치원 평가 및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를 4순위로 응답하였고, 현장 전문가들이 0.1981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육아정보 상담 제공 및 부모교육 강화는 5순위 (0.0657)로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주었다. 한편, 학계 전문가들은 영아 맞춤형 지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고 본 반면, 현장 전문가들은 보육료·유아학비 인상에 가장 낮은 우선순위를 부여한 차이가 있었다.

〈표 VI-2-3〉 전문가 직업별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종합 결과

이름	전체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중요도	우선 순위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0.0271	12	0.0315	10	0.0148	14
가정 양육 수당 인상	0.0299	10	0.0312	11	0.0244	12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0.0281	11	0.0280	12	0.0272	10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0.0237	14	0.0238	13	0.0218	13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0.1776	2	0.1774	2	0.1557	3
육아정보·상담 제공, 부모교육 강화	0.0857	3	0.0657	5	0.1981	2
지역 내 육아인프라 확충	0.0745	4	0.0709	3	0.0778	4
교사 처우 개선	0.2695	1	0.2867	1	0.2061	1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지원 강화	0.0512	7	0.0496	7	0.0552	6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0.0696	5	0.0701	4	0.0649	5
취약계층 지원 강화	0.0579	6	0.0587	6	0.0530	7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0.0439	8	0.0476	8	0.0313	9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0.0376	9	0.0356	9	0.0438	8
영아 맞춤형 지원	0.0238	13	0.0230	14	0.0258	11

지금까지 AHP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가 조사 일반 설문 문항 중 주관식 문항의 응답 결과와 상당히 유사한 결과인데, 주관식 응답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서로 상관이 높은 서비스가 중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방식 등은 명료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은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식 등의 개선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분리하여 질문하였으나, 응답 내용은 문항별로 명확한 구분점이 없이 응답되었다. 아래 표에 제시된 내용은 연구진이 주관식 문항을 일일이 확인하여 몇 개의 주요 단어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주관식 전문가 조사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단어는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으로 특히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에 대한 문항에서 집중되어 응답되었다. 다음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던 단어는 표준비용, 보육단가, 기관 지원 등의 단어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방식, 기타 제도 개선점

등 다수 문항에 걸쳐 언급되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기관 지원이 언급된 경우에는 가구에 비용을 지원할 때 지원금이 영유아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문제 등과 관련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지원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현행 보육단가가 지나치게 낮아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는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었으며, 기타 개선점 등에서 언급되는 경우에도 교사 처우 등과 연관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언급되었다. 반면, 전반적으로 지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언급하는 경우가 15회로, 주로 기관 지원 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나, 경우에 따라 가구 지원을 할 때 지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므로 이에 대한 절차를 갖추어야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으로 집중된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정 양육의 강화 혹은 가정 양육 수당의 인상 등을 언급한 경우도 자주 눈에 띄었으며, 공공성 확보 등과 함께 주로 국공립 확충이 언급되었다. 한편, 지원 방식에 있어서는 세제 혜택 등과 같은 간접적 지원 방식에 대한 언급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가구에 대한 지원의 경우 사용처가 제한적인 것과 가구의 과도한 교육비 사용 등과 관련된 경우였다. 이는 영유아 가구의 과도하고 방만한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 필요 등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현행 지원 방식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가구 대상 바우처 지원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각 6회와 4회가 언급되었다.

〈표 VI-2-4〉 전문가 조사 주관식 문항에 자주 언급된 단어

주요 단어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방식	기타	계
소득 기준, 차등지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	19	14	-	-	33
표준비용, 보육단가, 기관 지원	5	6	3	4	18
투명성, 공공성, 부정사용	3	3	5	4	15
가정양육, 육아휴직, 부모교육	4	4	1	4	12
국공립, 선택권	3	1	2	2	8
세제 혜택	-	-	7	1	8
현행 방식	2	-	4	-	6
수익자 부담	-	1	2	2	5
바우처, 가구 지원	-	-	4	-	4

3.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에 대한 현장 전문가 의견

이 절에서는 앞서 AHP 조사 참여율이 저조했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된 심층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가 생각하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가. 설립 유형에 따른 격차와 개선 요구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감)은 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의견을 보였다. 이는 국공립 기관의 경우에 대체로 정부 지원금의 수준이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등의 사설 기관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한 차이로 보여진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전액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1) 설립 유형별 세입 구성의 차이

설립 유형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어린이집의 세입 구성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부과할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은 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표 VI-3-1 참조). 실비 정산이 원칙인 입학준비금, 현장 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아침·저녁 급간식비 등이 있다. 이 비용의 일부는 관리운영비로 전용이 가능하나⁴⁷⁾ 실비 정산이 원칙이다. 설립 유형에 따라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가 기관으로 직접 지원된다. 그 외의 비용은 영유아 가구가 카드결제를 통해 지불하는 보육료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상회하는 인건비(영아반 20%, 유아반 70%)와 운영비를 충당하여 원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간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이 없는 상황이며, 다만 영아반의 경우에는 기본보육료를 기관에 지원해주는 형태이다. 이때 기본 보육료는 연령에 따라 0세가 39만5천원이고, 1세 19만1천원, 2세 12만5천원이다. 이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유아반은 인건비 지원도 없고 기본 보육료 지원도 없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유아반에 한해서 차액보육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7) 2017년 기준 반기별로 총 수납액의 14%이내에서 일반관리비로 인정(보건복지부, 2017: 85).

하지만, 어린이집의 원장들과의 면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와 같은 구조로 지원이 이뤄지다보니 근본적으로 유아반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었다.

〈표 VI-3-1〉 어린이집 세입 구성 : 정부 지원금 및 부모 부담금 구분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영아(0·2세반), 장애아		유아(3·5세반)		
기관 직접 지원	인건비 지원	원장	80%					
		영아반교사	80%					
		유아반교사	30%					
	기본 보육료	※ 주 참조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				
				0세	395,000			
				1세	191,000			
				2세	125,000			
				장애아	402,000			
부모 부담	보육료 수납 (정부지원 카드결제)	·보육료 지원 단가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종일반	430,000	378,000	313,000	220,000	220,000	220,000
		맞춤반	344,000	302,000	250,000	-	-	-
		야간보육	430,000	378,000	313,000	220,000	220,000	220,000
		24시	645,000	567,000	469,500	330,000	330,000	330,000
	차액 보육료	수납 불가	수납 불가	수납 불가		·필요경비 수납한도 액 적용 (지자체별 상이) ·차액보육료의 일부 를 지자체가 지원 하기도 함.		
		실 비 정 산	수납 가능	· 입학준비금(원복,가방,수첩 등),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 아침·저녁 급간식비				
	수납 불가		· 급간식비(점심), · 개인 소모품비(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 소모품)					

주: 시설비 지원 등은 조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으로 제외하였으며, 지자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p.78-87, p.294-307.

한편, 유치원의 경우에는 국공립 유치원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때로 급간식비나 필요경비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부모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나, 금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국공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경우 부모 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없는 대신 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부과하여 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설립 유형에 따른 정부 지원금의 차등에 대한 요구

이처럼 정부 지원금이 설립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지원됨에 따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은 이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따라서, 국공립 수준으로의 비용 지원 인상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게 이제 엉터리 바우처인거죠. 왜냐하면 국공립은 바우처가 아니거든요. 나라에서 100% 지원되지 부모 바우처가 아니고, 그리고 사립은 모양만 바우처지 사실은 귀찮게 카드 들고 엄마들이 괜히 돌아다니는 거지 그냥 유치원으로 주고 유치원 감사하고 이런 형태지 바우처라는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면담자 I)

(지원금의 수준에 대해 질문하자) 원장 월급도 주고요, 국공립처럼요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략)...여기서도 어쨌든 간에 국공립이랑 거의 비슷하게 감사를 받고 있는데 차별을 두거나, 국공립가면 부모부담금이 없는데 저희 이쪽에 부모부담금내면 아이들조차도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면담자 A)

반면, 국공립 기관의 경우에는 사설 기관과는 달리 지원금을 받는 만큼 정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다,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립 원장들은 법인화 안 시키고 자기 재산은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감사는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거죠. ...(법인화 질문)... 공영형 유치원 아시죠? 그 유치원도 1~2개씩 지원을 하는거 같아요. (면담자 L)

공립유치원을 많이 들어오려고 하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들어가는걸 더 내야 되는데 저희는 밥값이랑 현장학습비만 있는데 다른데는 특성화비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려고 하죠. 장소도 넓고, 선생님들도 임용교사나 다 그런거 거쳐서 들어온 선생님들이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고 싶어하는데 없으니깐...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깐. (면담자 K)

이때, 국공립 기관의 경우 사설 기관⁴⁸⁾의 국공립 전환 혹은 공공형의 확대에 보다 높은 지지를 보인데 반해, 사설 기관의 경우에는 국공립 수준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자율형 사립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금) 받는 나는 나라의 감독을 받겠다. 나는 그거를(영유아 가구 지원금을 의미함) 안 받고 조금 자율형 사립으로 가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엄마들 선택권도 더 넓어지고.. (면담자 I)

하지만, 실제 부모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전반적으로 사립 유치원이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영유아 가구에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의 지원은 현행처럼 계속되어야만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은 10%도 안될걸요? 지금 사립학교 남듯이.. 사립학교가 저희 ○○(지역)에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지역)에 하나있어요. 그 정도가 살아남을 겁니다. (면담자 G)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인건비 압박을 호소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교사 인건비가 100%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공여지책으로 지원율이 높은 영아반으로 집중하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인건비가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유아반에 22만원 20명이 다 100% 있다고 봤을 때, 1호봉 교사가 근무하는 거랑 15호봉 교사가 근무하는 거랑 달라요. 요즘은 복리후생적인 부분도 있고, 교사들이 장기간 근무하잖아요. 아이들 보기도 좋은 거고. ... (중략)... 작은 데는 호봉수 높은 사람은 영아를 보내고 낮은 사람은 유아를 보내는데 15호봉만 있다 보니 오르락 내리락이 안되는 거예요. ... (중략)... 그 인건비가 원활하지가 않아요. 수당이 국가에서 주는 수당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줘야 하는 수당이 있는데 시간외 수당 같은 것도 거의 다 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후략)... (면담자 C)

영아 전담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확실해요. 인건비도 매번 예산이 너무 남아서 (면담자 E)

48) 편의상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을 통칭하여 사설 기관으로 표기함.

3) 특별활동 비용에 대한 입장 차이

시행 여부와 필요성에서 매년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설립 유형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 유형을 막론하고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등 사설 기관의 경우에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립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방과후 과정에 대한 별도 인력 배치에서의 차이에 기인한다.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 방과후 과정에 전담 교사가 배치되어 방과후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사립 유치원 등의 경우에는 오후 시간에 대한 별도의 교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부모님 부담은 5만원이지만, 하는 거니까. 사실 특별활동이 나라에서 없다면 하지 말라고 하면 그 5만원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돈인데 일단 지금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 (후략) (면담자 F)

(특별활동) 그냥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면담자 C)

(학부모들의 특별활동 요구에 대해) 저희 유치원(병설 유치원)은 없습니다. 왜냐면 특별활동을 안하는 이유가 솔직히 강사들은 유아교육을 안했잖아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다방면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개별적으로 지도를 잘 하잖아요. 애들 크레이 만들자, 찰흙으로 하는 것도 제가 돈내고 해봤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훨씬 잘해요. 손재주가 있기 때문에. (면담자 L)

결국 그거를 막게 되면.. 어머님들이 가는 게 저희 유치원에서 2시 귀가면, 학원 차가 줄줄이 서요. 태권도도 A, B, C.. 태권도가 5대가 들어와요, 미술학원 차 들어오지, 음악학원 차 들어오지, 발레학원 차 들어오지. 실제적으로 이것을 교육청에서 1일 1과목은 터냈어요. 하루에 한 과목은.. 한 과목은 터냈는데.. 실은 음성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하고 있어요. 안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이게 과도기라 무서워서 다 빼는 추세예요. 다 안해야 되는 추세로 돌아가고 있는데.. (면담자 G)

영어 같은 경우는 대체가 힘드니까 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그 다음 이제 다른 과목들은 교육청에 따라야 하니 할 수 없이 담임이 하는데 사실 담임이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싫어해요. 왜냐하면 담임이 내일 수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것까지 하면 난 그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면담자 I)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와 개선 요구

한편, 설립 유형이 아닌 기관 유형 간에도 비용 부과 방식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표 VI-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부모에게 수업료를 걷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은 거의 모든 비용을 걷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지원금의 포괄시간이 누리과정(하루 4~5시간)이라고 볼 수 있으나⁴⁹⁾,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을 기본 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다.

<표 VI-3-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모 자부담 차이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누리 과정	정부 지원금	· 종일반 지원금의 포괄 시간은 7:30 ~ 19:30 까지					· 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수납하지 않음 · 정부가 아동 당 6만원을 기관에 직접 지원	· 지원금의 포괄시간은 누리과정 운영시간(하루 4.5시간)에 대한 지원 ·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동일(아동당 22만원)
		구분	0세	1세	2세	3-5세		
		종일반	430,000	378,000	313,000	220,000		
		맞춤반	344,000	302,000	250,000	-		
		야간 보육	430,000	378,000	313,000	220,000		
	24시	645,000	567,000	469,500	330,000			
상한제 적용	· 보육료 상한제 적용						· 원비 상한률 적용	
차액 보육료 / 교육비	· 수납 불가		· 유아반(3-5세)에 한해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 적용 · 차액보육료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기도 함			· 수납 불가	· 수업료 수납 가능	
방과후 과정	· 누리과정 지원 시간이 7:30~19:30 까지이므로, 원칙적으로 방과후 과정에 대한 비용 부과 불가					· 수납 불가 · 아동당 5만원을 정부가 지원함 (1일 8시간이상 교육받을 경우에 한함)	· 아동당 7만원을 정부가 지원함(1일 8시간 이상 교육 받을 경우에 한함)	

49) 방과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까지로 보더라도, 하루 7~8시간(지자체별 상이) 이하임.

(표 IV-3-2 계속)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특별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 시도별 수납 한도액 적용 · 최저 44,000원, · 최대 90,000원	· 시도별 수납 한도액 적용 · 최저 49,000원 · 최대 90,000원	· 1일 1인당 1개 1시간, 주 5개 이내로 제 한	
기타 실비	· 입학준비금(원복, 가방, 수첩 등),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 · 아침·저녁 급간식비는 각 원이 필요에 따라 수납 · 원칙적으로 항목 간 전용 불가, 실비 정산 · 반기별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14%이내에서 일반관리비로 인정			

자료: 1) 교육부(2017). 유아학비 지원계획. 1~8.
 2)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78-87, 294-326.
 3) 경상남도교육청(2017). 201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4) 각 시도별(2017). '2017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공고'를 취합한 후
 참조하여 작성함.

이처럼 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의 의무화가 어린이집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의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유아반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이 큰데, 유아반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유치원과의 경쟁까지 있기 때문에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비 상한제의 적용 등으로 예전에 비해 운영비 압박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어린이집과는 달리 명목상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국가에서는 계속 7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운영을 합니다를 강조를 하니까, 유치원은 9시에서 2시까지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인식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면담자 C)

영아는 오라면 오는 아기가 있어요.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아이는 양육수당 20만원 받더라도, 어린이집에서 30얼마에 혜택을 받고 뭔가 배우러 간다는 생각 때문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채워져요. 근데 유아는 절대 안 채워져요. (면담자 F)

대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만 2세가. 그래서 처음으로 십 몇 년 만에 2세 통합반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럼 내년에는 2세를 만들지 말아야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더 한 단계 내려갔잖아요. …(중략)… 그러면 국공립인데도 20인 시설인데도 나름 10년 동안 잘해왔다고 하는 시설인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이렇게 되면 그 후년, 아예 2세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잖아요.…(중략)… 5년 이후에는 정원이 절대 차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을 하다 머지않아 폐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구나. (면담자 E)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건물인데도 선생님들 2명 두고 20명에 대한 지원을 받아도 충분하게 운영이 되니깐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치원은 30명만되도 적자 안나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도 가져가고. 그래서..자기 재산이고 건물이니깐 그래서 그런게 없지 않아 있어요. (면담자 L)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사립 유치원과 같이 일부 비용을 학부모에게 건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관 규모에 따라 입장이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입장이 강한 편이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어머님들이 반발이 심할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어린이집은 돈을 다 대고 이용을 할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개중에는 7:30까지 있는 데도 있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일찍 하는 편이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7:30까지 있는 경우도, 그러면 그 금액이 시간을 따지면 엄청나게 많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치원은 저희의 2배를 받더라고요. 그 방과후를 이용하는거를. 그것도 방과후를 5시나 6시까지 밖에 이용을 안하는데도 엄청난 금액을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그렇게한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어린이집 보내느니 내가 유치원 보내지' 금액이 똑같으니깐 혜택도 없네? 지금도 빠지는데 그때 되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똑같은데 나는 유치원으로 빠지지. 혜택도 별로 없고. (면담자 B)

어머님들한테 추가비용을 더 내라고 하면 널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반발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깐 그 돈 갖고 유치원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깐 어린이집을 한 단계 낮게 보는 거죠. 그러니깐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싸야지 간다는 거죠... (후략) (면담자 B)

다. 우선 지원 대상

만약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을 차등을 두어 지원하거나, 기관 유형에 따라 지원금의 차등을 둘 경우 우선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기관 유형과 설립 유형을 막론하고 저소득층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법정 저소득층 이외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과 같이 보육·교육서비스의 필요가 높고 대체 서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집단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 반면,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은 방과후 과정과 같은 보육·교육서비스의 제공은 적합하지만 추가적인 비용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법정 저소득층. 그것만 우선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이렇게 동등하게 돼있어서 그거를 다 우선으로 했다가는 난리가 나니깐 나머지는 비등비등하게 해서 그냥 모집인원의 30%... (후략)... (면담자 Q)

(유치원은) 이용시간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이 날 필요는 없고 그냥 무상이면 좋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특성에 의해서만 차등이 조금 있어야 된다.. (면담자 L)

예전에는 진짜 그렇게(차등지원) 받았었잖아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봐요. 좀 어려운 분들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내는 것도.. (면담자 K)

저는 차등지원이 더 필요하다...(면담자 I가 동의)... 그때는 내가 낼 수 있으면 그 엄마들은 5~60만원, 70만원 내라고 해도 아무 소리 안하고 냈었고 그만큼의 소득이 안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고마워하고 살만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 엄마들이 뭐하느냐면 여기 썼지만 브런치카페만 너무 늘어났어요. (면담자 J)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형태로. (면담자 G) (이에 대해 면담자 J가 동의를 표하며) 국공립도 무조건 소득 순위로 받아서....(면담자 J)

예전에는 차등 보육을 주면 내가 부담하는 돈이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아서 맞춰서 부담을 하는데, 다 주다보니깐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그 돈 받아서 영어 유치원 보내세요. (면담자 B)

라. 수익자 부담금 부과 가능성

전반적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용이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어떤 비용 항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해보았다. 어린이집은 운영비 압박이 심각하긴 하지만,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는 찬반이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일부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같이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나머지 시간에 대해 수익자 부담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는 결국 원아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수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수익자 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그나마 의견이 일치된 항목은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중 소모품비와 급간식비의 일부였다. 현

재 어린이집의 경우 아침과 저녁 돌봄에 대한 급간식이 아닌 경우 부과 금지되어 있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과 금지이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⁵⁰⁾에는 일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때, 유치원 원장의 경우에는 소소한 부분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보다는 수업료의 원비 상한율을 현실화 해줄 것을 요구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들의 경우에는 급간식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제안한 경우에도 급식비는 무상으로 하되, 간식비만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주는 등 극히 제한적인 항목에 대한 부모 자부담 부과를 제안하였다.

그 보육료에서 보육활동재비용이라고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휴지, 그게 어린이집 운영비 안에서 되게 많이 차지해요. 생각보다 ... (물품으로 수령에 대한 의견을 묻자) ... 1인당 한 달에 쓰는 휴지, 물 휴지, 치약, 비누 등을 걷지 않는 대신에 보육비용으로 그것을 얼마를 줄 테니까 거기서 더 써라. 상당부분 1인당 7000원 8000원이면 될 거 같아요. (면담자 F)

급간식 다 합쳐서 지금 어차피 1800원인데 지금 2000얼마씩 나가니까 거기서 또 간식비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간식비 500원에 20일 먹었다 그럼 얼마예요? 많이 안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식용유조차도 유기농으로 먹여 달라고 계속 불만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 식용유 밀가루 이런 것도. 그러면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면담자 F가 말한 내용으로 급식비에서 간식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부과)하면 저는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이거는 간절해요. (면담자 E)

요즘에 친환경 급식을 해서 식자재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전에는 6만원 지원금에서 거의 안 받았는데 요새 급식비 단가가 오르니까 그거는 초등에서 운영위에 심의해서 결정난거라 오히려 양질의 내용을 주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매달 그런건 아니지만 수업일수에 따라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부담은 뭐 아이들 먹는 거라 아무 문제가 없어요. (면담자 Q)

4. 소결

VI장에서는 주로 AHP 분석방법을 활용한 전문가 조사 분석 결과와 현장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을 중심으로,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비용 지원 정책과 체계의 개선 방안을 탐색해 보았다. 첫째,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

50) 해당 월의 급간식 제공일이 많아서 추가적인 급간식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함.

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모델1에 대한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정책으로 통합이 가장 적합하다(0.2513)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정 양육수당 인상(0.2220),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0.1808), 보육료·유아학비(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0.1798),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0.1661) 순이었다.

둘째,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을 넘어서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해 질문한 AHP 모델2에서는 먼저 정책과제에 대한 우선 순위에서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0.3902), 공교육·보육인프라 확충(0.3378), 수요자 맞춤형 보육강화(0.1633),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0.1087) 순으로 평가하였다. 모델2의 2단계 평가 결과까지를 종합한 결과, 총 14개의 정책 중에서 전문가들은 교사 처우 개선(0.2695)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0.1776)을 응답하였다. 반대로 모델2의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정책 과제 중에서 부모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속한 정책들 예를 들어 보육료·유아학비 인상 등이 전반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정책이라고 평가되었다.

셋째, 현행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의 방향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는 소득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취약계층 추가 지원 등이 가장 언급 빈도가 높았으며, 표준비용, 보육단가, 기관 지원 등의 단어도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지원 방식, 기타 제도 개선점 등 다수 문항에 걸쳐 자주 언급되었다.

넷째,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심층 면담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먼저 설립 유형별로 국공립 기관과 사설 기관(민간 어린이집 혹은 사립 유치원 등) 간에는 입장의 차이가 분명했다. 국공립 기관은 보육서비스의 질과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 등에서 사설 기관과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체계가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사설 기관은 국가가 부족한 국공립 시설을 대신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설 기관을 통해 영유아 가구에 교육·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만큼 지원의 수준이 국공립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의 추가적인 기관 지원에 대해서는 주로 인건비의 안정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다섯째, 설립 유형 뿐 아니라 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수업료 부과가 가능한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부모 부담금 부과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 지원금의 포괄 시

간이 오전 7:30부터 오후 19:30으로 하루 12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교사의 처우 및 원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곤혹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여섯째, 영유아 가구에 대한 자부담 부과에 대해서는 국공립 기관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사립 유치원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민간 어린이집 등은 부정적 입장이 다수였다. 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현장 전문가들도 학계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저소득층 다음으로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 가정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VII. 정책 제언

이 장에서는 앞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지원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정책의 실태와 영유아 부모의 요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지원 정책의 방향과 개선 과제를 도출해보았다.

1. 기본 방향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지원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전문가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향후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지원 서비스 지원 및 비용 지원 정책의 방향은 우선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어 제언하였다.

첫째,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은 기존의 방식과 같이 전반적인 비용 수준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소자녀화 현상 등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한 소비에 있어 무조건 저렴한 서비스보다는 양질의 서비스를 소비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영유아 부모에 대한 비용 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질이 보장되는 보육서비스와 합리적 비용 부과를 위한 정책적 기반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둘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비용 지원 정책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유아에 대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은 제2차 중장기보육계획(보건복지부, 2013b: 3) 뿐 아니라 유아학비 지원 계획(교육부, 2017: 1)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영유아가 원할 때 원하는 교육·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러한 교육·보육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보육·교육서비스의 소비 주체인 영유아 가구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보육·교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 현행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지원으로 집중되어 있어, 비용 지원을 받는 대상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 내 양육 등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소비를 추구하거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영유아 가구들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가계 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따라서, 영유아 가구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용 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서비스 질과 비용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목적과 운영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동일한 정부 지원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체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이 있다. 물론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의 특수성이 있긴 하나, 때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의 격차로 인해 부모가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즉,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이용을 희망하나 인근의 유치원이 포화상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반대로 좀 더 저렴한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했으나 유치원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각 기관의 고유성을 갖춘 상태에서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되, 두 기관에서 제공되는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재정 투명성 확보 및 공공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7: 267)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 예산은 3조 1,885억 4,000만원이고,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은 1조 2,192억원이었으며⁵¹⁾,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은 4조382억원(e-나라지표⁵²⁾)로, 가구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액만 8조 4,459억 4,000만원에 달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51) 2016년 본 예산 기준임.

52) e-나라지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및 예산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_DtlPageDetail.do?idx_cd=1536 (2017. 10. 18 인출).

2. 국가 지원 시간 설정 및 지원 방안

가. 어린이집 국가 지원 시간 설정 필요

현행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가구에 지원된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를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원금이 포괄하는 지원 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포괄 범위를 운영시간(7:30~19:30, 하루 12시간) 전체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유치원은 오전 누리과정(하루 4~5시간) 혹은 방과후 과정 지원(하루 8시간 이상) 이전까지의 교육시간을 유아학비가 포괄하는 지원 시간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때, 교사 인건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는 국공립 기관과 달리 사립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해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수납하는 반면 민간 어린이집 영아반의 경우에는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지만 유아반의 경우에는 차액보육료(보육료 상한 적용)를 수납 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설립 유형과 기관 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부담금 부과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 유아반의 운영 압박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며,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조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 지원금의 포괄 시간이 긴 것은 실제 이용이 필요한 시간 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장시간 맡기거나 교사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영유아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평균 이용시간은 7.2시간이었으며, 대부분이 5~8시간 미만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근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오히려 유치원의 이용시간이 어린이집보다 길어서 평균 7.3시간이었으며, 8시간 이상 유치원에 있는 아이의 비중도 37.8%로 8시간 이상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비중 23.8%에 비해 14%p나 많았다. 이와 같은 경향에는 물론 영아 자녀의 기관 이용 시간이 짧은 것에 일부 영향을 받지만, 3세 이상의 유아의 경우에도 기관 유형에 따라 이용 시간이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8시간 이상 기관 이용자의 비중은 여전히 유치원이 많은 현상이 발견된다. 즉, 부모에게 수익자 부담이 발생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인력 및 프로그램 지원이 보다 분명하고 명확한 기관

인 유치원에서 장시간 보육·교육이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영유아의 발달 등을 고려한 적정 시간의 보육·교육시간과 부모의 노동시간을 고려한 추가 보육·교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국가 지원 시간의 개념 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스페인/스웨덴은 주당 33시간, 노르웨이는 주당 35시간, 영국은 주당 30시간, 뉴질랜드는 주당 20~30시간, 핀란드는 하루 4시간 가량을 유아교육·보육을 위한 국가 지원 시간으로 정해두고 있다(최윤경 외, 2015: 41).

현행 유치원의 시간구성	아침돌봄 (~09:00)	교육과정 (09:00 ~) 4~5시간 운영	방과후 과정 : 최소 기준 (교육과정 포함) 7시간 이상 이용	저녁돌봄 (17:00~ 19:30)		
					야간돌봄 (18:00~22:00)	
예시1 (어린이집)	아침 추가보육 (7:30~9:00)	정규 보육 시간(국가 지원시간) 9:00 ~ 17:00		추가 보육 시간 17:00~19:30		
예시2 (어린이집)	아침 추가보육 (7:30~8:30)	정규 보육 시간(국가 지원시간) 8:30 ~ 16:30		추가 보육 시간 16:30~19:30		

주: 국가지원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시간 배치와 관련된 예시 안으로, 구체적인 시간 구성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요함.

자료: 경상남도교육청(2017). 201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p.2에서 현행 유치원의 시간 구성 예시를 발췌함.

[그림 VII-2-1] 어린이집 국가지원시간 및 추가보육시간 예시

이상의 근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어린이집의 경우 8시간을 전후한 시간⁵³⁾을 국가 지원 시간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즉, 결과적으로 국가 지원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유치원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시간과 방과후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으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별개로 8시간을 국가지원시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이전은 아침 돌봄, 이후는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53) '적정한 국가지원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시 안을 제안하는 것임.

어린이집의 국가지원시간을 8시간으로 설정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현행 유치원의 교육과정(누리과정 하루 4~5시간)과 방과후 과정(교육과정 포함 8시간이상)을 포함하는 시간이 되므로, 유치원으로는 아침돌봄이나 저녁돌봄에 해당하는 시간이 추가 보육시간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국가 지원 시간과 추가 보육시간 지원을 예를 들어 간략히 도식화 하면, [그림 VII-2-1]과 같다. 이와 같은 시간 구성은 여전히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정규보육시간이 긴 특성을 보이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의 격차를 조금이나마 축소하는 것으로, 국가지원시간의 조정을 기점으로 인력 배치 및 비용 지원 체계 등이 연동되어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라 볼 수 있다.

나. 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지원과 비용 부담

앞서 제언한 바와 같이 국가 지원 시간을 설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국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요구된다. 영유아 부모들의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보육시간이 8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영유아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한, 물리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히 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만으로는 영유아 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영유아 부모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별돌봄서비스나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가계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운영의 내실화가 반드시 요구된다.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전담 인력의 배치와 적절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은 국가가 이 시간에 대한 인력을 지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아동당 5만원의 운영비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단, 방과후 과정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⁵⁴⁾의 보육서비스 필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를 우선 지원(서울시교육청, 2017: 2)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도 방과후 과정 전담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서울시교육청, 2017: 7) 방과후 과정에 대해 아동당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과 같은 일부 지자체는

54) 지역별로 7시간 이상(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 중 1시간 이내에서 개별적 조정 가능)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경상남도교육청, 2017: 2).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전담교사가 배치되는 경우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교육청, 2017:2).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국가 지원 시간을 설정하여 지원할 경우 지원 시간 이외의 추가 보육시간에 대해서는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담교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아이들과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하며, 추가 보육과정에 걸맞는 바깥놀이 활동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한편, 추가 보육시간에 대해서도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추가 보육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없다면, 일부 비용을 부모의 수익자 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양질의 방과후 과정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비 상한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에 대해서도 수업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요컨대, 국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맞벌이와 같이 서비스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비용에 대해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되, 전담인력 배치와 별도의 보육·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하는 체제로의 정비를 제안한다.

다. 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방과후 과정 내실화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한 바와 같이 지원 시간과 비용 지원 체계가 정비된다면, 전반적으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은 단계적으로 축소가 요구된다. 현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은 시도별로 특별활동 운영 지침 등에 따라 비용 상한을 적용하고 있고, 유치원은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 등을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을 유아 1인당 하루 1개로 제한(경상남도교육청, 2017: 3)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운영 시간이 12시간으로 길어서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 및 아이들의 돌봄 수요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에서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 영유아 부모들의 요구로 인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이며, 특별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사교육 이용을 부추기는 등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 등 정상적인 보육·교육활동이 수행된다면 굳이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여 상반되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민간 어린이집 혹은 사립 유치원의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부족한 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고(최성은, 2016: 29) 아동의 발달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은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 및 앞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의 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별도의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흡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도의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이 아닌 방과후 과정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 라인’이나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 등에 제시된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침이 현장에서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영유아 가구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3. 보육·교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비용지원 체계 다양화

가. 적정 보육료 산정 및 관리 감독 강화

현행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은 가구에 대한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사용처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때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부모에게 부담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육료 상한제, 원비 상한율 적용부터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이 병행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공립 기관과 사설 기관 간의 지원 차이에 대한 논쟁과 민간 어린이집 등의 운영 어려움에 대한 호소 등이 끊이지 않고 쟁점화 되곤 한다.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및 현장 전문가 조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이러한 갈등은 결국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 관련하여 사립 유치원 혹은 민간 어린이집 등

의 경우에는 보육료 상한제 혹은 원비 상한율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다 국공립 기관과 달리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⁵⁵⁾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원비 상한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수업료 부과가 가능한 유치원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의 유아반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무상 보육 정책의 시행 이후 기관과 영유아 가구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입과 지원에 따른 긍정적 효과 뿐 아니라 급증한 보육·교육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민간 어린이집 혹은 사립 유치원을 매개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유아교육·보육의 정책 목표와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전반적인 비용 지원체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유아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적정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보육비 단가의 합리적 산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기관의 세입이 교육·보육비 단가에 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선별적 추가 지원 강화 및 자율권 보호

합리적 교육·보육비용의 산정과 별개로 교육·보육비용 단가는 몇 가지 가정을 가지고 평균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에 압박을 느끼게 되는 주된 이유는 교육·보육비용의 단가 자체가 낮은 것도 있지만,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비용 상한제 등으로 인한 비용 부과의 어려움 때문이다. 따라서,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적 필요에 따라 국공립 기관과 같이 사설 기관에도 국가가 지원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이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부모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이때, 국공립 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국가가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는 상황인 한 막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이상,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가 반드시 요구된다.

문제는 현행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금은 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관이 이 비용의 사용에 대해

55) 어린이집 영아반은 기본보육료가 지원됨.

어떠한 책무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있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재정 투명성 및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금의 투입이 보다 효과적이다. 하지만,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은 영유아 가구의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고, 무엇보다 경쟁력이 약한 기관을 국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유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같이 국가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국공립 기관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 국공립 기관의 확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공립 기관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만큼 충분히 확충되기 전까지는 사설 기관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하므로, 단기적으로는 국공립 수준에 준하는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선별적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은 현행 지원 제도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가 이와 가장 유사한 방식이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 지원금이 현실화되어 있지 못하거나 평가 인증의 문제 등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서문화·이혜민·이원선, 2014).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국공립이 충분한 수준으로 확충되기까지 공공형 지원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공공형 기관의 국공립 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등의 경우와 같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법인화를 유도하여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최은영·박창현·송신영, 2016: 32)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바 있으나,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법인화보다는 국공립 기관 확충 및 공공형 지원 확대가 보다 가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기관에 대한 지원금의 확대가 아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자율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별한 보육·교육 수요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있고, 사립 유치원 등의 경우 사적 재산권의 보장이 필요한 상황인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모든 유아교육·보육 기관이 국가가 정한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기준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가는 적정 수준의 교육·보육에 대한 일종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를 상회하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립 초등학교

교 등과 유사한 형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에서도 자율형 사립 유치원 등의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율형 사립 유치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나 관리감독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의 유치원(최은영·박창현·송신영, 2016: 69)이다. 단, 이와 같이 자율형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립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영유아 가구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 지원도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기관 유형에 대한 확실한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다.

4.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본 연구의 영유아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가 일반설문 조사에서 영유아 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7점 만점으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영유아 부모들은 평균 6.3점으로 다른 정책에 비해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전문가들도 6.0점으로 보육·교육기관 서비스의 질 향상(6.4점)과 일가정 양립지원(6.4점)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필요성이 아니라 정책들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을 한 가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이 압도적으로 높은 1순위 정책으로 지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이 민간 어린이집 혹은 사립 유치원 등에 비해 이용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나, 국공립 기관의 경우에는 사설 기관에 비해 비용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용이하고 무엇보다 정부 지침의 수행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에서도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용의 지원이 공적 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국공립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6년 기준 전체 어린이집 41,084개소 중에서 2,859개소로 7.0%에 불과하며, 보육아동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451,215명 중에서 175,929명으로 12.1%만을 수용 가능한 상태이다(e-나라지표⁵⁶). 반면,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전체 유치원 8,987개원 중 4,693개원으로

56)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 (2017. 10. 18 인출).

52.2%로 상당히 설치율이 높은 편이긴 하지만, 원아수를 기준으로 하면 총 704,138명 중 170,349명(24.2%)에 불과하다(교육통계서비스⁵⁷⁾).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아를 합쳐서 볼 때, 총 2,155,353명 중 346,278명 즉 16.1%만이 국공립 기관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국공립 기관의 확충이 요구된다. 이러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명시된 정책(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0~81, 156)으로, 향후 40%까지 확충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5.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다각화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가.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이 외에 영유아 가구들은 다양한 사교육서비스 및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결과에 따르면 총 교육·보육비에서 시간제 사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5%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외에도 사교육 이용이 빈번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교육서비스 이용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현행 유아학비 및 보육료의 지원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전액 부모의 부담금으로 이용하게 되는 추가적인 교육서비스인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원인이 되곤 한다. 특히, 자녀가 유아기에 접어들게 되면 대다수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의 기관을 이용하게 될 뿐 아니라 이용 시간도 8시간 전후로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 양육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앞서 본고가 제안한 어린이집의 국가 지원 시간을 설정할 경우, 국가 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영유아 부모들이 사교육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결국 국가 지원 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조

57) 교육통계서비스, 2016년 교육통계연보\학교기본통계\유치원 현황, <http://kess.kedi.re.kr/mobile/publ/iew?searchYear=2016&survSeq=2016&publSeq=2&menuSeq=3894&itemCode=02#detail> (2017. 10. 18 인출).

성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사교육의 증가는 부모들의 학구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거나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큰 영유아 부모들이 손쉽게 선택 가능한 서비스가 사교육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라 하겠다. 이때, 맞벌이 가구와 같이 장시간 보육을 요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추가 보육서비스나 유치원의 방과후 과정과 같은 서비스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장하고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기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라 함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즉 가정양육수당의 대상자에게 국한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용적인 서비스이다. 기관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기에 과도한 사교육을 받지 않도록 전인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사교육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는 주로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기 자녀를 전적으로 가정 내에서 돌보는 경우에 국한한 지원 서비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유아의 과도한 기관 이용 및 사교육 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기관 이용과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중첩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재능 기부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전개하거나 뉴질랜드의 플레이 센터나 호주의 플레이 그룹과 같은 놀이 프로그램과 시설 등의 지원(최효미 외, 2016: 197)을 확대하고,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식으로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나. 맞벌이 가구를 위한 가정 내 양육 지원 방안 마련

한편, 부모의 근로로 인해 부득이 장시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를 위해서도 앞서 방과후 과정 내실화 등을 통한 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부모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의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와 활성화가 선결과제이긴 하나, 이 외에도 퇴근 이후 부모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이 보다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가정 내 양육 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로 부모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주를 이루었는데,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과 같이 어린이집을 통한 장시간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대표적이다. 물론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등으로 시간 연장형 보육의 필요가 높은 집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양성평등적인 육아참여를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즉, 남성의 휴일 육아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남성 육아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을 통한 부모 양자의 육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영유아의 장시간 기관 보육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부모의 직접적인 돌봄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장시간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적극적 확대 등을 통한 가정 내 양육 환경의 조성도 고려해 볼직하다. 특히 현행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중복 이용 등에 대해 하나의 서비스만을 선택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라 할지라도 자녀가 지나치게 장시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머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여,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기관 이용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서비스 이용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보육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확장시켜 나갈 필요성이 높으며, 중복적인 서비스 이용이라 할지라도 가정 내 양육과 관련된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등의 보다 포용적인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영유아 가구들 사이의 형평성과 재정 압박 등으로 인해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직접적 비용의 중복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권을 보호하는 등의 지원을 실시하거나 개별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 등으로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볼 직하다.

또한, 맞벌이 가구가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시 여성가족부 등의 비혈연 도우미를 활용하기보다는 혈연도우미의 활용빈도가 현격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손자녀 돌봄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용한 대안적 보육서비스로 ‘다함께 돌봄 시범 사업⁵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24 홈페이지⁵⁹⁾). 이러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용한 양육 지원 서비스의 확장 또한 영유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취약계층의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우선권 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유아 부모들이 선호하는 기관이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공립 기관의 확충은 영유아 부모 뿐 아니라 전문가들에게서도 높은 지지를 받는 사안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공립 기관이 충분히 확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정책 목표인 40% 수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결국 절반 이상의 영유아 가구들은 민간 어린이집 혹은 사립 유치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누차 언급하는 바이지만, 결국 국공립 기관과 사립 기관 간에는 정부 지원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공립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 부모가 많을 경우 입소 우선순위 등에 관한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 전문가들은 국공립 기관의 우선순위에 있어 저소득층이 1순위여야 한다는 것에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그 외에는 조손가정이나 한부모 가정과 같이 대체적 보육서비스를 구하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반대로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한편, 학계 전문가 또한 현장 전문가들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맞벌이 가구를 위한 추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부모의 경우에는 전 계층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지지하는 비중이 높긴 했으나, 차등이 있어야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도가 높았다.

58) 지원 대상은 영유아기 자녀 뿐 아니라 초등학교령기 등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좀 더 포괄적임.

59) 정부24 홈페이지, 온마을이 아이 돌본다...전국 10곳 ‘다함께 돌봄’ 사업,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55334> (2017. 10. 20 인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국공립 기관의 우선순위는 먼저 저소득층과 한부모 혹은 조손가정 등을 우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국가 지원 시간을 지정하여 추가 보육시간 등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저소득층의 부모가 비용의 부담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아, 저소득층 영유아 자녀가 교육·보육으로부터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육·교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6. 세제 지원 확대

현행 영유아 자녀 가구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자녀 장려 세제,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 자녀 관련 수당(출산·보육수당,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수령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세제 지원 혜택이 수행 중에 있지만, 이러한 세제를 통한 혜택 지원은 비용 지원에 대한 소비자 체감이 낮기 때문에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세제 지원 방식은 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일반인들의 거부감이 적어 조세 저항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경우에 따라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조차 직접적 비용 지원보다 실질적 지원액의 규모가 클 수도 있어, 영유아 가구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적절히 활용할 경우 정책 효율성이 매우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들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도 세제 혜택을 통한 지원이 우선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세제 지원 혜택의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연구를 요하는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추가 보육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자녀 교육비 소득 공제에 추가하는 등으로 영유아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지만 가정 양육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의 확대를 고려해 봄 직하다. 예를 들어, 앞서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과 함께 개별돌봄서비스 혹은 가정 내 양육 지원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후자의 서비스 이용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제도 개선 기반 마련을 위한 후속 과제

가.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통계자료의 구축 필요

현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 및 서비스 이용 행태를 관찰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017년에 대전광역시와 전라북도 지역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아 학부모 및 가정양육자 2,100명을 대상으로 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나(교육부 블로그⁶⁰⁾), 해당 조사는 사교육 경험과 지출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영유아 가구의 전반적인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보육실태조사를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 주기가 3년으로 자료의 시의성이 낮은 문제가 있다.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및 이용비용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본 연구는 매년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5차년도 연구인 이번 연구로 연구가 종료되는데다, 매해 표본이 변동하는 등의 문제로 시계열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영유아 가구의 가계 부담 완화 및 교육·보육서비스 지원 정책 등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에 걸친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처럼 자료의 시계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패널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특히 영유아기에 초점을 맞춘 조사를 위해서는 매해 신생아 표본을 추가하는 형태의 로테이션 패널 자료의 구축 등을 고려해 볼 직하다. 또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양육비 전반에 관한 좀 더 포괄적 비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보다 정교하고 현실성 높은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0) 교육부 블로그, 교육부-통계청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보도자료, <http://if-blog.tistory.com/7351> (2017. 10. 18 인출).

나.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 정비 및 전달체계 일원화 논의 필요

현행 영유아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유아학비·보육료와 기관을 미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가정 양육수당으로 대별될 수 있다. 여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73) 등의 문건에 따르면, 2018년 7월 이후 만5세 이하에 대해 한 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이 도입될 예정이었다(연합뉴스, 2017.6.16. 보도자료⁶¹).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야가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9월부터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동수당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조선일보, 2017. 12. 5일자 보도자료⁶²). 이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는 자녀세액공제는 2019년부터 폐지될 예정(연합뉴스, 12월 5일자 보도자료⁶³)이지만,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상위 10%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세액 공제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연합뉴스, 2017. 12. 7 보도자료⁶⁴). 이처럼 아동수당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지원, 영유아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등과의 조율과 변화에 대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아동수당은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일부 선별 하되 지원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지만, 유아학비·보육료와 가정 양육 수당은 연령에 따라 지원 비용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며, 지원 금액은 유아 학비·보육료가 가정 양육수당에 비해서는 많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 수준에 대한 적정성 및 중복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간접적 지원

61) 연합뉴스, 2017.6.16. 보도자료, 문정부, 내년부터 5세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6/0200000000AKR20170616046100001.HTML> (2017. 10. 20 인출).

62) 조선일보(2017. 12. 5일자 보도자료),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만 빼고 월 10만원씩 지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0290.html (2017. 12. 11 인출).

63) 연합뉴스(2017. 12. 5일자 보도자료), [세법수정] ④아동수당·자녀지원세제 4개월만 중복지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5/0200000000AKR20171205188200002.HTML> (2017. 12. 11 인출).

64) 연합뉴스(2017. 12. 7일자 보도자료),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그대로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34518> (2017. 12. 11 인출).

으로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제도 등과 세금 공제 혜택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의도 제기된 바 있다(이상은·정찬미, 2016).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영유아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간략하게 도식화 하자면, 아래의 [그림 VII-7-1]과 같다.

구분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 아동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미이용 아동
교육·보육비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 연령에 따라 차등 - 전자 카드로 결제 - 유아기준 22만원 지원	- 연령에 따른 차등 - 통장으로 현금 입금 - 유아기준 10만원 지원
아동수당 (도입안)	- 만 5세이하 연령에 따른 차등 없음 - 가구소득(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을 기준으로 상위 10%는 제외. - 월 10만원 지급 예정 - 현금 혹은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원(미정)	
세제 지원	자녀교육비 소득 공제 :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한 교 육비 공제	
	자녀교육비 소득 공제 : 학원 등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	
	자녀 장려 세제(자녀 세액 공제와 중복 수혜 불가)	
	자녀 세액 공제 : 2019년부터 아동수당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예정).	

자료: 1)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2) 교육부(2017). 유아학비 지원계획
 3) 연합뉴스, 2017.6.16. 보도자료, 조선일보(20107. 12. 5일자 보도자료), 연합뉴스(2017. 12. 5일자 보도자료), 연합뉴스(2017. 12. 7일자 보도자료)⁶⁵⁾.
 4)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⁶⁶⁾를 참조하여 작성.

[그림 VII-7-1]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영유아 가구에 대한 다양한 비용 지원 방식 중에서도 ‘아동수당으로의 통합’에 대한 높은 지지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아동수당 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전반적으로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향후 제

65) 구체적인 출처는 본문의 출처와 상동.

66) 구체적인 출처는 본고 ‘II장 2절의 세제 혜택’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기될 수 있는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제도는 한번 도입이 되면 회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 시 기존의 영유아 가구에 대한 비용 지원금의 수준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식으로 비용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아동수당 지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미정인 상태이나, 영유아 가구가 보다 쉽고 일괄적으로 지원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현재 유아학비·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로 통합하여 지원되고 있으며(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4. 11. 19일자 보도자료⁶⁷⁾),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국민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⁶⁸⁾)를 통해 지원된다⁶⁹⁾. 한편, 가정 양육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여기에 아동수당이 현금 혹은 전통시장 상품권 형태로 지원된다면,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 자녀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 자녀와 가정 내 양육을 하는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아이행복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민센터를 통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해야 하고, 아동수당 도입 시 이를 별도로 신청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 전달 체계도 그에 맞추어 일원화함으로써 영유아 가구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단, 아동수당과 관련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제로 향후 별도의 연구 수행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67)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 2014. 11. 19일자 보도자료, 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68)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http://www.voucher.go.kr> (2017. 4. 13 인출).

69) 국민행복카드 중 비씨카드와 롯데카드는 보육료 결제 기능을 발급처에 요청하여 추가할 수는 있음(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www.childcare.go.kr>, 2017. 4. 18 인출).

참고문헌

- 강은진(2016).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정책(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9). 육아정책연구
구소.
- 경상남도교육청(2017). 2017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
- 교육과학기술부(2011).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2).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13).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14).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15).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16).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교육부(2017). 유아학비 지원계획.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
연구연구소.
- 김사현·주은선·홍경준(2013). 무상보육 및 관련 정책이슈들에 대한 핵심 이해집
단의 선호 분석 : 서울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0(2). 205~235.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 - 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
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호·홍석철(2012). 보육료 지원의 여성 노동공급 및 출산 효과 분석. 한국경
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대한민국정부(2011). 2011-201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민연경·장한나(2015). 보육정책의 이슈네트워크 분석 :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4(2), 97-138.
- 박미경·조민효(2014). 보육정책의 효과성 평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3(3), 241 ~ 271.
- 박선욱(2008).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1(2), 197~213.
- 박선욱(2011). 보육서비스 유형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831~847.
- 박용성(2012). AHP에 의한 의사결정 이론과 실제. 교우사.
- 백학영·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 19(3), 9~47.
- 변금선·허용창(2014).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의 생활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 - 미취학자녀가 있는 중하위소득 가구의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6(2), 101~125.
- 보건복지부(2003).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4).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6).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7).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8).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1).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2).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a).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3b). 제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4a). 2014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2014b).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5).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6).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 서문희·이혜민(2013). 호주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동향(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3).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이혜민·이원선(2014).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개선 및 발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윤경·신윤정·이세원(2010). 영유아 양육비용에 관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서수경(2012).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필요경비 가이드라인 구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교육청(2017). 2017학년도 유치원 방과후 과정 에듀케어(Edu-Care) 운영안내.
- 석숙자·서희열(2015). 자녀장려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15(3), 95~120.
- 신하영(2013). 누리과정 재정지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2(4), 149-185.
- 안현미·박애리·남은이(2013). 무상보육(보육료 전액지원)과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 -서울시 영유아 부모를 중심으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미선·박진아·손창균·임지희(2013).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김길숙·손창균·김정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 육아정책연구소.
- 우석진(20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분석 :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및 질 제고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윤희숙(2014). 보편적 보육지원확대가 취업모 양육비용에 미친 효과.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21.
- 이경선·김주후(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 교육학회지, 17(1), 21~38.

- 이삼식(2012). 외국의 보육·양육정책: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은·정찬미(2016). 아동수당 도입과 조세지원체계 개편. 2016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지방자치 20년! 복지갈등의 현 주소와 미래에 대한 성찰.
- 이윤진·송신영(2009). 핀란드의 육아정책(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7). 육아정책연구소.
- 이윤진·이정원·김문정(2013). 5세 누리과정 도입 후 교육보육지출비용 변화 분석: 2011-2012년 동일기관 이용 가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 7(2), 166~189.
- 이윤진·이규림·조아라(2015).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현황과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 9(2), 113~136.
- 이윤진·정도상(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Ⅱ(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7).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무·송영선(20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72, 379~399.
- 이정원·이세원(2013).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4). 육아정책연구소.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원(2013).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윤정(2014). 무상보육 정치의 공공성의 전유, (재)가족화, 성별화 - 무상보육 도입 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4(2), 113~151.
- 정미라·조희연·안재진(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8). 육아정책연구소.
- 최보람·문예영(2012). 출산장려세제의 실효성 검토와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13(4), 187~211.
- 최성은(2011). 보육료지원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7(2), 85~105.
- 최성은(2016). 보육 및 유아교육 비용과 보육료 상한 규제. 재정포럼, 235, 현안분석2, 23~35.

- 최영진(2014).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제연구: 양육기의 아동 수당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2(3), 207-235.
- 최윤경·김운환·이혜민(2015). 스웨덴의 육아정책Ⅱ: 교사정책을 중심으로(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5). 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이진화·박진아·조형숙·권혜진·조혜주(2015).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 방안 연구.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육아정책연구소.
- 최은영·박창현·송신영(2016).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Ⅳ). 육아정책연구소.
- 키노시타 에이조·오오야 타카오(2012). 전략적 의사결정기법 AHP. 권재현 역, 도서출판 청람.

[통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2~2016.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만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및 예산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6 (2017. 2. 17. 인출).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GDP 대비 보육재정 비중,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20 (2017. 2. 17. 인출).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합계출산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2017. 2. 17. 인출).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제주도 제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P001&conn_path=I2 (2017. 5. 23 인출).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06&conn_path=I2 (2017. 10. 16. 인출)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2017. 5. 23 인출).

e-나라지표,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을 및 예산 추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6 (2017. 10. 18 인출).

e-나라지표, 어린이집 시설 수 및 아동수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83 (2017. 10. 18 인출).

[홈페이지 자료 및 보도자료]

각 시도별(2017). 2017년도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수납한도액 공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료(2005). 2005년에 달라지는 보육정책(영유아보육료 지원). http://www.google.co.kr/url?sa=t&rct=j&q=&esrc=s&frm=1&source=web&cd=1&ved=0ahUKEwjR4cWglZfUAhWBlpQKHTVyANcQFgghMAA&url=http%3A%2F%2Fwww.moel.go.kr%2Flocal%2Fdaejeon%2Fdownload2.jsp%3Ftype%3D%2Fdownload%2F_20050316111131040.hwp%26file%3D2005%25B3%25E2%25B5%25B5%2520%25BA%25B8%25C0%25B0%25B7%25E1%2520%25C1%25F6%25BF%25F8.hwp&usg=AFQjCNEI7GZbKlIJWrFuJtlJMOZ4xqAo7w&sig2=cXFHKQiFbvGomT-UoJ3WTg&cad=rjt (2017. 5. 30. 인출).

교육부(2016. 11. 2 보도자료) 2017년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 고시.

교육부 블로그, 교육부-통계청 공동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 보도자료, <http://if-blog.tistory.com/7351> (2017. 10. 18 인출).

교육통계서비스, 2016년 교육통계연보\학교기본통계\유치원 현황, <http://kess.kedi.re.kr/mobile/publ/iew?searchYear=2016&survSeq=2016&publSeq=2&menuSeq=3894&itemCode=02#detail> (2017. 10. 18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소득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2017. 10. 18.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2017. 10. 18. 인출).

국무조정실·교육부·보건복지부(2014. 11. 19일자 보도자료), 내년 1월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http://www.voucher.go.kr> (2017. 4. 13 인출).
- 노르웨이 고용노동복지부, Cash benefit for parents of infants, <https://www.nav.no/no/NAV+og+samfunn/Kontakt+NAV/Utbetalinger/Snarveier/satser-380089?kap=380105> (2017. 5. 18 인출).
- 노르웨이 고용노동복지부, <https://www.nav.no/no/NAV+og+samfunn/Kontakt+NAV/Utbetalinger/Snarveier/satser-380089?kap=380093> (2017. 5. 19 인출).
- 네덜란드 국세청, <https://www.belastingdienst.nl/wps/wcm/connect/bldcontentnl/belastingdienst/prive/toeslagen/kinderopvangtoeslag/kinderopvangtoeslag-2017/> (2017. 5. 23 인출).
-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kinderopvangtoeslag/vraag-en-antwoord/hoeveel-kinderopvangtoeslag-krijg-ik> (2017. 6. 9 인출).
- 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betaling/hoeveel_kinderbijslag_krijgt_u/index.jsp (2017. 5. 18 인출).
- 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kinderbijslag_voor_kind/kindgebonden_budget/index.jsp (2017. 5. 18 인출).
- 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kinderbijslag_voor_kind/kunt_u_kinderbijslag_krijgen/index.jsp (2017. 5. 18 인출).
- 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levensloop/uw_kind_wordt_6_of_12_jaar/index.jsp (2017. 5. 18 인출).
- 네덜란드 사회보험은행, https://www.svb.nl/int/en/kinderbijslag/veranderingen_in_gezin/uw_kind_gaat_uit_huis/index.jsp (2017. 5. 18 인출).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4&cnpClsNo=1&menuType=cnpcls> (2017. 10. 18. 인출).
-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자녀 관련 소득공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7&ccfNo=3&cciNo=3&cnpClsNo=1> (2017. 10. 18. 인출).
- 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adoptera_barn/barnbidrag/!ut/p/z1/04_Sj9CPyKssy0xPLMnMz0vMAfJjo8ziTT

xcnA3dnQ28DVz9XQwcfY08A83NQ4wNnM30w8EKDHAARwP9KEL6o1C
V-JsGA5WYeQYahgW7GrnZGuBX4OpkhK7Awt3Y1MAxMMDQ2MTfyMsr
GGYCHkcW5EYYZHqmKwIAVm0wQA!!/dz/d5/L0lDUmlTUSEhL3dHa0F
KRnNBLzROV3FpQSEhL2Vu/?keepNavState=true (인출일: 2017. 5. 18.).

아이사랑 홈페이지, 아이사랑카드 안내. <http://www.childcare.go.kr> (2017. 4. 18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cs/dif/cs_dif_f003.do (2017. 6. 14.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맞춤형서비스, http://www.mogef.go.kr/cs/dif/cs_dif_f003.do (2017.6.15.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https://www.idolbom.go.kr/use/part3.go>. (2017.6.15. 인출).

연합뉴스(2017.6.16.일자 보도자료), 문정부, 내년부터 5세이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6/0200000000AKR20170616046100001.HTML> (2017. 10. 20 인출).

연합뉴스(2017. 12. 5일자 보도자료), [세법수정] ④아동수당·자녀지원세제 4개월만 중복지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05/0200000000AKR20171205188200002.HTML> (2017. 12. 11 인출).

연합뉴스(2017. 12. 7일자 보도자료),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그대로 받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34518> (2017. 12. 11 인출).

정부24 홈페이지, 온마음이 아이 돌본다...전국 10곳 '다함께 돌봄' 사업,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155334> (2017. 10. 20 인출).

조선일보(2017. 12. 5일자 보도자료),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만 빼고 월 10만원씩 지급,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5/2017120500290.html (2017. 12. 11 인출).

프랑스 가족수당지급처, <http://www.caf.fr/aides-et-services/s-informer-sur-les-aides/petite-enfance/l-allocation-de-base> (2017. 5. 23 인출).

핀란드 사회보장국, <http://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2017. 5. 19 인출).

- 핀란드 사회보장국, <http://www.kela.fi/web/en/home-care-allowance-amount-and-payment> (2017. 5. 19 인출).
- 호주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final_fact_sheet_10_-_what_is_the_child_care_rebate__1.pdf (2017. 5. 25 인출).
- 호주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https://docs.education.gov.au/system/files/doc/other/final_fact_sheet_2_-_what_is_child_care_benefit_0_0.pdf (2017. 5. 19 인출).
- 호주 후생부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https://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hild-care-benefit> (2017. 5. 19 인출).
- Engel, A., Barnett, W. S., Anders Y., & Taguma, M.(2015).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REVIEW: NORWAY. OECD.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edu/school/ecec-country-studies.htm> (2017. 5. 22 인출).
- OECD (2016), "Norway", in Education at a Glance 2016: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eag-2016-73-en> (2017. 3. 15 인출).

Abstract

Early Child Education and Child-care Cost Estimate Research(V)

Hyomi Choi Nayoung Kim Taewoo Kim

This study represents the final installment in a 5-year research project, “Early Child Education and Childcare Cost Estimate Research”, conducted for examining the use status and policy needs of households with early children (infants and toddlers) regarding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is to explore possible support measures for households with early children, so as to alleviate their burden in terms of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and to better address their needs.

A brief summary of this study's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with regards to the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of households with early children as of 2017, the monthly average total education and childcare cost (per early child) was 198,000 KRW. Second, with regards to the type of service used, 43.3% of the children used childcare centers, with average monthly costs of 69,000 KRW. 35.2% of the children were sent to kindergartens, with average monthly costs of 198,000 KRW. While only 3.7% of the children were sent to half-day (or longer) private academies, these were associated with costs that were much higher than other types of services, at an average of 735,000 KRW. The average total expenditure for hourly-based private education was 114,000 KRW, with the most frequently-used type of service being home-study exercise books and the costliest being hourly-based private academies. In the case of individual care services, children were put under care for an average of 5.6 hours per day and 4.8 days per week, with an average monthly cost of 537,000 KRW. Third, the per-household monthly average of total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was 289,000 KRW, with 28.7% of the households concentrated in the 0~100,000 KRW bracket.

Chapter V presents the views voiced by parents of early children

regarding policy support and cost subsidies for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First, early children of households who currently used a childcare center or kindergarten were found to usually spend 5~8 hours at the facilities, with 80.8% of parents responding that they had no intention of adjusting the current number of hours. Second, when asked about how they would cope with future increases in the cost of facility use, most (51.2%) parents replied that they would continue using their current childcare facility. Third, when asked about policies offering support for childcare and education fees, parents of early children responded enthusiastically, with 32.6% of respondents saying 'strongly agree' and 53.1% saying 'agree'. Fourth, when asked about the policies that were needed, parents of early children gave highest marks (6.3 out of a 7-point scale) to 'provision of more national / public child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and 'improvement of the service provided by childcare and education facilities'.

Chapter VI presents the results of the AHP and the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and on-site professionals, with the key findings being as follows. First, for the question (Model 1) regarding which policy should be prioritized in subsidizing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for households with early children, professionals responded that an integrated policy of childcare allowance was the most adequate (0.2513). For the question (Model 2) regarding the orientation of support policies for education and childcare services, professionals prioritized 'better treatment of teachers' (0.2695), followed by 'provision of more national / public child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0.1776), out of the 14 possible policies. Second, in-depth interviews with on-site professionals revealed distinct differences in opinion between those working at national / public facilities and those working at private childcare centers or kindergartens.

Based on the finding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following policy measures regarding education and childcare costs for early children to alleviate the burden to households and to enhance the efficacy of policies.

보 론

보론 1.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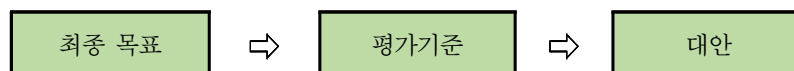
보론 2.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여 방법

[보론 1]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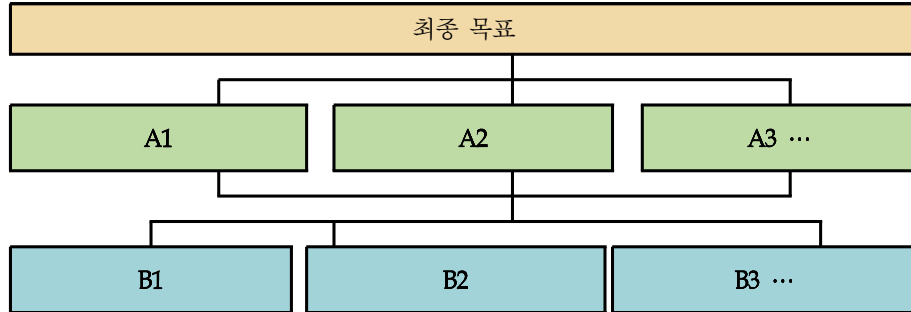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에 활용된 AHP(Analysis Hierarchy Process)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AHP 분석모형과 관련된 내용은 키노시타 에이조·오오야 타카오(2012)와 박용성(2012)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AHP는 1971년 Satty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서 불확실한 상황이나 다양한 평가 기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쓰이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AHP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최종목표-평가기준-대안’이라는 관계로 계층구조를 만들고, 최종목표에 대하여 평가 기준들 간 쌍대비교하여 중요도를 구하고 평가 기준에 대하여 대체안 사이에 쌍대비교를 통해 평가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최종목표에 대하여 각 대체안의 종합 평가치를 계산한다. 이러한 AHP 평가는 지금까지 모델화하거나 정량화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AHP의 분석 절차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단계로 계층구조를 만든 후, 각 평가기준에 대하여 대안의 중요성(우선도)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들을 최종목표에 대한 대안의 평가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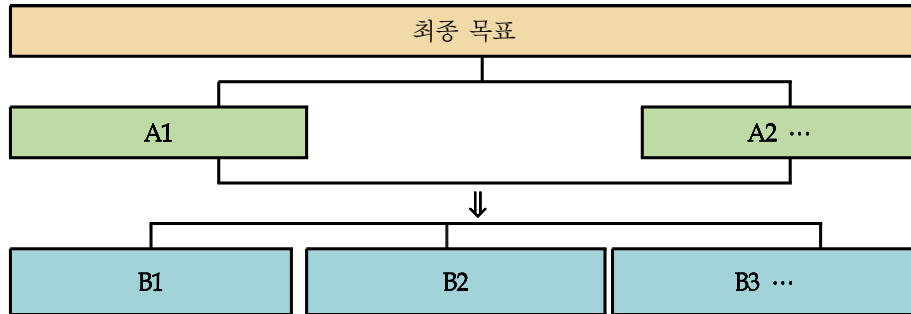
이때 2단계에서 각 평가 항목의 중요도를 구하는 방법을 쌍대비교법이라고 부른다. 쌍대비교법은 주관적 평가를 통해 정량적 평가가 행해지므로 평가자의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간의 비교에 의한 평가를 통해 정량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므로 평가의 판단이 편리하고, 개개의 평가에 흐트러짐이 있을 때에도 다수의 쌍대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하므로 이상치의 수정이 가능하고, 일관성 지수를 통해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고, 자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HP모형은 의사 결정 과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가능한데, 본 연구의 AHP 모델1은 [보론 그림 1-1]과 같은 전형적인 AHP 계층 구조를 적용한 모델이다.



[보론 그림 1-1] AHP 모델 1: 계층구조

각 계층의 요소($A_1, A_2, \dots, A_n$)에 대해서 위 레벨의 요소의 관점에서 본 n 개의 요소 값 $W = (W_1, W_2, \dots, W_n)$ 을 구하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_i 와 A_j 를 쌍대비교한 결과를 a_{ij} 라 하자. 이를 행렬 형식으로 나타낸 $A = (a_{ij})$ 를 쌍대비교 행렬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a_{ij} = \frac{1}{a_{ji}}$, $a_{ii} = 1$ 이 된다. 쌍대비교 행렬에서 고유벡터를 구하고, 그 고유벡터를 가중치로 설정하고 고유치로부터 일관성 정도를 계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A_w = \lambda_w$ 의 관계가 성립하는 λ 와 w 를 구하는 것이다. 이 λ 가 A 의 고유치이며, w 가 이에 대응하는 고유벡터인 것이다. 여기서 w 를 가중치를 두고, λ 로부터 $CI(\text{일관성지수}) = \frac{(\lambda - n)}{(n-1)}$ 를 계산한다. A 가 완전히 일관된 경우에 CI 는 0이며, A 에 대응하는 각 요소의 값에 모순이 많은 경우 즉 응답 내용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에는 CI 값이 커진다. Satty의 제안에 따르면 CI 가 0.1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0.1보다 큰 경우에는 쌍대비교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전문가 조사 당시 CI 값이 0.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하도록 설계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AHP 모델2는 대안의 개수가 14개로 너무 많아 이를 모두 쌍대 비교하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계층의 구조를 2단계 계층에 대해 1단계 기준(시나리오)별로 각각 분리하여 쌍대비교를 실시하고, 가중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 하면 [보론 그림 1-2]와 같다. 즉, 모델1과 달리 모델2의 경우에는 각 시나리오별로 가중치를 정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대안들을 쌍대비교하여 구해진 가중치를 구하고 이를 조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차적 과정(시리즈형 ANP)을 거치는 경우이다.



[보론 그림 1-2] AHP 모델 2: 계층구조

보다 자세한 가중치 산출과 우선순위 도출 과정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두 권의 참고문헌 키노시타 에이조·오오야 타카오(2012)와 박용성(2012)에 제시되어 있는 행렬 계산에 관한 다양한 예제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보론 2]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여 방법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의 표본 설계와 가중치 부여 방법은 4차년도 연구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간략하게 5차년도 표본 설계에 사용된 모집단 규모 등 변동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모집단 정의 및 분포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7년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 0~5세”이며, 2017년 4월 제주도를 제외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21,131,708세대 중 0~5세 아동이 있는 세대로, 조사 모집단 표집들은 2017년 행정자치부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를 활용하였다. 보조정보로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자료의 2017년 추계인구를 활용하였다. 0-5세의 각 세별 16개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보표 2-1〉 0-5세의 16개 지역별 분포

행정구역별	2017 추계인구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특별시	442,874	74,580	72,757	74,501	71,180	74,844	75,012
부산광역시	154,560	23,416	25,015	26,076	25,672	27,044	27,337
대구광역시	118,428	17,691	18,938	19,734	19,580	20,927	21,558
인천광역시	156,051	23,937	24,844	26,311	25,722	27,277	27,960
광주광역시	79,722	12,037	12,592	12,830	13,146	14,347	14,770
대전광역시	81,469	12,658	13,200	13,700	13,333	14,112	14,466
울산광역시	68,700	10,698	11,191	11,535	11,524	11,823	11,929
세종특별자치시	22,864	3,581	3,695	3,686	3,798	4,024	4,080
경기도	724,760	110,965	115,027	120,557	119,481	128,667	130,063
강원도	66,898	10,104	10,395	10,944	11,012	11,968	12,475
충청북도	81,968	13,057	13,343	13,264	13,422	14,291	14,591
충청남도	116,289	18,514	18,863	19,012	19,007	20,237	20,656
전라북도	87,473	12,953	13,445	14,475	14,486	15,791	16,323
전라남도	87,972	13,331	13,574	14,637	14,558	15,694	16,178
경상북도	130,497	20,453	21,470	21,691	21,478	22,622	22,783
경상남도	181,792	27,383	28,644	30,154	30,599	32,016	32,996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제주도 제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P001&conn_path=I2 (2017.5.23. 인출).

〈보표 2-2〉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남) 분포

행정구역별	2017 추계인구(남)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특별시	227,208	38,331	37,246	38,162	36,555	38,249	38,665
부산광역시	79,417	11,994	12,879	13,288	13,295	13,888	14,073
대구광역시	60,536	9,003	9,755	10,096	9,938	10,769	10,975
인천광역시	80,012	12,179	12,799	13,524	13,220	13,933	14,357
광주광역시	40,972	6,108	6,471	6,579	6,701	7,479	7,634
대전광역시	42,056	6,526	6,831	7,085	6,863	7,161	7,590
울산광역시	35,341	5,542	5,751	5,949	5,876	5,992	6,231
세종특별자치시	11,748	1,852	1,919	1,939	1,901	2,062	2,075
경기도	371,364	56,888	58,838	61,839	61,019	66,025	66,755
강원도	34,106	5,190	5,249	5,501	5,625	6,096	6,445
충청북도	41,790	6,746	6,804	6,642	6,787	7,334	7,477
충청남도	59,522	9,390	9,693	9,635	9,851	10,268	10,685
전라북도	45,010	6,675	6,899	7,392	7,430	8,195	8,419
전라남도	44,827	6,809	6,969	7,541	7,445	7,937	8,126
경상북도	67,397	10,575	10,969	11,233	11,129	11,689	11,802
경상남도	93,411	14,047	14,667	15,608	15,667	16,451	16,971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제주도 제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P001&conn_path=I2 (2017.5.23 인출).

〈보표 2-3〉 0-5세의 16개 지역별 성별(여) 분포

행정구역별	2017 추계인구(여) (명)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서울특별시	215,666	36,249	35,511	36,339	34,625	36,595	36,347
부산광역시	75,143	11,422	12,136	12,788	12,377	13,156	13,264
대구광역시	57,892	8,688	9,183	9,638	9,642	10,158	10,583
인천광역시	76,039	11,758	12,045	12,787	12,502	13,344	13,603
광주광역시	38,750	5,929	6,121	6,251	6,445	6,868	7,136
대전광역시	39,413	6,132	6,369	6,615	6,470	6,951	6,876
울산광역시	33,359	5,156	5,440	5,586	5,648	5,831	5,698
세종특별자치시	11,116	1,729	1,776	1,747	1,897	1,962	2,005
경기도	353,396	54,077	56,189	58,718	58,462	62,642	63,308
강원도	32,792	4,914	5,146	5,443	5,387	5,872	6,030
충청북도	40,178	6,311	6,539	6,622	6,635	6,957	7,114
충청남도	56,767	9,124	9,170	9,377	9,156	9,969	9,971
전라북도	42,463	6,278	6,546	7,083	7,056	7,596	7,904
전라남도	43,145	6,522	6,605	7,096	7,113	7,757	8,052
경상북도	63,100	9,878	10,501	10,458	10,349	10,933	10,981
경상남도	88,381	13,336	13,977	14,546	14,932	15,565	16,025

자료: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제주도 제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P001&conn_path=I2 (2017.5.23 인출).

2. 표본 규모 및 표본 설계 방법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조사의 목표 표본규모는 1,100가구이다. 무작위추출을 가졌했을 때, 95% 신뢰수준에서 1,100 표본의 최대허용표집오차는 2.95%p내외이다. 최종적으로 1,119가구가 조사완료 되었으며, 해당 영유아 수는 1,505명이다. 조사 모집단 표집틀인 2017년 4월 기준의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보표 2-4〉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

지역	합계	시·구	군
합계	21,131,708	19,072,029	2,059,679
서울특별시	4,203,957	4,203,957	-
부산광역시	1,457,360	1,394,134	63,226
대구광역시	998,756	910,442	88,314
인천광역시	1,176,610	1,133,703	42,907
광주광역시	588,354	588,354	-
대전광역시	609,963	609,963	-
울산광역시	455,975	368,363	87,612
세종특별자치시	98,597	98,597	-
경기도	5,040,279	4,938,116	102,163
강원도	694,240	489,935	204,305
충청북도	684,619	494,360	190,259
충청남도	910,095	697,250	212,845
전라북도	792,787	631,318	161,469
전라남도	845,184	442,427	402,757
경상북도	1,183,730	918,597	265,133
경상남도	1,391,202	1,152,513	238,689

주: 2017년 4월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별 주민등록세대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B3&conn_path=I2 (2017.5.23 인출).

본 연구는 표본 설계를 위해 국가기초구역은 PPS 통반리 조사 지점 추출방식을 활용하였으며, 국가기초구역 표본 수는 <보표 2-5>와 같다.

〈보표 2-5〉 국가기초구역 표본 수

지역	합계	시·구	군	제외지역
서울특별시	36,412	36,412		
부산광역시	17,474	17,474		기장군
대구광역시	10,511	10,511		달성군

(보표 2-5 계속)

지역	합계	시·구	군	제외지역
인천광역시	10,960	10,960		강화군, 옹진군
광주광역시	7,728	7,728		
대전광역시	7,313	7,313		
울산광역시	6,012	6,012		울주군
세종특별자치시	1,289	1,289		
경기도	47,870	30,867	17,003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울릉군
강원도	14,891	6,373	8,518	
충청북도	16,642	6,801	9,841	
충청남도	20,165	4,573	15,592	
전라북도	20,209	8,575	11,634	
전라남도	21,152	5,634	15,518	
경상북도	28,151	10,343	17,808	
경상남도	26,186	12,020	14,166	

주 : 1) 제주도 제외.

2)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제외지역 있음.

국가기초구역의 표본수는 110개로 추출된 각 동·읍·면에서 약 10세대(가구)를 조사하며, 추출된 동·읍·면의 수는 다음과 같다.

〈보표 2-6〉 110개 표본 국가기초구역 분포

권역	동부	읍/면부	합계
대도시	49	-	49
중소도시	48	13	61
합	-	-	110

부 록

부록 1.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부록 3.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4. 심층면담자 특성

부록 5. 기타 부표

[부록 1] 영유아 가구 교육·보육비용 실태조사 설문지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에 관한 조사 설문지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정책연구소는 유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유아정책연구소 2017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 연구(V)」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영유아 가구의 보육·유아학비 지출 및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자녀양육 비용 지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 조사주관기관 :
- 조사수행기관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사표 종류	시도	국가기초구역 번호	조사표 일련번호	① 구/동 ② 시/동 ③ 군
1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시·도 ()로	()구·군 ()길	()동읍면		
응답자의 아동과의 관계	☐ ① 모 ☐ ③ 조부모		☐ ② 부 ☐ ④ 기타()		
조사담당자			조사표작성일	2016년	월 일



I. 가구와 부모, 자녀 특성에 관한 질문

1. 귀댁의 자녀수는 각 구분별로 몇 명입니까?

① 영아 (2014~2017년 출생)	② 유아 (2011~2013년 출생)	③ 초등학교 이상	④ 전체
명	명	명	명

[참고]

보육연령	0세(24개월 미만)	1세(24-36개월 미만)	2세(36-48개월 미만)	3세(48-60개월 미만)	4세(60-72개월 미만)	5세(72-84개월 미만)
생활연령	0-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2. 귀댁의 5세 이하(2011~2017년 출생) 미취학 자녀를 '나이 어린 순으로' 연령, 성별, 출생순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 아동번호	01(락내)	02	03
2)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개월수로 환산합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	년 월 개월	년 월 개월	년 월 개월
3)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② 여자			
4) 출생순위는 몇 번째입니까?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이상			

※ 지금부터는 아동별로 응답해주시요

※ 조사대상 아동의 보육연령, 생년월일, 출생순위를 가구조사표에서 옮겨 적고, 이 자녀를 중심으로 조사합니다.

아동번호	생년월일	출생순위	① 첫째	② 둘째
			③ 셋째	④ 넷째

1. 이 자녀가 하루 반일 이상(점심시간을 포함해서 5시간 이상) 이용하는 보육·교육 기관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기관입니까?

※ 반일제 이상 학원: 유치원·어린이집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영어학원, 놀이학교, 예체능 학원 등을 의미

반일 이상 보육·교육 기관 이용 유무	보육·교육 기관 종류
① 예	① 어린이집 → Ⅱ장으로 가십시오. ② 유치원 → Ⅱ장으로 가십시오. ③ 반일제 이상 학원 → Ⅲ장으로 가십시오.
② 아니오	→ IV장으로 가십시오.



II.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1. 현재 이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어디입니까?

	기관 명칭	기관 설립 유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기관명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	기관명	⑤ 가정어린이집	⑥ 직장어린이집
		⑦ 부모협동어린이집	
		⑧ 국공립유치원	⑨ 사립유치원

2. 평상시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표기합니다.)

출발 시간 (예: 07시 30분)	도착 시간 (예: 15시 30분)
()시 ()분	()시 ()분

3. 현재 이 자녀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늘리고 싶다 → 문 3-1로
 ②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늘리고 싶다 → 문 3-1로
 ③ 현재 이용 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 문 4로
 ④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다 → 문 3-2로
 ⑤ 지금 보다 이용 시간을 많이 줄이고 싶다 → 문 3-2로

3-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을 늘리고 싶음에도 현재만큼만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원하는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없어서
 ② 아이가 혼자 남게 되어 싫어해서
 ③ 다른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④ 추가 이용비용이 부담되어서
 ⑤ 기타

3-2.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시간을 줄이고 싶음에도 현재 만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장시간 보육을 원해서
 ② 학원이나 개별 돌봄 서비스 비용이 부담되어서
 ③ 아이를 봐줄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④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한 곳에서 보육하고 싶어서
 ⑤ 같은 기관에 다니는 형제자매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⑥ 기타

4. 이 자녀가 현재 다니는 기관(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으로 얼마를 지불하였습니까? (※ 예: 지불비용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기입, 지불비용이 5만원이면 50,000으로 기입)

※ 상해보험료, 원복, 체육복, 도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입학할 때에만 내는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 경우 합계를 적어 주십시오.

(20)년도에 ()원

5. 현재 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입학 시 가정에서 보내오도록 요구한 물품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관에 보낸 물품을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중복 응답으로 해당되는 물품은 모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 ① A4 용지 ② 색연필 ③ 크레파스 ④ 물감 ⑤ 각티슈
 ⑥ 볼펜지 ⑦ 물티슈 ⑧ 색종이 ⑨ 가위 ⑩ 풀
 ⑪ 실내용 ⑫ 스케치북 ⑬ 롤리어화일 ⑭ 현금 ⑮ 치약, 칫솔
 ⑯ 기타() ⑰ 기타() ⑱ 없음 → 문 5-1로

- 5-1.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직접적인 물품을 보내지 않았으나, 물품 구매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있다면 얼마입니까?

(※ 예: 지불비용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기입, 지불비용이 5만원이면 50,000으로 기입)

총 _____원

6. 이 자녀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2016년에도 다니고 있었습니까?

- ① 예 → 문 6-1로 ② 아니요 → 문 7로

- 6-1.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계속하여 이용하는 경우, 2017년에 재원비, 체육복, 모자, 가방 등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였습니까?

(※ 예: 지불비용이 없는 경우 0원으로 기입, 지불비용이 5만원이면 50,000으로 기입)

총 _____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 모든 금액은 2017년 상반기 기준으로 응답

- 지출 비용의 응답 단위는 '원'입니다. 지출비용이 1만 2천원이면 12,000원으로 기입

7. 이 자녀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종일반비 등의 납입 여부와 납입 주기 및 지출 비용과 이 비용 총액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료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연령 3.5세의 경우에만 납부 가능합니다. 0.2세 국공립, 법인, 단체 등은 부모 부담의 추가보육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납입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 평균(매월)으로 나누어서 응답을 해주시시오.)

구분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비용부담정도
	①예	②아니요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보육료(※ 정부보조금 제외)							원	
현장학습비							원	①전혀 부담 안됨
행사비							원	②별로 부담 안됨
차량운행비							원	③보통임
급간식비(아침/저녁급식비)							원	④조금 부담됨
교재교구비							원	⑤매우 부담됨
기타()							원	

8. 표준보육과정 혹은 누리과정 외에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시간 연장형 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정부보조금은 제외한 실제 지출 비용만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이용 여부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비용부담정도
	①이용함	②이용안함	①납입함	②납입하지 않음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야간보육									원	①전혀 부담 안됨
휴일보육									원	②별로 부담 안됨
24시간보육									원	③보통임
										④조금 부담됨
										⑤매우 부담됨

→ 문 13으로 가십시오.

13-1. (특별활동 혹은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 참여하는 경우) 이 자녀를 어린이집 특별활동 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 선택)

- ①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②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③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④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것 같아서
 ⑤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방치될 것 같아서 ⑥ 하원 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⑦ 기타()

14. 다음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의 과목명, 주당 이용시간, 영역별 과목수, 비용지불여부, 월평균 비용, 교재교구 구입비 등이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응답 단위에 주의, 이용시간: 1시간 30분 → 90분, 지불비용 1만 5천원 → 15,000원으로 기입)

구분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교구활동 (가베, 오피다동)	과학	수학	기타 ()	
1)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 문15										
2) 주당 이용시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3) 과목 수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4) 선택 여부										
① 선택 ② 무조건 이용										
5) 비용지불여부										
① 지불 ② 지불안함 → 7) 재료비										
6) 월 평균 비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7) 월 평균 재료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15. 정부는 2014년부터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이용시 특별활동 참여 동의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서 참여동의서를 받아 직접 참여 여부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받은 적 없음 ② 받았으나 참여 여부를 작성하지 않음
 ③ 받은 적 있고, 참여 여부를 작성함 ④ 기억 안남

16. 다음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의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 해 주십시오.

1) 특기 교육 기회 제공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자녀의 소질 및 재능개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초등학교 준비 교육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7.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특별활동 또는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활동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번	2순위 ()번
① 강사의 질 향상	② 교육비 인하
③ 프로그램 다양화	④ 교육내용 공개
⑤ 강사 관련 정보 제공	⑥ 특별활동·특성화활동 예·결산내용 공개
⑦ 투명한 프로그램 제공 업체 선정	⑧ 운영시간 축소
⑨ 아동 평가자료 제공	⑩ 기타()



III.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 반일제 이상 학원 등 이용에 관한 질문

1. 현재 이 자녀가 하루 중 반일(하루 4~5시간)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영어학원(키즈칼리지, YBM, ECC, SLF 등) ② 미술학원
 ③ 놀이학원(크라벨, 위버지니어스, 하바 등) ④ 음악학원
 ⑤ 체육학원(YMCA 아기스포즈단, 유아체육단 등) ⑥ 종교기관(선교원 등)
 ⑦ 기타 공공기관(지역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⑧ 기타(어디:)
 ⑨ 해당사항 없음 → IV장표 가십시오. ⑩ 기타()

2. 평상시에 이 자녀가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집에서 학원으로 출발하는 시간과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표기합니다.)

출발 시간 (예: 07시 30분)	도착 시간 (예: 15시 30분)
()시 ()분	()시 ()분

3. 이 자녀가 현재 다니는 학원이나 기관에 입학할 때, 초도등록비(입학금)로 얼마를 지불하였습니까?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명찰 등 입학할 때에만 내는 비용을 별도로 지불한 경우 합계를 적어 주십시오. (※ 응답 단위에 주의, 지불비용 3만 5천원 → 35,000원으로 기입)

(20)년도에 ()원

4. 반일제 이상 학원이나 기관에 내는 교육비, 현장학습비, 급간식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의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월평균 지출 비용, 총 지출 비용, 비용 부담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 평균(매월)으로 나누어서 원 단위(예: 7,000원)로 응답)

구분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비용부담정도
	①예	②아니오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교육비							원	
교재교구비							원	
재료비(예: 소도품비)							원	①전혀 부담 안됨
급간식비							원	②별로 부담 안됨
차량운행비							원	③보통임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비용 제외)							원	④조금 부담됨
현장학습비							원	⑤매우 부담됨
행사비							원	
기타()							원	

5. 이 자녀가 학원이나 기관에서 별도로 돈을 내고 하는 특별활동의 종류와 주당 이용시간과 과목수, 월평균 비용, 교재교구 구입비, 만족도와 월 총 지출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단위에 주의, 이용시간: 1시간 30분 → 90분, 지불비용 1만 5천원 → 15,000원으로 기입)

구분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교구활동 (가예 오토다등)	과학	수학	기타 ()
1)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 문6으로									
2) 주당 이용시간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3) 과목 수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4) 선택 여부									
① 선택 ② 무조건 이용									
5) 비용지불여부									
① 지불									
② 지불안함 → 7) 재료비									
6) 월 평균 비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7) 월 평균 재료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6. 자녀가 이용하는 반일제 학원 이용은 지출비용 대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7. 이 자녀를 보육료 및 유아학비가 지원되는 어린이집·유치원 대신 반일제 이상 학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골라 ✓표 해 주십시오.
- ① 자녀가 원해서 ②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초등학교 준비로 더 적합할 것 같아서 ④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⑤ 집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없어서 ⑥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전에 다녔기 때문에
 ⑦ 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이 다 차서 ⑧ 어린이집/유치원을 추후에 다닐 계획이므로
 ⑨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보내고 있어서 ⑩ 기타()



IV. 시간제 학원 이용에 관한 질문

1. 현재 이 자녀가 다니고 있는 시간제 학원은 모두 몇 곳입니까?
 (예: 영어 학원, 바이올린 학원, 태권도 학원일 경우 총 3곳으로 기입)
 () 곳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 V 장로 기입하십시오.)
2. 현재 이 자녀가 다니는 시간제 학원에서 받는 교육의 종류, 주당 이용시간, 월평균 비용 등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단위에 주의, 이용시간: 1시간 30분 → 90분, 지불비용 1만 5천원 → 15,000원으로 기입)

구분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교구활동 (가베, 오르타 등)	과학	수학	기타
1)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 문3으로									
2) 주당 이용 횟수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3) 주당 이용시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4) 과목 수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5) 교육기관 유형									
① 사설학원									
② 공공기관									
(주민센터, 구민체육센터 등)									
③ 사회복지기관, 청소년수련관									
④ 사설문화센터									
(대형마트, 책화점 등)									
⑤ 기타 ()									
6) 비용지불여부									
① 지불									
② 지불안함 → 8) 재료비									
7) 월 평균 비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8) 월 평균 재료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 현재 이 자녀가 다니는 시간제 학원에서 받는 교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부담 안됨 ② 별로 부담 안됨 ③ 적당
 ④ 조금 부담 ⑤ 매우 부담 ⑥ 해당없음(지출비용 0원)

3. 이 자녀를 시간제 학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골라 ✓표 해 주십시오.
- ① 자녀가 원해서 ②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④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⑤ 또래 친구들에게 뒤처질까봐 ⑥ 주변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⑦ 부모 퇴근시간까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⑧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⑨ 기타()



V.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에 관한 질문

1. 현재 이 자녀는 가정 내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개인 및 그룹지도는 모두 몇 개입니까? 학습지는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 피아노 교습, 미술 과외 등)

① 이용함 () 개
② 이용하지 않음 → **VI로 가십시오**

2. 이 자녀가 가정 내 개인 또는 그룹으로 지도받고 있는 프로그램의 종류, 주당 이용시간, 월 평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 단위에 주의, 이용시간: 1시간 30분 → 90분, 지불비용 1만 5천원 → 15,000원으로 기입)

구분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과학	수학	현장 학습	기타 ()
1)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 문3으로									
2) 주당 이용 횟수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3) 주당 이용 시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4) 과목 수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5) 월 평균 비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6) 월 평균 재료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 이 자녀가 가정 내 개인 또는 그룹으로 지도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부담 안됨 ② 별로 부담 안됨 ③ 적당
④ 조금 부담 ⑤ 매우 부담 ⑥ 해당없음(지출비용 0원)

3. 이 자녀가 가정 내 개인 또는 그룹지도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골라 ☒표 해 주십시오.

① 자녀가 위해서 ② 자녀의 재능과 소질을 개발시켜 주기 위해서
③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④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⑤ 또래 친구들에게 뒤처질까봐 ⑥ 교사 가정방문으로 이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⑦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⑧ 기타()



VI. 가정 내 학습지 교육 이용에 관한 질문

1. 현재 이 자녀는 가정 내 학습지 교육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하고 있는 학습지는 모두 몇 개입니까?

① 이용함 () 개 ② 이용하지 않음 → **VI로 가십시오**

2. 이 자녀가 이용하는 학습지 종류와 교사 방문 여부, 교육시간, 월 평균 비용과 교구 비용 등은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응답 단위에 주의, 이용시간: 1시간 30분 → 90분, 지불비용 1만 5천원 → 15,000원으로 기입)

구분	한글	영어	수학	한자	기타()
1)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 문3으로					
2) 교사 방문여부					
① 방문 ② 방문교사없음					
3) 주당 이용 횟수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4) (교사방문시) 주당 이용시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5) 이용 갯수	개	개	개	개	개
6) 월 평균 비용	원	원	원	원	원
7) 월 평균 재료비	원	원	원	원	원

- 2-1. 이 자녀가 가정 내 학습지 교육으로 인한 비용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전혀 부담 안됨 ② 별로 부담 안됨 ③ 적당
④ 조금 부담 ⑤ 매우 부담 ⑥ 해당없음(지출비용 0원)

3. 이 자녀가 학습지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골라 ✓표 해 주십시오.

- | | |
|-----------------------|----------------------|
| ① 자녀가 원해서 | ② 비용이 저렴해서 |
| ③ 정부의 학습지 바우처 지원으로 | ④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효과적이며서 |
| ⑤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 ⑥ 남들이 다 해서 |
| ⑦ 주변의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 ⑧ 기타() |



VII. 교구활동 교육 이용에 관한 질문

1. 이 자녀가 이용하는 교구활동 교육 종류와 교사 방문 여부, 교육시간, 월 평균 비용과 교구 비용 등은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응답 단위 주의, 금액 1만 5천원 → 15,000원으로 기입)

구분	교사 방문여부	(교사방문시) 주당 교사 방문 횟수	(교사방문시) 주당 교육 시간	월 평균 교육 비용	(교구구입시) 구입비용 (월)
교구활동명 ()	① 교사 방문 ② 방문교사 ③ 없음	주 회	주 분	_____ 원	_____ 원
교구활동명 ()	① 교사 방문 ② 방문교사 ③ 없음	주 회	주 분	_____ 원	_____ 원
교구활동명 ()	① 교사 방문 ② 방문교사 ③ 없음	주 회	주 분	_____ 원	_____ 원

2. 이 자녀가 교구활동 교육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된 이유 한가지만 선택)

- | | |
|----------------------|-----------------------|
| ① 자녀가 원해서 | ② 비용이 저렴해서 |
| ③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효과적이며서 | ④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
| ⑤ 남들이 다 해서 | ⑥ 주변의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
| ⑦ 자녀의 통합적 발달을 위해서 | ⑧ 기타() |



VIII. 인터넷, 전화교육 등 통신교육 이용에 관한 질문

1. 이 자녀가 이용하는 인터넷 등 통신교육 종류와 교사 방문 여부, 교육시간, 월 평균 비용과 교구 비용 등은 어느 정도인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 교육은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만 해당, 예시: 깨비키즈, 지니키즈, 재미나라 등)

(* 응답 단위에 주의, 이용시간: 1시간 30분 → 90분, 지불비용 1만 5천원 → 15,000원으로 기입)

구분	인터넷	전화교육	기타()	기타()
1) 이용 여부				
① 이용 ② 미이용 → 문2로				
2) 주당 이용 횟수	주 회	주 회	주 회	주 회
3) 주당 이용시간	주 분	주 분	주 분	주 분
4) 월 평균 비용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_____ 원

2. 이 자녀가 인터넷 또는 전화교육을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된 이유 한가지만 선택)

- | | |
|-----------------|------------------|
| ① 자녀가 원해서 | ② 교육 내용이 다양해서 |
| ③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 ④ 교육시간의 제약이 적어서 |
| ⑤ 비용이 저렴해서 | ⑤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
| ⑦ 기타() | ⑧ 기타() |



IX. 개별보육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질문

1. 이 자녀를 위해 개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이용횟수, 돌봄 시간, 비용, 만족도 등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 13페이지 돌봄서비스 이용현황표에 응답해주시시오.)

※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해 파견된 인력을 의미하며,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사업체 혹은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한 아이돌보미는 베이비시터로 구분. 가사도우미는 아이돌보미보다는 가사를 도와주기 위해 구인한 인력으로, 주 업무를 가사로 하는 대신 아이를 잠깐씩 봐주는 경우에 한하며, 이웃 보육모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로 업체를 통하지 않고 주변 분들의 추천이나 아파트 공고등을 통해 구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주 도우미(등거)의 경우 돌봄시간대(평일기준)를 '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기입하도록 해주시시오.

구분	개별돌봄1		개별 돌봄2		개별 돌봄3	
	혈연관계	비혈연관계	혈연관계	비혈연관계	혈연관계	비혈연관계
돌봄서비스 제공자와의 관계	① 친조부모 ② 외조부모 ③ 친인척	④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⑤ 베이비시터(민간) ⑥ 가사도우미 ⑦ 이웃 보육모 ⑧ 기타()	① 친조부모 ② 외조부모 ③ 친인척	④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⑤ 베이비시터(민간) ⑥ 가사도우미 ⑦ 이웃 보육모 ⑧ 기타()	① 친조부모 ② 외조부모 ③ 친인척	④ 아이돌보미 (정부지원) ⑤ 베이비시터(민간) ⑥ 가사도우미 ⑦ 이웃 보육모 ⑧ 기타()
돌봄서비스 제공자 동거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동거	② 비동거
주당 이용일수	주 _____ 회		주 _____ 회		주 _____ 회	
돌봄시간대 (평일기준) (※ 단위: 24시간)	{ }시 { }부터 { }시까지		{ }시 { }부터 { }시까지		{ }시 { }부터 { }시까지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월) (※ 단위: 만원)	월 평균 _____ 만원		월 평균 _____ 만원		월 평균 _____ 만원	
비용 부담 정도	① 전혀 안됨 ② 조금 부담 ③ 매우 부담됨	① 전혀 안됨 ② 별로 안됨 ③ 매우 부담됨	① 전혀 안됨 ② 조금 부담 ③ 매우 부담됨	① 전혀 안됨 ② 별로 안됨 ③ 매우 부담됨	① 전혀 안됨 ② 조금 부담 ③ 매우 부담됨	① 전혀 안됨 ② 별로 안됨 ③ 매우 부담됨

2. 다른 보육·교육 서비스와 개별 돌봄을 동시에 이용하고 계십니까?

① 예 → 문 2.1로 ② 아니오 → 문 3.0으로

- 2-1. 이들 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기관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등원 전, 저녁 등) 돌봄이 필요해서
② 아이 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원해서
③ 방과후 과정 대신 개별돌봄 하면서 학습지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④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⑤ 기타 ()

3. 개별돌봄(보육)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을 이용하십니까?

① 예 → 문 3.1로 ② 아니오 → 문 3.2로

- 3-1.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라 신뢰할 수 있어서
② 민간 서비스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해서
③ 민간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려워서
④ 이용하고 싶은 시간에만 단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⑤ 기타 ()

→ X 장으로 가십시오.

- 3-2.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서
②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③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④ 민간 서비스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 않아서
⑤ 민간 서비스에 비해 질이 높지 않아서
⑥ 아이돌보미가 매년 교체되어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서
⑦ 기타 ()



XI. 교육·보육비용에 대한 학부모 인식

※ 교육·보육서비스 비용 중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

1. 이 자녀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항목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어린이집 이용비용 → 문 11로 | ② 유치원 이용비용 → 문 11로 |
| ③ 반일제 학원 이용비용 → 문 11로 | ④ 시간제 학원 이용비용 |
| ⑤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비용 | ⑥ 가정 내 학습지 이용비용 |
| ⑦ 교구활동 이용비용 | ⑧ 통신활동 이용비용 |
| ⑨ 기타 () | |

1-1. 해당 기관의 비용 중에서 어떤 비용이 가장 부담스러우신지요?

- ① 정규 보육비, 교육비(보육료, 수업료)
 ② 현장학습비, 행사비, 차량 운행비 등 기타비용
 ③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프로그램 이용비용
 ④ 방과후 과정 혹은 시간 연장형 보육 이용비용
 ⑤ 기타 ()

※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2. 정부는 2013년부터 0~5세 전 연령에게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는 비용의 수준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응답하고 있는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요.)

※ 참고 : 2017년 기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은 아동의 보육 연령에 따라, 0세 430,000원, 1세 378,000원, 2세 313,000원, 3~5세 220,000원입니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은 0~11개월 200,000만원, 12~23개월 150,000원, 24개월 이상은 100,000원이며,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소액의 차등 지원이 시행되고 있습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정책구분	정책 선호	비용의 적정성	적정 인상 혹은 삭감 비용
보육료·유아학비 전 제출 지원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절대 반대 ⑤ 잘 모르겠음	① 현재보다 인상 필요 → 적정 인상 비용 ② 현재 수준 유지 ③ 현재보다 삭감 필요 → 적정 삭감 비용	_____만원 (※단위 주의)
양육수당 전 제출 지원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반대 ④ 절대 반대 ⑤ 잘 모르겠음	① 현재보다 인상 필요 → 적정 인상 비용 ② 현재 수준 유지 ③ 현재보다 삭감 필요 → 적정 삭감 비용	_____만원 (※단위 주의)

※ 응답한 자녀 이 외에 미취학 자녀가 더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에 대한 '아동조사 설문'을 추가로 진행한 후, 궤 문항에 응답합니다.



XII.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1.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필요성						
	← 낮음				높음 →		
1)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계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기관 미용자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시간 연장형 보육(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아이돌봄비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육아 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육아정보·상담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1. 1번 문항의 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 지표 항목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__

2. 0~5세 전 연령에게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대상은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 계층 → 문 2-1로
 ② 특정 연령의 자녀만 → 문 2-3으로
 ③ 취약 계층만(장애 영유아, 한부모, 저소득 가구 등) → 문 2-4로

- 2-1. 현행과 같이 전 계층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면, 지원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처럼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어야 함(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은 유지).
 ② 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도 됨 → 문 2-2로
 ③ 가구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도 됨 → VIII장으로
 ④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도 됨 → 문 2-4로
 ⑤ 기타 () → VIII장으로

- 2-2. 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적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하는 기본 이용 시간은 하루 몇시간 가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시간
 (* 현재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시간은 하루 12시간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3.5세 누리과정은 하루 4~5시간입니다.)

- 2-3. 특정 연령의 자녀만을 지원해야한다면, 지원 대상 연령은 몇 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연령 아래 모두 ✓표로 체크해주시요.

보육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생활연령	0-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지원필요						

2-4. 정부의 비용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 ① 장애 영유아 가구 ② 한부모 가구 혹은 조손 가구 ③ 저소득층 가구
 ④ 다자녀 가구 ⑤ 맞벌이 가구 ⑥ 다문화 가구
 ⑦ 농어촌 가구 ⑧ 기타

3. 귀하는 자녀가 최초로 이용하는 기관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해당 시설을 최초 언제부터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치원의 경우 3세(48~60개월 미만)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초 적정 이용 기관	적정 이용 시기	적정 이용 시작시기 사유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문 4로	① 0세(24개월 미만) ② 1세(24-36개월 미만) ③ 2세(36-48개월 미만) ④ 3세(48-60개월 미만) ⑤ 4세(60-72개월 미만) ⑥ 5세(72-84개월 미만) ※최초 적정 이용기관 유치원 응답자는 적정 이용시기 ③,④,⑤만 선택 가능	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니까 ②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니까 ③ 자기 의사 표현이 가능할 때 보내고 싶어서 ④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므로 ⑤ 빨리 단체 활동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⑥ 정부가 비용 지원을 하기 때문에(양육수당보다 지원금이 많기 때문) ⑦ 한글 교육 등 학습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⑧ 부모가 집에서 직접 키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보내고 싶어서

4. 영유아 교육·보육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다음 각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지표	동의도						
	← 낮음					높음 →	
1)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이 없다면, 낯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형제가 많은 아이들은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요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조금 극성스럽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구 일반 현황

1. 귀댁의 가구 현황에 대해 응답해주시시오.

1) 가구원 수	총 _____ 명			
2) 가구 형태	① 조부모+부모+자녀 ② 조부모+한부모+자녀 ③ 한 조부모+부모+자녀 ④ 한 조부모+한부모+자녀 ※아동 기준 응답 ⑤ 부부+자녀 ⑥ 한부모+자녀 ⑦ (한)조부모+자녀 ⑧ 친인척+자녀 ⑨ 기타()			
3)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대전 ⑤ 광주 ⑥ 인천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4) 지역 구분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지역			
5) 가구소득 (지난 한달 기준) (※단위: 만원)	(1)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 소득 (본인, 배우자, 동거 자녀, 기타 가족)		월평균 _____ 만원	
	(2) 근로소득 외 소득 (이자, 배당금, 집세,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재산금융 소득) (임대료, 지대 등 부동산 소득) (고용보험, 국민·공무원연금, 공공부조 등 사회보험 소득) (비동거 자녀, 부모, 친척으로부터의 보조, 민간단체 지원금 등 이전 소득) (장학금 등 기타 소득)		월평균 _____ 만원	
	(3) 보육관련 기타소득 -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월평균 _____ 만원	
	- 중앙정부, 지방정부 양육수당		월평균 _____ 만원	
	- 육아휴직 급여		월평균 _____ 만원	
	(4) 가구소득 총계		월평균 _____ 만원	
6) 월평균 지출액(2017년 상반기 기준)			월평균 _____ 만원	
7)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자녀 부모님이 해당하는 곳에 체크해주시시오.

	구분	부	모
1) 동거여부	① 동거 ② 비동거 ③ 비해당		
2) 출생년도		_____년	_____년
3) 출신국	① 내국인 ② 외국인		
4) 최종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석사 이상		
5) 취업상태	① 취업 ② 육아휴직, 일시휴직 ③ 학업 ④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⑤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 ⑥ 전업 주부(육아 및 가사) ⑦ 기타		
6) 직업	① 의뢰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자 ② 전문가 ③ 기술종 및 준전문가 ④ 사무 종사자 ⑤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⑥ 농·임·어업 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군인, 학생 ⑪ 무직, 주부(가사)		
7) 근로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시간	시간

설문에 응답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전문가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7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V)」 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영유아가구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출 및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문가 조사”는 선행 연구자 혹은 유관 분야 정책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된 총 80명에 대해 실시됩니다.

또한 본 설문은 AHP 조사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약 30여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응답시간 감소와 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AHP조사에 앞서 제시되는 ‘응답 요령’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응답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영유아 부모 대상 비용 지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이나 개인 정보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①, 제②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 조사주관기관 :
- 조사실시기관 :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름				
성별	☐ ① 여성		☐ ② 남성	
연령	☐ ① 20대 ☐ ③ 40대		☐ ② 30대 ☐ ④ 50대 이상	
현재 직업	☐ ① 교수	☐ ② 연구원	☐ ③ 현장전문가	☐ ④ 기타()
전공(연구)분야	☐ ① 보육	☐ ② 유아교육	☐ ③ 사회복지, 경제, 사회, 기타	
조사표작성일	2017년 월 일			

전문가 조사 사례금 입금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래의 정보는 사례비 지급에만 사용된 후 폐기됩니다)

기프트콘 희망	핸드폰번호	
---------	-------	--

1.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보육·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의 정책적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표	필요성						
	← 낮음				높음 →		
1)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국공립 유치원의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단가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기관 미용자에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시간 연장형 보육(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육아 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육아정보·상담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1. 1번 문항의 항목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1. 지표 항목의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__

2. 0~5세 전 연령에게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지급에 따른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대상은 어디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 계층 → 문 2-1로
 ② 특정 연령의 자녀만 → 문 2-3으로
 ③ 취약 계층만(장애 영유아, 한부모, 저소득 가구 등) → 문 2-4로

- 2-1. 현행과 같이 전 계층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면, 지원 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재처럼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어야 함(자녀 연령에 따른 차등은 유지).
 ② 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도 됨 → 문 2-2로
 ③ 가구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해도 됨
 ④ 취약 계층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도 됨 → 문 2-4로
 ⑤ 기타 ()

- 2-2. 기관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적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야하는 기본 이용 시간은 하루 몇시간 가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시간

(※ 현재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운영시간은 하루 12시간이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3-5세 누리과정은 하루 4~5시간입니다.)

2-3. 특정 연령의 자녀만을 지원해야한다면, 지원 대상 연령은 몇 세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연령 아래 모두 ✓표로 체크해주시요.

보육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생활연령	0-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지원필요						

2-4. 정부의 비용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응답)

1순위() 2순위()

- ① 장애 영유아 가구 ② 한부모 가구 혹은 조손 가구 ③ 저소득층 가구
 ④ 다자녀 가구 ⑤ 맞벌이 가구 ⑥ 다문화 가구
 ⑦ 농어촌 가구 ⑧ 기타

2-5. 정부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식은 어떠한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행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방식은 '영유아 가구대상 대상 바우처 지원'으로 간주합니다)

- ① 현행처럼 영유아 가구 대상 바우처로 지원
 ② 영유아 가구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원
 ③ 보육료·유아학비 지출금만큼의 세금 감면으로 지원
 ④ 전액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지원(가구 대상 지원 폐지)
 ⑤ 기타 ()

3. 현재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 비용지원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유롭게 기술해주시요)

3-1. 지원 대상과 관련된 개선점

3-2. 지원 수준과 관련된 개선점

3-3. 지원 방식과 관련된 개선점

3-4. 기타 문제점과 개선점

4. AHP 평가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모든 의사결정 요소에 대하여 쌍대비교라는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결정 요소 전체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방법론입니다.

[평가 요령]

각 질문에 있어서 두 지표(A, B)를 비교하여 높은 정도에 따라 최저 1점부터 최고 9점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A와 B를 비교할 때 A가 B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A가 있는 왼쪽에, B가 A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B가 있는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예) B가 A보다 6배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실 경우: 오른쪽 6에 표시

기준	극히중요								동등								극히중요	기준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A														V				B

평가할 내용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과 “유아교육·보육정책 목표의 우선순위 선정” 2가지입니다.

[평가 모델1]

첫 번째로 판단할 내용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정책목표 및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정책목표	재정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구분	이름
지원정책	■ 보육료·유아학비(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 가정양육수당 인상 ■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평가 모델2]

두 번째로 판단할 내용은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입니다.

정책과제 및 관련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름	관련 정책
정책 과제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인상 ■ 가정 양육 수당 인상 ■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 특별활동(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공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 육아정보·상담 제공, 부모교육 강화 ■ 지역 내 육아인프라(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확충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 교사 처우 개선 - 근로시간 준수와 급여 및 수당 상향 -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등 지원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지원 강화 ■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시간 연장형 보육(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 영아 맞춤형 지원

[판단의 타당성 점검 (비일관성비율)]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지원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때 한 페이지를 마칠 때 마다 평가한 값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했는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비일관성 비율이 0.1보다 높은 경우에는 재 판단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주의사항]

- 1) 정책 A가 B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B가 C보다 정책우선순위가 높다면, 반드시 A가 C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정책대안을 미리 우선순위에 따라 $A > B > C$ 로 나열해 놓은 다음에 이 우선순위에 기초하여 쌍대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 2) 정책 A가 B보다 우선순위가 2배 높고, B가 C보다 우선순위가 2배 높다면, A는 C의 4배정도의 우선순위가 나와야 합니다(* $A = 2B$, $B = 2C$ 라면, $A = 4C$) 따라서 정책 간 계량적인 차이를 맞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판단 도우미]

고민해서 판단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다시 평가해도 되지만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판단 도우미 기능을 활용하여 잘못된 부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비일관성비율의 개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순서에 따라 1,2,3...으로 표시됩니다. 단추(1,2,3...)를 누르면 추천 셀이 깜빡거립니다. 이를 참고하여 재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일 추천 셀보다 기존에 선택한 셀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기존의 셀을 유지하고 다음 순서의 번호(예, 2번)를 선택하여 새로운 추천 셀을 확인합니다. 한편, 추천 셀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약간만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셀과 추천 셀 사이에 있는 적절한 셀을 선택합니다.

위의 과정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반복하여 비일관성비율이 0.1보다 낮아질 때 까지 재 판단을 실시합니다.

비일관성 비율이 0.1보다 낮으면 평가의 타당성이 검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판단을 수행합니다.

모든 내용을 숙지하셨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평가를 시작해 주세요.

AHP평가 시작하기

4-1-3. 다음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중 “효과성” 정책목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원정책인 [① 보육료·유아학비(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② 가정양육수당 인상 ③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④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⑤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지원정책의 조합별로 상대적인 중요성과 선호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책 목 표	극 히 중 요								동 등								극 히 중 요	정 책 목 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육료·유아학비 (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가정양육수당 인상
보육료·유아학비 (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보육료·유아학비 (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보육료·유아학비 (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가정양육수당 인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가정양육수당 인상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가정양육수당 인상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4-1-4. 다음은 “영유아 가구에 대한 교육·보육비용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 선정” 중 “형평성” 정책목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원정책인 [① 보육료·유아학비(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② 가정양육수당 인상 ③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④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⑤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지원정책의 조합별로 상대적인 중요성과 선호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책 목 표	극 히 중 요									중 등								극 히 중 요	정 책 목 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보육료·유아학비 (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가정양육수당 인상	
보육료·유아학비 (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보육료·유아학비 (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보육료·유아학비 (가구대상 바우처 지원) 인상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가정양육수당 인상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가정양육수당 인상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가정양육수당 인상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전환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아동 수당 정책으로 통합																		세제 혜택 확대 등 간접적 지원으로 전환	

4-2.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AHP 평가

4-2-1. 다음은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의 정책과제인 [①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 ② 공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③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④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정책목표의 조합별로 상대적인 중요성과 선호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4-2-2. 다음은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의 정책과제 중 “부모의 교육·보육비용 부담 경감” 정책과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련 정책인 [①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인상 ② 가정 양육 수당 인상 ③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④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관련 정책의 조합별로 상대적인 중요성과 선호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	극히 중요	중요																극히 중요	정책목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인상																			가정 양육 수당 인상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인상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인상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가정 양육 수당 인상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가정 양육 수당 인상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보육료·원비 상한제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준수																			특별활동 (특성화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준수

4-2-3. 다음은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의 정책과제 중 “공교육·보육 인프라 확충” 정책과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련 정책인 [①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② 육아정보·상담 제공, 부모교육 강화 ③ 지역 내 육아인프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확충]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관련 정책의 조합별로 상대적인 중요성과 선호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	극히 중요	중요																극히 중요	정책목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육아정보·상담 제공, 부모교육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확충																			지역 내 육아인프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확충
육아정보·상담 제공, 부모교육 강화																			지역 내 육아인프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확충

4-2-4. 다음은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의 정책과제 중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 정책과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련 정책인 [① 교사 처우 개선 ②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지원 강화 ③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관련 정책의 조합별로 상대적인 중요성과 선호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	극히중요								동등								극히중요	정책목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지원 강화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비지원 강화																		유치원 평가, 어린이집 평가 인증 강화

4-2-5. 다음은 “유아교육·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선정”의 정책과제 중 “수요자 맞춤형 보육 강화” 정책과제 기준으로 보았을 때 관련 정책인 [①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③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④ 영아 맞춤형 지원]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관련 정책의 조합별로 상대적인 중요성과 선호성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	극히중요								동등								극히중요	정책목표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취약계층 지원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영아 맞춤형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영아 맞춤형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 확대																		영아 맞춤형 지원

모든 응답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현장 전문가 심층면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17년 일반과제인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추정연구(V)」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영유아 가구의 보육료·유아학비 지출 및 정부의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여쭙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심층 면담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영유아 부모 대상 비용 지원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비에 관한 연구로, 본 심층면담은 기관 이용비용에 대한 부모 부담금 및 정책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면담일	년 월 일 요일	면담 장소	
이름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성별	☐ ① 여성 ☐ ② 남성		
연령	☐ ① 20대 ☐ ② 30대 ☐ ③ 40대 ☐ ④ 50대 이상		
전공(연구)분야	☐ ① 보육 ☐ ② 유아교육 ☐ ③ 기타		
해당분야 경력	총 년 (※ 원장 재직 경력만 기입)		
유치원 설립유형	☐ ① 국공립 유치원 ☐ ②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설립유형	☐ ① 국공립 어린이집 ☐ ②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어린이집 ☐ ③ 민간 어린이집 ☐ ④ 직장 어린이집 ☐ ⑤ 가정 어린이집 ☐ ⑥ 부모협동 어린이집 ☐ ⑦ 기타		
유치원 규모	학급 수) 원아 수)		
특수보육 어린이집 해당	☐ ① 영아전담 어린이집 ☐ ②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③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 ④ 방과 후 어린이집 ☐ ⑤ 시간연장 어린이집 ☐ ⑥ 24시간 어린이집 ☐ ⑦ 휴일 어린이집 ☐ ⑧ 해당사항 없음		

◎ 질의 1. 현재 귀 기관에서 영유아 가구로부터 지불받는 비용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아래 표를 참조하여 작성해주시시오)

<어린이집>

구분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①예	②아니오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보육료(※ 정부보조금 제외)							원
현장학습비							원
행사비							원
차량운행비							원
급간식비(아침/저녁급식비)							원
교재교구비							원
기타()							원

구분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①납입함	②납입하지 않음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야간보육							원
휴일보육							원
24시간보육							원

구분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교구 활동 (가베, 오르다 등)	과학	수학	기타 ()
1) 실시여부									
2) 과목 수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3) 선택 가능 여부									
① 선택 ② 무조건 이용									
6) 월 평균 비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7) 월 평균 재료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유치원>

구분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①예	②아니오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수업료(※ 정부보조금 제외)							원
현장학습비							원
행사비							원
통학차량비							원
급간식비							원
교재교구비							원
기타()							원

구분	비용 납입 여부		납입 주기				지출비용
	①납입함	②납입하지 않음	①매월	②분기별	③학기별	④년	
아침돌봄							원
방과후 과정 (※ 특성화 프로그램비용 제외)							원
저녁돌봄							원

구분	한글	영어	미술	체육	음악	교구 활동 (가베, 오르다 등)	과학	수학	기타 ()
1) 실시여부									
2) 과목 수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3) 선택 가능 여부 ① 선택 ② 무조건 이용									
6) 월 평균 비용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7) 월 평균 재료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질의 2. 영유아 가구로부터 지불받는 비용 이 외에 귀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입니까?

2-1. 영유아 가구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유아학비(바우처 지원)

2-2. 교사 및 원장 인건비 지원

2-3. 그 외 운영비 지원 등 기타 지원

◎ 질의 3. 영유아 가구로부터 지불받는 비용은 귀 기관을 운영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 질의 4. 기관 운영에 있어서 비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혹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1. 현행 지원 체제를 유지하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면?

4-2. 지원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

◎ 질의 5. 현행 영유아 가구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유아학비(바우처 지원)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6. 현행 영유아 가구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항목(예: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특별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 등)의 문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7. 정부 지원금을 강화하되, 보육·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우 지원금은 어떠한 항목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1. 국공립 기관 확충을 통해 정부 지원을 늘리되 서비스 질 제고를 꾀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7-2. 민간 기관에 지원을 확대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보육료 상한제, 재무회계 등 감사, 평가 인증 등)에 대한 의견

7-3. 부모 지원(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통한 경쟁을 통한 질 관리에 대한 의견

◎ 질의 8. 현행 보편적 복지로서의 보육·유아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1.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이 아닌 기관 혹은 서비스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

8-2. 영유아 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이 아닌 가구 특성을 감안한 차등 지원의 필요

8-3.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소득층, 맞벌이, 한부모, 조손, 장애 등 어떤 집단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9. 영유아 가구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오.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4] 심층면담자 특성

번호	이름	연령	전공 분야	원장 재직 경력	기관 유형	설립 유형	소재지	규모- 학급수	규모- 원아수	특기 사항
1	면담자A	50대 이상	유아교육		어린이집	민간	경기	9	47	없음
2	면담자B	50대 이상	유아교육	17	어린이집	민간	경기	3	19	없음
3	면담자C	40대	보육, 유아교육	14	어린이집	국공립	서울	10	52	영아전담, 시간연장
4	면담자D	50대 이상	유아교육	21	어린이집	국공립	서울	5	69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5	면담자E	50대 이상	보육	13	어린이집	국공립	서울	5	20	영아전담
6	면담자F	40대	유아교육	16	어린이집	국공립	서울	6	52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7	면담자G	50대 이상	유아교육	17	유치원	사립	경기	7	160	없음
8	면담자H	50대 이상	유아교육	20	유치원	사립	경기	12	286	없음
9	면담자I	50대 이상	유아교육	10	유치원	사립	경기	7	150	없음
10	면담자J	50대 이상	유아교육	6	유치원	사립	경기	9	158	없음
11	면담자K	50대 이상	유아교육	30	유치원	국공립(병설)	서울	5	71	없음
12	면담자L	50대 이상	유아교육		유치원	국공립(병설)	서울	4	67	없음
13	면담자M	50대 이상	유아교육	20	어린이집	민간	서울	10	31	없음
14	면담자N	50대 이상	보육	20	어린이집	민간	서울	8	67	없음
15	면담자O	50대 이상	보육	14	어린이집	민간	서울	5	72	없음
16	면담자P	50대 이상	유아교육	27	유치원	국공립(단설)	서울	7	124	없음
17	면담자Q	50대 이상	유아교육		유치원					연초 정년퇴직

[부록 5] 기타 부표

〈부표 5-1〉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항목별 이용비용

단위: 만원, %

구분	보육료	현장 학습비	행사비	차량 운행비	(아침/저녁) 급간식비	교재 교구비	입학금	
							지불 안함	지불 평균
전체	7.2	1.4	1.1	1.9	1.6	1.8	20.7	7.0
아동 연령별								
0세	0.0	1.5	1.0	2.0	0.0	0.9	50.7	6.3
1세	0.0	1.6	1.0	1.8	1.8	1.9	19.9	6.6
2세	0.0	1.3	1.3	2.1	1.6	2.0	24.0	7.1
3세	6.7	1.5	1.0	1.6	1.5	1.5	9.2	7.3
4세	7.3	1.5	1.0	1.7	2.2	1.5	11.6	7.2
5세	9.9	1.2	0.6	1.7	2.0	1.4	25.8	6.9
X^2, F	1.7	0.7	1.4	1.3	1.2	2.9**	31.5***	1.1
설립유형								
국공립	0.0	1.2	0.9	1.3	1.5	1.6	27.5	6.9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5.5	0.7	0.5	1.8	1.4	1.7	31.9	6.8
민간	7.3	1.7	1.2	1.9	1.6	1.8	13.8	7.2
가정	0.0	1.3	1.3	2.3	2.2	2.1	23.4	6.1
직장	7.7	0.9	0.4	0.0	1.0	2.0	27.6	9.3
X^2, F	0.2	5.3***	4.5**	4.1**	1.7	1.2	17.4**	4.3**

** $p < .01$, *** $p < .001$

〈부표 5-2〉 아동 특성별 유치원 항목별 이용비용

단위: 만원, %

구분	수업료	현장 학습비	행사비	통학 차량비	급간식 비	교재 교구비	기타	입학금	
								지불 안함	지불 평균
전체	21.0	1.5	1.4	2.5	2.7	3.6	0.0	30.4	13.1
아동 연령별									
3세	18.8	1.7	1.8	2.6	2.5	3.0	0.0	43.9	14.8
4세	19.5	1.4	1.3	2.7	2.7	3.3	0.0	19.7	12.5
5세	24.4	1.6	1.3	2.3	2.8	4.2	0.0	31.6	12.9
X^2, F	6.1**	0.5	1.4	1.6	0.5	1.0		21.2***	
설립유형									
국공립	0.0	1.2	0.7	1.7	2.0	2.0	0.0	61.1	5.1
사립	21.0	1.8	1.6	2.5	2.9	3.7	0.0	4.7	15.9
X^2, t		-4.0***	-4.5***	-1.4	-2.9**	-0.9		199.5***	-18.7***

** $p < .01$, *** $p < .001$

〈부표 5-3〉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금 및 입학 시 물품(중복응답)

단위: %

구분	A4 용지	색연필	크레파스	물감	각티슈	물휴지	물티슈	색종이	가위	풀
전체	2.4	15.7	15.2	3.0	26.2	22.5	51.8	6.6	6.8	8.4
아동 연령별										
0세	0.0	0.0	0.0	0.0	18.6	3.7	54.8	0.0	0.0	0.0
1세	2.8	5.4	7.6	1.2	22.6	17.2	70.8	1.6	2.6	3.7
2세	2.5	5.8	8.2	2.7	27.4	16.5	61.7	3.1	2.1	2.8
3세	2.7	17.3	18.0	3.8	23.6	26.0	45.9	8.6	7.6	11.2
4세	2.3	22.2	19.4	2.5	31.2	25.7	41.6	8.2	9.8	9.5
5세	2.5	26.3	22.7	4.6	26.3	28.0	44.3	10.8	11.6	14.3
설립유형										
국공립	0.6	6.4	5.5	2.5	17.0	13.1	54.1	1.9	2.3	4.4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8.7	17.0	27.2	5.5	24.1	12.7	64.7	9.6	10.3	11.6
민간	4.1	9.3	9.4	3.7	32.4	25.7	63.8	4.3	4.5	4.8
가정	1.7	2.5	4.1	0.0	22.6	15.8	72.9	0.0	0.0	0.7
직장	0.0	0.0	0.0	0.0	0.0	0.0	41.2	0.0	0.0	0.0
국립유치원	0.4	32.5	29.7	3.3	30.1	27.6	39.8	14.8	12.1	18.8
사립유치원	3.1	19.7	18.7	3.1	25.1	25.9	38.1	7.4	10.3	8.7

주: 중복응답임.

〈부표 5-4〉 아동 특성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학금 및 입학 시 물품(계속)

단위: %

구분	쌀	스케치북	클리어화일	현금	치약	칫솔	기저귀	이불	컵	수건	기타	없음 (수)
전체	25.9	7.9	7.7	1.6	74.5	7.3	6.9	1.3	0.9	0.5	0.3	16.5 (1,183)
아동 연령별												
0세	1.4	0.0	0.0	3.7	42.4	33.5	44.3	5.2	2.2	0.0	0.0	27.9 (34)
1세	6.2	4.7	2.6	1.0	81.6	21.8	23.8	3.9	3.4	1.2	0.0	11.4 (183)
2세	14.5	4.8	4.1	3.0	76.4	7.1	6.6	2.1	0.0	1.3	0.0	12.1 (231)
3세	28.4	7.0	9.2	2.3	71.3	1.7	1.3	0.0	0.5	0.0	0.8	20.4 (235)
4세	34.0	7.3	8.4	1.1	73.7	4.1	1.3	0.0	1.0	0.0	0.9	18.1 (250)
5세	43.8	15.9	13.9	0.2	75.7	1.9	0.7	0.7	0.1	0.2	0.0	17.4 (249)
설립유형												
국공립	14.0	3.6	2.6	1.0	73.0	9.8	11.1	1.9	0.0	0.0	0.0	18.5 (180)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8.5	6.8	11.0	4.1	71.4	16.2	8.6	8.9	0.0	0.0	0.0	16.4 (42)
민간	19.0	5.3	5.8	2.7	80.4	10.2	9.2	1.8	2.3	1.0	0.8	11.2 (302)
가정	1.3	3.3	1.5	2.6	74.2	16.3	23.4	0.9	0.0	1.8	0.0	8.9 (116)
직장	0.0	0.0	0.0	0.0	72.6	0.0	0.0	0.0	0.0	0.0	0.0	27.4 (12)
국립유치원	44.1	15.8	16.0	0.0	76.0	1.2	0.8	0.4	0.1	0.0	0.0	17.9 (242)
사립유치원	38.9	9.2	8.3	1.3	68.7	3.4	0.6	0.3	1.3	0.2	0.6	22.1 (288)

주: 중복응답임.

〈부표 5-5〉 유치원 종일제 혹은 에듀케어 과정 참여이유 및 개선점(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3세	4세	5세	
계(수)	19.6	37.1	43.3	100.0 (109)
참여 이유				
맞벌이 가정이어서	19.9	38.6	41.6	100.0 (37)
아이를 기관에 맡겨야 해서	21.7	34.5	43.8	100.0 (47)
자녀가 친구들과 있는 것을 좋아해서	9.9	38.4	51.7	100.0 (15)
꼭 필요하지 않아도 방과후 과정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17.5	45.9	36.6	100.0 (9)
유치원에서 권해서	100.0	-	-	100.0 (1)
기타				
χ^2		6.4		
개선점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의 내실화	26.3	29.4	44.3	100.0 (51)
합리적인 방과후 과정 비용 (가격규제 등) 산출	31.1	33.7	35.2	100.0 (11)
담당 교·강사의 자격과 자질향상	-	51.4	48.6	100.0 (25)
방과후 과정 운영시간 확대	21.3	37.2	41.6	100.0 (7)
방과후 과정을 위한 별도의 공간마련	-	100.0	-	100.0 (2)
방과후 과정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폐지	-	10.1	89.9	100.0 (6)
방과후 과정 신청 자격 제한	31.2	55.6	13.2	100.0 (4)
χ^2		17.4		

〈부표 5-6〉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이유(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1.0	8.7	18.5	22.4	25.1	24.2	100.0 (761)
참여 이유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3.4	10.9	15.5	20.8	26.4	23.0	100.0 (71)
학원보다 비용이 저렴해서	1.4	5.5	15.7	28.2	23.6	25.6	100.0 (119)
이동 없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0.6	8.4	20.4	20.3	26.4	23.8	100.0 (327)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질 것 같아서	-	9.9	19.3	24.9	21.5	24.4	100.0 (92)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방치될 것 같아서	1.8	13.8	19.0	20.1	22.0	23.4	100.0 (110)
하원 후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	-	-	-	28.8	42.3	28.9	100.0 (28)
기타	-	-	41.4	20.5	15.7	22.4	100.0 (13)
χ^2			32.3				

〈부표 5-7〉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동의서 작성(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참여동의서				X ²	계(수)
	받은적없음	받았으나 작성하지 않음	참여동의서 작성함	기억안남		
전체	3.4	0.8	89.3	6.6		100.0 (761)
자녀 연령						
0세	-	-	78.0	22.0	17.3	100.0 (8)
1세	-	-	86.7	13.3		100.0 (66)
2세	3.8	1.0	91.6	3.6		100.0 (141)
3세	5.3	1.2	86.8	6.7		100.0 (171)
4세	3.0	0.9	90.3	5.8		100.0 (191)
5세	3.0	0.4	90.2	6.4		100.0 (184)

〈부표 5-8〉 특별활동 혹은 특성화 프로그램 개선사항(1+2순위)(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개선요구 사항										(수)
	강사의 질 향상	교육비 인하	프로그램 다양화	교육내용 공개	강사 관련 정보 제공	예결산 내용 공개	투명한 프로그램 제공업체 선정	운영 시간 축소	아동 평가 자료 제공	기타	
전체	55.9	15.8	60.7	20.6	15.3	7.3	11.9	0.8	9.1	2.5	(761)
자녀 연령											
0세	34.5	21.6	100.0	-	43.9	-	-	-	-	-	(8)
1세	57.0	12.7	67.1	18.3	20.6	6.8	5.6	0.0	8.7	3.3	(66)
2세	57.1	20.3	56.5	19.6	11.3	9.8	10.0	0.6	11.4	3.5	(141)
3세	59.2	17.5	57.0	19.5	10.7	9.1	15.6	1.8	9.2	0.6	(171)
4세	58.5	13.5	61.1	23.0	15.9	6.2	10.5	0.4	7.0	3.9	(191)
5세	50.0	14.1	63.1	21.6	19.0	5.3	14.2	0.9	10.0	1.8	(184)

주: 중복응답임.

〈부표 5-9〉 아동연령별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이유(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2세	3세	4세	5세	
계(수)	21.1	22.0	23.5	33.4	100.0 (56)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 이유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위해서	23.4	21.3	21.4	33.9	100.0 (18)
초등학교 준비로 더 적합할 것 같아서	-	-	39.4	60.6	100.0 (4)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4.8	30.6	27.9	36.8	100.0 (23)
집 주변에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없어서	81.3	-	8.3	10.4	100.0 (3)
어린이집/유치원 이전에 다녔기 때문에	-	-	33.0	67.0	100.0 (1)
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이 다 차서	91.3	-	8.7	-	100.0 (2)
어린이집/유치원을 추후에 다닐 계획이므로	82.9	17.1	-	-	100.0 (2)
기타	-	75.1	24.9	-	100.0 (1)
X ²			38.3*		

* $p < .05$

〈부표 5-10〉 아동연령별 시간제 학원 이용 이유(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2.0	1.9	3.0	11.4	25.8	55.9	1000 (256)
시간제 학원 이용 이유							
자녀가 원해서	-	-	-	14.5	39.8	45.6	1000 (74)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위해서	3.9	3.5	5.2	9.7	24.7	53.0	1000 (106)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	-	-	12.8	4.5	82.7	1000 (21)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4.8	5.1	10.2	10.3	6.7	62.9	1000 (22)
또래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	-	-	-	3.9	18.2	77.9	1000 (10)
주변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	-	-	-	76.9	23.1	1000 (4)
부모 퇴근시간까지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	-	-	10.4	17.9	71.6	1000 (8)
자녀에게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	-	-	18.6	12.9	68.5	1000 (11)
기타	-	-	-	-	100.0	0.0	1000 (0)
X^2	49.6						

〈부표 5-11〉 아동연령별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1.9	10.4	4.5	19.2	20.5	43.5	1000 (42)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 이용 이유							
자녀가 원해서	-	-	-	31.7	52.8	15.5	1000 (3)
자녀의 재능이나 소질을 개발시켜주기위해서	3.5	7.7	8.5	19.7	18.7	41.8	1000 (22)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해서	-	-	-	19.2	-	80.8	1000 (3)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어서	-	31.3	-	23.9	17.3	27.6	1000 (8)
또래 친구들에게 뒤쳐질까봐	-	-	-	-	15.4	84.6	1000 (5)
교사 가정방문으로 아동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	-	-	-	100.0	-	1000 (0)
X^2	15.9						

〈부표 5-12〉 아동연령별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이유(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0.8	4.1	11.4	19.9	25.8	38.0	1000 (382)
가정 내 학습지 이용 이유							
자녀가 원해서	-	6.4	10.5	28.3	23.9	30.8	1000 (50)
비용이 저렴해서	-	14.9	13.2	18.9	23.1	29.9	1000 (42)
정부의 학습지 바우처 지원으로	-	-	-	37.5	31.4	31.1	1000 (9)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효과적이어서	-	0.9	8.2	15.2	28.5	47.1	1000 (174)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3.8	2.7	13.8	27.0	22.7	30.1	1000 (64)
남들이 다 해서	-	-	31.5	9.2	27.7	31.5	1000 (26)
주변의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5.3	17.7	9.2	26.2	11.5	30.0	1000 (15)
기타	-	-	-	37.2	62.8		1000 (1)
X^2	71.0***						

*** $p < .001$

〈부표 5-13〉 아동연령별 교구활동 이용 이유(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7.7	19.9	8.2	22.8	27.8	13.7	100 (46)
교구활동 이용 이유							
자녀가 원해서	-	-	26.8	21.4	26.2	25.6	100 (3)
비용이 저렴해서	-	43.9	-	-	-	56.1	100 (2)
초등학교 선행학습으로 효과적이어서	-	0.0	-	78.8	21.2	-	100 (1)
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우수해서	-	19.0	20.9	22.8	29.3	8.0	100 (14)
남들이 다 해서	-	43.6	-	56.4	-	-	100 (3)
주변의 부모들이 적극 권해서	77.7	-	-	22.3	-	-	100 (3)
자녀의 통합적 발달을 위해서	5.3	22.1	-	18.0	38.5	16.0	100 (20)
χ^2				38.7			

〈부표 5-14〉 아동연령별 통신 교육 이용 이유(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4.8	19.2	22.2	29.4	24.4	100.0 (18)
통신 교육 이용 이유						
자녀가 원해서	-	58.3	14.0	16.0	11.7	100.0 (5)
교육 내용이 다양해서	-	-	54.2	13.9	31.9	100.0 (5)
교육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	-	-	100.0	-	100.0 (2)
교육시간의 제약이 적어서	31.4	25.9	24.0	-	18.8	100.0 (3)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서	-	-	-	54.6	45.4	100.0 (4)
χ^2			21.4			

〈부표 5-15〉 아동연령별 개별돌봄서비스와 보육·교육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아동조사)

단위: %, (명)

구분	보육 연령						전체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계(수)	4.8	13.2	22.6	17.6	18.3	23.6	100.0 (157)
개별돌봄서비스 중복 이용 이유							
다른 기관 이용시간 이외에 추가 돌봄이 필요해서	4.3	10.0	26.6	18.0	17.2	23.8	100.0 (110)
아이 연령이 어려서 가정보육의 형태로 병행하길 원해서	-	22.0	21.0	11.1	25.2	20.6	100.0 (13)
방과후 과정 대신 개별돌봄 하면서 학습지 등 사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	61.1	-	-	-	38.9	100.0 (4)
부모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9.1	14.3	11.7	21.0	22.1	21.8	100.0 (30)
χ^2				19.2			

〈부표 5-16〉 가구 특성별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실태(아동조사)

단위: %, 시간, (명)

구분	시간제 보육서비스 보육 장소			시간제 보육 이용 주기별 비중					월평균 이용 시간	계(수)
	어린이집	육아 종합 지원 센터	건강 가족 지원 센터	상시	1주일 1~2 회	한달 1~2 회	분기 1~2 회	1년 1~2 회		
전체	49.0	44.3	6.7	39.8	55.6	4.6	0.0	0.0	18.1	100.0(37)
모의 취업상태										
취업	41.6	34.9	23.5	50.9	49.1	0.0	0.0	0.0	23.6	100.0(11)
휴직	22.7	77.3	0.0	0.0	61.6	38.4	0.0	0.0	11.5	100.0(4)
미취업	57.8	42.2	0.0	42.4	57.6	0.0	0.0	0.0	16.7	100.0(22)
X^2, F		9.5				15.2**			1.0	
총 자녀수										
1명	7.8	92.2	0.0	7.8	74.5	17.7	0.0	0.0	12.0	100.0(10)
2명	72.1	27.9	0.0	53.9	46.1	0.0	0.0	0.0	19.9	100.0(24)
3명이상	0.0	25.2	74.8	29.8	70.2	0.0	0.0	0.0	22.3	100.0(3)
X^2, F		40.7***				9.7*			0.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100.0	0.0	0.0	51.7	48.3	0.0	0.0	0.0	8.0	100.0(5)
200~299만원	0.0	100.0	0.0	0.0	100.0	0.0	0.0	0.0	24.1	100.0(3)
300~399만원	80.1	19.9	0.0	71.4	28.6	0.0	0.0	0.0	26.5	100.0(11)
400~499만원	44.5	55.5	0.0	44.5	55.5	0.0	0.0	0.0	36.6	100.0(2)
600~699만원	29.1	70.9	0.0	29.1	70.9	0.0	0.0	0.0	5.2	100.0(3)
700만원이상	20.5	61.4	18.1	20.5	67.3	12.3	0.0	0.0	13.9	100.0(14)
X^2, F		21.4*				12.3			2.0	
지역 규모										
대도시	28.1	71.9	0.0	23.1	68.4	8.6	0.0	0.0	16.7	100.0(20)
중소도시	85.0	15.0	0.0	62.1	37.9	0.0	0.0	0.0	18.1	100.0(15)
읍면지역	0.0	0.0	100.0	39.8	60.2	0.0	0.0	0.0	28.8	100.0(3)
X^2, F		50.0***				5.9			0.5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5-17〉 가구 특성별 소비에 대한 인식

단위: 7점 척도, 명

구분	소비에 대한 인식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4.6	5.2	4.3	3.9	4.9	4.3	4.2	4.3	4.5	5.0	5.4	5.4	4.6	(1119)
총 자녀수														
1명	4.5	5.3	4.3	3.7	4.7	4.0	4.2	4.1	4.3	5.0	5.4	5.5	4.4	(350)
2명	4.7	5.2	4.2	3.9	5.0	4.3	4.1	4.3	4.6	5.0	5.4	5.4	4.7	(603)
3명이상	4.5	5.2	4.4	4.1	4.9	4.4	4.4	4.6	4.7	5.1	5.4	5.3	4.6	(166)
F	2.8	0.2	0.8	5.4**	4.1*	4.7**	2.9	9.0***	6.4**	1.0	0.0	0.7	5.2**	
영유아 자녀수														
1명	4.6	5.2	4.2	3.8	4.8	4.2	4.2	4.2	4.5	5.1	5.4	5.4	4.5	(728)
2명	4.6	5.3	4.4	4.0	4.9	4.4	4.1	4.4	4.6	5.0	5.4	5.4	4.6	(365)
3명이상	4.7	5.4	4.6	4.0	5.1	4.5	4.5	5.0	4.2	4.7	5.3	5.2	4.8	(27)
F	0.2	2.1	1.8	0.8	1.1	1.9	0.7	3.9*	1.2	1.3	0.2	0.2	1.3	
막내자녀연령별														
0세	4.4	5.5	4.4	3.9	4.8	4.3	4.2	4.3	4.4	4.9	5.4	5.4	4.5	(230)
1세	4.5	5.3	4.2	3.8	4.9	4.2	4.0	4.2	4.5	5.0	5.4	5.4	4.6	(192)
2세	4.6	5.3	4.3	4.0	4.9	4.4	4.2	4.3	4.6	5.1	5.6	5.5	4.6	(176)
3세	4.8	5.2	4.1	3.9	5.0	4.2	4.4	4.3	4.4	5.0	5.3	5.3	4.4	(171)
4세	4.7	5.0	4.3	3.9	4.7	4.2	4.1	4.3	4.6	5.1	5.3	5.3	4.6	(169)
5세	4.6	5.0	4.4	3.8	5.0	4.2	4.0	4.5	4.6	5.1	5.5	5.4	4.7	(182)
F	1.4	3.3**	1.5	0.6	1.2	0.7	1.3	0.6	0.8	1.1	1.2	1.0	1.3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⑤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⑥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⑦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이 없다면 낳지 않는 것이 좋다, ⑧형제가 많은 아이들은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 같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⑩요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조금 극성스럽다고 생각한다, ⑪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⑫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⑬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p < .05$, ** $p < .01$, *** $p < .001$

〈부표 5-18〉 가구 특성별 소비에 대한 인식

단위: 7점 척도, 명

구분	소비에 대한 인식													빈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전체	4.6	5.2	4.3	3.9	4.9	4.3	4.2	4.3	4.5	5.0	5.4	5.4	4.6	(1,119)
맞벌이 여부														
그렇다	4.6	5.2	4.3	3.9	4.9	4.2	4.2	4.4	4.5	5.1	5.4	5.4	4.6	(518)
아니다	4.6	5.2	4.3	3.9	4.9	4.3	4.1	4.3	4.6	5.0	5.4	5.4	4.5	(601)
F	0.7	-0.3	0.8	-0.1	-0.4	-1.1	0.2	1.1	-0.8	1.1	0.2	0.7	0.6	
가구원수														
3명이하	4.5	5.2	4.3	3.7	4.7	4.0	4.2	4.0	4.3	4.9	5.4	5.5	4.3	(316)
4명	4.7	5.2	4.2	3.9	5.0	4.3	4.1	4.4	4.6	5.0	5.4	5.4	4.6	(602)
5명이상	4.4	5.2	4.5	4.1	4.9	4.4	4.2	4.5	4.6	5.2	5.4	5.3	4.7	(201)
F	3.3*	0.0	2.1	4.3*	3.9*	5.7**	1.1	7.2***	5.6**	2.5	0.0	1.2	5.2**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5.4	5.1	4.0	3.7	4.7	4.2	4.3	4.2	4.6	4.3	5.3	5.3	3.8	(19)
200~299만원	4.7	5.2	3.9	3.8	4.9	4.1	3.7	3.8	4.5	5.0	5.4	5.4	4.7	(120)
300~399만원	4.6	5.1	4.1	4.0	4.9	4.3	4.2	4.4	4.6	5.1	5.2	5.2	4.6	(350)
400~499만원	4.7	5.4	4.4	3.9	4.8	4.2	4.3	4.4	4.6	5.1	5.5	5.6	4.4	(263)
500~599만원	4.5	5.2	4.4	4.0	4.9	4.4	4.3	4.4	4.5	5.0	5.4	5.4	4.6	(195)
600~699만원	4.5	5.4	4.5	3.6	4.9	4.4	3.9	4.4	4.2	4.9	5.5	5.5	4.6	(75)
700만원이상	4.4	5.3	4.7	3.8	4.7	4.0	4.1	4.1	4.1	5.1	5.7	5.4	4.6	(98)
F	1.0	1.2	4.5***	0.9	0.5	1.1	3.0**	3.3**	2.9**	1.8	2.5*	2.1	2.1*	
지역 규모														
대도시	4.7	5.2	4.5	4.0	4.9	4.3	4.2	4.3	4.4	5.0	5.3	5.3	4.6	(479)
중소도시	4.5	5.2	4.1	3.8	4.8	4.2	4.2	4.4	4.6	4.9	5.4	5.4	4.5	(509)
읍면지역	4.3	5.3	4.1	3.8	5.0	4.2	3.7	4.0	4.6	5.5	5.5	5.5	4.6	(131)
F	2.9	0.2	10.6***	2.5	1.2	0.7	5.2**	2.5	1.3	10.8***	2.0	2.2	0.3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제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⑤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⑥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⑦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경제력이 없다면 낳지 않는 것이 좋다, ⑧형제가 많은 아이들은 교육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것 같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⑩요즘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조금 극성스럽다고 생각한다, ⑪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⑫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⑬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 환경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p < .05$, ** $p < .01$, *** $p < .001$

연구보고 2017-28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앤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45-9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9 791187 952459
ISBN 979-11-87952-45-9